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Ⅲ)

2020. 1.





목 차

제 1 권

- I.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 1. 기본규정 3
 - 2. 기본규정 별표 및 서식 58
- II. 2020년 사업시행지침서 주요변경사항 97
- III.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163

■ 농촌분야 ■

- 1-1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65
 - 1. 귀농귀촌 교육 167
 - 2. 귀촌인 농산업창업 지원 174
 - 3.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경상보조) 182
 - 4. 청년귀농 장기교육 194
- 1-2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203
 - 5.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205
 - 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231
 - 7.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235
 - 8.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260
 - 9.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지원 264
 - 10. 영농도우미 지원 289
 - 11. 일반농산어촌개발 301
 - 12. 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 321
 - 13. 행복나눔이 지원 345

■ 농업분야 ■

2-1 경쟁력 제고	357
14. 경영실습임대농장	359
15. 곤충유통사업지원	388
16. 농업계학교 실습장(농대, 스마트실습시설지원)	401
17. 농업계학교 실습장(농고)	402
18. 농업농촌에너지 자립모델 실증지원	475
19. 농촌고용인력지원	481
20. 도시양봉 지원	502
21. 스마트팜확산지원(권역별현장지원센터)	509
22.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535
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550
2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 사업 공모지원	573
2-2 생산기반확충	579
25.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581
26.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98
27.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611
28.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632
29. 농촌용수개발	645
30. 배수개선(지자체)	667
31. 사료용곤충산업화지원	690
32. 수리시설개보수	705
33.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725
34. 유기농업자재지원	736
35. 유기질비료 지원	766
36. 토양개량제 지원	792
37. 한발대비용수개발	813

제 2 권

2-3 농가경영안정	837
38. 경관보전직불(지자체)	839
39. 농기계임대	870
40. 농업자금이차보전	898
4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1004
42. 친환경농업직불	1019
2-4 국제협력협상	1035
43. 농식품해외진출지원사업(응자)	1037

■ 식량분야 ■

3-1 경쟁력 제고	1049
4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051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120
46.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121
47.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122
3-2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1223
48. 발식량작물 구매지원(응자)	1225
49.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1230

■ 축산분야 ■

4-1 경쟁력 제고	1251
50. 말산업 육성지원	1253
51.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1270
52.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	1306
53.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	1320
54. 축사시설현대화(민간)	1328
55.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1333
56. 축산자조금 운영	1349

4-2 생산기반확충	1355
57. CCTV 등 방역인프라(양봉)	1357
58. 가축분뇨 처리 지원	1364
59.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1390
60.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1438
6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463
62.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506

4-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1519
63.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1521
64. 친환경축산직불	1527

■ 식품분야 ■

5-1 경쟁력 제고	1539
65.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541
66. 식품외식융합자금(융자)	1548

5-2 생산기반확충	1557
67.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1559
68. 전통주산업진흥	1566
69.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1571
70. 찾아가는 양조장	1589

5-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1595
7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1597
72. GAP 생산여건조성	1643
73.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1650
74.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1677
75.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1686

제 3 권

■ 유통원예분야 ■

6-1 경쟁력 제고	1713
76. 과실브랜드 육성	1715
77.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757
7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1794
6-2 생산기반확충	1827
79.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1829
8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885
81.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1899
8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1909
8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935
84.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1989
85. 과수우량묘목 생산 지원	2023
86.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031
87. 과원규모화(용자)	2064
88.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 단지조성	2089
8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2105
9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2151
91. 시설원예현대화	2166
92. 유통시설현대화	2208
93.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시설현대화	2234
9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2247
95. 인삼특용작물계열화(용자)	2259
96.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2271
6-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2277
97. 공동선별비지원	2279
9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	2301
99. 직거래장터 지원	2334
100.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홍보 지원	2343
101. 물류기기 공동 이용지원	2350
102.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2359

103.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2367
104. 산지유통활성화자금	2382
105.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2410
106. 자조금지원	2425
107.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옹자)	2434
108. 직매장 지원	2448
109. 채소가격안정지원	2464

■ 임업분야 ■

7-1 생산기반확충	2471
110. 조림(지자체)	2473
111. 정책숲가꾸기	2478
112. 공공산림가꾸기	2482
113. 양묘시설현대화	2485
114.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2494
115.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502
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2509
117. 수출기반구축	2516
118.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2524
119.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2532
120. 목재펠릿 보급사업	2537
12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2543
122. 임산물 상품화지원	2547
123. 목재산업단지 조성	2554
124. 산림조합특화사업	2572
1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579

6-1 경쟁력 제고

유통원예분야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과실브랜드 육성			예산 (백만원)	1,115			
사업목적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표브랜드육성							
사업 주요내용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운영지원, 홍보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p>*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p>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3,145	2,450	2,450	15,395			
	국 고	1,325	1,115	1,115	6,015			
	지방비	660	450	450	4,020			
	자부담	1,160	885	885	5,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044-201-2253		
				사무관 이강권				
				주무관 송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생산유통부		전 무 박연순		054-534-8003		
				차 장 김영문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연계 추진 시행주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 수발주관리, 거래처관리, 회원관리 등 브랜드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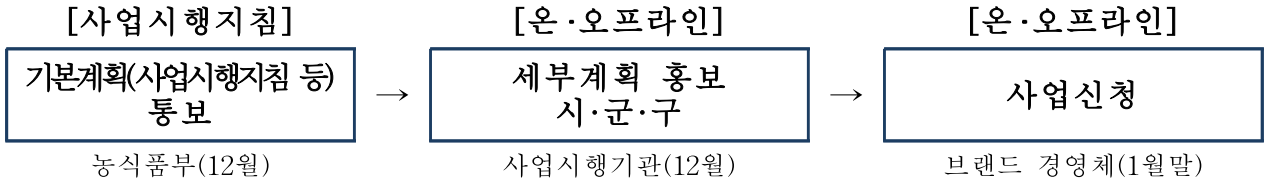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1, 2” 참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서 양식 : 별지 4-1호 서식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까지 시·군·구)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 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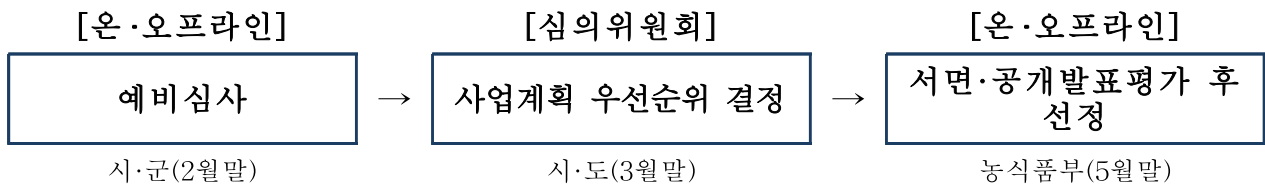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 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기간,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혁신 및 계획)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브랜드경영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0일 이내)
 - 매년 사업비 확정 후에는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다. 사업추진 컨설팅

-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 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 세부사업별 비중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전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시·도(시·군), 연합회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개월 이내)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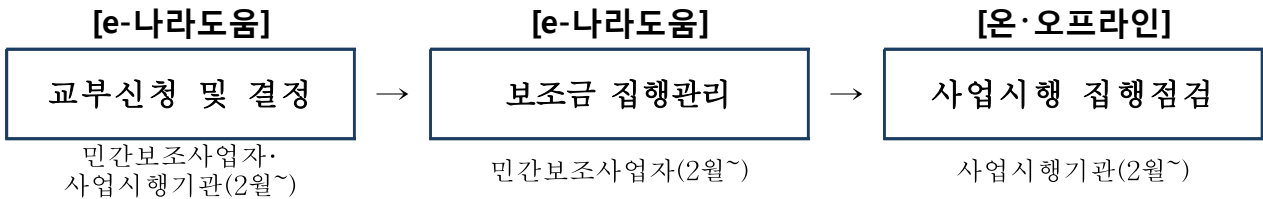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기준사업비 내 품명과 세부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사업비 조정 절차]

- <붙임 1, 2> 사업비 세부내역(예시)의 항목별 사업비는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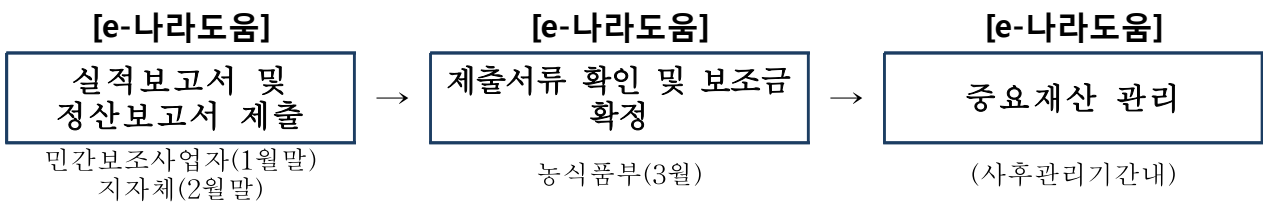
- 단, 사업비 증감조정 범위 30% 이내이며, 30% 초과 조정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 사업비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발전협의회(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4.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2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 연합회)

- 사업추진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2월말 기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검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연합회)

○ 시·도지사 및 연합회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 등 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페널티 부여

- 대상자 확정 후 법인등록까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1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4-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20.1월 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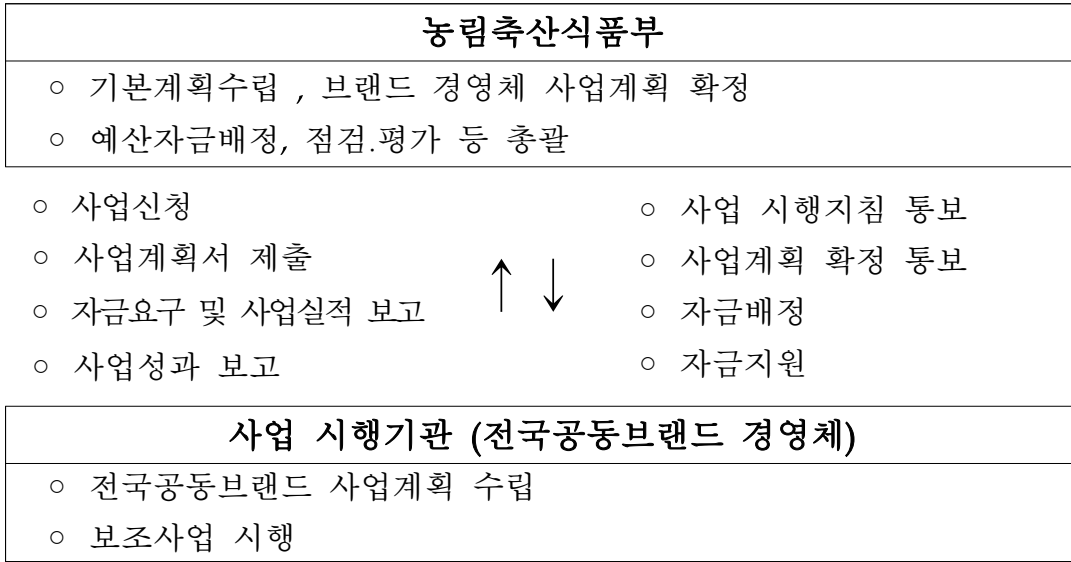
□ 전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생산·유통부)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 ① 전국공동브랜드 회원 가입 및 생산지원 신청(농가 → 회원조합)
 - ② 전국공동브랜드 과실 생산계획 및 생산지원 신청(회원조합 → 연합회)
 - ③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연합회 → 농식품부)
 -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식품부 → 연합회)
 - ⑤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시행(연합회)
 -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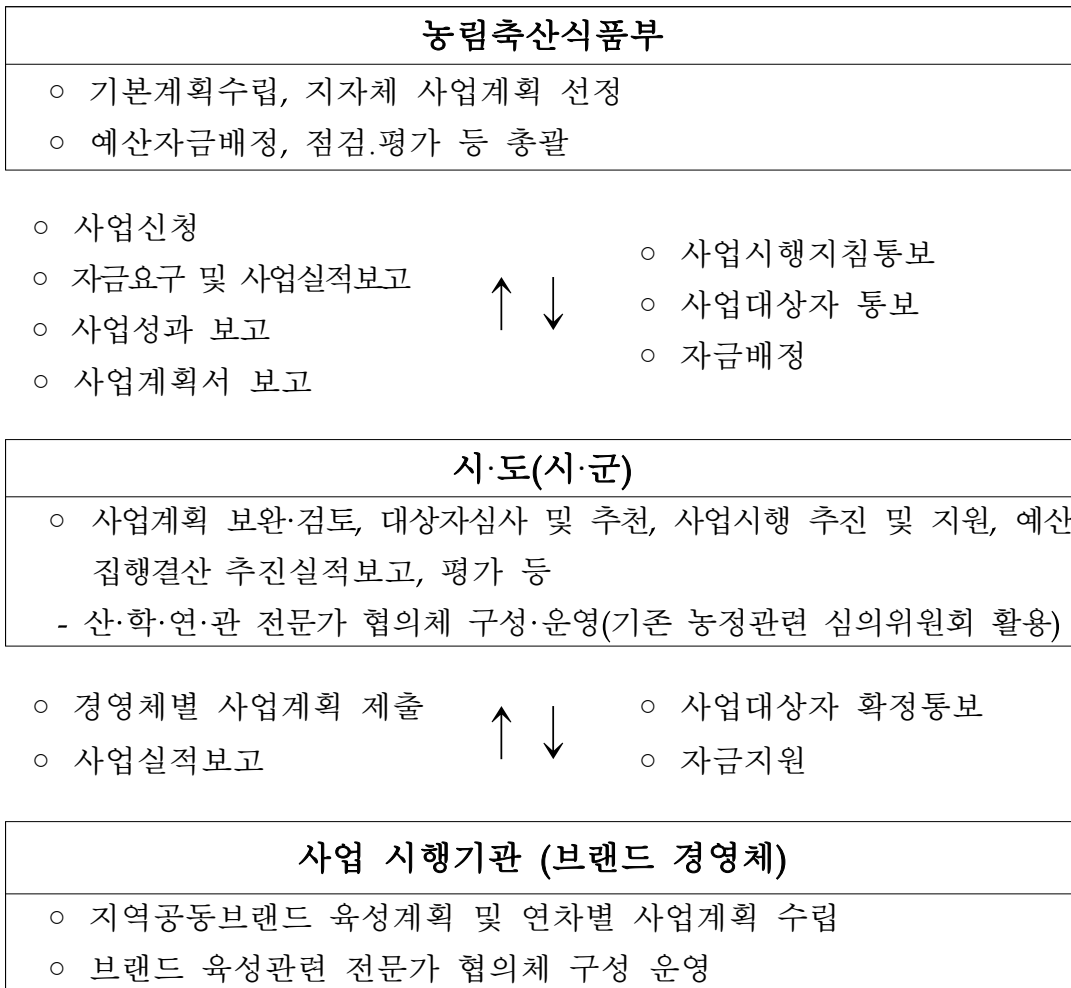
□ 지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 사업시행기관 : 브랜드경영체(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 ①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서 제출(브랜드경영체 → 시·도지사)
 - ②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보완 및 대상자 심사 추천(시·도지사 → 농식품부)
 - ③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심사평가 및 사업비 조정(농식품부)
 - ④ 예산 및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지사 → 브랜드경영체)
 - 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브랜드경영체)
 -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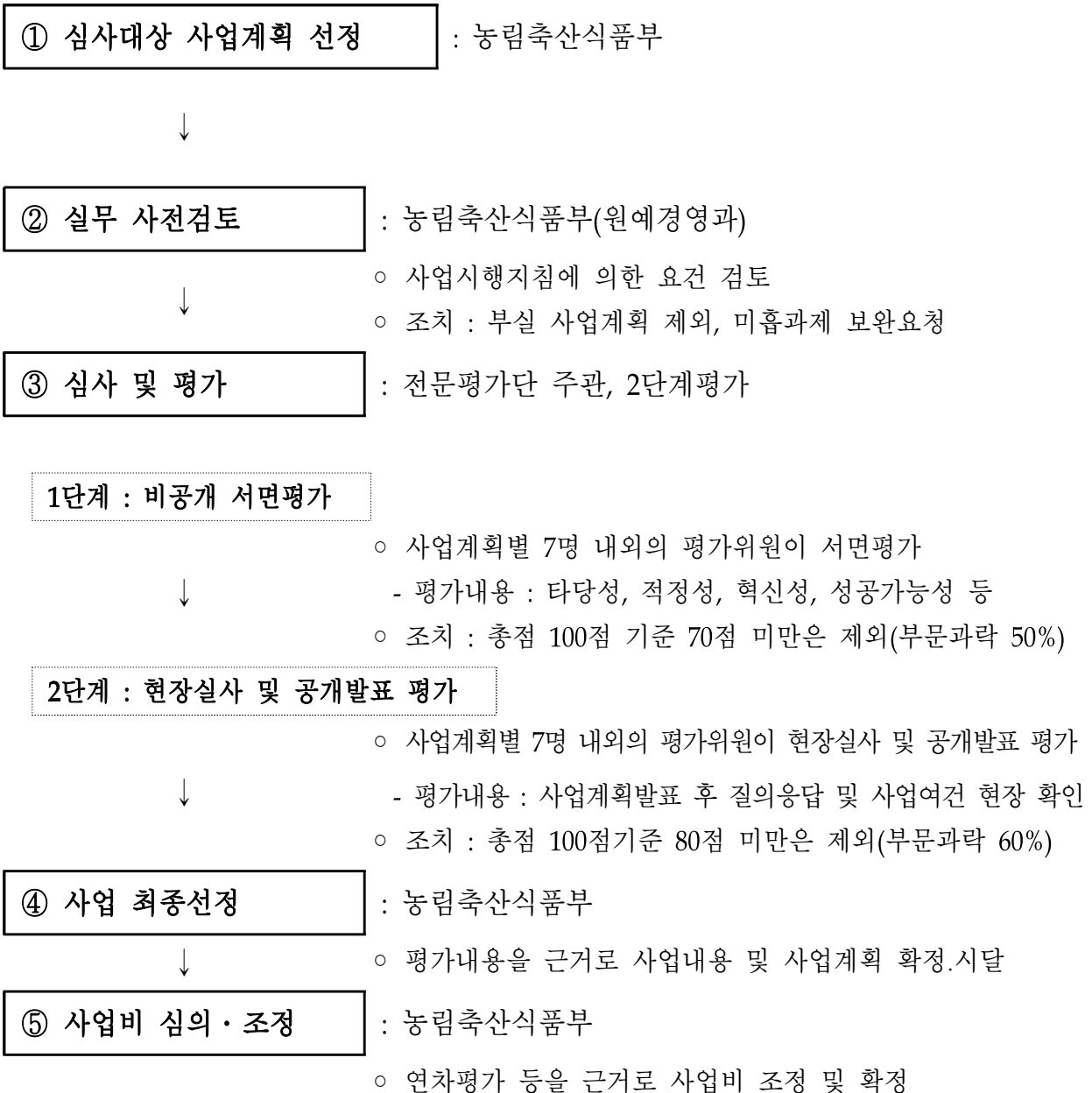
<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 신규사업(지역공동브랜드) 신청절차 >

사업시행기관(브랜드경영체)	시·도(시·군)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조직원 여론 수렴 ○ 전문가 협의체 토론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반영 ○ 지역공동브랜드육성계획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보완 ○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우선순위를 결정(2개소 이상 신청시)한 후 심의위원회 상정 ○ 농정관련심의위원회 심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 심의·확정

<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1. 브랜 드 품질관리	174,000	<input type="checkbox"/> 고품질 안전과실 재배·유통 지도 ○ 전문 강사료 : 48,000 - 200×20회×12월 ○ 전문위원 수당 : 102,000 - 500/인×17인(사과10,배5,감귤2)×12월 ○ 현장지도 실비 : 24,000 - 일 50/인×2인×20일/월×12월
	26,400	<input type="checkbox"/> 포털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인건비 : 12,000(1,000/인×12월) ○ 전용 회선비 : 2,400(200/월×12월) ○ 시스템 향상 유지보수 1,000 ○ 홈페이지 개편 10,000 ○ 도서구입 등 정보수집비 1,000
	35,800	<input type="checkbox"/> 품질조사 및 브랜드 인지도 조사 ○ 품질조사(잔류농약분석) : 25,800 - 분석비 25,000=100점×250/점 - 시료대 400=4천원/점×100점 - 시료운송비 400=4천원/점×100점 ○ 브랜드 인지도 조사 : 10,000
	60,000	<input type="checkbox"/> Work-shop 및 사업평가회 개최 ○ Work-shop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 사업평가회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11,700	<input type="checkbox"/> 유통교육(회원조합 임직원) ○ 강사료 : 5,200 - 200×2인×13개지역×1회 ○ 제비용(교재대 등) : 6,500 - 500×13개지역×1회
	15,2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컨설팅 : 15,2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2. 마 케 팅 운영지원	6,000	<input type="checkbox"/> 과일 선별 전문가 수당 ○ 선별 전문가 : 6,000(150/일×1인×40일)
	48,000	<input type="checkbox"/> 마케팅 활동비(시장조사 및 거래처 발굴 등) ○ 6인×10개소×200×4회 = 48,000
	20,000	<input type="checkbox"/> 바이어 사업설명회 ○ 5,000×4회 = 2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비 ○ 5회×20명×200 = 20,000
	43,800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운영비 ○ 임차료 : 37,800 (90㎡×35/㎡×12월) ○ 통신, 소모품비 등 : 6,000(500×12월)
	155,100	<input type="checkbox"/> 상품개발(box 디자인 등) ○ 소포장 및 서브 브랜드 개발 등 : 50,000 ○ box 견본 : 1,000(100매×5건×2,000원/매) ○ 디자인 등록비(특허청) : 1,100 <input type="checkbox"/> 판매촉진 유통비 : 103,000
3. 브 랜 드 홍보지원	225,000	<input type="checkbox"/> 광고 및 홍보비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10×5,000=50,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1개월×10,000=40,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20천개×2,000=40,000 ○ 라디오 광고 : 50회×1,500/회=75,000
	97,000	<input type="checkbox"/> 소비촉진 행사 ○ 시연회 과일 - 10,000×6회=60,000 ○ 행사운영요원 - 6인×150/일×6회×5일= 27,000 ○ 기타경비 - 2,000×5회=10,000
	12,000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 ○ 생활용품 등 : 12,000(3,000매×4,000/매)
합계	950백만원(기금 665, 자부담 285)	

지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① 브랜드 품질관리	12,000	<input type="checkbox"/> 기술지도 및 교육 : 12,000 ○ 지도위원수당 - 4인×200천원×10회=8,000 ○ 자문위원수당 - 4인×200천원×5회=4,000
	9,000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관리 및 브랜드유통정보화 : 9,000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2회×3,000천원=6,000 ○ 시스템 유지보수 : 100천원×10월=1,000 ○ 회선관리비(IDC) : 100천원×10월=1,000 ○ 장비구입 및 수리비 : 100천원×10월=1,000
	22,000	<input type="checkbox"/> 품질조사 : 22,000 ○ 산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10점×200천원×3회=6,000 ○ 소비자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2개소×5점×200천원×3회=6,000 ○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 10,000 - 1회×10,000천원=10,000
	11,000	<input type="checkbox"/> 유통교육 : 11,000 ○ 임직원 및 약정농가 교육 : 11,000 - 강사료 : 5명×300천원×2회=3,000 - 제비용(교재인쇄비 등) : 2,000천원×4회=8,000
	30,0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컨설팅 : 30,000 ○ 지역공동브랜드 컨설팅 : 30,000
	10,000	<input type="checkbox"/> 표준매뉴얼 제작 : 10,000 ○ 브랜드 표준 매뉴얼 제작 : 10,000
	10,0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평가회 : 10,000 ○ 지역공동브랜드 평가회 : 10,0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② 마케팅 운영지원	10,000	<input type="checkbox"/> 바이어 사업설명회 : 10,000 ○ 2회×5,000천원=1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input type="checkbox"/> 협의회비 : 20,000 ○ 10회×10명×200천원=20,000
	40,000	<input type="checkbox"/> 상품개발비 : 40,000 ○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 40,000
	6,000	<input type="checkbox"/>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 6,000 ○ 빔 프로젝트 1대×4,000천원=4,000 ○ 노트북 1대×2,000천원=2,000
③ 브랜드 홍보지원	170,000	<input type="checkbox"/> 광고.홍보비 : 170,000 ○ 신문, 잡지,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5회×5,000천원=25,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2개월×10,000천원=80,000 - 전광판 홍보 : 5개소×1개월×5,000천원=25,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10천개×2,000원=20,000
	50,000	<input type="checkbox"/> 소비촉진 시식회 : 50,000 ○ 시연회 과일 - 5,000천원×2회=10,000 ○ 행사 도우미 - 10인×150천원×2회×12일=36,000 ○ 기타 경비 - 2,000천원×2회=4,000
계	400백만원(기금 120, 지방비 120, 자부담 160)	

<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8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2.7, 아래쪽12.7,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2.7, 꼬리말 12.7
- 신청서 분량 : 본문 30쪽 이내, 세부내역 등은 붙임으로 첨부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예시)

1. 과수산업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광역시군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 현황

사업신청품목 :

사업신청지역 : ○○군, ○○군, ○○군 등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10(A)							
2014							
2015(B)							
A/B 등락율(%)							

과원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로 내서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 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로 내서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적(ha)						
비율(%)						100.0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10						
	'15						
	비율						100.0
생산량 (톤)	'10						
	'15						
	비율						100.0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 키 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 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 포 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ha (%)	ha	천주	대	ha	%	

* 키 낮은 과원은 예시이며, 해당 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m ²)								
'15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공동브랜드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 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17년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 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사업시행기관(브랜드 경영체) 현황

공동브랜드 경영체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 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수산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제품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FP,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간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채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 · 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브랜드경영체, 회원조합,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18	'19	'20	'21	계
보 조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계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생산혁신자재지원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합 계							
○ 전국공동브랜드 육성 -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품종·재배형태별, GAP, 친환경인증 등 생산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브랜드 경영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GAP인증 친환경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전문인력 확보 등

- 품질관리, 마케팅, 브랜드 홍보, 생산혁신 자재지원 등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 계획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평가계획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8. '19년도 사업추진 계획

가. '19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합 계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3) 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4) 생산혁신 자재지원 사업

※ (2), (3), (4) 사업도 (1)번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 1-1. 브랜드경영체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등)
- 1-2.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 2-1.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과수 재해보험 가입율(품목별 해당 시·군 과수재해보험 평균가입율과 비교하되 지역 통계자료가 없을 시는 전국 가입률 기준)
- 2-2. 브랜드경영체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 3-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자료

-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기준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 명확성	5	4	3	2	1	① 지역농업 혁신 차원에서 과실 경쟁력제고의 목표가 적정한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정성	5	4	3	2	1	①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②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 등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정성	5	4	3	2	1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적정하며, 지원 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자금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1-4.세부사업간 연계성	5	4	3	2	1	① 세부 사업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5.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1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시스템이 있는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25점)	2-1.사업추진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②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2-2.전문인력 확보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은 우수한가?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은 확보 되었는지? 없는 경우 앞으로 확보 계획은 있는가?	
	2-3.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5	4	3	2	1	① 당해 지역, 당해 품목의 재배면적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50%이상(7점), 40%이상(5점), 30%이상(3점), 20%이상인 경우(2점)	
	2-4.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5	4	3	2	1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② 경영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2-5.성공가능성	5	4	3	2	1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 고품질 생산	5	4	3	2	1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 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2. 안전과실 생산	5	4	3	2	1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E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3-3. 생산성향상	5	4	3	2	1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 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 계획이 있는가?	
	3-4. 농업인의 경영안정	5	4	3	2	1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 구성되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4-1. 유통시설 활용	5	4	3	2	1	① 거점 APC 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 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4-2. 물류개선	5	4	3	2	1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 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4-3. 수확후 관리	5	4	3	2	1	① 예냉, 선별, 저장, 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② 수확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4-4. 판매계획	5	4	3	2	1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 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4-5. 출하형태	5	4	3	2	1	① 브랜드 마케팅에 적절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 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은 있는가?	
	4-6. 운영주체 사업실적	5					① 전년도 매출액 / 30억 × 5점(최대 5점)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①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②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2점), 5% 이상(1점) ③ 자조금참여(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1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3점) ⑤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와 브랜드를 함께 표시해 판매하는 출하납품 약정을 체결한 경우(2점) * 가점은 항목별 내역을 최종확인하여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용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 선정대상자를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세부사업명	발작물산업육성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10,100			
사업목적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존에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류(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포함)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사업대상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 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함) <p>※ 단, 먹거리 계획 협약이 체결된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p> <p>※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p>							
지원한도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0,000	21,500	20,200	미정			
	국 고	10,000	10,750	10,100	미정			
	지방비	8,000	8,600	8,080	미정			
	자부담	2,000	2,150	2,02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유통정책과 친환경유통과 등(직제에 따름)		사무관 김아림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044-201-2219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사업시행지침서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에게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공정 육묘장, 농기계류, 시설·장비 및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발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 공동경영체 : 발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 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 만료시까지 유예)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는 육성 품목과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주산지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12,84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15,850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 이상	30,860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 이상	32,350t 이상
봄 무	시·군·구	70ha 이상	6,020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7,060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110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 이상	92,350t 이상
고 추	시·군·구	700ha 이상	1,620t 이상
마 늘	시·군·구	1,000ha 이상	12,530t 이상
양 파	시·군·구	800ha 이상	52,600t 이상
대 파	시·군·구	250ha 이상	6,740t 이상
생 강	시·군·구	100ha 이상	1,280t 이상
당 근	시·군·구	100ha 이상	3,600t 이상
참 깨	시·군·구	250ha 이상	100t 이상
땅 콩	시·군·구	100ha 이상	240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 주산지 요건 미 충족 시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산출 면적은 전년도 기준)
- * 통계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시 선정 가능

□ 전국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Delta\Delta\text{군 양파 생산액}) \div (\Delta\Delta\text{군 농업 생산액})\} / \{(\text{전국 양파 생산액}) \div (\text{전국 농업 생산액})\}$$

□ ○○도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Delta\Delta\text{군 양파 생산액}) \div (\Delta\Delta\text{군 농업 생산액})\} / \{(\text{○○도 양파 생산액}) \div (\text{○○도 농업 생산액})\}$$

* 공식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최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재배면적 적용, 농업생산액 대신 최근 통계자료의 경지면적을 적용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8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단, 제28조 및 제63조에 따른 지원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
 - 단, 사업종료 전까지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 * 시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취급량이 50% 이상 또는 조직화 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공동경영체 해당품목 사업규모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을 차지할 것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 식량작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이상)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등
 -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 초기·정착·심화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가 직접 관리
 - * 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하역·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식 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장비 등
 -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 감리비 및 토목(포장)공사비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은 사용 불가
 -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한국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8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 (1회) 또는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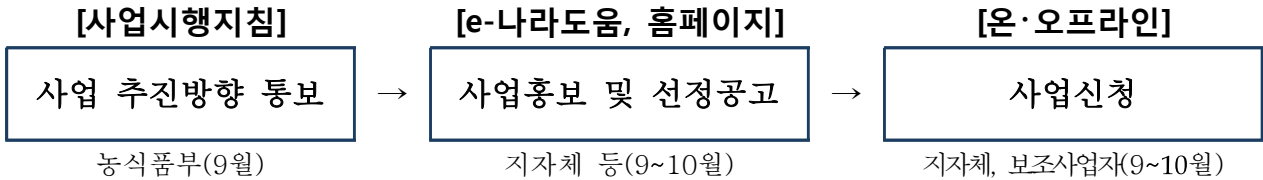
*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 2년차 사업비가 지원 유예된 공동경영체에 대해서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1년차 1.5억, 2년차 8.5억)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 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방향]

- (1)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식량작물은 제외하고, 기존 산지유통 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유예)
 - *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 ① 지자체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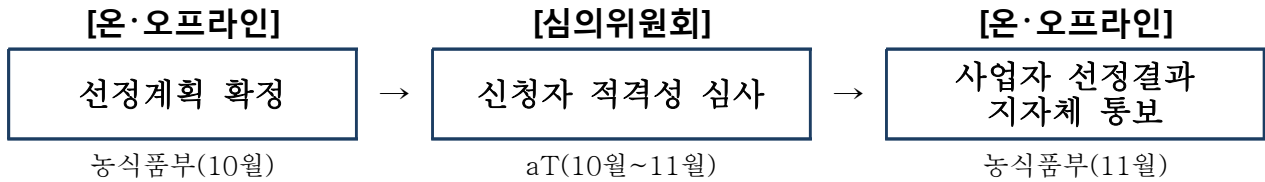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발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통합마케팅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발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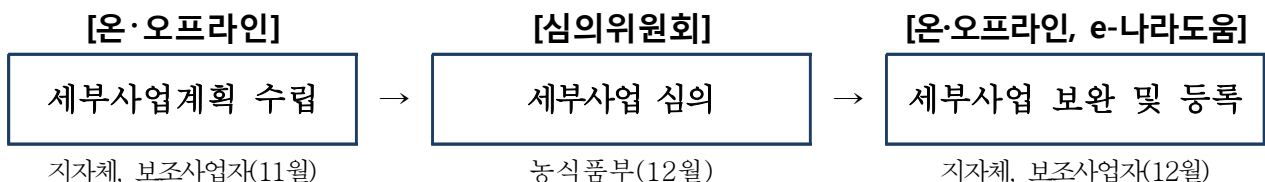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마케팅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및 농발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중장기 비전과 목표
 - SWOT분석(전략과제 제시)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비전과 육성목표, 핵심 전략과 로드맵
 -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 사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 추진 방향 및 체계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aT에 통보
- aT는 농식품부의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서면·발표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평가 시에는 발작물 공동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등 사업여건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의 협력체계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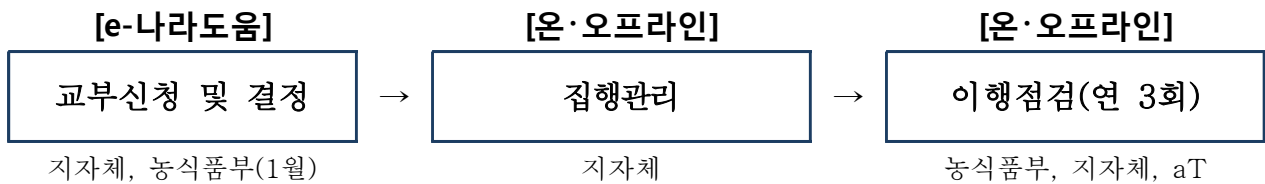
3. 세부계획 수립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발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 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시·도)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 시·군은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역 등을 변경할 시 변경되는 사업비의 합계가 총 사업비의 30%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침 II-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내에서 승인하고,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4.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시·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발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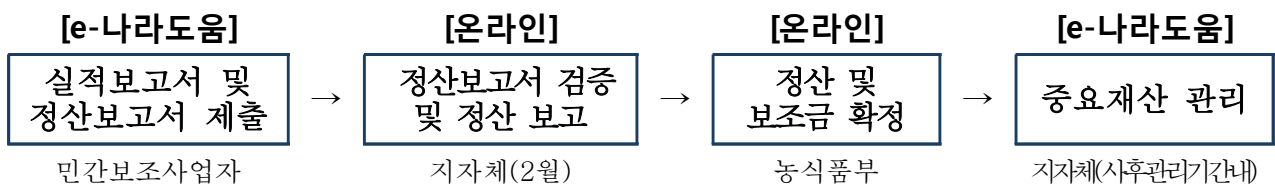
-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동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하여 운영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공동경영체 사업추진 실적을 시·군이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광역주산지협의회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하고 시·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중요재산 취득현황 등록(사업종료 익년 4월까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자체는 사업종료 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 협조 및 농식품부에 보고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함
 - * 총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은 1차년도 10월말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종합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실시

2. 평가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발식량작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3.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또는 워크숍 주관·운영
-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및 행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 신청조직 세부 현황

참여조직	개 (조직체명: 조직체1., 조직체2, 조직체3 등)												
신청품목										신청품목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출자자수			명			농업인 출자지분	%		
품목 사업실적	참여농가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16년												
	'17년												
	'18년												
품목 사업실적	조직화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조직화 취급액(백만원)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16년												
	'17년												
'18년													
'18년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해당품목)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참여조직 출하율(%)						
출하비율 (%)	통합마케팅조직			도매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기타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m ²			m ²			천주			식			대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종합처리장 등
	m ²			m ²			m ²			m ²			m ²

□ 신청 시·군 세부 현황

품목 생산현황	주산지협의회 운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조례 제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농가수	호		생산자단체 수	조직	
	주산지 해당여부			전국 특화계수	시도 특화계수	
	전국 재배면적	ha		시·군 재배면적	ha	전국대비 점유율
	전국 생산량	톤		시·군 생산량	톤	전국대비 점유율
	전국 생산액	백만원		시·군 생산액	백만원	전국대비 점유율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서식은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변경·수정 작성 가능

「20〇〇년 〇〇시(군)」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일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구 분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이메일
지자체 행정				
사업시행조직				
관련기관				

목 차

I.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00
1. 시·군 농산업 현황	00
2. 시·군 품목 생산 현황	00
3. 시·군 품목 생산·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00
4. 신청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00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00
II. 사업시행주체 현황	00
1. 공동경영체 현황	00
2.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00
III. 세부 사업 추진 계획	00
1. 추진방향 및 체계	00
2. 부문별 세부 사업 추진 계획	00
3.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00
IV.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00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00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00

I.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1. 시·군 농산업 현황

1) 생산현황 * 품목별 생산농가 및 재배면적 : 농발계획 및 원예산업종합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활용

부류별	품목명	생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 (%)	생산비중(%)	
						전국대비	도대비
식량작물	맥류						
		소계					
	두류						
		소계					
	서류						
		소계					
	잡곡류						
소계							
식량작물 합계							
채소류	과채류						
		소계					
	엽채류						
		소계					
	조미 채소류						
		소계					
	근채류						
소계							
채소류 합계							
과실류	과실류						
		소계					
특작	특작						
		소계					
합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근거 표시

* 품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통합마케팅 현황

○ 통합마케팅조직 개요('18년 12월 기준)

통합마케팅조직명		대표자명	
주 소		설립연도	
자 본 금	백만원	총취급액('18년)	백만원
출자조직(0개소)			
참여조직(0개소)			
주요 취급품목			

○ 참여조직의 통합마케팅조직 출하현황('18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주요 출하품목	총 취급금액			총 통합조직 출하금액			조직화취급 출하금액			참여조직 출하율 (B/A)
		계(A)	매취	수탁	계(B)	매취	수탁	계	공동계 산수탁	계약재 배매취	
참여조직1											
참여조직2											
참여조직3											
000											
000											
000											
총 ○ 개소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 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포전거래 금액은 제외

○ 공동브랜드 현황

적용 품목	품목1	품목2	품목3
일반 현황	- 브랜드명 : - 소유 및 관리 - 사용권 - 관리제도		
생산 기준	-	-	
품질관리 기준	-	-	
BI 이미지			
마케팅 현황	- 주출하처1 - 주출하처2		

2. 시·군 00품목 생산 현황

1 생산 현황

○ 00품목 생산현황 및 변화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10a)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16년(a)								
2017년								
2018년(b)								
등락율(a/b,%)								

○ 읍·면별 생산 현황(2018년 말 기준)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10a)	호당 면적 (ha)	시군대비 (%)
00읍						
00면						
전체면적						

○ 영농규모별 농가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 0.5	0.5 ~ 1.0	1.0 ~ 1.5	1.5 ~ 2.0	2.0 ~ 3.0	3.0ha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 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② 주요품목 특화도(신청 품목 포함)

○ 전국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전국 농업생산면적 (ha)	전국 00품목 재배면적 (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 시·도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00도 농업생산면적 (ha)	00도 00품목 재배면적 (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3. 시·군 00품목 생산·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1) 생산·유통 조직 현황

○ 00품목 생산농가조직 현황('18.12월말 기준)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출하조직	비 고
				00농협	공선출하회
				00법인	계약출하회
				00도매시장	직접출하

* 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 계약출하회, 작목반 등

○ 00품목 산지유통조직 현황('18.12월말 기준)

	조 직 명	취급액 (백만원)	취급물량 (톤)	주요출하처(%)		
				도매시장	대형유통	기타
농협	00농협					
농업 법인	00영농법인					
	00농업회사법인					
기타	산지유통인					
	농가직접출하					

2) 생산시설 현황

○ 00품목 생산기반시설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ha (%)	ha (%)						

* 관수시설(관로, 스프링클러), 육묘장 시설, 주야 재배단지 등 생산기반 시설 세부작성 및 각 시설이 전체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에서 차지한 비중(%) 작성

○ 00품목 영농기계화 현황

	파종기	수확기					
임 대							
농가보유							
기 타							
합 계							
보급률(%)							

* 00 품목의 재배 및 수확과 관련한 농기계 대수 및 보급률(%), 단, 운반기, 경운기, 트랙터 등 일반 기계류는 제외

3) 산지유통시설 현황

○ 00품목 산지유통시설 현황

구 분	운영자	설치 년도	투자금액 (백만원)	지원 주체	시설내역(m ² , 조)				
					건축면적	저온저장고	선별장	선별기	기타
APC				정부					
산지 유통시설				지자체					
저온 저장고				자부담					
간이 집하장									
가공시설									

* 00 품목의 산지유통관련 시설을 세부적으로 작성, APC는 건축면적 1,650㎡ 이상 시설, 가공시설 시설 내역은 (건축면적, 저온저장고, 가공시설면적, 가공설비)으로 작성

4) 생산·유통 여건 분석 및 개선과제

① 현황 및 문제점

- 생산농가조직, 생산구조, 생산기반, 생산여건,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등 부문별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토대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

② 개선과제

- 00품목의 문제점 해결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 00품목의 이외의 주요 발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 상위 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주요 계획내용과 본 사업과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 ○○계획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 추진방향 및 전략분석, 통합마케팅 사업 연계 등
 - 원예산업종합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II. 사업시행주체 현황

1. 공동경영체 현황

1) 경영체 현황

- 참여농가 실적(해당품목)(신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취급량 (톤)	취급액 (백만원)
2016년(A)						
2017년						
2018년(B)						
증감(%) (B-A)/A						

- 생산·조직화 실적(해당품목)

구 분	조직화 농가수 (호)	재배면 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조직화취급량(톤)			조직화취급액(백만원)		
					계	공동계산 수탁	계약재배 매취	계	공동계산 수탁	계약재배 매취
2016년(A)										
2017년										
2018년(B)										
증감(%) (B-A)/A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생산시설 보유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묘목생산		농기계1	농기계2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m ² (%)	m ² (%)	m ²	천주	대	m ²	%	

* 맥류 및 콩 생산시설 : 건조, 저장시설 등

○ 유통시설 보유 현황

구분	산지 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이 집하장	개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소								
면적(m ²)								
전년도 처리량(톤)								
투자비(백만원)								

2) 부문별 목표

○ 참여농가 실적(해당품목)(신규)

구분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취급량(톤)	취급액(백만원)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 (B-A)/A						

○ 생산·조직화부문

구분	조직화 농가수(호)	재배 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조직화취급량(톤)			조직화취급액(백만원)			
					계	공동계산 수탁	계약재배 매취	계	공동계산 수탁	계약재배 매취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 (B-A)/A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통합마케팅과의 연계성

구분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출하액 중 조직화취급액 출하액(백만원)	참여조직 출하율(%)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 (B-A)/A				

○ 사업의 기대성과

부문	정성적 정목표
공동경영체 육성	○ ○
생산농가 조직화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수를 00농가(2018년)에서 00농가(2021년)로 확대 ○ 농가교육을 ... 방식으로 추진하여 영농기술역량을 기존보다 ... 향상
생산혁신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 수확기 보급률을 00%(2018년)에서 00%로 증가(2021년)하여 노동력 절감 추진 (기존보다 작업시간 0시간/200평 축소/ 작업인력 0명/ha 축소) ○
품질향상	○ 기계식 건조기를 설치하여 취급물량을 00톤(전체의 00%)로 확대.... 품질수준을 ... 향상 추진 ○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저장물량을 00톤으로(전체의 00%)로 확대 ...
산지유통 개선 (경쟁력 강화)	○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비율 00%(2018년)에서 00%(2021년)로 증가 ○ 00품목의 수출 비중... ○ 00품목의 포전거래 비중을 00%(2018년)에서 00%(2021년)로 축소

*현황, 여건,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법 및 목표성과 작성(객관적 및 구체적 작성)

*가급적 계량적 수치 제시(예시 : 참여농가 수취가격 2021년까지 10% 향상)

3)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핵심과제 및 사업목표

- 00품목 및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에 따라 연차별 사업목표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전략과 과제 제시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추진목표			
핵심추진과제			
핵심기대성과			

* 추진목표 및 기대성과는 반드시 항목별 수치로 제시해야함

4) 연차별 투융자 계획

○ 사업별, 부문별 투융자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재원	2020년	2021년	합계
역량강화	공동경영체 운영조직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산지협의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생산비절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품질관리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1) SWOT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	○
○	○
○	○
○	○
○	○

기 회(Opportunity)	위 험(Threat)
○	○
○	○
○	○
○	○
○	○



전략 방향	
전략1(SO)	○ ○ ○
전략2(ST)	○ ○ ○
전략3(WO)	○ ○ ○
전략4(WT)	○ ○ ○

2) 00 품목 육성 비전과 목표

비전	000		
목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략	000	000	000
추진 과제	1.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3.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3)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비전	000		
목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략	000	000	000
추진 과제	1.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3.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모델(총괄)

- 신청품목의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모델 도식화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간 연계구조

* 생산, 상품화, 산지유통, 마케팅 등 부문별 사업체계 및 정책지원 체계

2) 추진체계

○ 관련 주체 협력체계

- 00품목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체계 제시

구분	
지자체 행정	- - -
통합마케팅조직	- - -
참여조직 (발작물공동경영체)	- -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	- - -
지원기관 (농업기술센터 등)	- - -

2.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사업시행지침과 항목을 동일하게 조정)

1) 공동경영체 육성 및 생산농가 조직화

① 현황 및 개선과제

○

② 추진방향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정 수립, 관련 주체들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 추진 방안 제시
- 지역 및 품목 여건에 따라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조직화를 위한 '조직화 필요성 인식, 사업 참여 원칙 확립, 재배기술 향상, 리더육성' 등 농가조직화 추진 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

③ 세부사업 내용

○ 공동경영체 육성

- 추진방법 :

- 주요내용 :

구분	추진항목	추진내용

○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 교육대상 :

- 교육방법 :

- 주요 교육 내용 :

회차	교육시기	교육인원	교육장소	주요내용

○ 00품목 주산지협의체 운영

- 참여 주체 및 기관 :

- 주산지협의체 구성 : 총 명(행정 00, 농업인 00, 생산자단체 00, 외부전문가 00)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구분
위원장				
위원				

- 협의체 운영방법 : 분기별 1회 이상

- 협의체 운영계획

회차	개최시기	참석자	주요내용

2) 생산혁신 및 생산비(노동력) 절감

①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생산구조, 생력 기계화, 종자 및 육묘, 관수 공급체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② 추진방향

○ 생산기반(관수 등), 영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등), 공정육묘시설 등 공동영농을 통한 참여농가들의 조직화 결속력 제고 및 생산혁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시설 설치

③ 세부 사업 내용

○ 공동영농기계 도입, 생산기반시설, 육묘시설 등 설치

-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3) 품질관리

①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수확후 관리, 품질인증(GAP 등), 품질관리, 상품화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② 추진방향

- 00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GAP시설, 건조시설, 품질관리 시설, 상품화시설, 저장시설 등의 도입 및 설치 계획

③ 세부 사업 내용

-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설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3.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2020년 예산 요구액(총괄)

- 부문별 사업량

부문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							
.							
◦							
-							
.							
◦							
-							
.							

2)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사업추진 증빙(내용만 기술하고 증빙자료는 첨부)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확보 현황(시설설치 사업포함 시)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매입 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을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 자부담 확보상황(농업법인만 해당)

- 출자자본금(법인 등기부 등본), 전년도 자기자본금(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예금(평잔)
(법인명의의 자부담 확보 증빙, 대표자 명의는 제외)

○ 사업추진 의사결정

- 주산지협의체, 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록(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의제)

○ 통합마케팅조직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및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 의견서

IV.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2) 추진 방향

○

3) 운영 계획

○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 00품목의 지역 내 농정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산지협의체, 농업회의소 등의 관련 행정 규정 및 지자체 조례를 제정에 대한 계획 제시

세부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예산 (백만원)	3,500	
사업목적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 주요내용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된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 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지원한도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컨설팅 : 국고 80%, 자부담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00	21,000	21,000	10,500	
	국 고	4,200	4,200	4,200	3,500	
	지방비	6,300	6,300	6,300	3,000	
	용 자	6,300	6,300	6,300	-	
자부담	4,200	4,200	4,2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은철		044-201-225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지원실		실 장 원주연 과 장 정명종		044-861-879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₂,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₂,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18)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18)을 따라야 함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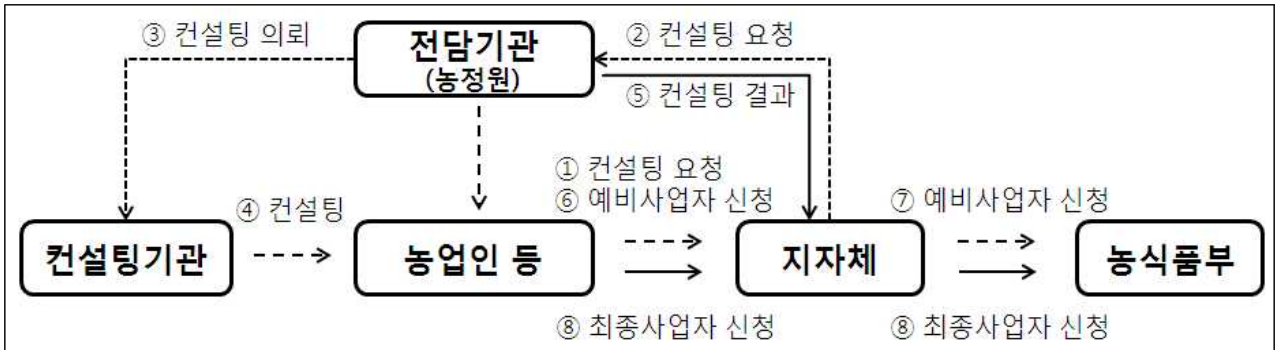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 컨설팅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II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신청 시 시·군은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시행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컨설팅 전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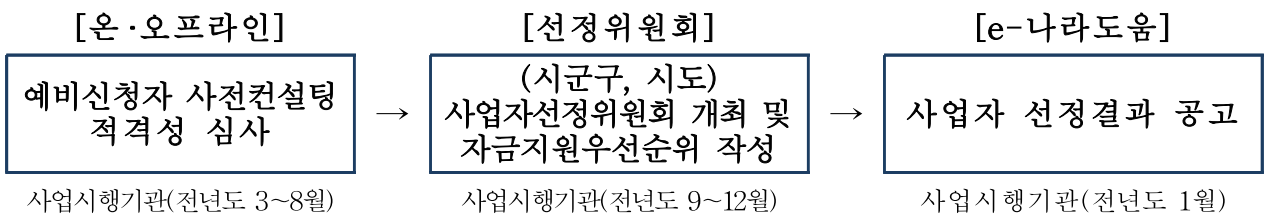
-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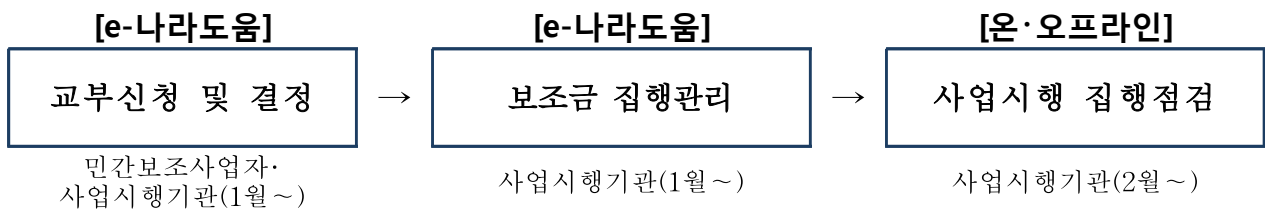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 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Ⅲ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사전컨설팅(~'20.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 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²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규모	m ²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재배면적(m ²)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m ²	사업신청 면적	m ²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 ₂ ,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 외부환경 센싱				
-				
-				
○ 온실내부 센싱				
-				
○ 구동기 제어				
-				
○ 통합제어				
-				
○ 온실관리				
-				
○ 모니터링				
-				
○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m ²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 확인원<담보 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월 ○○일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사업자 선정기준표(ICT 융복합 확산)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노후 온실 개보수와 동시 추진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시군	사업 신청자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	합계 (100점)
		온실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가점조건(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점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미충족 ()	대상 () / 미대상 ()

< 평가 참고사항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구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 ²)				구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F+G+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B+G+K))
천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110cm —————→

↑
80 cm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30cm —————→

↑
21 cm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 제외사업 >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6-2 생산기반확충

유통원예분야

세부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예산 (백만원)	24,156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한도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그 외 시설 :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재원구성(%)	국고	20~60	지방비	20~30	용자	10~30	자부담	10~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에너지진단 컨설팅 국고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6,550	103,190	83,865	62,755			
	국 고	33,952	30,304	27,273	17,385			
	지방비	31,927	28,053	22,572	17,640			
	용 자	28,439	24,789	19,797	16,345			
	자부담	22,232	20,044	14,223	11,3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은철		044-201-225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김희중 부 장 박승표		061-338-570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1. 사업대상자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일반지원요건

<공통사항>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 30,000㎡
 - * 단,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0,000㎡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넬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 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 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지열·폐열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목재펠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시설 구분	지원 범위
공기열	·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닛,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 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예특회계)

○ 지원비율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신재생에너지시설	60%	10%	2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 기준단가

<공통사항>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 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 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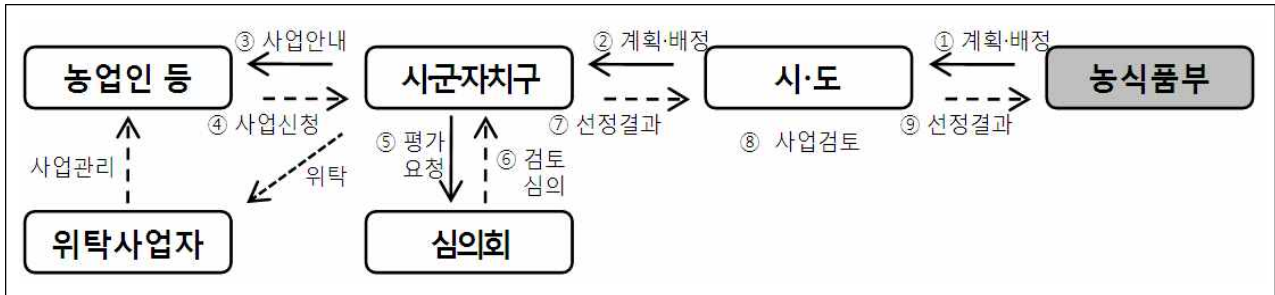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 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라.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향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 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향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m ²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m ²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m ²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m ²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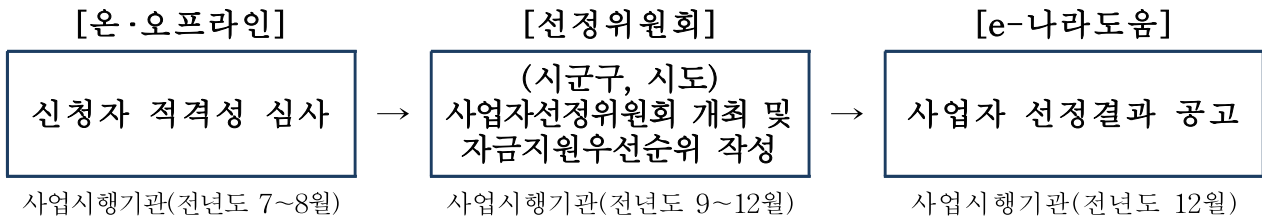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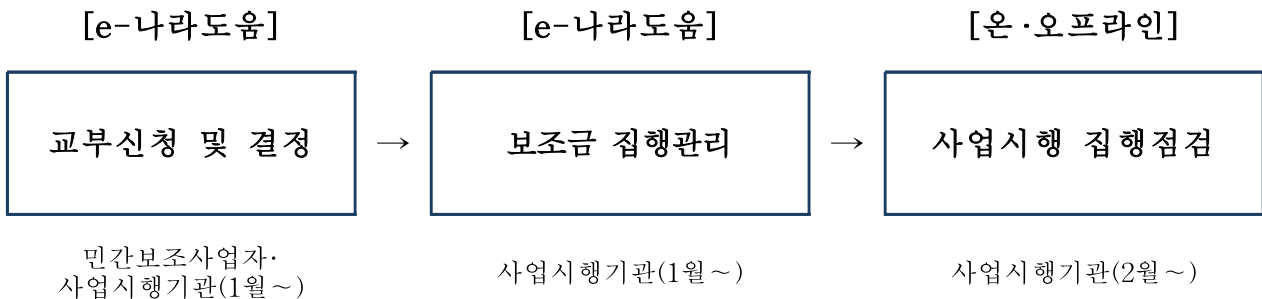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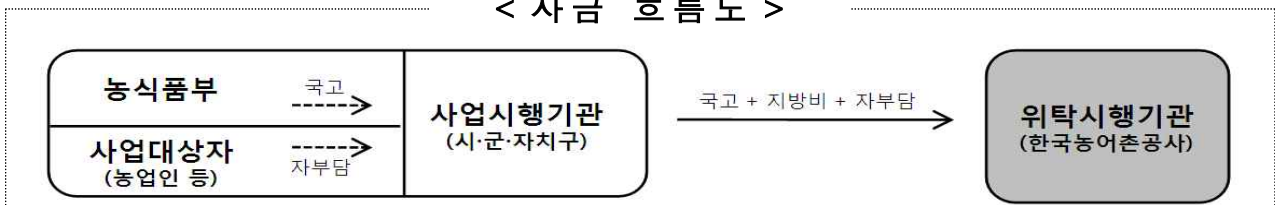
시·군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1-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 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 단계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 농업인(농업법인)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 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00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여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제79조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I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용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 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1년부터 지열·폐열 시설(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설계, 2년차 시공)으로 변경 예정
 -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 첨부서류: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단, 시설물을 지자체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가능)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족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④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신용조사서, 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10. 시설 설치 동의서(지열 등)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²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규모	m ²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 난방	온수 난방	기타		현재 용량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년	kW	m	kW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m ²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 벤로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② 양지붕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mm, ⑬ 보온판넬 75mm, ⑭ 보온판넬 100mm, ⑮ 보온판넬 100mm 이상
 -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m²

(2쪽에 계속)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지열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폐 열 냉 난 방 시스템	FCU	TUBE -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m ²	m ²				m ²	m ²	m ²			

- 개보수(용량증설)

계	지열 냉난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수 평 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공기대 공기	공기대 물	
	kW	kW	kW	kW	kW	kW

- 개보수(성능개선)

난방용량	성능개선						
	전체시설	히트펌프	배관교체	FCU	자동제어	지열교환기	기타
	식	대	m	개	식	공(m)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m ²	m ²	m ²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상세주소 기재)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m ²	백만원	백만원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m ²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21		2022		202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m ²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시설,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²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규모	m ²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m ²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육·생산실적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증감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증감율(B/A)						100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응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상세주소 기재)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p>					

[별지 제6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현장조사 확인서

신청자	사업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가온재배경력	년			
연락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타	
		면적/마릿수	m ² /마리	m ² /마리	m ² /마리	m ² /마리			
		난방면적	m ²	m ²	m ²		m ²		
	난방방법	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지열냉난방(), 기타()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석탄	전기	기타	
		연간 사용량	 	ℓ	ℓ	톤	kW		
		연간 사용액	백만원						
	난방기간	월 ~ 월(일간)		동계최저 설정온도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m ²		m ²		m ²		m ²	
지열(개보수) 보급설비	사업년도 (준공년도)		시행주체		총사업비		난방용량		
					백만원		kW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실적 (톤/백만원)	품목명(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국							
		수출시기		월 ~ 월		월 ~ 월		월 ~ 월	
	참여연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 상황 (백만원)	자산								
	부채								
	연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폐열·공기열·지열(개보수) 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반자동(), 수동()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 지열(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및 사업비 산출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사업성 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지원요건 충족 여부

사업부지 확보여부	민원발생 가능성	재배시설 규모	재배품목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input type="checkbox"/> 동의서 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서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input type="checkbox"/> 저온 작물, <input type="checkbox"/> 고온 작물, <input type="checkbox"/> 아열대 작물
사업비 확보 상황	<i>구체적으로 기술</i>		

4.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경영 규모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능력) ◦재배·경영실적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전력 ◦민원발생 가능성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통합]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배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계		국고		응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m ²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에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에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에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10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시군명	성명 법인명	재배·사육대 상	시설유형	면적 (㎡)	재배·사육방 법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 단, 분)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 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총수량(kg, 단, 분)			上品 수량(kg, 단, 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구 분	외피 복재	내피 복재	난방 기간	기간 설정 온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일~ 월.일	℃	kW	천원	ℓ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mm ⑬ 보온판넬 75mm ⑭ 보온판넬 100mm ⑮ 보온판넬 100mm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명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명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미충족 ()
조 사 항 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특점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5), 반자동(4), 수동(3), 인력(2), 시설낙후(1)		5 4 3 2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5), 다겹보온커튼(4), 부직포 2중(3), 부직포 1중(2),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mm 이상(5), 75mm 이상(3), 75mm 미만(1)		5 4 3 2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5),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4), 201~500m(3), 501~1,000m미만(2), 1,000m 이상(1)		5 4 3 2 1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10 8 6 4 2
6.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6~9년(8), 2~5년(6), 2년 미만(4), 무경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5)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4)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2)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5 4 3 2 1
8. 주변으로부터의 민원 발생 가능성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미만 있거나 축사가 5개소 미만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를 확보(10)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5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를 확보(8) - 반경 1km 이내 3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7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6) - 반경 1km 이내 5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1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4) - 반경 1km 이내 7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2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2) <small>* 농업경영체와 거주 중인 농가를 모두 포함</small>		10 8 6 4 2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9. 사업비 확보 가능성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용자 모두 확보 완료(20)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16)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용자 모두 확보 완료(12)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8) · 최종사업자 선정 시까지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설계 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4)		20	16	12	8	4	
10.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여부(축열조, 기계실 등)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1.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2.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등 지반 여건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예정지역 여부, 상습침수지역 여부, 기후, 위치 등이 시설물 운영 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지 여부 등 검토(부적합 요소 없음 10점, 부적합 요소 1가지 8점, 부적합 요소 2가지 6점, 부적합 요소 3가지 4점, 부적합 요소 4가지 2점, 부적합 요소 5가지 0점)		10					
가점 (중복 적용 가능)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5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5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5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5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5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사업 참여	5					
계							
종합의견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단체명(시·군·구명):

총득점: () 점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1.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50%)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B): 톤	$(A/B) \times 100 = (\quad)\%$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수출금액(백만원)	총 출하금액(백만원)	득점
▪ 100%	3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B): 톤	$(A/B) \times 100 = (\quad)\%$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B): 톤	$(A/B) \times 100 = (\quad)\%$ ()점
▪ 75%이상~100%미만	16			
▪ 50%이상~75%미만	12			
▪ 25%이상~50%미만	8			
▪ 25%미만	4			

4. 가점(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5점):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여 5점, 부 0점): ()점
-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점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5점):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미충족 ()	대상 () / 미대상 ()

[별첨 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쪽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튤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츰니아, 팬지, 프리물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건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 ~ 30	35
고추	13	16	23 ~ 30	35
가지	13	16	22 ~ 30	35
파프리카	15	18	25 ~ 30	35
토마토	10	16	25 ~ 30	33
호박	10	11	23 ~ 25	35
오이	8	12	25 ~ 28	35
참외	8	11	22 ~ 28	35
수박	10	13	25 ~ 30	35
무	8	11	15 ~ 20	25
딸기	3	6	17 ~ 20	30
배추	5	8	13 ~ 18	23
상추	5	8	15 ~ 20	25
시금치	5	8	15 ~ 20	25
샐러리	5	8	15 ~ 20	25
쪽갓	5	8	15 ~ 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 ~ 25	30
장미	5	15	24 ~ 27	30
아나나스	12	15	20 ~ 25	30
야자류	12	15	25 ~ 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 ~ 25	30
백합	13	16	20 ~ 25	30
국화	7	15	18 ~ 20	30
거베라	7	13	16 ~ 20	30
고무나무	10	13	25 ~ 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 ~ 30	35
동양란	10	13	20 ~ 25	40
선인장	10	13	25 ~ 30	50
카네이션	7	13	15 ~ 21	30
철쭉	4	8	20 ~ 25	35
프리지아	7	10	13 ~ 16	30
튜울립	5	10	15 ~ 20	30
아이리스	7	10	15 ~ 20	30
숙근안개초	7	10	15 ~ 18	20
금어초	7	10	15 ~ 20	25
스톡크	7	10	20 ~ 25	25
팬지	7	10	15 ~ 20	25
데이지	7	10	15 ~ 20	25
페츰니아	7	10	20	30
프리물라	7	10	15 ~ 20	25
시크라멘	7	10	18 ~ 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별첨 3]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 ²)				구조		
사업계획	합계 (A=B+ C+D))		자부담(B)	보조금(C)	용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 G+ H+ D)	자부담(F)	보조금(G)	용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G+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B+G+K))	
천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110cm —————→

↑
80 cm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30cm —————→

↑
21 cm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예산 (백만원)	3,360					
사업목적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사업 주요내용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한도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2천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40,000	32,000	28,000	16,800			
	국 고	8,000	6,400	5,600	3,360			
	용 자	4,800	3,840	3,360	2,016			
	지방비	12,000	9,600	8,400	5,040			
자부담	15,200	12,160	10,640	6,3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원예산업과 사·군·자치구 원예담당		사무관 이남윤 -		044-201-2236 -			
신청시기	매년 1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채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용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용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m²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m²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 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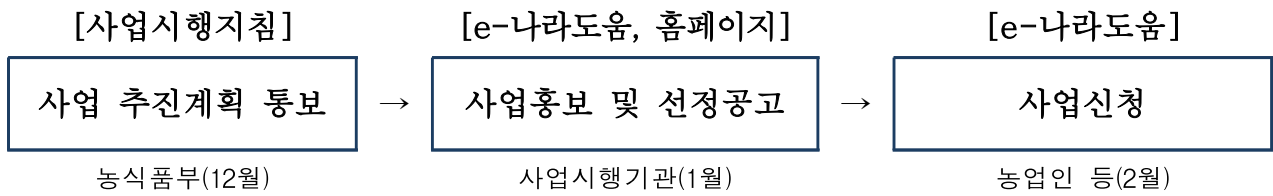
II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9.1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19.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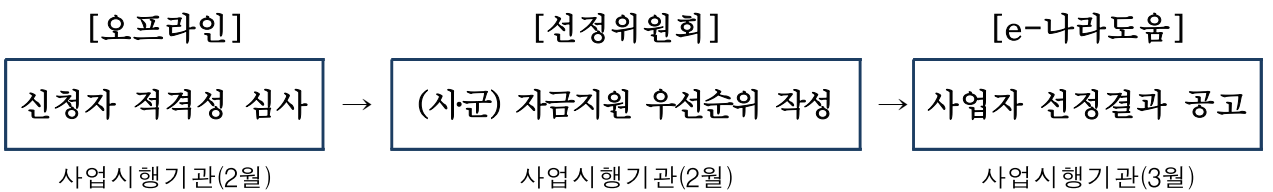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0.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0.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0.1월)
-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으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0.2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20.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0.2월)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0.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용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 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용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 (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 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견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Ⅲ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20.3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신청자격: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통보)
 - * '20년도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은 '19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m²)

합계	시설별 재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m ²	m ²	m ²	m ²	m ²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발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m ²	
농지2						m ²	
농지3						m ²	
농지4						m ²	
농지5						m ²	
계	-	-	-	-	-	m ²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m ²)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input type="checkbox"/> 단동				
<input type="checkbox"/>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3. 우선지원 요건

가.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여,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년도 인증	20 년도 인증	가입기간: 20 년 ~ 20 년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e-mail)				사업규모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변경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차량)			예산 (백만원)	3,3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저하를 방지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유통과정에서의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수송차량 구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 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김치가공업체는 김치원료 5천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역푸드플랜 운영기관(지자체,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지원한도	○ 「사업시행지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참고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2,140	12,140	12,140	11,000			
	국 고	3,642	3,642	3,642	3,300			
	지방비	3,642	3,642	3,642	3,300			
	자부담	4,856	4,856	4,856	4,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원예경영과		과 장 김수일 사무관 이강권 주무관 송일로		044-201-225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		
관련자료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외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8년도 또는 '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한 법인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

○ 저온수송차량(일반 및 PCM 축냉식)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예 냉 설 비	차압식	66m ² 까지	70	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 106만원/m²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강제통풍식	66m ² 까지	6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 91만원/m²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백만원/대
및 저온 수송 차량	저온저장고		99m ² ~ 660m ²	130~ 860	60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 130만원/m²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 ² ~ 660m ²	90~ 600	30~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 90만원/m² 개보수 신규의 30% 이하
	저온냉장 수송차량 (PCM저온 수송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시설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로는 지원 불가능(승강기 등)

II 사업추진체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시·군·구에 제출하며, 시·군·구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접수 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신청자를 시·도에 추천(~6월 중순)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 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7월 초)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7월 중순)
 - * 발작물공동경영체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10%내 우선 선정
 - *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시·군은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도 포함)
 -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반납(이월 시 지자체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 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 * '19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3년간('20~'22년까지) 사업자격 배제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10%미만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10%이상 변경,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 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1. 이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2.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10년~12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와 aT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 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을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통합 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사업평가 및 환류

산지 저온시설 지원·저온 수송차량 지원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1>

2020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평가지표(안)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내용
종합계획 연계성	지역 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사전준비 여부	사전 수요조사 일치 여부
주산지(중점지원대상)	대상품목의 주 계약 재배 지역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인지 여부
중점 지원품목 대상 여부	중점지원품목(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친환경원예, 배추·무 등 김치원료) 대상 여부(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
매출규모	<조합, 법인> : 매출 규모 <김치가공업체> : 계약재배 규모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원물 확보 여건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사업규모 적정성	매출규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차량)규모는 적정한가?
시설부지 및 확보 계획(차량: 관리여력 및 콜드체인시스템 연계 여부)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차량 유지 및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차고지 등)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여부 및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GAP 시설 및 조직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붙임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점수				세부평가 내용	
	10	8	6	2		
1. 종합계획 연계성(10)	10		0		○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 (10점) 종합계획 수립 등 연계성 있음	
2. 사전준비 여부(5)	5		0		○ 사전 수요조사 일치 여부(여 5, 부 0)	
3. 주산지 여부(5)	5		0		○ 주요 취급 품목(취급규모 1위) 주 계약 재배 지역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인지 여부(여 5, 부 0)	
4. 중점 지원품목 대상 여부(5)	5	3		0	○ 중점지원품목 대상 여부 - (5점) 양파, 마늘(긴급 수급안정 품목_변동 가능) - (3점)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친환경원에 배추·무 등 김치원료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 제외	
5.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10)	10	8	6	2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10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 이상 확보 - (8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 이상 90%미만 확보 - (6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이상 70%미만 확보 - (2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미만 확보 * 농업법인은 출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6. 원물 확보 여건(10)	10	8	6	2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10	8	6	2	○ 매출규모(예상수요 포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12		6	0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12점) 부지를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 등기)하고 규제사항 없음 (차량: 관리 인력 및 차고지 등 차량 관리능력 확보가능 여부) - (6점) 부지는 기 확보(개인 명의)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관련법 저촉 및 개발제한에 저촉 등 규제사항 없음 (차량: 관리 인력 확보 여부) - (0점) 부지는 기 확보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및 관련법 저촉 및 개발제한에 저촉 등 규제사항 있음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여부 및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6)	6	4	3	0	○ GAP 시설 및 조직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6점) GAP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 (4점) GAP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은 미확보 - (3점) GAP 미인증이나 전담인력은 확보 - (0점) GAP 미인증 및 전담인력 미확보	
1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10)	10	8	6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1. 지자체 추천순위(12) (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지적 등 고려)	12	8	4	2	1	○ 순위별 배점(시·군이 아닌 시·도 기준 순위) - (12점) 1순위 - (8점) 2순위 - (4점) 3순위 - (2점) 4~5순위 - (1점) 5순위 미만
12. 지역 지원 가점(2)	2			0	○ 접경지원(15 시군) : 강화군, 옹진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 서해 5도: 인천광역시 옹진군(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 ○ 세월호참사(2개 시군) : 안산시, 진도군	
14. 수출실적(3)	3	2		1	○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3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이상 - (2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 (1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	
평가 총점					점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을 하여 노동력을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과수경쟁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과수분야 ICT 시설(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 2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3,640	2,000	1,000	7,500			
	국 고	800	400	200	1,500			
	지방비	1,200	600	300	2,250			
	용 자	840	420	210	1,260			
	자부담	800	580	290	2,4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중		044-861-876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등 가점부여
 -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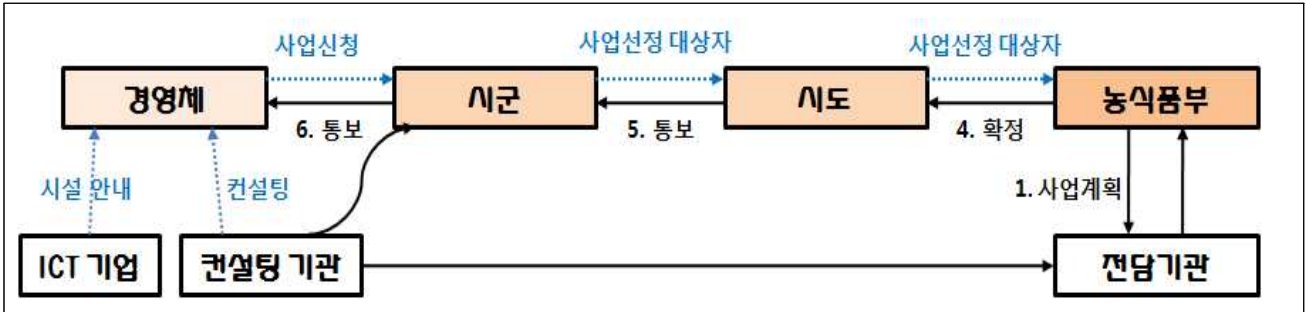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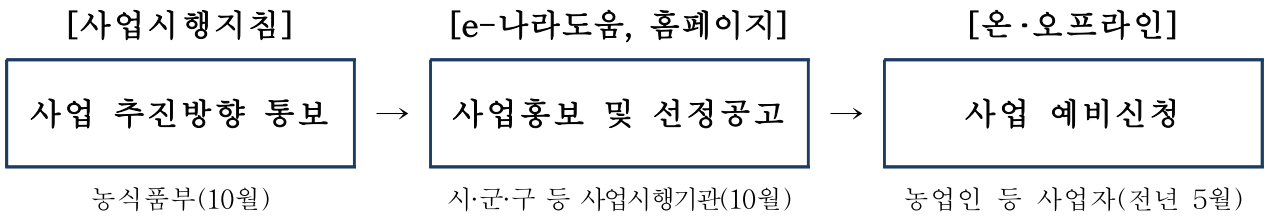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 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첨부 2]를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용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용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③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신청 대상자 대상 컨설팅 계획 수립(전년도 6월)
- ⑩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별 내시안 안내(전년도 10월)

지자체(시·도↔시·군)

- 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5월)
 -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친환경과원관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전설명 결과에 따른 예비신청 대상자 포함(전년도 5월)
- ⑤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안내(전년도 6월)
- ⑧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9월)

경 영 체

- ①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설치 희망농가 예비신청(전년도 5월)
- ⑦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전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전년도 8월)
 - * 조직내 여러 농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조직단위로 사업신청 가능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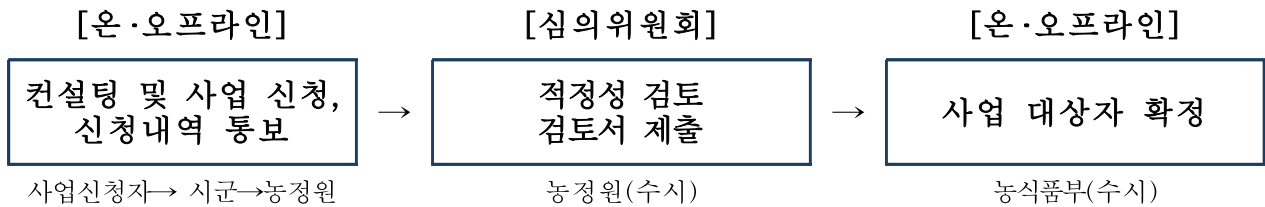
전담기관(농정원)

- ④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전년도 6월)
- ⑨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전년도 9월)

컨설팅 기관

- ⑥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6~8월)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신청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①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②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도

- ③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농식품부 확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 12월)
- ⑥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2월)

시 ·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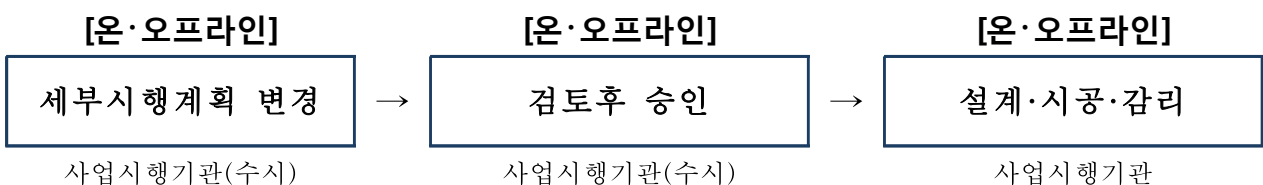
④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보고하고, 전담 기관에 제출(1월)

-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순위>

- ㉠ 조직단위로 신청하여 연계·활용효과가 높은 농업경영체, 수출 농업경영체 등 우선 지원
 - ㉡ ICT 융복합 수용 준비상황(시설조건, 활용조건)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컨설팅 결과가 우수한 농업경영체
 - ㉢ 농식품부 심사기준표 표준안을 활용하고,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점으로 보완하여 사용
 - ㉣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체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 ㉦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II-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용자+자부담)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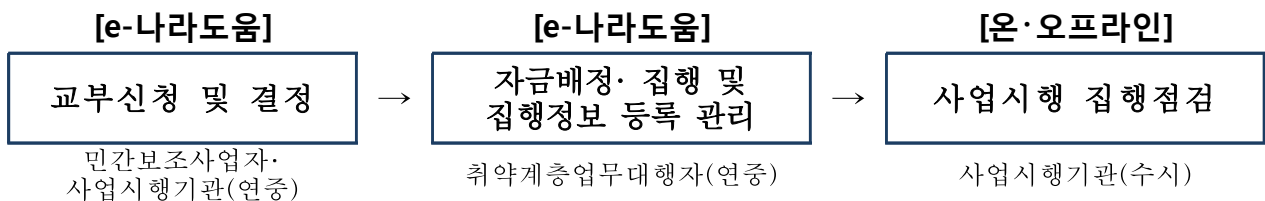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또는 조직)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시·도는 농식품부로 제출)
 -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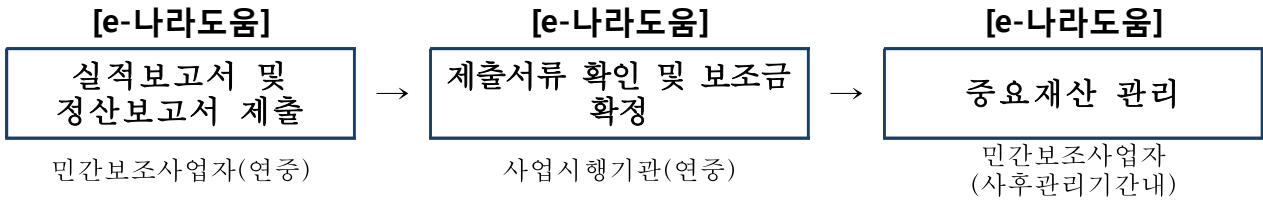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 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본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
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용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기본규정」 제78조제6항,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후 1년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5월(예비사업자)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첨부 1]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단위 : m²,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조직명	품목명	대표자 (연락처)	참여 농가수	단지 규모 (m ²)	사업자 (농가)	사업추진 규모 (m ²)	과원현황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시설/ 노지	지형 (평지/ 경사지)	기타 특징	지원 희망 시설	합계	국고	지방 비	용자	자부 담	
합계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 예비 신청시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000m²까지 20백만원, 2,000m² 증가시 4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사업계획 신청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자 일반현황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조 직 명	조직에 포함된 경우	대표자	조직에 포함된 경우
과수원 현황	사업예정지 주 소			
	과종/수량	(과종) (수량)	재배규모	(m ²)
	과수원특징	시설/노지, 과수원의 경사도, 평지, 산간 등	과수원위치	마을과의 거리, 단지 등
	과수원면적	m ²	수원 거리	관정보유, 저수지와와의 거리 등
	관수장비	제조사 ooo 모델명 등	저장고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등
	작업장 유무	PC설치 가능상태, 전원공급 여부 등	기타	병해충 등 ICT 관련 보유장비 등
사업계획	스마트팜 확산사업 (백만원)	시설구분	시설내용	금 액
		○ 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 병해충 관리	IT-페르몬트랩 등	
		○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 관정		
		○ 관수관비시설		
	○ 자동개폐기 등 ICT연계시설·장비			
○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응 자 (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 동의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직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 포함)				수수료 없음

[첨부 3] 사업계획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생년월일) :
- 주소(연락처) :
- 일반현황

구 분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 득 액(백만원)
'17년			
'18년			
'19년			

2. 과수원 현황

- 사업예정지 : 주소
- 과종/수령 : *생산품목 및 수령*
- 과수원면적 : 사업신청 면적 m²(전체 과수원면적 m²)
- 과수원특징 : *시설/노지, 평지, 산간 유무, 산간의 경우 경사도를 기재*
- 과수원의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과의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와의 거리 등*
- 관수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저장고 : *과수원에 위치한 개별농가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시설형태 등*
- 작업장 : *작업장의 상태 등(전원 공급유무, PC설치 운영가능 상황 등)*
- 기타 : *병해충관리 등의 ICT 관련장비 보유상황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3. 조직 세부현황(조직단위로 신청한 경우)

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m ²)	기타

4.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ICT 융복합	환경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등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병해충관리	IT-페르몬트랩 등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 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ICT 연계시설 장비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합 계		

< 세부내역별 >

종류	세부내역	단가 (천원)	개수	합계
합 계				
○ 환경 센싱				
-				
○ 관수				
-				
○ 병해충관리				
-				
○ 저장고관리				
-				
○ 과수관리시스템				
-				
○ 모니터링				
-				
○ 관정				
-				
○ 관수관비시설				
-				
○ 자동개 폐기				
-				
○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조직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5. 정보화 능력 등 사업선정시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첨부 4]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단위 : m²,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조직명	품목명	대표자 (연락처)	참여 농가수	단지 규모 (m ²)	사업자 (농가)	사업추진규 모 (m ²)	농장유형 (노지 /시설)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착공 예정일
										지원 희망 시설	합계	국고	지방 비	용자	자부 담	
합계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첨부 5]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시·도)

시군	농가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조건(20점)			합계 (100점)
		과수원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조직 화 (10점)	수출 단지 (5점)	재해 보험 (5점)	

<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관련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시설조건

- 과수원 조건 : 과수원의 특징(경사도, 수원거리 등), 위치, 수종의 수령 등이 ICT 융복합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 병해충, 저장고 및 관수제어 관리 등의 ICT 융복합 연계장비 보유 정도

활용조건

- PC 활용 :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가점조건

- 조직화 : 조직단위 신청 여부, 조직내에서 파급효과 정도 등
- 수출단지 : 수출단지 지정 여부 등
- 재해보험 : 과수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첨부 6] 실적보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조직	농가	품목	사업량 (m ²)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첨부 7] 정산결과 보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진도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시군	조직	농가	품목	사업량 (m ²)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C)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계	국고 (C)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대비 (D/C)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액	착공 일	준공 일			
합 계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예산 (백만원)	4,227				
사업목적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집하선별,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 일괄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시·군단위 이상의 규모화된 마케팅사 업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지원한도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재원구성(%)	국고	50~40	지방비	50~30	용자	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7,884	10,280	10,280	74,472			
	국 고	3,942	4,227	4,227	27,081			
	지방비	3,942	4,227	4,227	27,081			
	자부담	-	1,826	1,826	20,3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부 장 김동목 차 장 안만물 과 장 곽일태		061-931-102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1. 사업대상자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지원기준>

*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이거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 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 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 *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신규시설 중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이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3.3㎡		3.3㎡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가보유감안)
2 토 목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랩핑 포함
- 기반 공사	식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66㎡당 1개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3. 전기공사	식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4 건 물	㎡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		향온 클린룸설치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집하장	㎡		하차, 검수 등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출고장	㎡		상차, 배송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예냉고	㎡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저온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 (톤)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CA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 (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품질검사실	㎡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일반창고	㎡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교육실	㎡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 SCM, 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날개포장	11. 조정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 봉합기	대		자동 박스 봉합기	총계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끈넛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톤 생산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 (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경영정보 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팻릿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2호의 조건 충족
-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하고, GAP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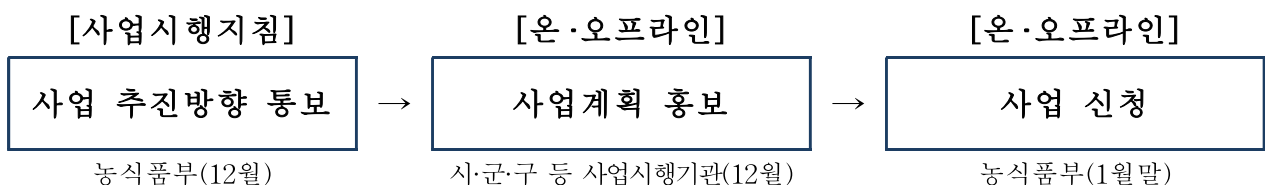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사업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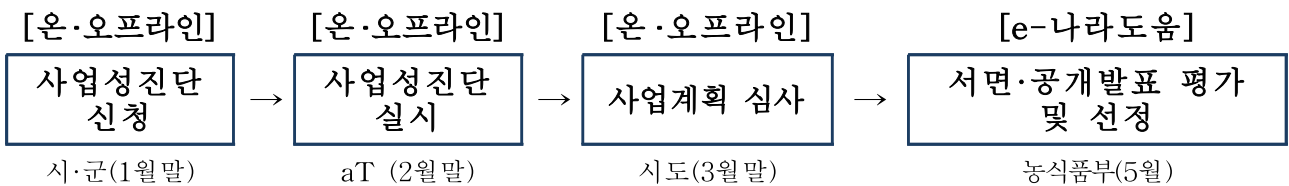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경제지주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
- 사업성진단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성진단결과 반영현황은 사업 신청자 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 농업진흥지역밖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1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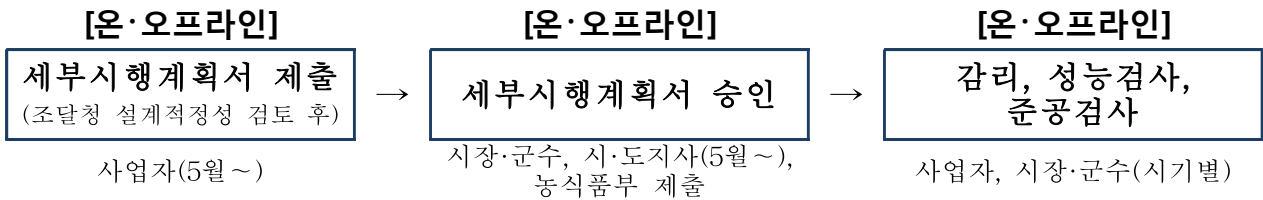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제주감귤농협(서귀포 안덕·대정 거점APC '17년 사업포기, '18년부터 '20년까지 지원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저온저장고 :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설계하여 시공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
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공공유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

*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엔
지니어링기술 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2) 기본설계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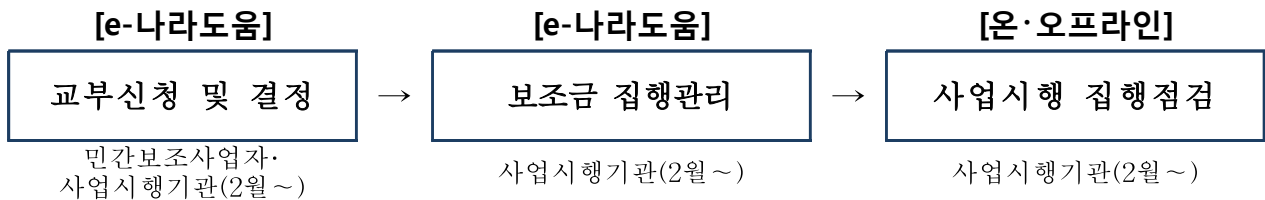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함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아야 함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제1항제6호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이 원칙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따라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함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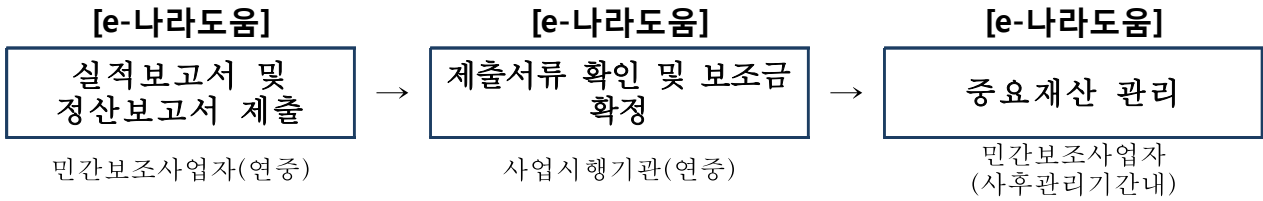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 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2 제5항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 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 운영주체의 대표자(센터장)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자과정, 마케팅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과수거점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9조)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공유형 지원시설물(시장·군수 소유)은 과수거점APC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운영기간, 운영방법, 위탁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운영
 - 부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예, 부지는 위탁운영자, 건축물은 시장·군수)에는 향후 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조례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과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 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12월) 부진조직의 운영 및 경영개선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양수도 이행 즉시 계통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시·도지사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검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가. 원 칙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9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기간 : 1~3월
- 평가기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평가지표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 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다.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차등 지원

I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1년도 사업 예비계획서 제출('20.1월말)
 - 제출방법 : 예비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 예비계획서는 세부시행지침의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간략히 작성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2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발표 후 질의응답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과수거점APC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시 사전 점검사항

◇ 과수거점APC 건립 중인 사업추진 주체가 계근대, 선별기, 저장고 등 시설물과 ERP시스템간 효율적인 연계 및 자동화를 위해 사전에 준비 및 점검해야 할 사항임

1. 주요 점검 대상

- 선별기, 계근대, 저온저장고, CA저장고, 팔렛타이징, RFID, 바코드, AP(Access Point),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2. 점검 대상별 상세

선별기 관련 : 별첨내용 참조

계근대

- 계근정보를 계량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Display해주는 LED 전광판(생산자와의 신뢰도 측면에서 필요한 장치이며 필수장치는 아님)
- 계근된 중량을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계근대 설치시 업체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가능토록 함(필수)
- RFID Tag를 이용한 계근자동화시스템 구축시 계근대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저온저장고

- **센서** : 저장고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정보가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 될 수 있도록 함(필수)
 - 저장고 센서에서 송신하는 정보가 ERP와 연동 될 수 있도록 저장고외부에 정보 송신용 전기 및 네트워크 공사(필수)
- **센서정보 LCD 패널**(선택)
 - 저장고 온·습도를 저장고 입구에서 볼수 있도록 저장고 입구에 부착하는 LCD Display판이 없을 경우 ERP화면에서 온·습도 확인 가능
- RFID Tag를 이용한 재고관리시 저장고 출입문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 CA저장고 : 기준은 저온저장고와 동일, 개폐정보를 ERP에 전송해야 함
 - 팔렛타이징
 - 최종 출하시점에서 팔레트에 적재된 상품정보(품종, 적재수량)를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신
 - RFID(선택)
 - RF Tag정보를 ERP에서 별도 입력작업 없이도 자동인식 가능토록 계근대, 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부분에 적용가능, 이동식리더기 별도 필요
 - 점검사항(RFID 선택시 필수사항)
 - 핸드헬드 리더기 : 고정식 RF 리더기 고장에 대비 이동형 리더기 보유
 - 핸드헬드 리더기 프로그램 : Tag정보를 Read/Write하고 관련정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리더기에 내장
 - 미들웨어 : 고정식 및 이동식 리더기와 ERP와의 연동시 필요한 기능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프로그램 포함
 -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바코드
 - 필요기기 및 분야
 - 프린터기(원물 입고장, 포장라인), 리더기(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바코드라벨 자동부착기(최종포장라인)
- 내부관리용 : 내부 물류이동(입고, 재고, 출고, 선별투입 등)을 관리하기 위해 A4용지에 식별내용(농가, 품목, 수매번호 등) 출력관리
 - 출하용 : 최종 포장하여 소비처에 출하 시 사용
- 점검사항
 - 바코드프린트기 필요지점
 - .원물입고장 : 계근후 팔레트에 적재된 원물에 부착
 - .선별후 1차 포장라인 : 선별기에서 선별된 원물의 등급정보를 알 수 있도록 1차 포장라인에서 바코드 라벨을 박스에 부착
 - .최종 포장라인 : 출하처에 출하하기 직전 최종라벨을 출력 부착

- 바코德拉벨자동부착기 : 최종포장라인에서 바코드를 자동 부착하는 장치
- 바코드리더기 : 저장고에 입출고되는 원물 및 상품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각 저장고별, 선별기투입구에 필요(유선 또는 무선)
- 바코드리더기 프로그램 : 이동식 바코드리더기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 (납품업체에서 제공)
-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AP(Access Point)

- 기능 : RFID 핸드헬드 리더기와 무선바코드리더기 사용시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 하는데 필요한 장치
- 점검사항 : APC 네트워크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공사시 설치

□ 초고속정보통신망

- 기능 : APC 기기장치와 ERP와 연동할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네트워크 단절로 “ERP연동 불가”를 사전대비 조치
 - ※ 국내에 건립되는 APC는 여건상 시내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건립되는데 네트워크 단절이 종종 발생함
- 점검사항
 - 네트워크 단절을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이중화(ex, 데이콤과 한국통신 이중가입)
 - ※ 네트워크 단절시 ERP 및 APC 기기장치와의 연동이 전면 중단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성 및 기능

□ 경영지원시스템의 정의

○ 농산물의 수매·입고에서부터 선별·출하까지 경영체 내부 물류흐름 전반의 과정을 정보화·자동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 경영지원시스템은 경영정보시스템 또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성 및 기능

구 분	기 능	
운영 업무 부분	농가지원관리	생산자관리, 취급품목관리, 약정관리, 지원금관리, 이력추적관리, GAP관리, 정산지불관리
	영업관리	영업계획, 고객관리, 수주관리, 수금관리, 미수관리, 상품관리, Claim 관리
	수매관리	연·월·일 수매계획관리, 수수료관리, 표준단가관리, 수매등록, 자동/수동관리
	저장관리	저장고관리, 저장고운영기준관리, 재고조정관리, 온습도관리, CA저장고관리, RFID입출자동, 컨테이너입출수/자동관리
	생산관리	생산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관리되며, 투입물량과 생산실적이 관리되어 부산물인 Loss관리가 되며, Lot관리를 통한 생산이력관리 - 생산계획, 작업지시, 포장지시, 자동실적, 수동실적
	출하관리	출하지시관리, 출하마감관리, 출하지시서관리
	운송관리	운영실적관리, 실적마감, 운반비지급관리, 배차관리, 차량관리, 거래처관리
	자재관리	공급처관리, 발주관리, 운반재관리, Bin관리, 소모품관리, 자재관리
관리 업무 부분	회계관리	기준정보, 전표관리, 결산관리, 자금관리, 예적금관리, 유가증권, 어음관리, 부가세, 법인세, 예산관리, 고정자산
	인사/급여관리	인사기본, 근태관리, 금상여관리, 연말정산, 퇴직관리, 인사고과, 복리후생관리
	원가관리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한 공통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배를 배분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원가 (또는 가장 근접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정확한 매출단가 산정 및 매출이익 계산 가능
	시설관리	시설은 향후 APC 검사지원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일지 및 계획 점검일지 및 교육 일지가 관리되며, 소요 부품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 - 기준정보, 장비관리, 안전관리, 보고서
	경영분석	계획관리, 실시간 관리, 기간별 관리, 보고서
	경영정보	경영지표, 실시간현황 보고, 업무보고, 경영분석 보고, 경영정보 보고

과수거점APC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예)

- 선별관련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외부프로그램(이하 ERP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연계 데이터는 ERP시스템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수신되어야 한다.
 - 연계에 소요되는 H/W 및 S/W비용은 모두 제작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 인터넷단절에 대비 자체제어로 48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인터넷복구시 단절시간동안의 선별관련 데이터를 ERP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선별기관련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프로그램화면, 매뉴얼, 작업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관련 소스 및 모든 라이선스 또는 사용권은 발주자에 제공 또는 권리인정을 항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연계 내용
 - 선별투입
 - 바코드 또는 RFID등에 의해 농가별로 구분된 투입정보(투입중량, 농가코드 등)는 수기작업을 거치지 않고 ERP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한다.
 - Job Change시 ERP시스템이 송신하는 정보(농가코드, 품목/품종, 작업지시번호, GAP 번호 등)를 선별기에서 수신하여 선별 각단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선 별
 - 농가별 농가선별결과정보(등급, 품목/품종, 선별중량, 작업 지시번호 등)를 전송해야 한다.
 - 포 장
 - 농가별 포장정보(포장수량, 투입중량, 개입수, 등급, 포장타입 등)를 전송해야 한다.
 - ERP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라벨인쇄부착기를 이용하여 포장상자의 지정된 위치에 자동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상자의 이송속도에 따른 작업 지연이 없어야 한다.
 - 팔렛타이징(Optional)
 - 팔레트에 적재된 상품내역정보(농가, 품목/품종, 포장타입, 적재수량, 팔렛타이징 No. 등)를 전송해야 한다.
 - 단위적재표시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선별방식 선정 시 고려 사항

과수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
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상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과수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GAP 친환경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직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설	저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조 ()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 효과 작성

○

4.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m²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비 고 (제작회사)
○ 부 지	m ²	천원	백만원	-		
○ 건 물	m ²					
- 집하선별포장장	m ²			저장능력/일		
- 예냉고	m ²			"		
- 저온저장고	m ²			"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m ²			"		
- 사무·회의실	m ²			-		
·						
·						
○ 기 계						
- 선별기	조			처리능력/시간		
- 포장기	대			"		
- 컨베어	대					
·						
·						
○ 장 비						
- 냉장탑차	대					
- 팔레트	개					
- 수송차량	대					
- 운반상자	개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 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참여조직	사업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연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 * 주 1) 사업물량 확보계획은 참여조직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 2) 사업물량 확보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방안을 작성(개조식으로 최소한 5쪽 이내)하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조직 협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 목	사업 물 량	사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 * 주 1)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2)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체자금	
○ 자부담금		○ 신규출자	
○ 운 영 비		○ 외부차입	
- 매취자금		○ 기 타	
- 관리비 등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6. 기 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및 운영 현황(반드시 작성)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 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건립 현황>

지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 처리물량
				집하·선별장 m ² 저온저장고 m ²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운영 현황>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운영 현황	비 고
	○ ○ ○ ○	
	○ ○ ○ ○	

* 지원대상별로 사업물량 확보 상황, 조직화 여부, 출하가 원활한지, 지역조합·영농 조합 등과 경합관계가 없는지, 경영능력이 있는지 등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붙임 1. 사업물량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 방안 1부.
2. 사업성진단 결과 1부.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명세서

(시·도)

신청자	사군	구분	주요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용	집하선별 포장장	사무실	냉장 탑차	간마늘 시설	비과과 당도기	선별기			
() (/)		기존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대	조	조	천원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안에는 “배치계획정수/사업
 신청년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안에 기재
 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안에 기재.(예 : 신
 규(00군 1), 확장('95, '97, '99))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일반유형)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 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금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 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경영구조</th> <th>평점</th> <th>경영관리</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독립채산제 책임경영</td> <td>5</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td> <td>5</td> </tr> <tr> <td>분사형 책임경영</td> <td>4</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td> <td>4</td> </tr> <tr> <td>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td> <td>3</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td> <td>3</td> </tr> <tr> <td>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td> <td>2</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td> <td>2</td> </tr> </tbody> </table>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출자규모</th> <th>평점</th> <th>유동비율</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td> <td>5</td> <td>150% 이상</td> <td>5</td> </tr> <tr> <td>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td> <td>4</td> <td>100%이상 150% 미만</td> <td>4</td> </tr> <tr> <td>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td> <td>3</td> <td>50% 이상 100% 미만</td> <td>3</td> </tr> <tr> <td>·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td> <td>2</td> <td>50% 미만</td> <td>2</td> </tr> </tbody> </table>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 를 초과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 이하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 공통기준 : 자본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차하위등급 부여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부지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8	설치불가	-5							
타인 명의	6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 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타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공공유형)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 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급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 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 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 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 위탁운영자 능력	10	8	6	4	A :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 등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부지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8	설치불가	-5							
타인 명의	6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 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타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3-7호 서식]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요 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에너지	저온 저장고	에너지 접용	접선별 포장장	사무실	냉장 탑차	간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1 (00.0)	()		신청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조정														
2 (00.0)	()		신청														
			조정														
3 (00.0)	()		신청														
			조정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별지 3-8호 서식]

○○○○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사업자(법인명) :

사업성진단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고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비율 (B/A)
				사업계획			사업실적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m ²	m ²		m ²	m ²		%

사 업 비 (천원)										비율 (B/A)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 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 시설	저온 저장 시설	예냉 시설	기타	계	선별 기	포장 기	콘베 이어	테핑기 ·밴딩 기	제함 기	지게 차	냉장 차	파렛 트	운반 상자 ·

(주) 사업세부명세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에 한함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신청자				
시.도				
시.군				
사업운영주체				
사업유형(형태)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처리규모(톤) (취급품목)				
건축면적(m ²)				
저장능력(천톤)				
공선실적(천톤)				
법인화	인가시기			
	출자액(백만원)			
	참여조직수			
부지확보				
전국브랜드연계계획				
사업비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				
부지사진				
유통사업서류				
농가조직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서면평가)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등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① 부지 확보 가능여부 및 관련법규의 제한 정도는? ②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	5	4	3	2	1	
3. 사업비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5	4	3	2	1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5	4	3	2	1	
5. 원물확보방안	①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5	4	3	2	1	
6. 연중 가동체계구축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5	4	3	2	1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①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5	4	3	2	1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5	4	3	2	1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5	4	3	2	1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5	4	3	2	1	
	③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투자의 효율성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4	3	2	1	
13. 운영주체 사업실적	① 신규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00억원 ② 보완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30억원	10					
14. 원물확보 실적	①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만톤	10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가 점					①
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2~2점 부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및 반영 정도							②
②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총 점 (기본점수+가점)					
③ 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 소재 사업신청자 : 3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될 경우 : 1~3점							
⑤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먹거리 계획 협약 맺은 지자체(3점)							
* 가.감점은 관련기관에서 최종 확인 후 일괄 적용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연차평가·통합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3. 사업비확보 계획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5. 원물확보 방안	
6. 연중 가동체계 구축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2. 투자의 효율성	
13. 기타 의견	
<p>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p> <p><input type="checkbox"/>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p> <p><input type="checkbox"/>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p>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발표평가)

평가항목	등급					등급평가기준	평점
	A	B	C	D	E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5	4	3	2	1	①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관련법규의 제한이 없는가? ②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이 없고, 과수주산지로 사업 물량 확보(1-2만톤이상)여건이 양호한가? ③ 교통 여건이 양호하여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가?	
2. 사업비확보 계획	5	4	3	2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3. 연중 가동체계구축	5	4	3	2	1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4. 투자의 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10	8	6	4	2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15	12	9	6	3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③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8	6	4	2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20	16	12	8	4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에 의한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④ 연합사업단인 경우 법인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고, 실현 가능한가?	
9. 원물확보방안	15	12	9	6	3	① 원물확보(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등)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2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가점1(전국단위 유통계열화)	4	3	2	1	0	① 과수조합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가점2(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3	2	1	-	-		
가점3(지역 푸드플랜 연계)	3	-	-	-	-	①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 맺은 지자체 인가?	
합 계	100점 만점 (가점포함 110)					-	

< 평가자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2. 사업비확보계획	
3. 연중가동체계 구축	
4. 투자의 효율성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9. 원물확보방안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1.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input type="checkbox"/>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input type="checkbox"/>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세부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43,338
사업목적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고품질 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 및 재해예방시설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지원한도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37,885	150,356	132,245	486,640			
	국 고	27,577	30,071	26,449	97,328			
	지방비	41,365	45,107	39,674	145,992			
	용 자	18,321	15,360	16,889	54,016			
	자부담	50,622	59,818	49,233	189,30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FTA기금관리팀			차 장 김은희		061-931-112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과 장 이주섭		02-2080-758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배 성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처리 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품목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9~'20) 40%

< 우선지원 >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공기순환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장비(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등), 추가 사업(1개)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백 등 다공질필름 등)
-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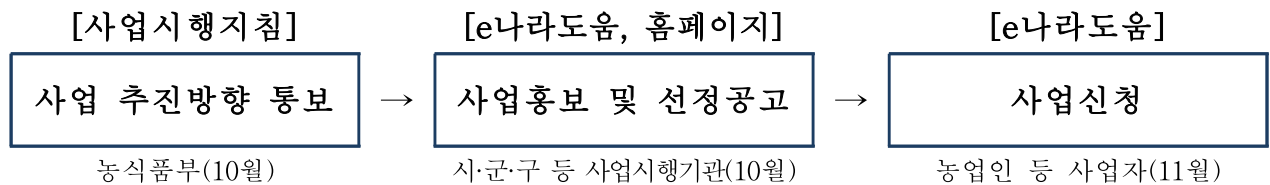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국고용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용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식품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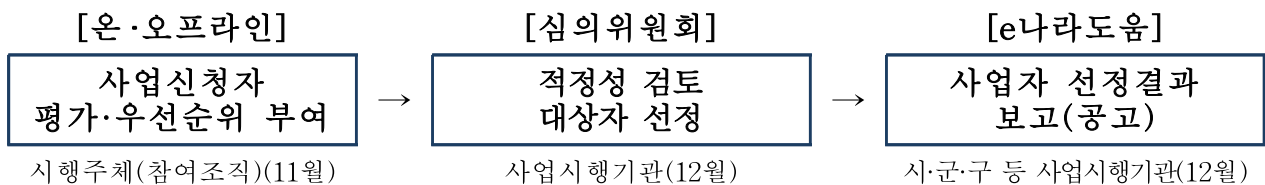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주체와 합동으로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 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표 1-2호 서식]를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용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3호 서식]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 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 통합(참여)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나.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 시스템(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e나라도움 연계시까지 병행 등록),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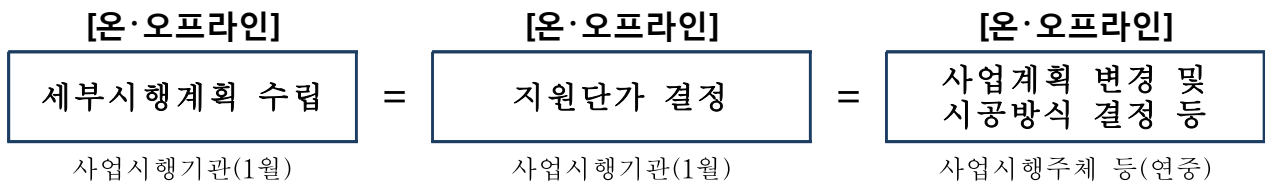
-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 6)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 조직 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 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연차평가결과 패널티 조직의 사업비 변경은 농식품부장관 승인 대상)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마. 시공방식 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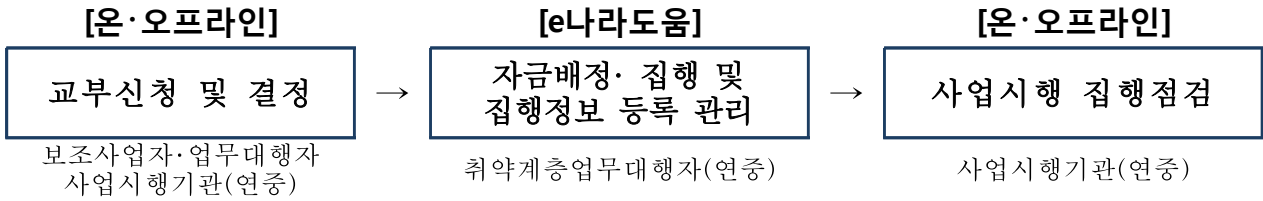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고시 제2016-180('16.12.28)호 전부개정 참고)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 II-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 **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 주요내용 준용 준수 및 내재해기준 충족여부 등 감리 시행

바.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요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 보증요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적보고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무병묘 공급) '30년부터 무병묘 이용 의무화. 다만, 무병화묘에 대해 '24년부터 우선지원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사업별 지원원칙) 설계도와 시방서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 추진가능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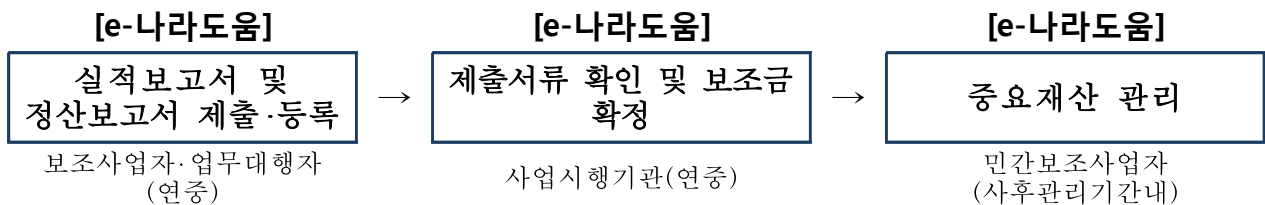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나.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 시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용자금 대출 실행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을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가.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 거래 불가)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 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u>품종갱신</u> 묘목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u>품종</u> 갱신 부속종물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의 중요재산이 방제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시·군 판단에 따라 손망실 처리(사용 가능한 중요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1)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3)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과수산업발전계획 보완·승인 등
-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제외 및 감점 등 조치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1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20.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1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20.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21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2020.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0.5.31일)
- FTA기금 관계자 워크숍 활용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 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과약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2016.12.28. 전부개정 참고)
-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접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 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IPM, GAP 과원관리에서 농약구입 지원 제외('23년부터 적용) ○ GAP 과원관리 지원기간은 <u>사업시작시점부터</u> 최대 3년('19년부터 적용)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세부사업별	비 고
15. 품종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u>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u> <u>다만, '24년부터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u>
16. 공동이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 내부온도)을 최고 10℃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8. 감귤원 원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19.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공동이용장비 (고소작업대, 농업용 굴삭기, 승용제초기, SS기, 다목적 운반기, 운반차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장비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임대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3억원 이내에 지원 ○ 지역 내 영농여건, 농가수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여부, 전담 운영인력, 보관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임대료는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 ○ 공동이용장비 운영주체는 장비 관리대장과 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을 사무소에 상시 비치 [별표 4-3호 서식]
- 추가 사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생력화 등에 필요한 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정부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영체나, 친환경인증(친환경농업육성법)·글로벌GAP인증 경영체는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참여조직)와의 출하실적(약정) 없이 지원 가능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업 예정지	소재지	의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m ²)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 ²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 수, 시기 명시)
				계	보조	융자	자부담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주 소 성 명 (인)</p> <p>○○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귀하</p> <p>○○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p> <p>2.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p> <p>3. 출하약정서</p> <p>4.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p> <p>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p> <p>6.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p> <p><불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p>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 용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용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임.
 - 용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이하 "을" 이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은 "갑"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m ²)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전년도 출하 실적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 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 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 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 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농 가 명: (인)

“을”

주 소:
시행주체:
(참여조직)
대 표 자: (인)

“병”

○ ○ 시장 · 군수 (인)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표 제 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품종갱신) 지원실적

00년 품종갱신사업 지원실적

시 도	시 군	지원 농가명	지원액				대상 품목 명	품종 명	묘목 수	구입 업체명	자체보증 묘목 여부	종자 로트번호
			계	국 고	지 방 비	용 자						

[별표 제 3호 서식]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 도	시 군	지원 대상	지원 유형	과종	지원 면적 (ha)	농가 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 인원	시군 담당자			기 타
										성명	연락처 (핸폰 번호)	이메 일 주소	
			IPM										
			IFP										
			GAP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1. 사업자(법인)명 : ○○○○○○○○○

2. 현 황

가. 지역 내 과수산업 일반현황 및 사업자 전년도 취급규모

품목명	과수산업 일반현황			전년도 취급규모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A)	취급량 (톤, B)	취급액 (백만원)	취급비중 (B/A)
계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명)	총출자액 (천원)	평균 (천원)	최 고 (천원)	최 저 (천원)

다. 공동이용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부서명	직급	성 명	담당업무	이력 및 자격	비고
계					

라. 사업수요 조사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 수 :
- 조사결과

-

3. 구입 및 설치계획

가. 보관 및 설치장소 : 기 확보(), 확보예정()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m ²)	현재 사용용도	소유자	비고(확보 완료일)
합 계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규격	수량 (대)	단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구입 및 설치 완료예정일
합 계					

4. 연간 운영계획

가. 사업유형 : 단기임대(), 농작업 대행(), 기타 ()

나. 연간 운영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m ²)	1일 사용료 (천원)
합 계					

5. 기대효과(정성 및 정량적 효과, 추정 손익 등 기재)

-
-
-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기본요건 (평점란에 ○ 또는 × 표기, ×가 1개 이상이면 지원제외)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가거나 참여조직인가?						
	② 사업시행주체 등 상위 조직과 협약을 체결했는가?						
	③ 전년도 취급액 중 지침의 참여조직 인정 기준 이상을 상위 조직으로 출하했는가?						
1. 사업추진의지와 적극성	①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한가? ②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10	8	6	4	2	
2.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했는가?	20	16	12	8	4	
3. 사업비 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4. 사업수요	① 사업수요 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했는가? ②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이 타당한가?	10	8	6	4	2	
5. 설치계획의 적정성	① 보관 및 설치장소(사업예정지)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세부추진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10	8	6	4	2	
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추진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했는가? ② 인력 등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계획과 같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20	16	12	8	4	
7. 기대효과	①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내 파급효과 ② 추정 손익 등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성과	20	16	12	8	4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①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②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5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					

공동이용장비 관리대장(안)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	---------------

구입금액					
합계(천원)	국비	용자	도비	시군비	자 부 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 조 번 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사 또는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설비/장비	관리번호 명판

공동이용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안)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 기간	임대료		임작업 내역		반납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 확인	작업 내용	면적 (m ²)	반납 예정일	반납 확인
							~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무병, 우량 과수묘목공급기반조성							
사업 주요내용	과수 무병품종(원종) 선발 및 도입, 중앙모수포 증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우량 보증묘목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무병원종 확보 및 보존·증식·공급을 담당하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지원한도	기반조성 : 5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0	융자	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500	500	500	1,500			
	국 고	500	500	500	1,500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윤석중		044-201-2260			
한국과수 농협연합회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전 무 박연순 과 장 김우섭		054-534-8003			
신청시기	수시							

1. 사업대상자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묘목 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 협약에 참여하는 자
 - 대목생산자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 모수포장을 설치하여 묘목주산지 과수종묘업자가 무병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무병대목 생산 공급 등을 지원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2. 사업주체 의무사항

[묘목생산자단체]

- 직무육성 이외 품종 무병화 처리를 위해 무병화처리 대상 품종 선정기준, 무병화처리 재료 선발기준, 수수료 기준 등 내부규정 제정 운영
- 보증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운영, 피해보상 적립금 운용, 포장·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에 대한 내부 규정 제정·운영
- 무병 접수 및 대목 공급 실적(묘목업체의 무병묘목 판매실적 포함) 관리

[묘목생산자]

- 묘목생산자단체의 자체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포장·종자검사를 받아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피해보상적립금 및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모수포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
- 보증묘목 생산판매에 대한 기록의 유지 및 제출

[대목생산자]

- 자체 생산한 무병대목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품종접수를 자체 보증체계에 참여하는 종묘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의 무병모수 관리에 수반되는 포장·종자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을 지도 및 관리

3. 사업대상품목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감

4. 지원자금 및 사용용도

- 지원자금 용도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 지원자금 기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무병품종 선발·도입·관리, 검정장비 증설 등)

5.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 : 기금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반조성 : 500백만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및 품목에 따라 세부항목 및 사업비 조정 가능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신청완료

2. 사업선정단계 : 선정완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후)

사업자(5월~)

→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서 승인

농식품부 승인(2월말)

→

[온·오프라인]

감리, 준공검사

사업자(시기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 사업연도의 기본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 연합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2월말 까지)
- 연합회에서 제출한 무병묘목 공급계획을 시·도(시·군)에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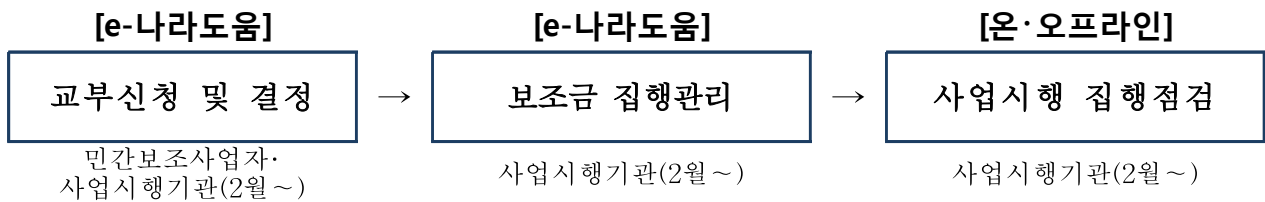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25일 까지)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작성시 묘목업체의 다음연도에 무병묘목공급 계획을 같이 제출
 - * 무병묘목 생산업체, 품목(품종), 공급가능 주 수 등
- 연합회는 무병 접수 및 대목 생산·공급 계획(묘목 포함)을 자체 홈페이지에 매년 정보 제공

사업계획 변경절차

- 연합회장은 사업계획 변경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연합회장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생산·관리작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각 세부항목별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 항목별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자금배정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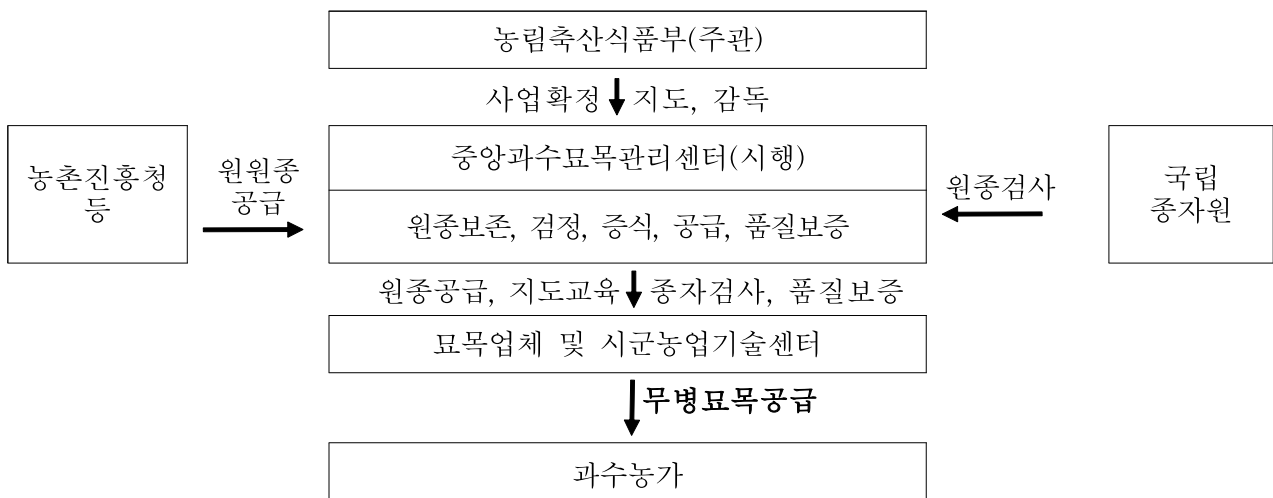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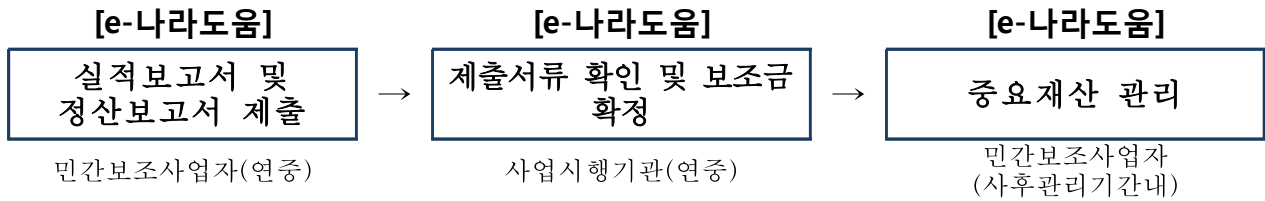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장은 사업참여자의 자체보증, 묘목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무병묘 우수성에 대한 회원농협 임직원 및 농가 대상 교육 병행
- 연합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묘목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연합회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연합회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요청
- 연합회장은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 닐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연합회 및 묘목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연합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연합회)

- 연합회장은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1월 이내
- 연합회는 전년도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포함·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말까지)
- 평가결과 조치 : 지원방향 및 제도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21,182			
사업목적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 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이내 한정 ·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지원한도	기반조사비 : 461천원/ha (국고100%)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국고 80%, 지방비 20%)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4,109	26,477	26,478	86,050			
	국 고	19,361	21,181	21,182	68,840			
	지방비	4,748	5,296	5,296	17,2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어촌 공사	사업계획처 사업개발부			부 장 윤성은 차 장 정근영 대 리 백민경		061-338-620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우선순위]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이며,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이 높은 지구

[지원제외]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해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기본조사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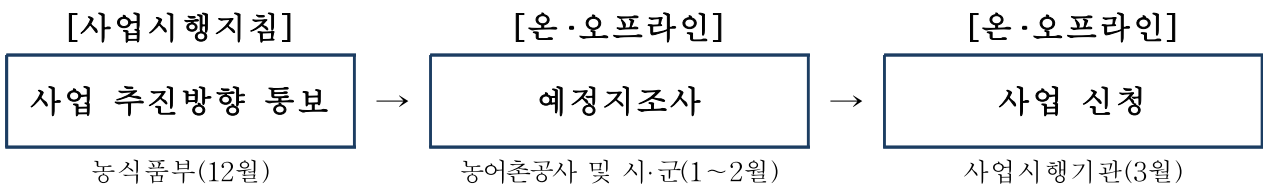
- 지원단가
 - 기본조사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I 유형 : 29,268천원/ha, II 유형 : 32,520, III 유형 : 35,722

<개발유형>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나.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다.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1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전년도 2월말)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수출단지 및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및 출하약정, 재해보험 가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 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별지 1-2호 서식 참조)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 구성 또는 계획 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품목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 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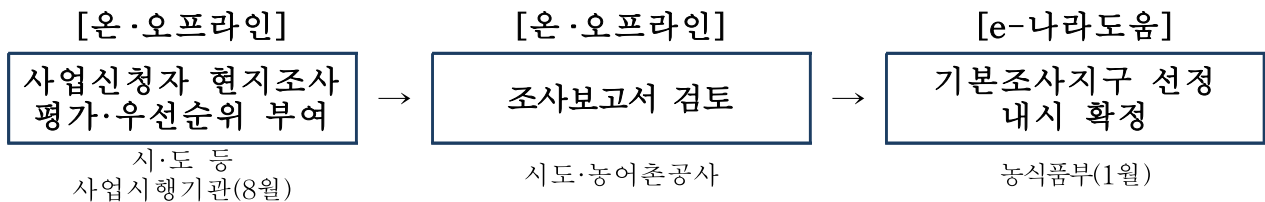
라.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마.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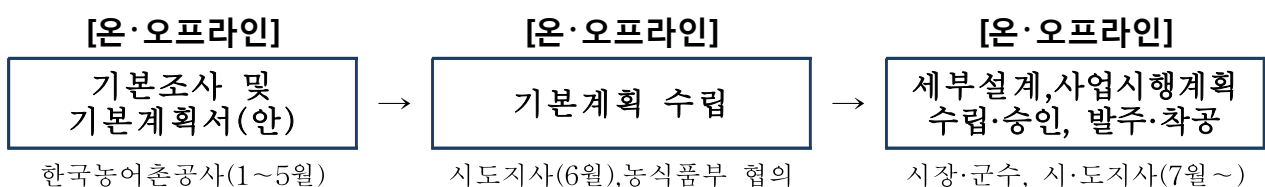
가.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나.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기부채납 등 주민호응도,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양수능력($m^2/일$))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 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도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 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계획 설계기준, 관개편('98.12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 설계 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지자체(시·도, 시·군)와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토지소유주 및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 또는 물방울관개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원예시설현대화 등 사업의 연계 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기본계획(안) 및 기본계획수립 내용과 기본조사비 집행액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 지구내 농가섭외 등 적극 협조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지구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지8]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해오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 이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 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역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라.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입찰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판단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 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 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 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사.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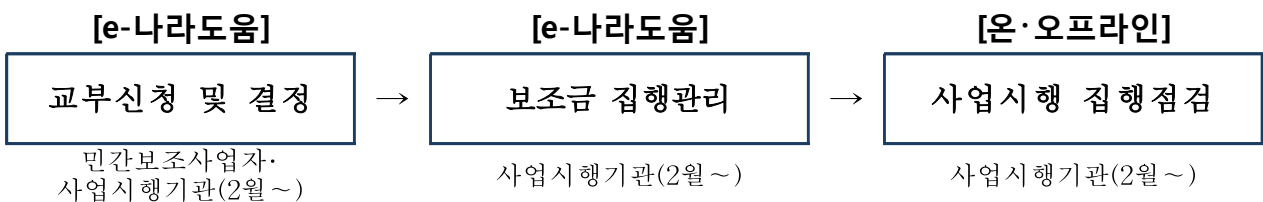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 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 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 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 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어촌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 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안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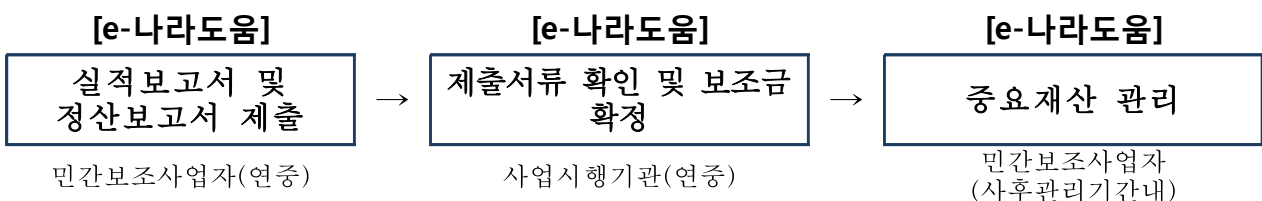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 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가.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
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시·도

- 시·도지사는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축산식품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
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2) 사업담당부서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과수생산·유통 관련과)
 - 시·군 : 과수 생산·유통 관련과(협조 : 토목 관련 부서)
- 기본조사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업기획부)

(3) 사업시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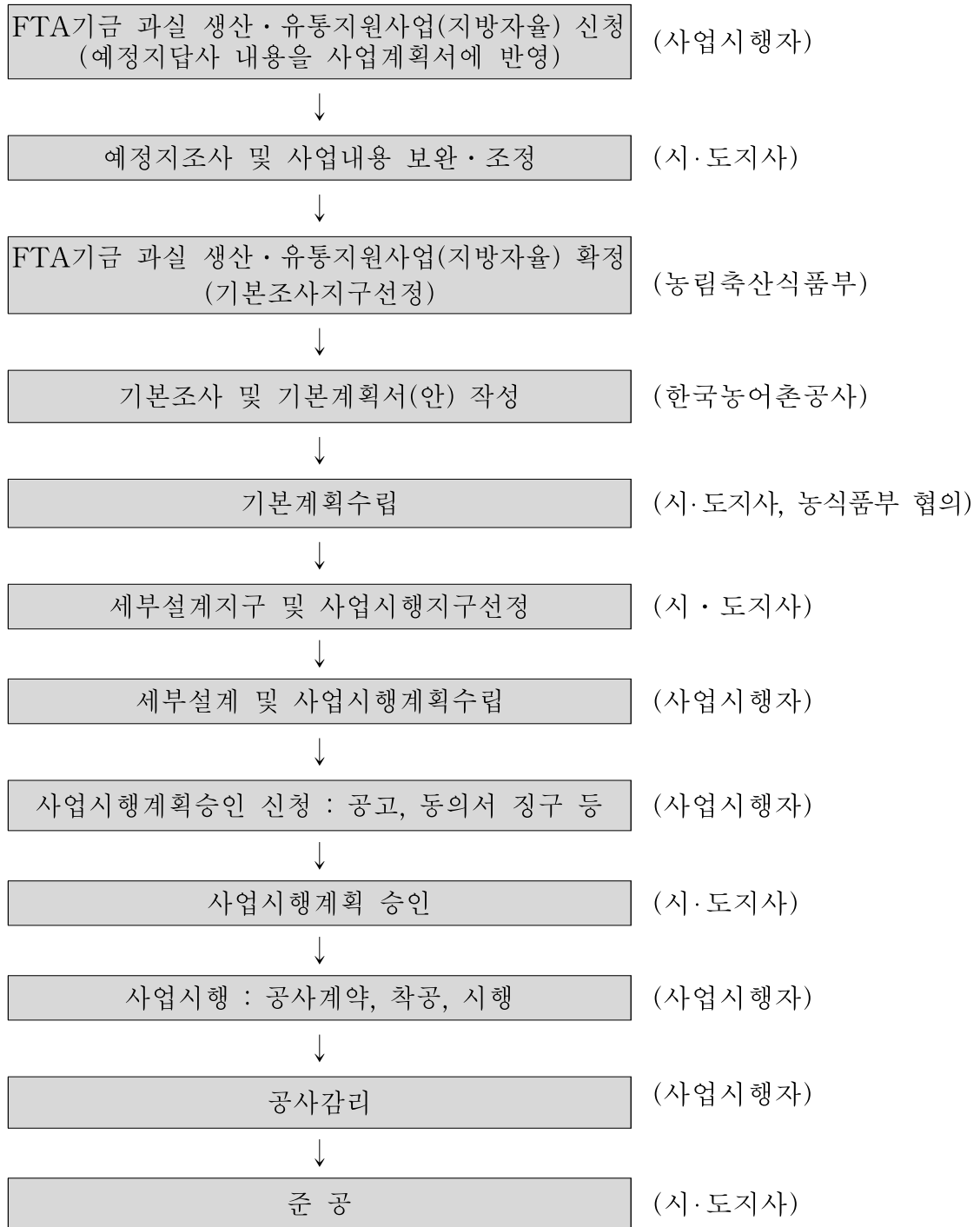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 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승인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붙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도>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일정표>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구 확정 	1월	농림축산식품부	
2. 기본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5월	한국농어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6월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3.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법 제7조, 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 	7월	시장·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7월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문 작성 및 공고 • 동의서 징구 • 이의신청 접수 • 재정신청(이의신청이 있을시) 	8월 ※이의신청시 공고일로부터 75일 소요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매수조서 및 수해면적조서 • 별도서식
6.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 사업시행계획 승인 • 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9월	사업시행자 신청 ⇒도지사 승인 ⇒사업시행자(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도지사 승인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동의서 사본 • 공고문 사본 • 재정결과(신청이 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발주 요청 • 입찰공고 • 계약 	승인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 입찰내역서 • 지방서 등 부속서류
6. 공사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내역서 검토 • 공사착공 	즉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 선 순 위	Code No	지 구 명	위 치		수혜면적			소요 사업비		단 지 구 분	개 발 유 형	필요 시설						과 실 전 문 생 산 단 지 정 부	품 목 생 산 단 체 조 직 여 부	출 하 약 정 율	경 사 도	토 지 소 유 자	수 혜 농 가	주 민 호 응 도		
			시· 군	읍· 면	계	진 흥	비 진 흥	총 사 업 비	ha 당			수원공				진 입 로	경 작 로								용 수 로	정 지
												저 수 지	양 수 장	관 정	기 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	명	명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시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지정 현황

품 목				
단 지 명				

○ 주요 재배품목

재배품목				
구성비율(%)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 : % (수혜농가 명, 약정농가 명)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HP), 암반관정 : 개소(HP)
- 양 수 장 : 개소(HP × mm ×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병행 가능사업

○ 사업명 :

- 추진상황

○ 기타

사업시행상 문제점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장 (인)

※ 붙임(필수첨부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및 사업대상 필지를 표시한 지적도 1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 선 순 위	Code 1 No	지 구 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 지 구 분	개 발 유 형	필 요 시 설					토 지 소 유 자	지 방 비 부 담 력
			시 · 군	읍 · 면	계	진 흥	비 진 흥	총 사업비	ha 당			수원공 [^] 관정 ^v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공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과실전문 생산(수출) 단지 지정여부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비 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과수 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 방 비 부 담 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 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 산 확 보 여 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 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연도를 기입
- 주 민 호 응 도 : 양호(90% 이상 동의), 보통(67% 이상 동의), 불량(67% 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 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 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승 인 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국고 차등 보조율 등을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시행계획을 승인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 구 명	위 치		사업시 행자	사 업 량	총사 업비	설계 가격 (A)	예정 가격 (B)	낙찰 가격 (C)	낙찰율 (%)		입찰 일자	입찰 방법	응찰 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 감독자	비 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별지 5호]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2007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 행 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별지 6]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군	읍·면		진 흥	비진 흥	사 과	배	감 꺾	기 타	계	국고	지방비	수원공정 ^ 관정 v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p style="font-size: 2em; margin: 0;">사</p> <p style="font-size: 2em; margin: 0;">진</p>							
<p>○ 주요 공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 작 로 : 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m³/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m³/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과원경지정리 : ha <p>○ 공 사 기 간 : . . . ~ . . .</p> <p>○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p> <p>○ 시 공 회 사 :</p> <p>○ 공 사 감 리 :</p> <p>○ 기타 특기사항</p>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후 면)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mm					
심 도	m					
채수가능량	m ³ /일					
양 수 량	m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수중모타펌프	Hp					
제 품 명						
설 치 심 도	m					
양 수 장 옥	m ²					
저 수 조	m ³					
(재 질)						
송 수 관	m					
(재 질)						

00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구명	지원유형	과종	지원면적 (ha)	농가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인원	시군 담당자		
										성명	연락처 (핸폰번호)	이메일 주소

세부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과원규모화			예산 (백만원)	37,520			
사업목적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과원 규모화를 위한 용자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지원한도	과원매매 : 제곱미터(m ²)당 20,000원(과수목 포함)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과수농가 : 5ha, 농업법인 : 10ha							
재원구성(%)	국고	0	지방비	0	용자	10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2,900	39,300	37,520	140,700			
	용 자							
	- 매매	36,000	32,400	32,000	120,000			
- 임대	6,900	6,900	5,520	20,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수신부		부 장 김형섭 차 장 양진승 대 리 이정화		061-338-5888		
신청시기	수시(연중 가능)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 현황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20년도의 경우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 하되, 소규모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
 -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기준(이하 같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2)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는 지원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 매입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2) 매입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 폐업지원 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또는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임대자(과원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상환이 완료되고, 「농지법」 제23조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는 과원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 가능
- 이하 과원매매사업 매입 제외 과원과 같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 기존 소유규모, 임차: 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과원매매, 임대차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 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m²)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나. 지원방법

(1) 과원매매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친환경·GAP인증 및 계약재배 농가, 무병묘 관찰포 농가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참여조직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의 방법으로 출하실적이 있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과수농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경영체
 - 2030세대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작은 자
 - 배(신고품종 한정)농가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자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의 순위로 한다.

(나) 공사 매입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과원(과수목 포함)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매도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 시에는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지급

(다) 공사 매도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 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 매매가격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분할 납부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매매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1년간 납부 연기. 다만, 지원받은 필지의 피해가 있을 때 신청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납부연기

①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정보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병충해로 인한 납부연기

①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②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해인정 승인 요청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④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란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과수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비(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함

* 과수 유목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유실·매몰피해시 피해면적에 포함

(2) 과원임대차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준용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지급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①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②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서 징구 불가

* 당해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없음

○ 공사에 과원을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부과되는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 임대계약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는 임차계약 시와 같음

○ 임차료의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 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임차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신청절차 및 피해율 적용기준은 과원매매자금 납부연기 시와 같음
- 임차료 감면기준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7.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20년도의 경우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 기준, 임차농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만 6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과원규모화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영농승계자 없이 64세까지 신청 가능)
 - *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또는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㉓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㉔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나. 신청자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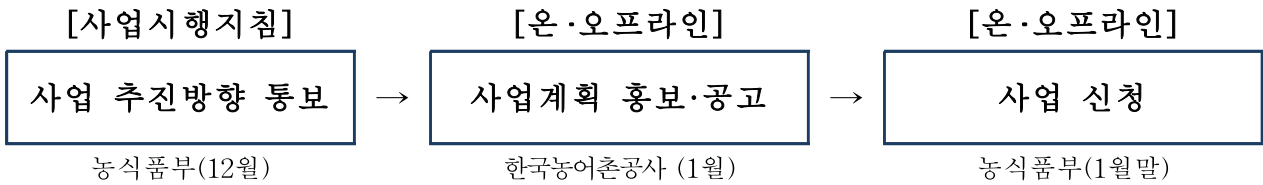
- 1)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 2)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3)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4)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5) 농가단위로 쌀과 밭작물과 중복되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대상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같음
-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① 과원규모화사업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다.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읍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영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자금배정 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급

※ 사업비정산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과원규모화사업”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익년도 1월말)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1) 과수농가 관리

가) 관리기간 :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매년 12월말까지)

다)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64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과원매대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 이하 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

라) 계획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지원과원 관리

가)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 지원당시 과수목으로 품종갱신은 허용
 - 경영규모 축소여부

나)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을 갖추고 동일세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 결혼과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로 인해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다)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로 과원을 전매하거나 과원을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하고,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 또는 당해 과원 회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
 - 공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등

《제재》

가. 과수농가 관리

(1) 계약해제·해지 사유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행방불명 등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사유에서 제외
 -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③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 ④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 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⑤ 농지전용 동의를 받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하고, 그 해당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⑥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마련 또는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로 인해 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아 전매하고, 그 해당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 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할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2)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용자금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의 용자조건에 따라 회수

나. 지원과원 관리

- (1)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 (2) 회수과원 가격결정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미상환 잔액을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 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

- 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의 미 상환 이자(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제세공과금

- (2)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1%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1%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기타 행정사항

- 농림축산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은 공사가 지원한 과수농가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정보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공사 사장은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10월 31일까지)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1) 원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20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6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2) 사업평가실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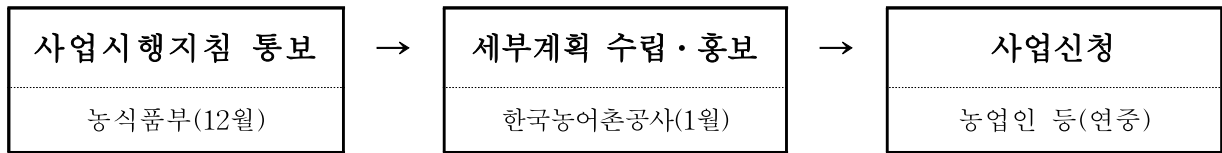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나. 환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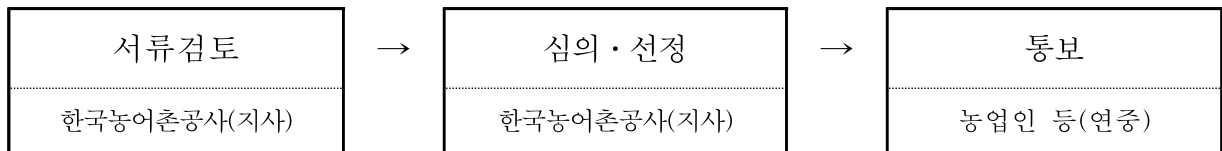
② 전업농육성

1. 사업신청단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경영지도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기 구축된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FBIMS)의 쌀전업농관리 프로그램을 보완 활용
- 년 1회 이상 정부의 농업경영체 등록 D/B 화일을 받아 과수전업농의 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경영규모가 0.5ha(시설 0.3ha)이상인 농가 중 적격한 농가를 선발하여 육성후보군 조성 및 D/B 구축
- 위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 과수전업농 신청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발된 전업농육성대상자를 후보군 조성
- 지원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나. 업무지침의 운영

- 전업농육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영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 시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
- 점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영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영농 기반 전체 승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라. 행정사항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금회수현황을 장관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까지 통보

전업농 등 지원대상자

가. 사업계획의 변경 통지 등

-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 통지
 - 댐·저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자격 승계 신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및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및 현황 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및 지도강화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가. 사업취소 사유

- (1)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2) 전업농 지원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4) 파산·금치산 선고 등 중대한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5) 농업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외
- (6) 소유 과원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전용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축소 익년도 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전업농 육성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 규모가 축소된 경우
-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대·전용하는 경우
-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⑥ 지원 후 8년이 경과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및 지원받지 않은 소유농지를 불가피한 사유(전매동의 사유인 경우에 한함)로 매도하여 경영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 (7) 공사 지원농지를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
- (8) 기타 공사 지사장이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1)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토록 통보
- (2)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사유 발생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 다만, 신병, 사망 등으로 사업승계 불가 및 사업을 취소하고 용자금을 일시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의 용자조건에 따라 회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요령

- (1) 평가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2) 평가기간 및 대상 : 익년도 1월~2월, 전체 과수전업농
- (3)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과수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 주지표)	70점	과수전업농 경영면적/ 전체 과수재배면적	'20년까지 전체 과수재배면적 대비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50%)의 달성도 측정
②과수 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ha, 부지표)	30점	과수전업농 경영면적/전국 과수농가 호당평균경영면적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과수 전업농의 호당 경영면적 달성도 측정

나. 평가절차

-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요청(전년도 12월)
-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1월)
-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과수전업농 육성목표 점검 및 중장기 과수전업농육성계획에 반영(익년도 4월)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2) 신청자격

- 농지매도·임대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 농지매입·임차 : 과수농가, 농업법인

(3) 사업절차

-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4) 구비서류

-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과원임대신청서, 과원임차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 첨부서류 : 해당신청서의 아래 참조

(5)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예산 (백만원)	145			
사업목적	과수인공꽃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사업 주요내용	꽃가루 채취단지 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장비 구입, 관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등							
지원한도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용자	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2021년 이후			
	합 계	725	726	290	2,179			
	국 고	362.5	363	145	1,089			
	지방비	217.5	218	87	654			
	자부담	145	145	58	43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윤석중		044-201-2255		
신청시기	정기(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자격 및 요건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이하 “꽃가루채취단지”라 함)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이하 “지자체”라 함),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함.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

3. 지원대상

가. 지원내역

- 기반조성 : 수목제거·정지작업, 퇴비구입·살포,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배수시설,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전기시설 등
 - 농로개설, 농기계(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관리기 등) 등은 지원제외
- 꽃가루 채취장비 :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화분정선기, 화분냉동고, 향온향습기, 생물현미경, 컴퓨터, 기타 실험용 집기 등 꽃가루 채취 및 검증, 제조에 필요한 장비
- 건축비 : 꽃가루 채취시설 및 관리시설 등

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부동산의 중물) 준공일로부터 7년, (부동산의 중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류(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지자체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 개소당 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시설설치 지원기준(예시) 》

- 기반시설 조성단가(1ha 기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합 계						76,428	
기반시설 및 묘목식재	수목제거	굴삭기	일	8	400	3,200	
		기술인부	인	30	150	4,500	
	정지작업	트랙터	일	3	150	450	
	관수관비시설	스프링클러	식	1	9,000	9,000	
		배수시설	400m	식	1	9,300	9,300
	지주시설	Y자형	식	1	25,348	25,348	
	퇴비구입	퇴비구입	20kg	포	2,000	3	6,000
		퇴비살포	일반인부	인	12	70	840
		묘목구입	1년생	주	500	10	10,000
		재식비용	일반인부	인	12	70	840
부 가 세		10%				6,950	

* 꽃가루 생산량(1ha) : 50kg(본답 380ha 인공수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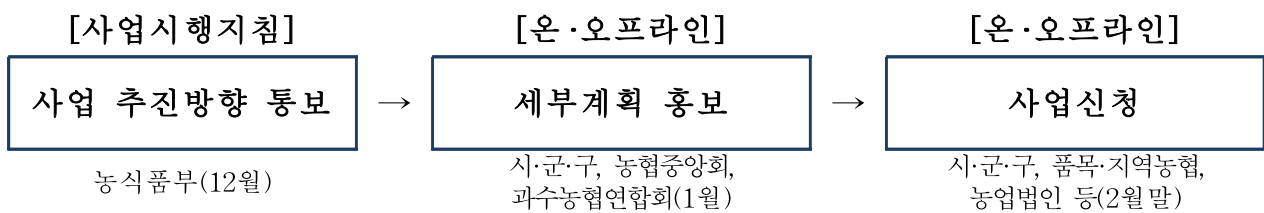
○ 시설·장비 기준단가(개소/5ha 기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 원)	금 액 (천 원)
합 계						342,670
꽃가루 채취 및 검증장비	약채취기	L95×B50×H84	대	15	1,500	22,500
	약정전기	L60×B30×H30	대	15	1,000	15,000
	개 약 기	500ET	대	50	1,400	70,000
	화분정전기	L24×B34×H47	대	5	600	3,000
	전자저울		대	2	300	600
	화분냉동고	L80×B70×H165	대	2	3,200	6,400
	향온향습기	L75×B59×H40	대	1	2,200	2,200
	생물현미경		대	1	2,500	2,500
	부수장비	기 타	종	20	50	1,000
	컴 퓨 터		대	2	1,500	3,000
	테 이 블		조	2	300	600
	수 납 장		조	3	300	900
	기타집기		조	1	2,000	2,000
	부 가 세	10%				12,970
	소 계					
관리 및 검증시설	건 축 비	165m ²	3.3m ²	50	4,000	200,000
	소 계					

*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장비 기준단가는 예시이며, 설치규모, 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비용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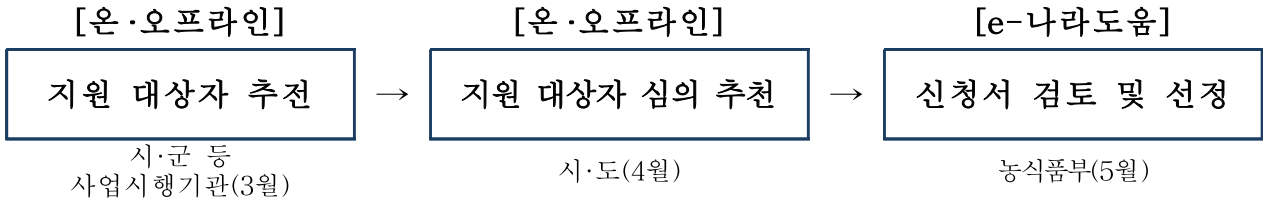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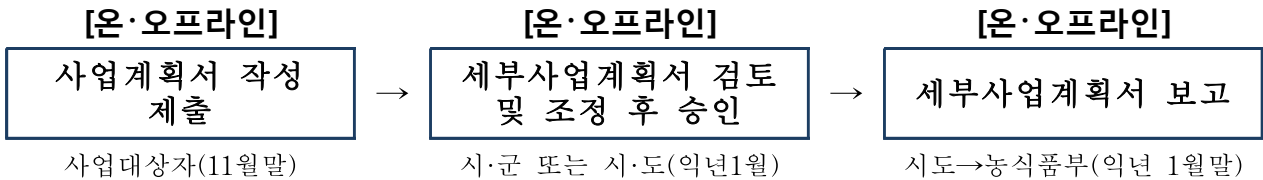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 별지 서식 참조(농업인 개인은 사업대상자 아님)
 - * '20년도 사업 신청은 '19.12월말까지이며, 선정은 1월 중 적격자 선정 예정
- 시장·군수는 관내 농협·농업법인(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지 확보 관련서류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
 - * 시·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4월말)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5월말)
 -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11월말)
 -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꽃가루채취용 품종은 「과종별 권장 품종」 등 우선 적용 : 붙임(참고자료)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착수

<입찰방식>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업체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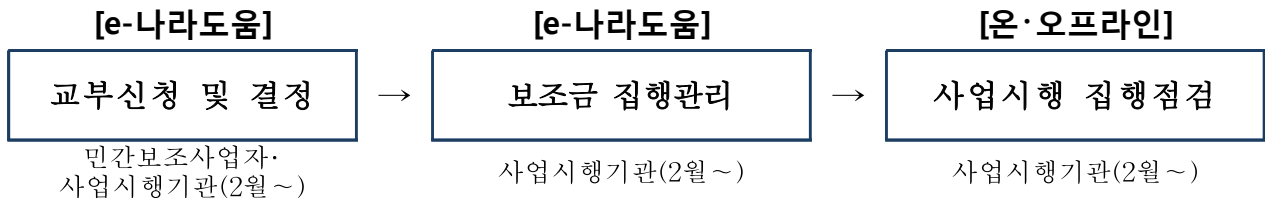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을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사업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또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이상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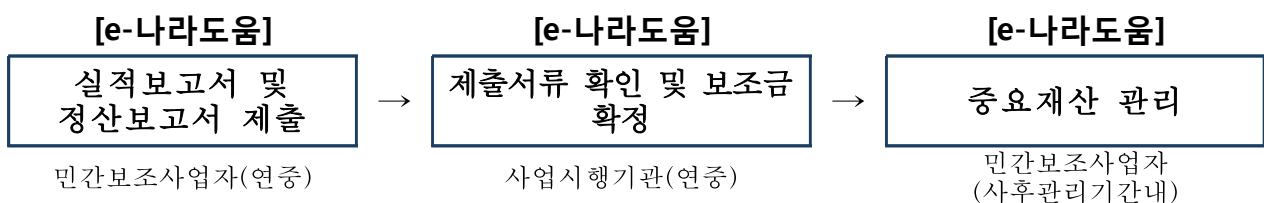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을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분기 1회)
(시·군 또는 시·도가 점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 사후관리단계 >

○ 사업점검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 → 농식품부)
*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 3회 이상 사업 점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업경영체육성법 제7조의2)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적(생산·공급실적)을 매년 8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에 따라 사업 관리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 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제재 및 처벌내용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 성과지표 : 꽃가루채취단지 조성면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20.12)
 - 제출방법 : 첨부물 없이 신청서만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대상자('21.2) → 시장·군수('21.3) → 시·도지사('21.4)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과 동일(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

현황

- 사업지역(주소) :
- 조성면적 :
- 생산과종 및 품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기반 조성	소 계				
	○○○○○				
	○○○○○				
장비 구입	소 계				
	○○○○○				
	○○○○○				
	○○○○○				
관리 시설	소 계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부지확보 계획(부지가 확보된 경우 관련 근거서류 첨부)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로 표시

2. 꽃가루 생산·공급계획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량
- 채취단지 확대여부
-

공급계획

- 꽃가루를 농가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
 - “예시” : 사업자가 농협(품목·지역) 또는 작목반 등과 장기 공급MOU를 체결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등
- 꽃가루 품질보증 방안 등

채취단지 관리 및 운영계획

- 채취단지 관리·운영계획
- 운영전담자 배치계획
-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실천방안 등

-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사업신청 근거자료 제출 현황

담당자: (소속)

(성명)

☎044-201-0000

1.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별첨)

* 설립후 법인 운영실적 1년, 출자액 1억, 조합원 5인 이상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별첨)

3. 법인 통장사본 1부(별첨)

* 자부담 능력 확인용 통장 예금자명 표지, 잔고 페이지 2면

4. 부지확보 근거서류(별첨)

* 토지대장, 장기임대 계약서 등

5. 사업참여 제한 여부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여부 확인

신청자			사업참여 제한 여부	비고
시도(시군)	단체명	대표자		
	000영농조합 인	000	'10년 00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00년까지 지원제한
	△△영농조합 법인	△△△	해당없음	

【참고자료】

□ 꽃가루 채취단지 과종별 권장 품종

○ 사과 : 후지(S₁S₉)와 자가불화합 유전자형이 중복되지 않은 품종이
나 수분수용 꽃사과 품종이 가장 좋음

적합품종		부적합품종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없음	자가불화합 유전자 1가지 중복	
쓰가루, 홍금, 아리수, 그린볼, 갈라	홍로, 루비에스, 썸머킹, 피크닉	감홍, 알프스오토메, 여홍, 화랑, 후지조숙계(히로사키, 홍장군, 료카, 나리나), 후지 착색계(키쿠 8, 미시마, 미야마, 후부락스)

* 꽃사과용 품종 : 만추리안, 메이폴, 톱커벨, 데코벨, 골든벨, 로즈벨 등

○ 배 : 신고(S₃S₉)와 자가불화합 유전자형이 중복되지 않은 품종

적합품종		부적합품종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없음	자가불화합 유전자 1가지 중복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꽃가루 없는 품종
신수, 행수, 추황배, 금춘추, 만황, 만삼길	장십량, 창조, 슈퍼골드, 풍수, 화산, 만수, 원황, 만풍	설원	한아름, 조이스킨, 황금배, 신화, 그린시스, 영산배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				예산 (백만원)	17,488		
사업목적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지원한도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40억원 내외), 보완시설의 경우 최소 5~60억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30~50	지방비	10~50	용자	-	자부담	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8,283	58,283	73,016	58,293			
	국 고	17,485	17,485	21,905	17,488			
	지방비	17,485	17,485	21,905	17,488			
	자부담	23,313	23,313	29,206	23,31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제주 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원예사업부 사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안만물 계 장 김주리 -		044-201-2223 061-931-1021 02-2080-6314 -		
신청시기	전년도 6.30.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

* 원예산업종합계획 :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이 수립)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산지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 한 사업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 예고 : (현재) 직전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 ('22년 사업자 선정시)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2) 사업규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 연합사업단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의 연결성 인정

(3) 시설규모

- **보완시설** :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고 최근년도 연간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인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이상)의 개보수(상품화설비만 교체 가능)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은 지원제외
 -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
 - * AgriX 시스템에 등록(본사업 신청일까지)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200일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 이상)가 없는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다. 별도요건

-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 조합원(농업인 주주) 20명 이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농업인의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체(농업법인)에 한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 * 관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중단(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 시설 지원 가능
 -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 ③ 원예농산물 기준 취급액 100억원 이상 ④ 영업이익 5% 이상
 -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5호, 제6호)
-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연도 5월말,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도서, 선별장비 배치도 등)는 APC건축심의(12월) 전까지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과일공사, 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 증축·개보수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가능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30% 이상 투자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팔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별표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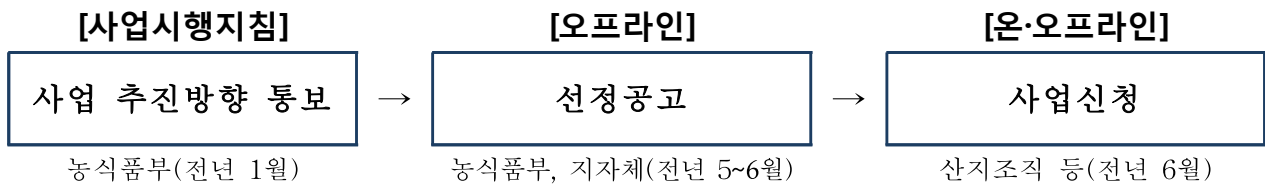
- 국고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 공공유형은 기존시설 보완만 지원 가능(국고 50%, 지방비 50%)
 - * 다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시설은 제한적으로 공공유형으로 신규설치 가능(연간 3개소 내외,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은 국고 40~50%, 지방비 50~60%로 지원가능)
 - * (지방비 내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시도 50%, 시군 50%)을 준수하는 지자체 우선선정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1. 사업신청단계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

사업자

- 예비사업 신청
 - 차년도(2021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2.10까지)
 - * APC 사업신청 시 관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기획·조정역할 및 사업신청 추천권 부여
 - * 예비사업을 신청하는 보완사업자 중 개보수 추진사업자는 aT의 사전진단을 신청
- 본사업 신청
 -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의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6.20까지)
 -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에도 제출
 - 또한, 기본요건 중 농정심의회 결과 등이 각 기관에서 신청기한 내에 aT로 제출될 수 있게 사전조치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③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④법인등기부
등본 ⑤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 의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
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 ⑩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추천서 ⑪농정심의 결과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나. 지원요건의 (2)사업규모' 증빙을 위한 자료임.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 증빙자료 제출(참여조직의 경우,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 해당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 자료 추가 제출)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 전산출력 자료 인정

※ 보완사업 중 개보수 사업자는 토지관련서류(⑥, ⑦, ⑧) 제출 생략

<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
(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자료로 제본 제출 및 AgriX시스템(사업신청)에 등록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6월20일) 10%, 가내시 이전(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15일) 5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2.25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 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AgriX 시스템에 신청 등록(시·군 마감처리, 6.25까지)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3.10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 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신청서를 aT에 제출(AgriX시스템 시·도 마감처리, 6.30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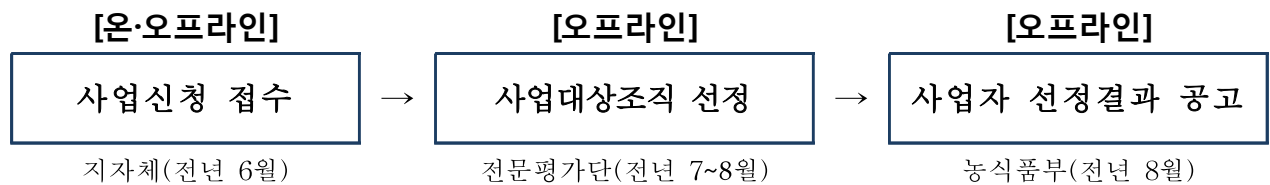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 제외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참여조직 포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 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액 비율 30% 이상, 조직화취급액 30억원 이상,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사업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류, 양곡부류의 경우 지원 대상 충족여부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농정심의회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AgriX 시스템 등록(사업신청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로 통보(4.30.까지)
 - 필요시 사전진단컨설팅 실시(aT)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7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최종순위 결정(서면 30% + 발표 70%)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APC(혁신밸리 당 1개소에 한함) 사업자 선정은 단계별 평가(서면·발표평가)는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만 시행(원예산융합계획 포함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 여부, 사업실적 규모 등)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7월)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7월)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

< 최종순위 결정 >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8월초)

다. 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8월)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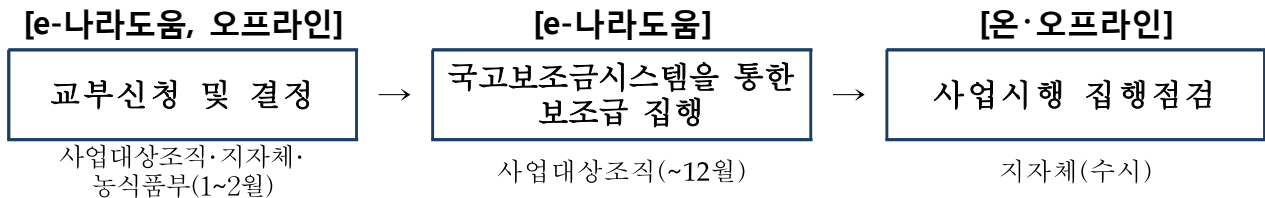
※ 사업시행 前단계(사업비 심의조정 후~APC건축심의 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업비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는 aT의 타당성 검토 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APC 건축심의

- APC 부실시공 예방 및 적기건립 유도를 위한 전문심의단 APC 건축심의(12월)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제출서류 :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가능도서, 추정가격 내역서, 선별장비 배치도, 선별장비 내역서 등), 부지확보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지방재정 투융자심의결과서, 자부담확보(50%)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농업법인 해당) 등
 - 제출기한 : 건축심의 7일전까지 완료 및 제출(aT)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APC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는 별도 안내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사업신청년도 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사업개시년도 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사업개시년도 2월)

사업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10.까지)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20.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월 말)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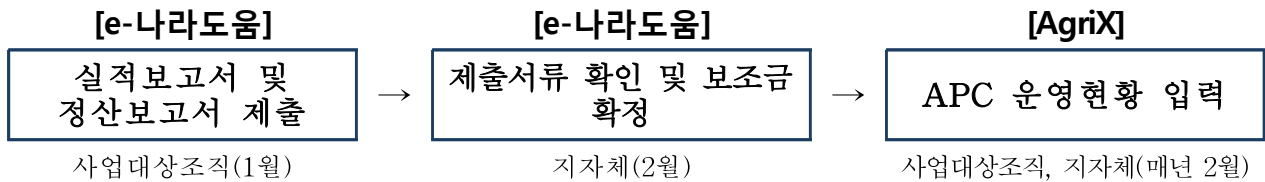
※ 세부시행계획 및 세부사업비 변경조정 건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①설계·가설공사~⑨위생설비 등 대분류 항목간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차지 범위에 따라 승인주체 상이함

내 용		승인 주체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보고
건축 설계변경, 상품화설비 설계변경		시·군 승인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0~15%	자체 조정
	총 사업비의 16~30%	시·군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시·도로 제출)
	총 사업비의 31~50%	시·도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aT로 제출) * 9개항목 중 한 항목 전체가 제외 또는 추가 시 금액 관계 없이 시·도 승인
	총 사업비의 51% ~	aT 검토후 농식품부 승인
사업부지, 총사업비 변경		aT 검토후 농식품부 승인 (단순 부지면적 증가 등은 제외)

- * 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30억원 이상이면 aT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시행
-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 1톤 화물차량 구입 제외)
-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APC 운영사업자는 운영현황(시설 및 취급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AgriX 시스템에 입력
 -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APC, 지원을 받지 않은 APC 등도 포함되며, 시·군 책임하에 사업자가 입력(사업자 선정평가 시 감점 반영)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 제8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 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치, 매년 3월말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AgriX)에 입력해야한다.
- 시·군 책임 하에 APC 운영사업자(정부 및 지자체 지원 APC, 지원받지 않은 APC)가 운영현황(시설 및 취급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토록 지도해야 한다.(사업자 선정 평가시 감점 반영)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되, 적용시기는 '15.1.1 이후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신설·증축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로 간주하여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 ‘유리온실’의 사후관리기간과 동일하게 10년 적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건축물 및 부속 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 ‘기본규정’ 개정 이전의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고 (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별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 APC)관리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APC 운영현황 조사·분석
 - APC 운영활성화 유도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성과지표 :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APC 경유율)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사업자) AgriX시스템 직접입력 → (지자체) 입력독려·마감 → (aT) 취합·분석
- 분기별 APC건립 추진상황 점검
 - 점검대상 : APC건립사업자 및 관할 사업관리주체(시·군)
 - 점검항목 : APC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 * 추진상황에 따라 서면·대면(집합, 현장) 점검

Ⅲ 평가 및 환류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경영진단 평가
 - 최근 지원된 정부지원 APC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 운영활성화 도모
 - 평가대상 : 2015년 APC 건립사업자부터~
 - 평가기간 : 매년 4~5월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평가항목 : 총취급액, 조직화취급액 및 가동율 등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0.2.1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0.2.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20.3.10.까지)
 - aT : 기본요건 검토 후 필요시 사전진단컨설팅 실시(3~4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0.6.2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0.6.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20.6.30.까지)
-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7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전문평가단, '20.7월)
- 예비대상자 선정·통보(농림축산식품부, '20.8월초)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20.8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20.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21.1월)
 -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2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입니까?		
지원자격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입니까?		
기본요건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입니까? - 시설설치계획에 명시된 사업자입니까?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입니까?		
사업 규모	지역연합, 품목광역 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입니까?		
	참여 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지역연합조직으로의 출하비율이 30%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지역연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입니까?		
		해당 지역연합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이상입니까?		
시설성격		330㎡ 이상의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까? “예”⇒보완시설,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보완시설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시설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입니까?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입니까?		
		계획한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입니까?(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입니까?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농업회사법인만 해당)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합니까?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10%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사업신청단계 10%, 가내시 이전 25%, 사업비 확정 단계 50%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대상품목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류를 주로 취급하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입니까?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까? - 투융자심의 결과는 사업신청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20억 미만인 사업은 생략 가능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APC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동 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신규사업으로 공공유형을 신청하려 하십니까?(보완사업 신청가능)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5년 이후로 시설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급					평점	
		A	B	C	D	E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품목) 단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 및 마케팅 전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공통) ○ 적절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A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C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소 계(1)		8개 지표					100점	
가점	관련사업 연계	○ 전년도 발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선정					3	
		○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참여조직					3	
소 계(2)		2개 지표					6점	
감점	운영현황조사연계	○ APC 운영현황조사시 AgriX 데이터 미입력 사업자					-3	
소 계(1)		1개 지표					-3점	
합 계							106점	

< 별첨 >

- I.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 지도
- II.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 III.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 IV.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 V.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I.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지도

< 시설물의 등록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목반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별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 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한다.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유통시설과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 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추가지원 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유통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매년 3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내의 시설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실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해제할 수 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를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하며, 동 산지유통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산지유통조직 등 우수 생산자조직에 우선적으로 처분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용자실행을 위해 산지유통센터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산지유통센터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용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전,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등 >

-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잔여 사후관리 기간까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목적 이외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77조의 위반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조금 잔존액을 반환해야 한다.

< 경영 부실업체의 관리 등 >

- 시장·군수는 현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잔존액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보승인한도 및 보조금 환수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제3항(별표 5)’에 따른다.
-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 >

-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자는 비수기에 그 시설물을 다음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보관창고용 : 농수산물, 농기계, 농어업용자재, 마을공동물품 등 보관
3. 공동작업장 또는 공공용 : 농기계 또는 가전제품의 수리장, 농산물건조장,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가내 수공업장, 정부양곡 수매장, 농산물직판장 등
4. 마을공동행사용 : 영농교육장, 각종선거 투·개표장, 경노잔치, 예식장, 기타 마을애경사 행사장, 농산물품평회, 직판행사 등
5. 재해발생시 임시대피소 및 가재도구보관, 기타

II.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 의뢰하여 계약체결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참고
- 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부서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①감리, ②건축(일반), ③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④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등), ⑤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 선별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단, 파렛타이저, 제함기 등 단품 구입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 추진 시 지자체(시·군)가 대행
- 건축 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인접) 지역의 업체 선정 필요
- 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유통정책과-2962호('15.8.13 : 시공자 선정 시 경쟁 입찰자격조건 적용)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기관 및 민간의 실적 배제 불가 (다만, 민간부문 실적 증명서는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 * 시·도 지역제한 적용 예외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업체 선정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재공고 2회째)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해제 후 입찰 가능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 냉동·냉장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상인 경우 공조냉동기계 기술사가 설계를 하여야 함. 설계 이외 사업자가 별도 감리 또는 기술검토를 받고자 할 경우 사업비 집행 가능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 농산물선과기 및 선별기(비파괴센서 포함)는 업체별로 표준모델에 대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성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대가 지급을 위한 상품화설비의 검사는 1차(단순)검사와 2차(정밀)검사로 분리하여 추진하여야 함. 단, 1차 검사는 모든 농산물상품화설비 구입 시 의무 시행하여야 하고 2차 검사는 정밀검사 부품(별첨 V, 선별기 선정시 준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하여야 함. 1차 검사는 상품화설비 전체 부품의 1/2이상 현장 반입 시 일정 자격이상의 전문가, 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가 공동 시행하고 2차 검사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진청 등)이 성능시험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함
- * 1차 검사자(전문가) 자격 :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등 관련 학과 학위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5년, 학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7년 이상인자 또는 관련 기술사 이상 자격소지자 등 해당자격 전문가 1차 검사 가능(단, 최근 3년 이내 농산물상품화설비 제조업체에 재직한 경우 자격 제외)
- * 검사 양식 : <별첨 V> 선별기 선정 시 준수사항 참고(지자체 양식도 진행 가능)
- 상품화설비 검사 과정 중 검사기준 미달, 부실설치, 다른 제품 납품 등 부실 부품(장비) 납품 또는 부실설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

-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해당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4조, 제23조에 의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붙임2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 또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컨설팅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 준공된 시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IV.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1.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향후 1~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기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시도	시군	사업자	포기년도	제한기간	비고
경기	안성	산마루영농	2016	2021	사업자

V.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 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선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농산물 상품화 설비 검수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상품화 설비는 2단계 검사(1차(단순), 2차(정밀))를 시행하며 설계서나 규격서(내역서) 기준으로 주요 부품들을 검사하여야 한다.

1. 1차(단순) 검사

(1) 검사 품목

(가) 투입공정 : 디파렛타이저, 컨테이너자동투입장치, 컨테이너자동배출장치, 덤핑장치, 이송장치, 컨테이너자동적재장치, 덤핑장치, 이송장치, 육안선별대, 비품과 배출장치, 중량측정기 등

(나) 전처리공정 : 집진장치, 세척장치, 건조장치, 이송장치 등

(다) 선별공정 : 중량측정장치, 당도/산도/내부품질 측정장치, 색상측정장치, 형상측정장치, 이송장치 등

(라) 배출공정 : 등급별 배출장치, 등급별 배출이송장치, 비품과 배출이송장치, 공트레이 이송장치, 공트레이 회송장치, 대기벨트, 수상판, 공트레이 집진장치 등

(마) 포장공정 : 제함기, 테이핑기, 필름부착기, 라벨부착기, 중량측정기, 파렛타이저, 박스공급라인, 상품박스 배출장치, 기타 이송장치 등

(바) 기타 : 이송장치, 콤프레셔, PLC 등 전기부품

(2) 검사 항목

- 품목별 사양(내역), 주요부품(모터 등)의 모델명, 품질인증서, 구매확인서 (구매일자 또는 생산일시), 수량 등

※ 전체 품목 중 2/3 이상 입고 시 검사 실시 가능

2. 2차(정밀) 검사

(1) 정밀 검사 품목

(가) 중량측정장치, 내부품질 측정장치, 색상측정장치, 형상측정장치, 디파렛타이저, 덤핑장치, 제함기 등

(나) 중량측정, 내부품질 측정, 색상측정, 형상측정은 성능검정을 실시

(2) 정밀 검사 항목

- 모델명, 수입여부(수입시 수입면장 제출), 구매확인서, 성능(처리능력(box/hr)), 정상동작 여부, 기타 이상 유무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필요시 현장 성능 검사 수행

3. 검사방법

(1) 1차 검사는 업체 대표나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 검사자가 공동으로 검수 진행, 2차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시행 후 지자체(시·군) 및 사업자에 통보

(2)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주요 부품들이 규격서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1차(단순) 검사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자	설치업체명	선별농산물	상품화 설비 품명 및 수량

1차(단순) 검사

-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주요 부품들이 설계서(장비 배치도), 규격서(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1차(단순) 검사 결과
 - * 검수 품목은 상품화 설비 설계서나 규격서 내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
 - *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품은 서류검수(성능인증서, 구매확인서 등)로 확인, 주요 부품명은 설계서나,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

공정	품명	검수 품목 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 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투입	디파렛타이저				(별첨)									
	컨테이너자동투입 장치													

공정	품명	검수 품목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여부	장치 진첩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컨테이너자동배출 장치														
	컨테이너자동적재 장치														
	덤핑장치														
	비품과 배출 이송 장치														
	파지 배출 이송장치														
	인디케이터(중량측정)														
	중량측정기														
	커브형 이송장치														
	플렉시블 이송장치														
	육안선별대														

공정	품명	검수 품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여부	장치 사진부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전처리	집진장치														
	세척장치														
	건조장치														
	이송장치														
	비품과 배출 이송 장치														
	턴테이블														
선별	중량측정장치														
	내부품질측정장치														
	색상측정 장치														
	형상측정 장치														
	중량측정용 이송 장치														

공정	품명	검수 품목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여부	장치 진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내부품질측정용 이송 장치														
	색상측정용 이송 장치														
	형상측정용 이송 장치														
	2조 합류 이송장치														
	인터벌 이송장치														
배출	등급별 배출장치														
	등급별 배출이송 장치														
	비품과 배출이송 장치														
	공트레이 이송장치														
	공트레이 분기이송 장치														
	공트레이 회송장치														

공정	품명	검수 품목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대기벨트														
	수상판														
포장	제함기														
	테이핑기														
	필름부착기														
	라벨부착기														
	중량측정기														
	자동파렛타이징로봇														
	포장박스 공급장치														
	포장박스 적재 이송 장치														
	상품박스 배출장치														

공정	품명	검수 품목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여부	장치 진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상품박스 적재 이송 장치														
	포장 작업테이블														
	커브형 이송장치														
	경사형 이송장치														
	유턴형 이송장치														
	플렉시블 이송장치														
기타	이송장치														
	컴프레서														
	메인 컨트롤 PC														
	PLC, 주요 전기부품														
	이송접시/이송컵														

3. 1차(단순) 검수 최종 의견

(공급자 최종의견)

(사업자 최종의견)

(지자체 담당자 최종의견)

(검수자 최종의견)

공 급 자

공급(시설)업체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단체명(대표자/위임받은 담당직원) : (서명/인)

사업자

사업자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대표자/담당직원) : (서명/인)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명 :

주소 :

담당공무원 :

(서명/인)

검수자

소속기관:

주소 :

검수자 :

(서명/인)

2차(정밀) 검사

□ 사업 개요

사업자	설치업체명	선별농산물	상품화 설비 품명 및 수량

□ 2차(정밀) 검사

○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설계서나 규격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정밀 검수 결과

(1) 정밀 검수 품목 및 검수 항목

(가) 중량측정 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나) 당도/산도/내부품질 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다) 색상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라) 형상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마) 디파렛타이저

- 모델명 :
- 성능 : 처리능력(box/hr)
 -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바) 덩핑장치

- 모델명 :
- 성능 : 처리능력(box/hr)
 -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사) 제한기

- 모델명 :

- 성능 : 시간당 처리량(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추가 가능

3. 정밀 검수 최종 의견

(공급자 최종의견)

(검수자 최종의견)

공 급 자

공급(시설)업체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단체명(대표자/위임받은 담당직원) : (서명/인)

검 수 자

소속기관:

주소 :

검수자 : (서명/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text{kg/m}^3 \sim 42\text{kg/m}^3$ 이고 $0.021\text{W/m}\cdot\text{K}$ 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 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冷矯]) 부분 등)이 없게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시공
 - * 패널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 값) $=0.021\text{W/m}\cdot\text{K}$ 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통과율(k 값) $0.21\text{W/m}^2\cdot\text{K}$ (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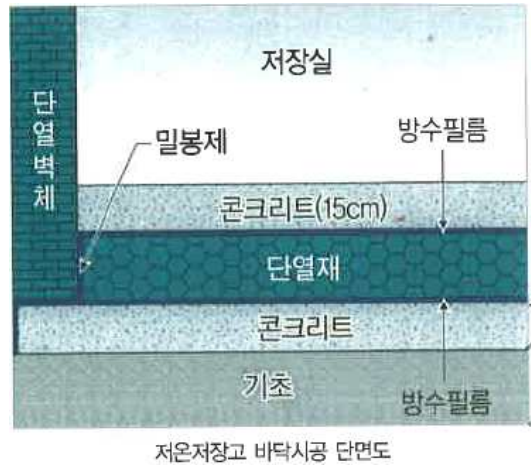
구 분	외벽	천장	바닥	간벽	비 고
경질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0℃) 기준

* 천장단열패널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0m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깔 다음에 가급적 철근 배근 후 150mm(200mm 권장)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바닥마감을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냉동패널을 시공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 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유분리기, 액분리기,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W) + 냉동기 동력부하(W), Fan Control 스텝 또는 스피드 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 ~ 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Δt ,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Δt 5°C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C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Δt 7~10°C, 증발온도는 -10~-15°C로 설계. 대수평균 온도차 $\Delta t_m = 8.41^\circ\text{C}$ 기준

-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Δt 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쿨러의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 유닛 쿨러의 규격(전열면적, Δt ,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밸브를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HFC(수소불화탄소)계(R-507a, R-404a, R-407c 등) 및 대체(HFO, R-600a, 천연 등) 냉매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0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온도센서는 시운전 시 반드시 “0점 조정”을 실시한다.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컴퓨터 중앙관제시스템 및 사용자 문자서비스 적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세부사업명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예산 (백만원)	2,8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환경오염에 취약한 노후 온실단지의 기반·생산시설 등 기초환경을 개선하여 스마트팜 저변확대 추진 ○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팜 확산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온실 밀집지역 대상으로 도로, 용배수, 전기, 오폐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개보수·증설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5호 나목 ○ 「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군자치구 - 지자체는 부지 확보 후 참여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지원한도	○ 기준단가 : (개보수) 250백만원/ha, (신규) 500백만원/ha							
재원구성(%)	국고	7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0	5,000	10,000	4,000			
	국 고	3,500	3,500	7,000	2,800			
	지방비	1,500	1,500	3,000	1,200			
	용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044-201-2256		
				사무관 최은철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김희중		061-338-5701		
				부 장 한재욱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참여 경영체(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주체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등으로 구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지원요건을 갖춘 시·군·자치구
- 지원 요건
 - 노후온실 밀집지역 대상으로 도로, 용배수, 전기, 오폐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개보수·증설
 -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조성
 - 단지 내에 입주하는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생산주체(농업인·농업법인)를 사전에 확보(각 경영체는 스마트팜 조성·운영, 작물 생산·유통·수출계획을 수립 완료)
 - 기존농업인이 단지 내 입주하여 작물 재배 시 7년간 의무수출비율 준수(신규단지 조성인 경우에 한함)
 - 주요품목 :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이상
 - 기타품목 : 30% 이상
 - * 수출 적합품목 수확가능기간, 시장개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배시작 후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이후 수출국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계획물량의 10% 오차 허용
- 농식품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사업예정지 부지를 확보 완료

- 스마트팜이 입지하기에 지반여건, 기후, 물류 등이 양호
- 생산시설과 유통·가공·편의시설 등을 가급적 집적화하여 조성
- 수출 유망품목과 기존에 주로 재배되지 않았던 신규 품목을 도입

3.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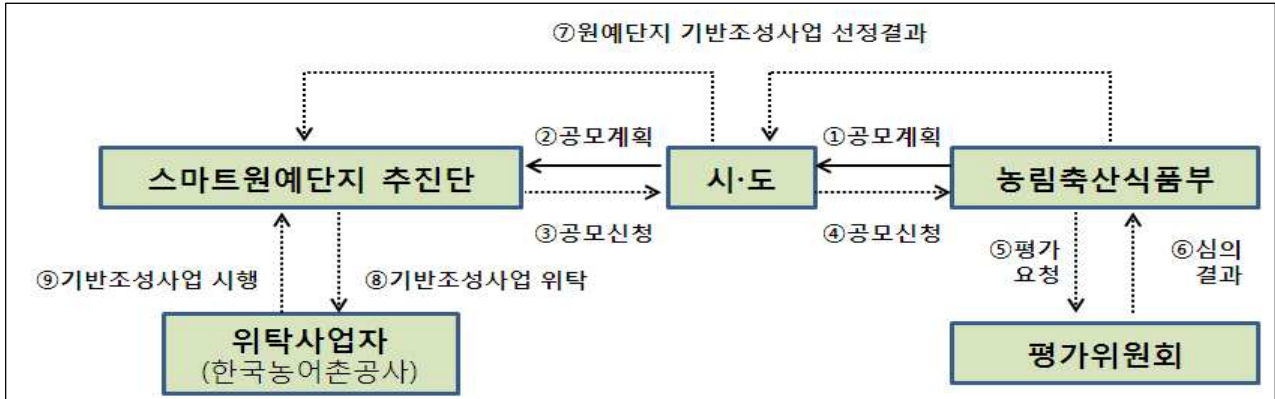
- 규모화·집적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 간척지, 논 등의 연약지반 파일공사비, 옹벽 설치비, 사업대상지로의 진입로 확장비 등
 - * 전기·용배수시설 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절·성토, 정지작업 등 부지조성비가 총공사비의 50% 초과하는 것은 불가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1년차 40%, 2년차 60%)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기준단가 : 500백만원/ha
 - * 사업집행 시 실 소요단가를 적용하되 기준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 사업면적(ha) × 500백만원/ha
- 지원물량 : 10ha 규모 단지 기준 2개소(총 사업비 10,000백만원)
 - * 연차별 총사업비 : ('18) 40억원(1년차 40%), ('19) 60억원(2년차 60%)
 - * '20년 개소별 지원액 : 면적(ha) × 500백만원/ha × 70%(보조율) × 50%(1년차)



※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19.11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접수기간, 평가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안내
- 사업신청서 및 공모제안서 접수('20.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공모)계획 안내('19.11월)
- 시·군,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에서 제출한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20.2월)

시·군

- 시설원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19.11월)
- 시·도,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참여 경영체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 후 시·도 제출('20.2월)
 - 종합적인 단지조성·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립

참여 경영체 등

- 시·도, 시·군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19.11월~'20.2월)
 - 단지 내 생산·배후시설 구축·운영 및 농산물 생산·유통·수출계획 수립
 - 생산물 판매 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계획 수립
 - 노후온실 시설 현대화, 스마트화 계획 수립
 - 시설물 활용 및 사후관리, 지역 활성화 등 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20.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안내('20.2월)
 -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에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
- 평가 통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통지('20.3월)
 -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

시·도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20.2월)
-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자 및 참석자 보고('20.3월)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안내('20.2월)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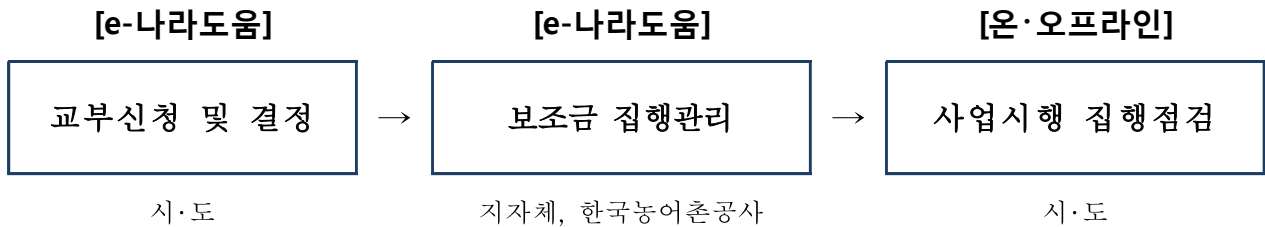
- 참여 경영체 등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20.2월)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여('20.3월)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20.2월)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 편성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를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국고 보조금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14일 이내 일괄 교부
- 시·군은 준공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법령 준수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 교부를 요청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자 선정 이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및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시·도 및 시·군은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추진상황을 보고 (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참여 경영체와 함께 착공 전에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시·군은 사업대상지 또는 참여 입주 경영체, 국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감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적정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변경 제출
- 시·군은 국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시·도(시·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교부받은 사업비는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하고,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희망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시·군)에 적정성 검토서를 제출
-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기본설계 포함) 및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등 담당
-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등의 요율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
 - 공사비, 설계비, 건설기술용역대가 등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 후 시·군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업무 및 위탁시행 단계별 추진사항>

가. 주요업무

- 스마트원예단지 가반조성사업 위탁 시행
- 사업신청자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술자문 및 지원
- 관련 법·규정·기준·지침 등에 의거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의 고품질·성능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업무 수행
- 시공 시 품질, 안전, 공정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사용자재의 도면, 내역, 시방서 부합성 여부 확인
- 기타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수행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다. 단계별 주요업무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시 현장조사 등 기술지원, 자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주변여건, 시설, 토지, 환경조건, 인허가 등) 검토

2) 설계 단계

- 실시설계업무 수행 시 사업추진단과 사전 의견수렴 및 설계협의 진행
- 설계완료 전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기술심의규정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최종 설계도서 확정 후 사업수지예산서 등과 함께 시·군에 승인 요청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 시행

4) 시공 단계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 건설업체 시공 및 적정하도급 관리를 통한 시공관리 추진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시공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 검사 실시
- 사업추진단 입회하에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 * 준공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참여 경영체 등 포함

5.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시·도, 시·군

- 시·도(시·군)은 생산·배후시설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시·도(시·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조성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농식품부로 보고,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참여 경영체

- 참여 경영체 등은 시·도(시·군)과 함께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규정된 표찰(별첨: 참고1)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농식품부, 시·도(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수(위수탁 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유예기간 종료 이후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해당 사업자에 수출 물류비 지원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7년 내 3년 연속 불이행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융자금 상환 조치(신규단지 조성인 경우에 한함)
 -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 농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도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시·도, 시·군

- 시·도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군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하며, 관련 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 성과지표(공정률)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Ⅲ

2021~2022년도 사업(공모) 계획

1. 2021~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2021~2022년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공모계획 알림('20.9월)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 신청자격 : 2020~20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신청 기관	사업명	0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유 형	<input type="checkbox"/> 유형 1(기존온실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유형 2(신규)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 예정지	위 치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상세주소 기재)				
	규 모	ha(m ²)	부지확보계획	매입(%), 임대(%), 기타(%)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m ²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 ○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도지사 경유 후 지체 없이 농식품부 변경 승인 요청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추진단명	대표자	사업량				사업비							착공연	준공연	불용사유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비(DC)				다음해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실적(B)	대비(B/A)	계	국고(C)	지방비	계	국고(D)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개보수, 신규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부지정지, 도로, 용수 등 구분 기재
 다.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², ha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참고 1] 사업장 전시 표찰

1.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시군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시도 · ○○시군구

110cm

80 cm

2.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시군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6. 사업기간 : (준공일 : 년 월 일)
7. 위탁시행자 :
8.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년 월 일
○○시도 · ○○시군구

110cm

80 cm

※ 사업장 전시 표찰 규격

- 재질 :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법 : 추진단 사무실 입구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자치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예산 (백만원)	14,816			
사업목적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한도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9,100	101,920	77,150	46,300			
	국 고	23,820	20,384	15,430	9,260			
	지방비	35,730	30,576	23,145	13,890			
	용 자	35,730	30,576	23,145	13,890			
	자부담	23,820	20,384	15,430	9,2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은철		044-201-225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1.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농업인 :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한 자)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능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인 자)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능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화훼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시·군의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1년부터 적용)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화훼류)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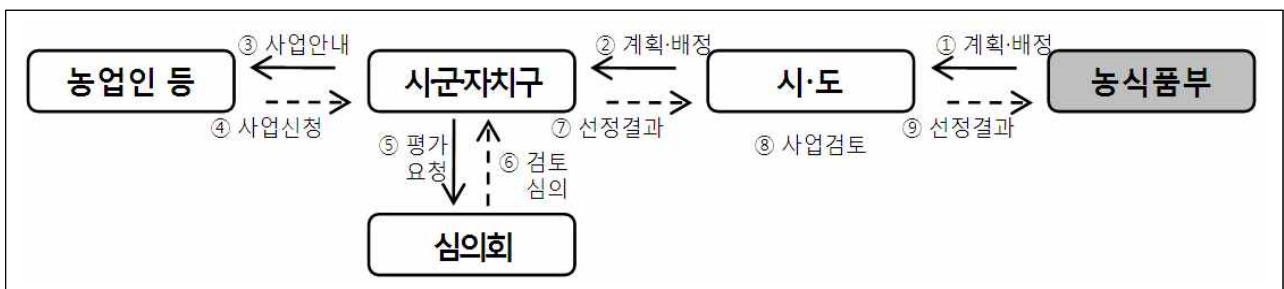
< 지원제외 대상시설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Ⅲ 사업추진체계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4)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일반원예시설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화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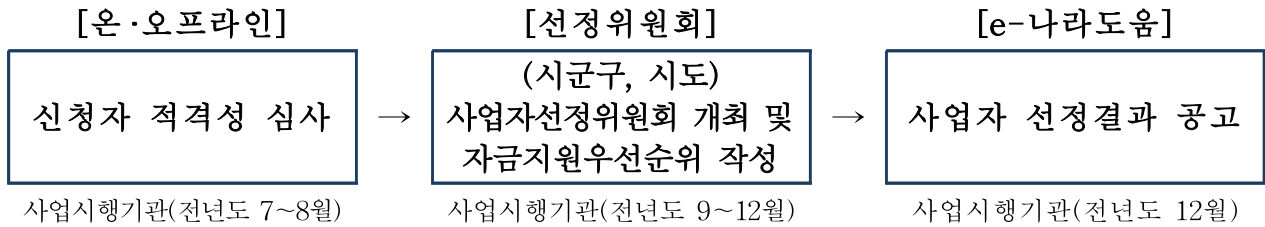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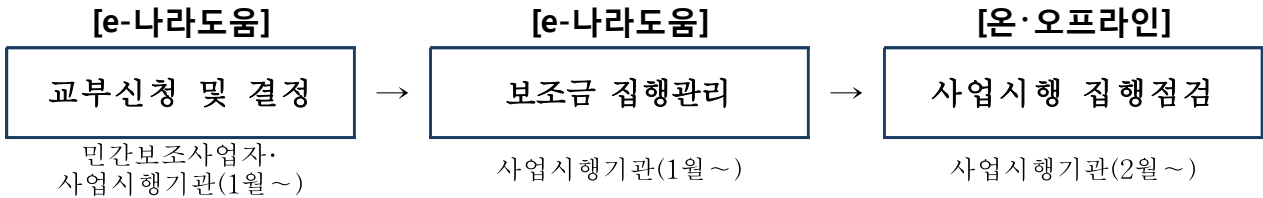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용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 (국고보조, 용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용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단가계약),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 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6-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I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
- 제출기한 : '20. 7~8월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 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축산	㎡	㎡	㎡	㎡	㎡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 시설	난방 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가온 방식	㎡	㎡	㎡	㎡	㎡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에 현대화	<input type="checkbox"/> 전문생산단지 <input type="checkbox"/> 일반원예시설						㎡			
			ICT 융복합 확산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				㎡			
					<input type="checkbox"/> 다겹보온커튼, <input type="checkbox"/> 보온덮개 <input type="checkbox"/> 순환식수막시설,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화훼류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전문생산단지, <input type="checkbox"/>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input type="checkbox"/> 화훼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²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규모	m ²	
기 지원액 (백만원)	사업명(지원연도)		합계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시설원예현대화(2016)		1,000	200	300	300	200

◦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016년	2017년	2018년
점	점	점

◦ 기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도기관		담당자:	연락처:
단지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m ²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다.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용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m ²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m ²)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2017	%	%	%	%	%	%	%	%
2018								
2019								
2020 계획								

사. 농업분야 교육이수 실적(안전성, 수출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3.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 전체 농가 수: 호
- 참여 농가 수: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연락처:

- 구성원 수:
 - 구성원:
- 운영실적 및 계획: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 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 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6. 지역사회에의 기여계획

-
-

7.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기타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영방법
명칭	설치연도					
		m ²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다. 농업분야 관련 교육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m ²)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응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m ²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m²(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응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응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m ²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 수출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m ²)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3.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다.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4. 중장기 계획

가.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부 내용					

나. 경영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5.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

6.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월 ○○일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사업자 선정기준표(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단지명: (대표자:) □ 총득점: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50%)

구분	'16년(10%)		'17년(15%)		'18년(25%)		합계
	배점	득점(A)	배점	득점(B)	배점	득점(C)	
▪ 90점이상	10		15		25		A+B+C= ()점
▪ 80점이상~90점미만	8		12		20		
▪ 70점이상~80점미만	6		9		15		
▪ 60점이상~70점미만	4		6		10		
▪ 50점이상~60점미만	2		3		5		
▪ 50점미만	0		0		0		

* 사업대상자 제외: 예비단지, 최근 평가결과 2년 연속 저평가 단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7년: 백만원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합계(A): 백만원	▪ '17년: 백만원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합계(B): 백만원	$(A/B) \times 100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2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2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B): 톤	$(A/B) \times 100 = ()\%$ ()점
▪ 80%이상~90%미만	16			
▪ 70%이상~80%미만	12			
▪ 60%이상~70%미만	8			
▪ 50%이상~60%미만	4			
▪ 50%미만	0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미충족 ()	대상 () / 미대상 ()

사업자 선정기준표(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초과)

□ 사업자명: (대표자:) □ 총득점: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사업 기대효과의 적정성 (10점)	지역사회 기여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10점)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점

2.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3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A/B) \times 100 = ()\%$ ()점
▪ 80%이상~90%미만	24			
▪ 70%이상~80%미만	18			
▪ 60%이상~70%미만	12			
▪ 50%이상~60%미만	6			
▪ 50%미만	0			

3.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1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10	▪ '17년: 백만원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합계(A): 백만원	▪ '17년: 백만원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합계(A): 백만원	$(A/B) \times 100 = ()\%$ ()점
▪ 75%이상~100%미만	7.5			
▪ 50%이상~75%미만	5			
▪ 25%이상~50%미만	2.5			
▪ 25%미만	0			

4.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1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1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A/B) \times 100 = ()\%$ ()점
▪ 75%이상~100%미만	7.5			
▪ 50%이상~75%미만	5			
▪ 25%이상~50%미만	2.5			
▪ 25%미만	0			

5.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점

6.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미충족 ()	대상 () / 미대상 ()

사업자 선정기준표(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

□ 사업자명: _____ (대표자: _____) □ 총득점: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생산·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증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점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이상 ▪ 3년 이상 4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개월 미만 	50 40 30 20 1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이전: 개월 ▪ '17년: 개월 ▪ '18년: 개월 ▪ '19년: 개월 ▪ 합계: 년 개월 	() 점

3.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시간 이상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4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50 40 30 20 1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시간 ▪ '17년: 시간 ▪ '18년: 시간 ▪ '19년: 시간 ▪ 합계: 시간 	() 점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총족 () / 미총족 ()	대상 () / 미대상 ()

사업자 선정기준표(화훼류)

□ 사업자명: (대표자:) □ 총득점: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생산·수출계획의 적정성 (10점)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점

2. 최근 3년간 총 출하실적 중 수출실적(40%)

구분	배점	수출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톤 ▪ 2018년: 톤 ▪ 2019년: 톤 ▪ 합계(A):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톤 ▪ 2018년: 톤 ▪ 2019년: 톤 ▪ 합계(A): 톤 	$(A/B) \times 100 = ()\%$ ()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3. 해당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년: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합계(A):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년: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합계(A): 톤 	$(A/B) \times 100 = ()\%$ () 점
▪ 50%이상~100%미만	16			
▪ 30%이상~50%미만	12			
▪ 20%이상~30%미만	8			
▪ 20%미만	4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해당 품목의 전국 또는 지역단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미충족 ()	대상 () / 미대상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110cm —————→

↑
80 cm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30cm —————→

↑
21 cm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 제외사업 >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유통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450			
사업목적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향상 및 부가가치제고							
사업 주요내용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보완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기존 운영 중인 APC시설(증설 및 보완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 이상의 과일전문 APC							
지원한도	7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6,000	4,500	1,500	13,500			
	국 고	1,800	1,350	450	4,050			
	지방비	1,800	1,350	450	4,050			
	자부담	2,400	1,800	600	5,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m²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우선선정 >

- * 과실전문APC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선정
- * 수출전문조직(원예전문단지 지정) 우선선정
-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처리·선별·후처리·가공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포장·가공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 각 항목별 사업비 책정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단가)를 활용 하여 산출

4. 지원기준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5. 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단가 : 700백만원 이내/개소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 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전국과실전문 APC운영협의회 참여조직, 수출전문조직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은 현장실사 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단 구성 : 5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 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평가결과 및 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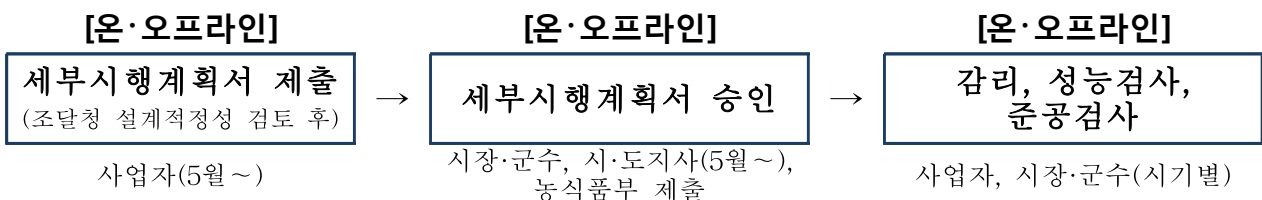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 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를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성능검사》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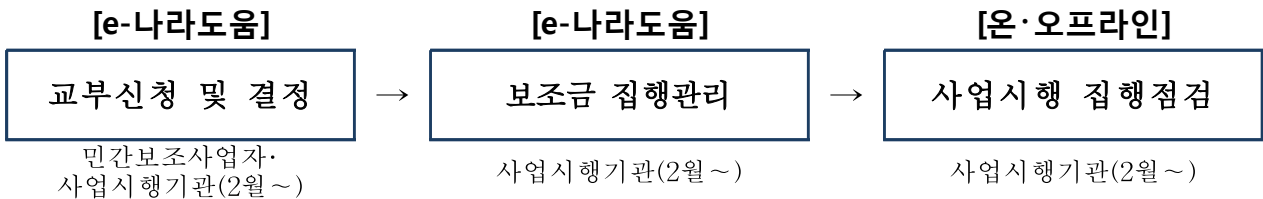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기술직(기계직 등)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처부)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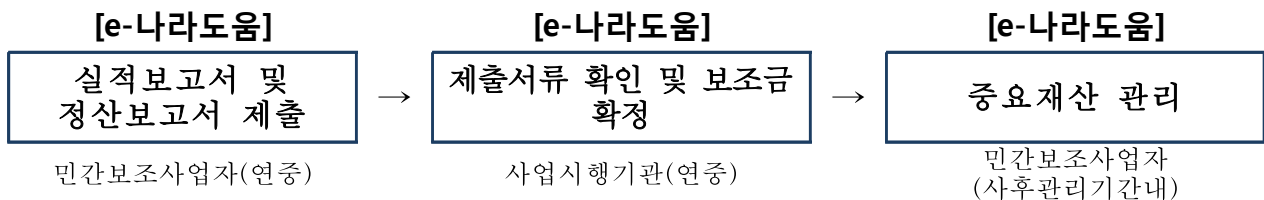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자금배정단계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9조제3항)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7조의2)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유통일원화, 통합브랜드 등 통합마케팅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 사업자는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발급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6.30까지)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매년 4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거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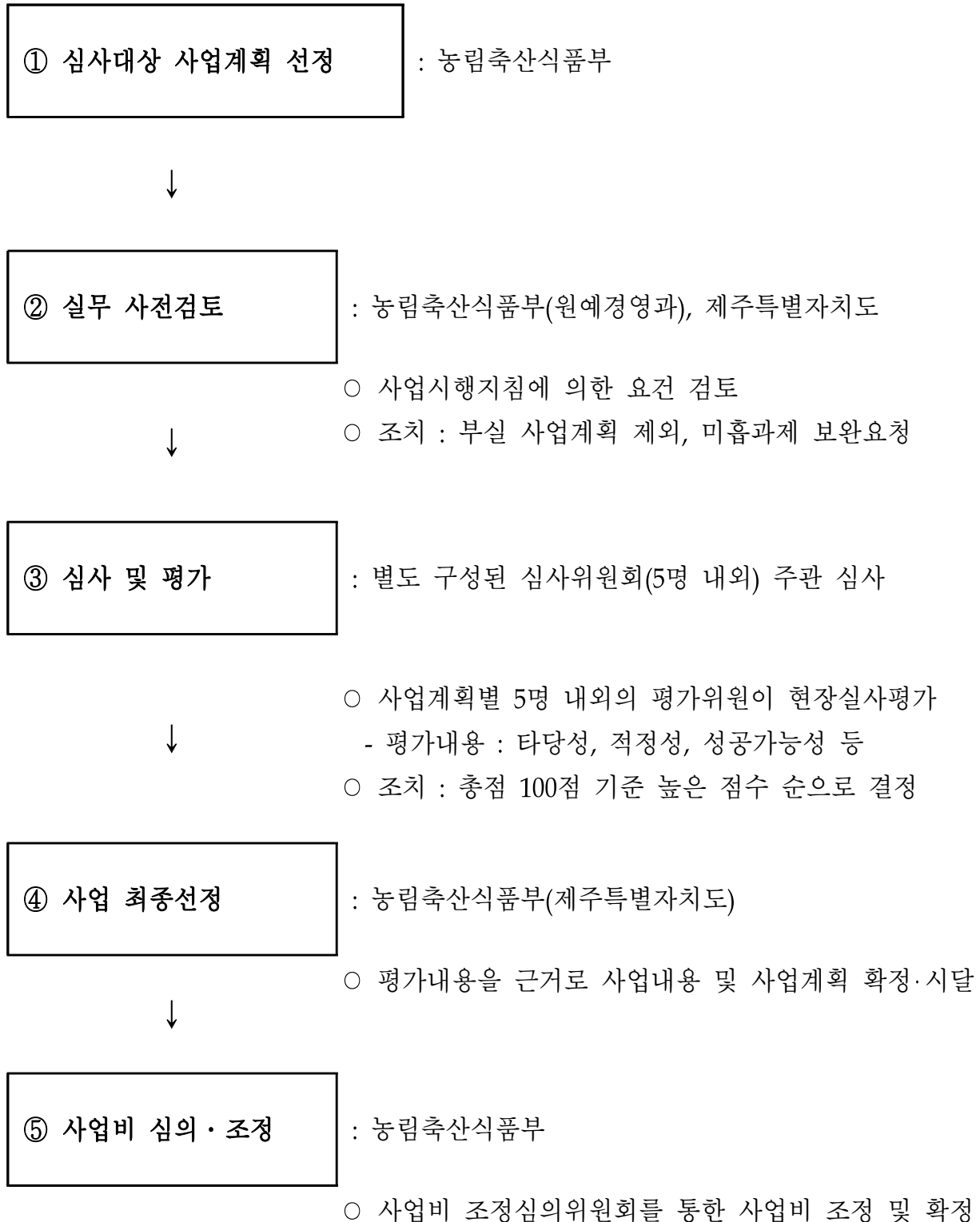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과수거점APC지침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 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지원대상 조직
 - 점검일정 : 연 4회 이상(분기별)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시·군)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사업자 선정 심사 절차 】



선별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매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8. 기타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 경영지원시스템 관련 내용 등은 과수거점APC건립지원사업 지침 준용

《 붙임 3》

광센서 선과기 구입시설 기준단가 산출내역(예시)

□ 사과 기준단가 산출내역(프리트레이 방식 1조라인 기준)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계					693,500
	소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계				
세척 설비	오존살수 & 브러시 세척기	STS 재질	SET	1		20,000
	오존수 생성장치	1 톤/시간	SET	1		20,000
	수조 승강라인	STS 재질	SET	1		5,000
	수조 호퍼	STS 재질	SET	1		15,000
	과일 컨테이너 공급라인		SET	1		6,000
	빈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5,000
	건조라인		SET	1		30,000
	전기제어 컨트롤러	PLC 타입	SET	1		10,000
	자외선 살균장치		SET	1		4,000
	세척사과 배출라인		SET	1		3,100
	회전 테이블	직경 1200mm	SET	2	2,500	5,000
	물탱크(받침대 포함)	5톤	SET	1		2,000
	소계					230,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프리트레이 선별기(오토 웨이트 체커, 메인 컨트롤러, 빈트레이 회송라인, 육안 선별 컨베이어 등 포함)	10,800개/시간	SET	1		120,000
	비과과 당도 센서		SET	1		80,000
	카메라 색상 센서		SET			30,000
	소계					188,4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삼면 포장기		SET	1		28,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2	6,000	12,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2	600	1,2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2	3,000	6,000
	전자동 제한기		SET	1		22,000
	자동 테이블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2	15,000	30,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2	1,500	3,0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2	13,000	26,000
	소계					65,000
기타	컴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과 기준단가 산출내역(컵 방식 1조라인 기준)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계					619,800
	소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계					125,100
세척 설비	오존살수 & 브러시 세척기	STS 재질	SET	1		20,000
	오존수 생성장치	1 톤/시간	SET	1		20,000
	수조 승강라인	STS 재질	SET	1		5,000
	수조 호퍼	STS 재질	SET	1		15,000
	과일 컨테이너 공급라인		SET	1		6,000
	빈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5,000
	건조라인		SET	1		30,000
	전기제어 컨트롤러	PLC 타입	SET	1		10,000
	자외선 살균장치		SET	1		4,000
	세척사과 배출라인		SET	1		3,100
	회전 테이블	직경 1200mm	SET	2	2,500	5,000
	물탱크(받침대 포함)	5톤	SET	1		2,000
	소계					176,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컵 선별기	14,400개/시간	SET	1		50,000
	메인 컨트롤러	산업용 컴퓨터	SET	1		12,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카메라 색상 센서		SET	1		30,000
	육안 선별 컨베이어		SET	1		4,000
	소계					168,7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삼면 포장기		SET	1		28,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1		6,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1		3,000
	전자동 제한기		SET	1		22,000
	자동 테이블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1		15,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1		1,5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1		13,000
	소계					65,000
기타	컴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 기준단가 산출내역(프리트레이 방식 1조라인 기준)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계					562,900
	소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계					52,500
세척 설비	배 세척 컨베이어		SET	1		10,000
	배 에어세척 장치		SET	1		10,000
	이물질 실내집진 설비		SET	1		10,000
	비품 배출 컨베이어		SET	1		3,000
	비품 수집용 락테이블		SET	1		2,500
	폐지 배출 슈터		SET	6	1,000	6,000
	폐지 & 꼭지 배출 컨베이어		SET	1		5,000
	화선지 포장 작업대		SET	10	300	3,000
	네트함		SET	1		3,000
	소계					200,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프리트레이 선별기(오토 웨이트 체커, 메인 컨트롤러, 빈트레이 회송라인, 육안 선별 컨베이어 등 포함)	10,800개/시간	SET	1		120,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소계					160,4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2	6,000	12,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2	600	1,2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2	3,000	6,000
	전자동 제한기		SET	1		22,000
	자동 테이블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2	15,000	30,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2	1,500	3,0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2	13,000	26,000
	소계					65,000
기타	컴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 기준단가 산출내역(컵 방식 1조라인 기준)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계					489,200
	소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 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계					52,500
세척 설비	배 세척 컨베이어		SET	1		10,000
	배 에어세척 장치		SET	1		10,000
	이물질 실내집진 설비		SET	1		10,000
	비품 배출 컨베이어		SET	1		3,000
	비품 수집용 락테이블		SET	1		2,500
	폐지 배출 슈터		SET	6	1,000	6,000
	폐지 & 꼭지 배출 컨베이어		SET	1		5,000
	화선지 포장 작업대		SET	10	300	3,000
	네트함		SET	1		3,000
	소계					146,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컵 선별기	14,400개/시간	SET	1		50,000
	메인 컨트롤러	산업용 컴퓨터	SET	1		12,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육안 선별 컨베이어		SET	1		4,000
	소계					140,7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1		6,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1		3,000
	전자동 제한기		SET	1		22,000
	자동 데이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1		15,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1		1,5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1		13,000
	소계					65,000
기타	컴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년도	품 목	출하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억원)							
	계 (억원)							

(주) - 상표명 : ○○감귤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직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설	저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조 ()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사. 해당 지자체 기존시설 보유현황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 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 처리물량
			()	집하·선별장 m ² 저온저장고 m ²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시설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 장 비 등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설치년도)	비 고 (제작회사)
○ 선별시설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 대 대	천원	백만원	처리능력 /시간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해당 있는 경우
- 토목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건축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시설장비 설치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연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목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 보관물량/일
			시장 출하	직공급 (납품)	기타	기계 선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APC시설 설치자금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 : 시·도(시·군) 추경시기 명시

○ 자부담 확보 계획 : 이사회·총회 승인, 출차현황 등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비		○ 자부담	
○ 설치사업비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APC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출하선도금 ○ 계약재배자금 ○ 운영자금 ○ 관리비 ○ 기타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6. 기 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별지 2호 서식]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자 명세서

우선 순위	신청자	사군	주요 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최초 설치 년도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집하선별 포장장	00	00			
			m ²	m ²	m ²	m ²	조	천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사업비 확보 계획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3.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 행정기관 시책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0	8	6	4	2	
4. 원물확보방안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8	6	4	2	
5. 연중 가동체계구축 방안	연간 가동(8개월 이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6. 시설의 적절성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증축·보완이 아닌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설치 공사인가?	5	4	3	2	1	
7.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가능성(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등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5	4	3	2	1	
8. 품질혁신 및 조직화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5	4	3	2	1	
9.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0. 마케팅 전략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11. 전문인력 확보여부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운영주체 사업실적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30억원	10	8	6	4	2	
13. 통합마케팅 참여실적	전년도 취급액 중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 30% 이상, 20%, 10, 10이하, 없음	10	8	6	4	2	
14. 종합평가	평가항목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5	4	3	2	1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4점) ○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 (3점) ○ 공공급식자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 맺은 지자체 (3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사업비 확보 계획	
3.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4. 원물확보방안	
5. 연중 가동체계구축 방안	
6. 시설의 적절성	
7.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8. 품질혁신 및 조직화	
9.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0. 마케팅 전략	
11. 전문인력 확보여부	
12. 운영주체 사업실적	
13. 통합마케팅 추진실적	
14. 종합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u>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u></p> <p><input type="checkbox"/>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시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p> <p><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최종 결정</p>	

○○○○년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순위 (평점)	신청자	사군	주요 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예냉고	저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용	접선별 포장장	사무실	냉장 탑차	기타	신청액	조정액		
1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2															
3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예산 (백만원)	3,504			
사업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가, 농업법인 등 ■ 녹차·약용작물은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자조금 납부 농업인·농업 법인 등 우선지원 							
지원한도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8,262	9,594	8,979	8,979			
	국 고	2,016	2,340	2,190	2,190			
	지방비	3,024	3,510	3,285	3,285			
	융 자	1,206	1,404	1,314	1,314			
	자부담	2,016	2,340	2,190	2,190			
* 융자예산은 실집행율(40%)을 감안하여 편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주무관 한문숙		044-201-2238 044-201-2239 044-201-2242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년 2월 15일까지 시도담당자 제출 : '20년 2월 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어야 함
 - ※ 법인체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
 -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 예시 외 자주식 또는 트랙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유통·가공을 위해 필요한 기기
 - * 원물 형태 등으로 유통할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가공 시설 지원은 불가
 -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덩유기, 유념기, 분쇄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 예시 외 자주식 또는 트랙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녹차·약용작물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대형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예시되지 않은 자주식 또는 트랙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6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4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200	40	60	60	40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19. 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9.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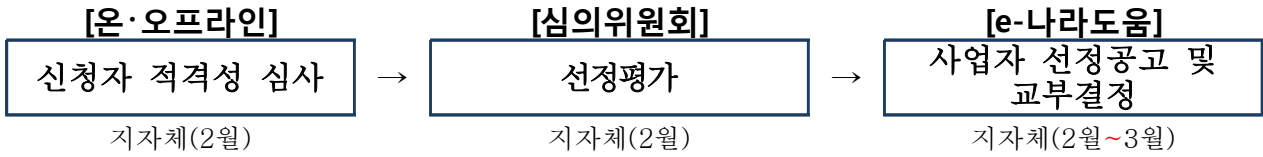
지자체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20.2.15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벼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붙임 제1-1호 서식), 용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산림벼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2. 사업자 선정단계



지방채

- 선정주체 : 사업시행기관(시·군 및 시·도)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관련사실을 확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 제출
 - 시·도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보고('20.2월말)
- 선정방법 : 시·도 또는 시·군은 품목별 특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대상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지방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 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자체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기	5년	

Ⅲ 평가 및 환류

□ 2021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6월말)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21년 사업) : '20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20년 6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m ²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m ²	판넬 재배사 m ²	콘크리트재배사 m ²	기 타 m ²	계 m ²
	부대시설	m ²	m ²	m ²	기 타 m ²	계 m ²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 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소계)	보조	용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m ²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규모	m ²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응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품목	면적(m ²)	품목	생산량(톤)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19(실적)	합계		합계		합계 :			
'20(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 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 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9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m ²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계획	당초	종 류	사업내용	규모(m ²)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	종 류	사업내용	규모(m ²)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사도지시는 사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계속)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2,896			
사업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한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합 계	6,191	7,421	7,421	7,421			
	- 보 조	1,510	1,810	1,810	1,810			
	- 용 자	906	1,086	1,086	1,086			
	- 지방비	2,265	2,715	2,715	2,715			
- 자부담	1,510	1,810	1,810	1,810				
* 용자예산은 실집행율(40%)을 감안하여 편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년 2월 15일까지 시도담당자 제출 : '20년 2월 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 *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9-44호, 2019.8.23)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 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이식기·과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 다만, 기존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19. 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9.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19. 1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2.15일까지)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추가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신청자 적격성 심사

지자체(2월)

[심의위원회]

선정평가

지자체(2월)

[e-나라도움]

사업자 선정공고 및 자금교부 결정

지자체·농식품부(2월~3월)

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자금교부 결정(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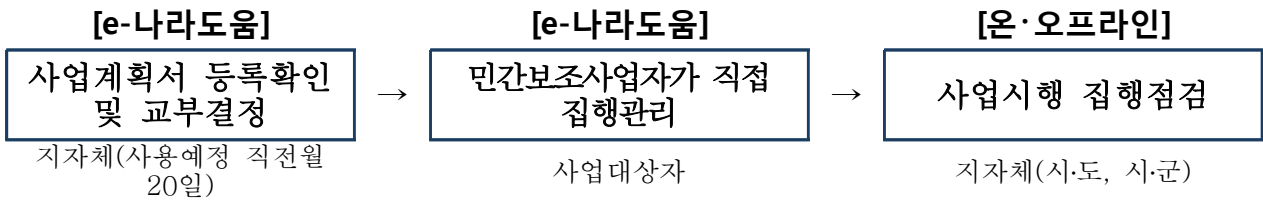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3.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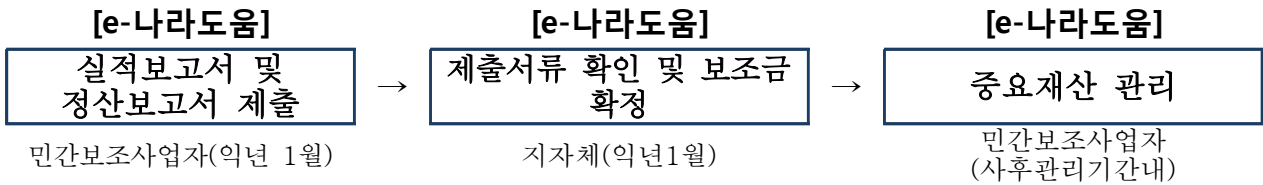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운용규정」 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 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5. 이행 점검 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6.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 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주요기계 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단위면적당 인삼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인삼농협, 인삼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량 통계조사 활용

2.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6월말)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21년 사업) : '20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20년 6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m ²)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 ² , m, 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용자 희망 여부)	GAP, 친환 경 인증 여부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주 소 성 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p>										

세부사업명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계속)		세목	기타 민간 용자금				
내역사업명	인삼·특용작물 계약재배, 수매사업		예산 (백만원)	19,418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특용작물 재배·수매·가공·유통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이 관리된 안전한 인삼·특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 용자 지원 ○ 수매사업 :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한 재배 물량 수매자금 용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3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 금리 2.5~3%(1~3년 거치 일시상환) - 인삼 수매자금(이차보전) : 금리 2.5%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일시상환)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3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 10a당 3,300천원 - 특용작물 : 농가 계약재배 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재원구성(%)	국고		지방비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24,272	24,272	24,272	24,272			
	-보조	-	-	-	-			
	-용자	19,418	19,418	19,418	19,418			
-지방비	-	-	-	-				
-자부담	4,854	4,854	4,854	4,85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044-201-2238 044-201-2239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		과장 김민수(인삼) 과장 강성철(특용)		02-2079-8266 02-2079-8265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3.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예정지 관리 포함)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을 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가공업 허가를 받은 가공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선정우선순위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입주(예정) 사업대상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선정하는 발작물공동경영체 우수 조직
 - '18년도 및 '19년도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수출 실적, 판매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특용작물(한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을 보유한 사업대상자
 - '인삼원료삼수매사업' 대상자인 경우 인삼제품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자

나. 계약재배 참여 농가

- 지원자격 : 인삼(4년근 이상) 또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당해 연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선정우선순위

- 인삼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계약위반 농가, 토양검사 (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 계약재배 대상 농가의 제외기준은 세부 운용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3. 지원대상

- 인삼·특용작물 계약을 통한 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가공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계약재배

- 사업대상자가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수매자금

- 사업대상자가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한 물량을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 수매 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 수매(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의 명단은 불합격 판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단기간(3년)의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 지원기간 설정 예시 ('20. 6. 15일 농가 지원시)	
인삼 계약재배 사업	인삼원료삼수매 지원사업
<당해년도 이식한 2년근 계약시>	▶ 4년근 계약 후 6년근 수매시
▶ 4년근 : '20. 6. 15~'22. 12. 25	- '20. 6. 15~'22. 12. 25
▶ 5년근 : '20. 6. 15~'23. 12. 25	▶ 3년근 계약 후 5년근 수매시
▶ 6년근 : '20. 6. 15~'24. 12. 25	- '20. 6. 15~'22. 12. 25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인삼·특용계열화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농협 자부담 20% : 농협경제지주 10% 지역농협 10%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이차보전) 금리 2.5%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일시상환)
-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3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3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 금리 2.5~3%(1~3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매취사업)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 계약대상 : 인삼(4년근 이상)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 *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하거나 안전성 관련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계약주체가 요구할 수 있음
-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생산 예정 연근의 최소 2년 전(3년근 또는 4년근)에 계약체결해야 지원 가능
- 계약재배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인삼) 17,353백만원, (특용작물) 1,045백만원
 - * 인삼 10a당 3,300천원 한도, 특용작물 농가 계약재배 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50ha 이내 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금리 무이자, 인삼 5년 거치 일시상환, 특용작물 1~3년 거치 일시상환(단, 연근 등은 재배기간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 부터 수확시까지)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 전까지 재배이력 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의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협에 위탁교육 가능

○ 계약재배(수탁사업)

- 인삼농협은 매취사업 계약단가(3,300천원/10a)의 100% 범위 내에서 수탁사업 실시 가능

○ 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대상 : 계약재배 수확 물량

- 지원조건

- (인삼) 5년 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0%, 변동금리 가능)

- * 단, '인삼원료삼수매사업' 참여 업체는 3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작물) 1~3년 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0%, 변동금리 가능)

- * 특용작물 재배 특성에 따라 수매 지원 조건(1년~3년 거치) 적용(예 : 1년생 작물 = 1년 거치, 3년생 작물 = 3년 거치)

- 지원규모 : (인삼) 용자규모 약 23,500백만원(이차보전), (특용) 1,020백만원

- 수매조건 : 수매 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 자금 회수(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연중

- 자금지원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 관리

- 사업대상자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에 상환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한 자금을 대해 수매자금으로 회전 운용하는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2020년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 상환일에 농협경제지주로 상환

- 인삼계열화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계열화 계약삼포에 한하여 수매시 수매자금 지원 가능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2020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농협경제지주)

- 당해 연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농협경제지주에서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등에 공고('20년 2월)
-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과 특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는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 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 또는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때(예정지 관리단계 등)에 사업대상자에게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 업체가 특정 농협에 계약재배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농협에 수매 희망물량을 협의·신청
- 특용작물 재배농가는 「특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등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사업농협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농협자체 계약분과 업체의 계약사업 위탁분을 구분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 확정
 - * 특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협경제지주 시·군 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자체적으로 계약 및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업체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로 제출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7항에 근거한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 단계에서 제외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해 선정하고, 인삼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가공업체등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28일까지 시달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가공업체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 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자금배정 요구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사업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의 확정된 계약·수매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가공업체 등은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2020.7.31일까지 확인하고 계약재배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 및 업체별 계약재배자금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협 또는 업체간 자금 전배 조치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비 정산(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 하여 정산결과를 2021년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사후관리 책임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농협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만, 일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협경제지주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을 확정하여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시행
 -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 등에 필요시 지자체(시·도, 시·군) 협조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 관리 하고, 인삼농협은 수매자금 회전운용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별도계정으로 적립하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인삼농협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 가능
 - 사업추진 및 사업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전산개발 및 보급비, 교육·홍보비, 수매물의 판매 촉진비, 사업 손실보전 비용, 인센티브 등)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GAP 인증 수수료 등 행정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특용작물계열화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2020년 인삼계열화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제출('20.1월까지, 농협경제지주)

2.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대상자별 '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20.6월말)

3. 평가

<성과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 우수 사업주체 : 평가결과 우수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등
- 부진 사업주체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평가결과 부진사업주체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등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세부계획은 '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농협경제지주)' 마련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계속)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예산 (백만원)	1,300			
사업목적	○ 약용작물 산업화를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우수약용작물종자 보급기반을 조성하여 원료 공급지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약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지원한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3억원, 2년차 13.5억원, 3년차 13.5억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4,000	4,000	2,600	3,300			
	- 국고보조	2,000	2,000	1,300	1,650			
	- 국고융자	-	-	-	-			
- 지방비	2,000	2,000	1,300	1,650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044-201-2238 044-201-2239		
사·도		약용작물 담당과		약용작물 담당자				
신청시기	사·도 제출 : '19년 12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 * 사업 신청 전 사업부지가 건축허가에 적합한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우수 약용작물종자 보급 기반을 조성하여 원료 공급지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약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3. 지원대상

- 연구시설 및 장비
 -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실,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교육실, 배양실 등
- 약용작물 기능성 실험 연구·제조 시설 및 장비, 약용작물 성분추출·가공 및 생산시설, DB 구축 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지원 시설 건축비(기본 조사,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각종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 * 지원되는 자금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 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지 매입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3년
 - * 시·도 및 시·군은 2년차 사업비부터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해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3억원, 2년차 13.5억원, 3년차 13.5억원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행(사업시행 전년도 11월말)

지방자치단체

(시·군)

- 시장·군수는 부지 확보, 지방비 이행계획,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사업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12월 10일까지)

(시·도)

-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적격 여부를 심사, 판단하여 시·도별 1개 시·군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사업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를 평가·선정
 -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현장실사 결과는 공개발표 평가에 반영)
-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사업시행년도 1월)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 시·군은 세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월별 공정계획, 자금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단위사업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실적 점검 : 상, 하반기 2회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지방자치단체

- 평가주체 : 해당 시·도 및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상, 하반기 2회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 사후평가
 - 평가시기 : 당해년도 사업 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 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중간 및 사후평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음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 장비 등	사업완료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제한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지적재산권 (특허권, 출원권 등)	출원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동 소유	

- 건축 감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사업·자금관리주체(시·도, 시·군)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효과성 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 집행 등 사업추진 상 도출된 문제점 등을 고려, 예산편성 방향 및 사업시행지침 개선 등 조치

<붙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 사업신청서

신 청	지방자치단체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 화	Fax/e-mail					
	약용작물 생산규모	최근년도(예 : '18년) 작목수 : 작목, 재배면적(ha) : , 농가수 : 호 작목반수 : 개, 생산액 : 백만원 등									
신 청 내 역	사업부지	도		시·군		읍면동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국유지, 도·시·군유지, 사유지)						
청 내 역	설립·운영주체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화	Fax/e-mail					
역	사업목표										
	지방비 확보계획 (백만원)	구분	설립비			운영비					계
		년도	'20	'21	'22	'23	'24	'25	'26	'27~	
금액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 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센터설립 계획('20~'22) 및 운영 계획('23~)
- 설립계획 : 추진배경, 필요성, 사업부지 확보 및 부지여건, 건축 및 장비구축 계획, 추진일정, 기존 시설 연계·활용방안, 지역 약용작물 산업 현황, 기대효과 등 포함
- 운영계획 : 목표 및 중장기비전, 핵심사업 추진전략, 운영주체, 운영재원 확보방안(연구비, 운영비 등), 자립화방안,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방안, 지역내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방안, 사후관리체계 포함
- 토지 및 지방비 확보(계획) 증빙서류 각 1부

6-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유통원예분야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9,961		
사업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공동 선별·출하·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한도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10~50	지방비	10~25	융자	-	자부담	50~8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46,218	46,218	50,978	56,920			
	국 고	8,088	8,088	8,921	9,961			
	지방비	8,088	8,088	8,921	9,961			
	자부담	30,042	30,042	33,136	36,99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이찬우 -		044-201-2223 061-931-1035 -		
신청시기	전년도 8월 말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자금 배정 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³⁾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⁴⁾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 기타 출하처(온라인판매 포함)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APC 경영진단 우수 조직 등에 우선 지원 가능

3)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 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브랜드

4)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참여조직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지원
 - 지원 품목 :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 * (예고) '21년 지원부터는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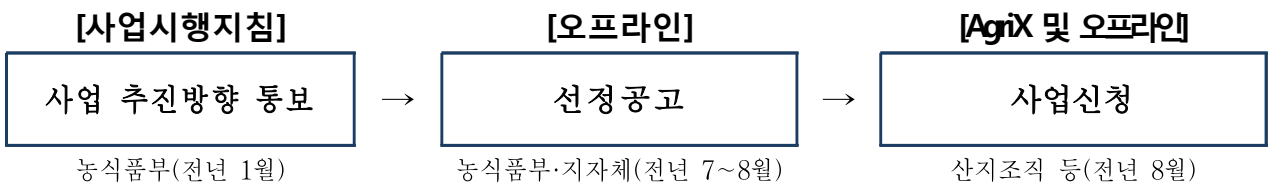
- 지원비율
 -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과 농가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선별비를 공제한 것도 인정
 -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기준 및 단가
 - [별표 1]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 * 전년도 발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5백만원 한도)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A등급 10백만원, B등급 5백만원 한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참여조직 기준)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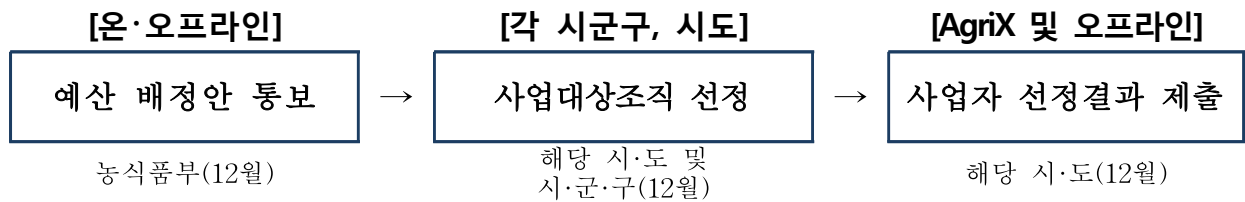
사업대상조직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전년도 8월)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 사업 신청은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이 참여조직의 신청을 취합·조정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정산은 실집행 조직이 신청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19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8월)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시·도로 제출(전년도 8월)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도 8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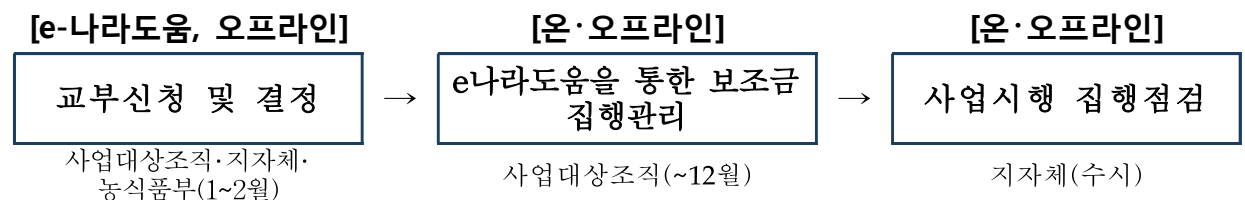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 및 예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 10월중순)
- 각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 (1월초)

시·도(시·군)

- 시·도는 예산 배정 한도 내에서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안)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2월 중순까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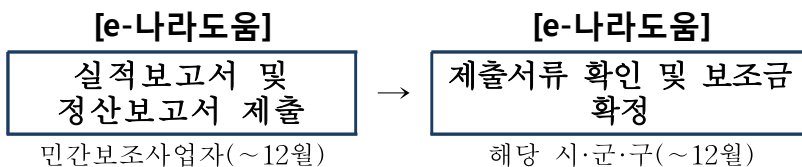
농관원 및 시·도(시·군)

- 시·군은 농관원의 협조를 받아 포장재 제작협의를서[별지 제2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각각 1부씩 보관(1월)
 - * 사업 신청량과 포장재 재고를 확인하고 신규제작이 필요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제작협의서에 명기하여, 사업 정산 시 사업물량 검증 등에 참고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 시·도는 시·군별로 사업계획변경 시 배정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행하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행
- 농관원은 2년 마다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갱신
-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은 정산하여 그 결과를 사업기간 다음년도 1. 10.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 20. 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사업대상조직

-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서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월말까지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세부 일정은 시·군과 협의)
 - *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1.1.~12월말) 내에 정산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 공동계산 정산서, 출하내역서,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을 자체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확인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정산서에는 농가별 선별비 지원내역 명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aT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시·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품목별 공동선별·공동출하시기에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 정산시 농산물 정산 내역 확인(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지원 내역 명시)

《표준규격품조사》

농 관 원

-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조직에 통보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의 조치(농식품부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IV /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조직화취급액 등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조직화취급 확대
- * 산지유통종합평가 주요내용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통합사업역량 등
 - 평가일정 : 2~3월(연 1회)

《환 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우수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별표 1】

2020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국고보조 기준)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단위 조직		품목 광역 조직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과실류	감귤	159	16	40	32	80
	단감	155	16	39	31	78
	뽕은감	115	12	29	23	58
	레드향	318	32	80	64	159
	매실	105	11	26	21	53
	무화과	407	41	102	81	204
	배	214	21	54	43	107
	백향과	547	55	137	109	274
	복숭아	229	23	57	46	115
	블루베리	808	81	202	162	404
	사과	174	17	44	35	87
	양앵두	808	81	202	162	404
	자두	197	20	49	39	99
	참다래	186	19	47	37	93
	천혜향	318	32	80	64	159
	체리	808	81	202	162	404
	포도	333	33	83	67	167
	한라봉	318	32	80	64	159
황금향	318	32	80	64	159	
서류	감자	100	10	25	20	50
	고구마	163	16	41	33	82
채소류	가지	126	13	32	25	63
	곰취나물	808	81	202	162	404
	간대파	279	28	70	56	140
	간마늘	270	27	68	54	135
	깻잎	163	16	41	33	82
	파리고추	180	18	45	36	90
	단호박	93	9	23	19	47
	당근	228	23	57	46	114
	대파	351	35	88	70	176
	딸기	647	65	162	129	324
	마늘	451	45	113	90	226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단위 조직		품목 광역 조직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채소류	멜론	113	11	28	23	57
	무	83	8	21	17	42
	미나리	639	64	160	128	320
	방울토마토	132	13	33	26	66
	부추	287	29	72	57	144
	브로콜리	132	13	33	26	66
	상추	499	50	125	100	250
	수박	48	5	12	10	24
	시금치	163	16	41	33	82
	애호박	83	8	21	17	42
	양배추	117	12	29	23	59
	양상추	91	9	23	18	46
	양파	94	9	24	19	47
	얼갈이배추	166	17	42	33	83
	연근	325	33	81	65	163
	열무	245	25	61	49	123
	오이	129	13	32	26	65
	쥬키니호박	99	10	25	20	50
	참외	182	18	46	36	91
	콜라비	63	6	16	13	32
	토마토	104	10	26	21	52
	파프리카	155	16	39	31	78
	풋고추	280	28	70	56	140
풋옥수수	71	7	18	14	36	
피망	131	13	33	26	66	
버섯류	느타리버섯	260	26	65	52	130
	새송이버섯	260	26	65	52	130
	양송이버섯	456	46	114	91	228
화훼류	국화	44(본당)	4(본당)	11(본당)	9(본당)	22(본당)
	장미	41(본당)	4(본당)	10(본당)	8(본당)	21(본당)

-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3. 2년 마다 농관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
4. 표고버섯(배지)은 버섯류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별표 2】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

확인조직 : 00법인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시·군·구 직 성명 (인)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①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의 충족여부 - 규격포장재 사용, 표준규격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선별·출하·계산 실시여부 - 생산자명의 사업대상자(법인)명 사용여부(개인 또는 작목반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② 자체 보관서류의 비치 및 기록여부 - 공동선별 작업일지 기록 및 품질관리사(책임자) 서명여부 -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기록여부 -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여부 - 기타 자체 보관서류의 관리·보관여부 * 사업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서류 보완 후 사업비 지급	
③ 공동선별 출하물량과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수량과 일치여부 - 출하물량은 각 사업장에서 통보받은 출하정산내역의 수량과 일치하여야 함(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직거래, 개인출하물량은 지원제외) - 포장재 사용량(매)=공동계산물량(kg)÷포장 단량 *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외포장재 단량(1~6kg)을 판매처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④ 품목별, 사업방식별 지원단가 적정여부 - 사업시행지침의【별표 1】 지원단가 참고	
⑤ 공동선별비 신청물량의 중복여부 - 전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중복여부 확인	
⑥ PB(Private Brand, 유통업체 자체상품) 제품의 공동선별비 신청여부 - PB(Private Brand)제품 출하수량 확인 * PB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의 준수가 어려움(단, ①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⑦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지원 - 타 사업에서 수출물류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관련 사업에 선별인건비 지원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 수출농산물은 포장, 등급이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도 지원가능	

확 인 사 항(공동)	확 인 결 과
⑧ 표준규격품 외(등외품) 선별물량의 공동선별비 신청 여부 및 포장품의 표준거래단위 준수여부 - 수탁(매입)물량 대비 선별·출하물량의 적정여부 * 선별·출하물량은 농가의 수탁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규격의 등급(특, 상, 보통) 외의 등외품 및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제외됨	
⑨ 출하처에서 통보된 출하정산 내역서의 출하자가 사업 대상조직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 작목반이나 개인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확인하고, 사업 대상조직(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비 지급 제외	
확 인 사 항(수탁)	확 인 결 과
⑩ 공동계산 실시여부 확인 - 정산 내역에 따른 공동계산의 적정여부 확인(농가별 출하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 * 공동계산은 사업대상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말함 (동일등급에 대하여 다른 단가를 적용하거나, 등급별 단가를 작목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동계산이 아님) * 정산일 당일에 공동계산 기간을 달리하여 2건 이상으로 각각 정산하는 것은 공동계산으로 미인정	
⑪ 정산서 집계표와 공동계산 정산서의 일치여부 - 정산기간 동안 등급별 평균단가로 출하자별 정산여부	
⑫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정산 적정여부 - 전 지급된 공동선별비의 개인별 지급여부 확인 * 정산서 집계표에 따른 신청금액과 개인별 입금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확 인 사 항(매취)	확 인 결 과
⑩ 매입물량과 출하물량의 일치여부 * 일반적으로 매입량이 많아야 하며, 매입장부와 대금 지급한 자료(입금전표 등) 확인	
⑪ 물량 집계표와 공동선별·출하 내역서의 일치여부 * 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⑫ 공동선별비 중복지급 여부 및 매입처 확인 * 공동선별비가 지원된 농산물을 매입하여 재포장(신선편이 등) 후 출하한 농산물의 이중신청 여부 * 도매시장 등에서 매입한 물량 등 생산자(생산자단체)와 계약 재배하지 않은 물량은 지원제외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공동선별비

2. 조직구분 :

※ 조직구분은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국가자격증번호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명			
재배 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공동선별출하 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m ²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출하 실적	보조금(공동선별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 계산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추적	일반 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 표 / 의 장 등록번호		
	기타실적		당도표시 물량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회, 명				
공 동 시 설 보 유 현 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 시설 및 장비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조) ()	() ()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 신청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	수 탁 계획량(kg)	매 취 계획량(kg)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6.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를서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협 의 결 과>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kg,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mm)		
				길이	너비	높이
2. 포장재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산지(), 품종(), 생산년도(),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준규격품문구(),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년 월 일

확 인

시.군.구 담당자 :	성명	(인)
농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보조금 입금통장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 실명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사업기간 :

청구금액 : 원 (국비 원, 지방비 원)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사 업 식	총 공동선별 수량 (kg)	보조단가(원) (국비+지방비)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수탁, 매취, (수출 여부)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조직명 :

성 명 : (직인)

확인자	시.군.구	일자: . .	성명: (인)
	농관원	일자: . .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호	성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국비 + 지방비)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1) 출하수량(A)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의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계약재배 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공동선별 기간 :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일 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 하 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보관 철저)

<별첨>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Q & A

[Q 1] 전년도 공동선별 조직이 금년 농식품부에서 정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조직에서 탈락하였을 경우 지원가능한지?

[A] 전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금년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음.

[Q 2] 산지유통조직이 공동선별비를 지원받아 수탁 참여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선별인건비로 지출한 경우는 걱정하는 것인지?

[A]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지원받은 공동선별비를 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공동선별 인건비로 직접 지출하면서, 농가로부터 선별비를 제외할 때 이를 정상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면 인정(다만, 상계처리에 따른 확인과정이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농가별 지급 원칙)

[Q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사업장에 개인별 전표를 작성 출하한 후 유통사업장으로부터 출하전표 또는 송품장 등에 출하자 명의를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아닌 개인 또는 작목반 출하물량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요건에 맞는지?

[A]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는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에 미달하므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의 주체가 산지유통전문조직이면서 전표나 송품장이 개인 또는 작목반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명의로 전표 및 송품장 기록

[Q 4]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에서 수출물류비 (포장비, 운송비, 선별인건비 등)가 지원될 경우 선별비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원이 제외됨

* 수출물류비와 중복지원 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Q 5] 대형유통업체에 MPB, PB상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MPB, PB상품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동선별비의 지원요건(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것임

[Q 6] 통합조직의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을 거치지 않고 개별 출하하거나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참여조직의 개별출하 및 개별브랜드 사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Q 7]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정산기간(공동계산기간)은?

[A] 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간별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기간은 해당 조직에서 정하여 실시**하되, 같은 정산 일에 공동계산 기간과 평균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각각 정산한 것은 공동계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Q 8]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직거래 한 후 출하관련 내역서를 받았다면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 9] 공동 선별하여 출하한 물량 중 택배물량(우체국전자상거래, 직거래,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처의 사업자등록증거래내역서·영수증 등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판매 택배물량은 지원이 불가능함**

[Q 10] 동일품목에 대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공동계산이라 함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참여 생산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선별·출하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자에게 정산하는 제도임.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이 산지유통전문조직 이상이어야 하므로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은 지원대상이 아님**

[Q 11]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시 중량 측정은 해당 원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처리후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A] 출하물량에 대한 지원이므로 전처리후의 중량 기준임

[Q 12]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이 타 시도(군)에서 매취형 공동선별을 실시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A] 매취형인 경우 공동선별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적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 13] 수박과 같은 과채류는 대부분 다단식 목재상자로 출하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 기준은?

[A] 공동선별·출하하여 날개 단위로 판매되므로 공동브랜드 및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은 다단식 목상자에 일괄표시 또는 스티커 등으로 날개 단위로 표기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Q 14] 공동선별조직에서 고용한 공동선별 인력이 선별장이 아닌 포전에서 수확과 동시에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포전에서의 인건비 발생은 선별 인건비라기 보다 수확 인건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선별의 취지상 수확과 선별을 분리하여 시설이 갖춰진 선별장에서 집하하여 선별해야 함

[Q 15] 공동선별조직에서 농산물을 매취 할 경우 농업인과 생산자조직(법인, 작목반)외 일반 중간 상인(유통업자)으로부터 매취하여 공동선별 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중간상인, 도매시장 등에서 매취한 농산물은 지원 불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매취한 물량만 인정

[Q 16] 공동계산은 참여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단가를 공동으로 계산하면서 같은 등급에서 크기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많은 경우, 크기별 구분하여 평균단가로 정산해도 되는지?

[A] 같은 등급일지라도 크기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경우 크기구분별 평균단가 정산가능(단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경우만 인정)

[Q 17] 공동선별 조직에서 1~10월까지 출하한 물량을 1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11~12월에 출하한 물량은 다음연도 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회계연도 구분은?

[A]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즉 당년도 내('18.1.1. ~ 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당해연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다음연도('19.1.1.~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다음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 동 사업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정산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동계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 상 회계연도 내에 3개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절차 인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보조금으로 지급(사과, 딸기 등 해를 걸쳐 진행되는 품목 감안)

** 실 집행 및 조기집행을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

세부사업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세목	자치단체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 (백만원)	7,200		
사업목적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사업 주요내용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1인 150g 내외)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자격 및 요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지원한도	학생 1인당 1회 150g 기준 과일간식 연간 30회 이상							
재원구성 (%)	국고	50 (서울 30)	지방비	50 (서울 7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5,059	14,400	14,400	431,878			
	국 고	7,200	7,200	7,200	215,939			
	지방비	7,859	7,200	7,200	215,939			
	용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신청시기	'20. 1~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사업시행지침서							

1.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2. 지원대상 품목, 공급량 및 공급 방식

- 품목
 - 공급되는 과일은 제철과일*을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여 어린이의 계절적 정서와 조화되고, 신선도를 확보하여야 함 ☞ [별표 1] 참조
 - * 제철에 생산되는 과일로 하되, 기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저장기간 내에 출하는 과일도 허용(예, 사과는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공급)
 - 동일한 종류의 과일(과실, 과채)을 연속 3회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 지원 품목을 7종 이상으로 구성
 - 이 경우 시·군·구별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6대 과종(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으로 공급

————— < 공급대상 과일의 종류(예시) > —————

- (과실류)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자두, 참다래, 체리, 블루베리
- (과채류)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멜론, 파프리카

- 학생 1인당 공급량 : 1회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연간 30회 이상
- 공급 방식
 - 과일을 세척, 껍질을 제거하고(사과의 경우 껍질째 공급 권장),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하여 컵과일, 파우치, 벌크 등 신선편이 형태(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 반드시 사용)로 공급(반드시 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HACCP인증') 시설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가공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적격업체 풀(pool)을 제시

- 다만, 공급 대상 지역이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상 신선편이 형태로 유통이 어려운 경우나, 학교(돌봄교실)에서 희망할 경우 원물로도 공급 가능
- * 원물 공급 시에는 조각과일로 가공할 경우의 로스(loss)율을 적용하여 공급량 산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공급하는 과일간식(컵과일 등 신선편이형태 및 원물) 구입비
 -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2019 개정판)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공급하는 보존식의 구입비를 포함
 - 과일간식 섭취지도 및 식습관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및 돌봄전담사의 교육용 간식비 포함

4. 지원형태 및 기준

- 재 원 : 일반회계
- 지원형태 : 보조 100%(국고 50%, 지방비 50%)
 - * 단, 서울특별시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기준보조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고 30% 지원
- 지방비 부담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결정
- 지원한도 : 1인당 1회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연간 30회 이상
 - * 지자체는 과중,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회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단가 : 1인분 1,900원(150g 기준) ▶ 공급량 등에 따라 단가 변경 가능
- 지원기준
 - 공급주기는 주 1~3회 중 선택 가능하며, 학기가 개시되는 3월부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시 하계 방학기간 중에도 공급 가능
- 지원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1. 과일간식 운영 원칙

- 과일간식의 섭취시간은 반드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점심시간과 분리하여 운영(급식에 포함된 형태로 제공 불가)
 -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 제공 원칙
-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일섭취 증진과 건전한 식습관 교육을 병행 하되, 필요시 식생활교육 또는 비만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가능

2. 적정 공급량 및 공급횟수

- 과일간식 1인 1회 공급량은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 * 세계보건기구(WHO)는 11~18세의 1회당 과일 공급량을 100~150g으로 권고
- 적정 섭취횟수는 주당 2~3회 정도
 - * 가정에서 과실·과채류 주당 3~4회 섭취(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설문) 고려

3. 과일간식의 실시 시간

- 초등돌봄교실의 여건에 따라 과일간식 섭취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과일을 즐겨 섭취하는 등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 현재 대부분 초등돌봄교실은 14:40부터 15:00까지 간식시간을 운영하고 있음
- 학생들이 과일을 섭취하는 동안 돌봄전담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배포한 교육교재 및 교육영상 등을 활용하여 식습관 교육 및 섭취 지도 등 실시
 - * 간식시간이 너무 짧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간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

4. 과일간식 제조 및 배송 시간

- 과일간식은 전처리(세척)부터 36시간 이내 냉장 유통·소비를 원칙으로 제조
 - * 과일간식의 신선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 기간 등 협의·조정 가능
- 섭취 당일 배송하여야 하며, 가급적 간식시간 2시간 전까지 배달 완료

1. 과일간식 실시 여부 결정

○ 과일간식 수요조사

- 과일간식의 공급 희망 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각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일간식 희망 의사를 반드시 확인
-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급·간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 필요시 과일간식을 함께 상정하여 실시 여부를 심의 결정
- 교육청은 과일간식 실시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 등 적정 절차 이행 확인

□ 지원대상 돌봄교실 선정 절차

지원 안내

- ◆ 시·군·구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안내(1월중)
- * 시·군·구 → 교육지원청 → 학교

학교 여건조사

- ◆ 학교는 과일간식 공급과 관련한 교내 수령체계 및 냉장시설 등 여건조사 실시(1월) ☞ [별표 2] 참조

의망 의사결정

- ◆ 학교는 돌봄교사, 학부모 대상 희망 의사를 파악하고,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2월 상순)
- * 간식 공급은 각 요일로 분산하되, 가공업체와 협의 가능
(예) 특·광역시 5요일, 중소도시 2~3요일, 농어촌 1~2요일

수요 제출

- ◆ 각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과일간식 공급 희망 돌봄교실 수요를 파악하여 제출(2월 중순)
- * 학교(돌봄교실) → 교육지원청 → 시·군·구

지원대상 확정

- ◆ 시·군·구는 과일간식 수요를 검토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지원규모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시·군·구는 다시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2월 하순)
-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교육지원청(→교육청) → 학교

< 2020년 시범사업 추진일정 및 조치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및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19. 12월중)
 - (시·도) '20년 사업비를 교육청과 시·군·구에 통보('19. 12월중)
 - (시·군·구) '20년 사업비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통보('20. 1월초)
 - *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 학교에 과일간식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2월 중순)
 - (학교) '20년 과일간식 지원내용에 관하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의사* 조사 및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제출(2. 15.까지)
 -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
 - * 학부모의 의사를 조사할 때 과일에 거부반응(알레르기)을 일으키는 학생 파악
- 제철과일을 공급할 경우 특정 과종에 거부반응(알레르기)을 일으키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제철과일이 아닌 다른 과종으로 공급 가능
-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2. 22.까지)
 - (시·군·구/시·도) 시·군·구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지원규모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 29.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에서 보고한 과일간식 지원규모를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 조정 통보(4월초)
 - *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가 매학기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등은 시·도(시·군·구)와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이 협의하여 결정 가능
 - (사업비 재배분) 대상자 추가 지원 등 필요에 따라 시·도간(시·군·구간) 사업비 재배분 가능

2. 과일간식 가공업체 및 과일 품목 선정

○ 가공업체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단위 공모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 HACCP인증을 득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심사단이 심사하여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풀(pool)을 고시 ☞ [별표 3] 참조
- * 공모 이후 HACCP인증을 득하는 등 신규 진입한 가공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공모하거나, 시·도에서 동등한 수준([별표 3] 선정(자격) 기준의 일부 조정 가능)으로 심사하여 과일간식 공급 적격업체 풀(pool)에 추가 가능

□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 절차

업체선정 공모

- ◆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기준 마련('18년 기 완료)
 -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준 설정
- ◆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전국단위 공모(전년도 12월중)
 - * 농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각 시·도에 안내 공문 시행

심사단 구성

- ◆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진행할 심사단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1월초)

서류심사(1차)

- ◆ 각 업체가 제시한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시설물 확보,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서면심사 실시(1월초)
 - * 실적증명원, 전처리작업장·냉장창고 등 건축물대장, 차량등록증,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확인

현장심사(2차)

- ◆ 1차 서류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 현장심사 실시(1월중)
 - * 시설물 확보, 장비·인력, 작업공정, 공정능력, 안전성 관리, 배송능력, 종사자 인식 등 현장 확인

발표심사(3차)

- ◆ 각 업체의 운영계획, 작업공정, 공정능력, 품질관리, 배송관리 등 운영제안서에 대하여 발표심사 실시(2월초)
 - * 운영제안서와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

적격업체 고시

- ◆ 서류심사(40점)와 발표심사(60점)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고시(2월중)
 - * 시·도(시·군·구)는 적격업체 중에서 공급업체 선정

-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적격업체 풀(pool)에 포함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가공 및 배송)를 선정
 - 3월부터 과일간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말까지 공급 업체 선정 완료
- 공급업체의 과일간식 품목 선정
- 과일간식 품목은 II.2.(지원대상 품목, 공급량 및 공급 방식)에서 정한 품목을 참고하여 선정하되,
 - 동일한 종류의 과일을 반복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종류는 7가지 이상으로 구성
 - 공급업체는 과일간식 공급 10일 전까지 품목별 공급계획을 해당 시·도(시·군·구)와 협의하여 각 학교에 공지

3. 과일간식 공급 제품 품질 및 표시 기준, 수량 관리

- 과일간식 품질(규격) 기준 및 공급 형태
- (품질)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린이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이나 GAP 인증 과일을 간식의 재료로 공급 ☞ [별표 4] 참조
 - * 수급에 문제가 없고, 품질(규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인증 과일을 우선적으로 공급
 - (규격) 날개의 고르기, 섶택, 신선도, 중결점과*와 경결점과 비율 등 농산물 표준규격의 “상”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과일을 간식의 재료로 공급
 - * 이품종과, 부패, 변질과, 미숙과, 병해충과, 생리장해과, 내부갈변과, 상해과 등
 - (제품구성) 한 가지 품목을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수 품목을 담을 경우 품목 간 맛과 향, 영양성분이 조화될 필요
 - * 작은 크기의 포도, 자두,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등은 원형 그대로 공급 가능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농산물 공급을 권장

○ 공급 제품의 표시 기준

- 용기와 포장재는 원산지, 정부인증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기(권장사항)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명시

< 공급 제품의 표시사항(예시) >

구분	용기	포장상자	공급물품서류	비 고
원 산 지	○	○	○	
정부인증*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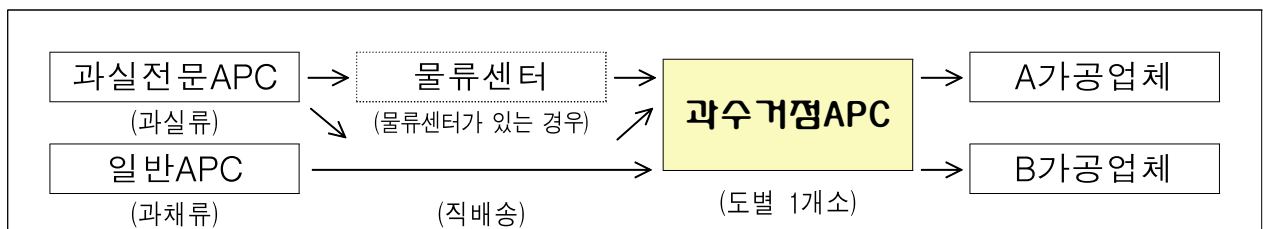
* 제조·가공업체가 친환경, GAP 등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가능

○ 과일간식 공급 수량 관리

- 각 학교는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를 매월 파악하고, 공급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공업체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학교(돌봄교실)별 공급수량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매월 시·군·구에 제출(전월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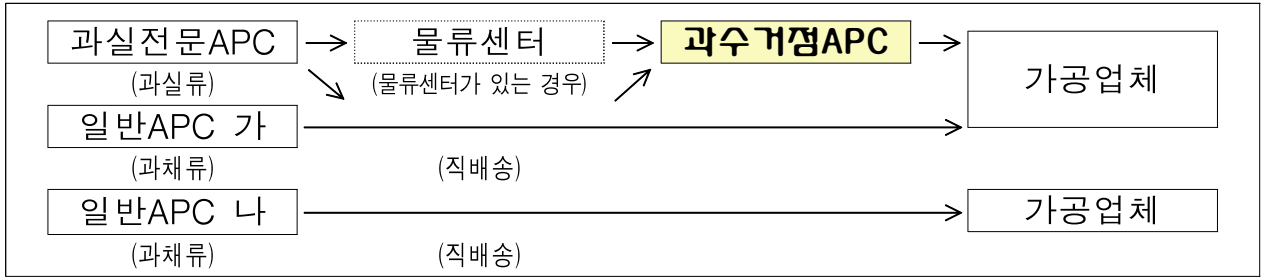
4. 과일간식의 원물 공급 방안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와 전국의 과실전문APC 및 일반APC를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원물 공급 ◀ [별표 5]와 [별표 6] 참조
- 유형별 원물 공급체계
 - (1유형) 광역단위로 거점APC 1개소 지정, 각 지역의 과일 원물을 거점 APC를 통해 가공업체에 공급 ▶ 운반용상자(P-Box) 등 사용



* 과수거점APC는 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공급처를 고려하여 추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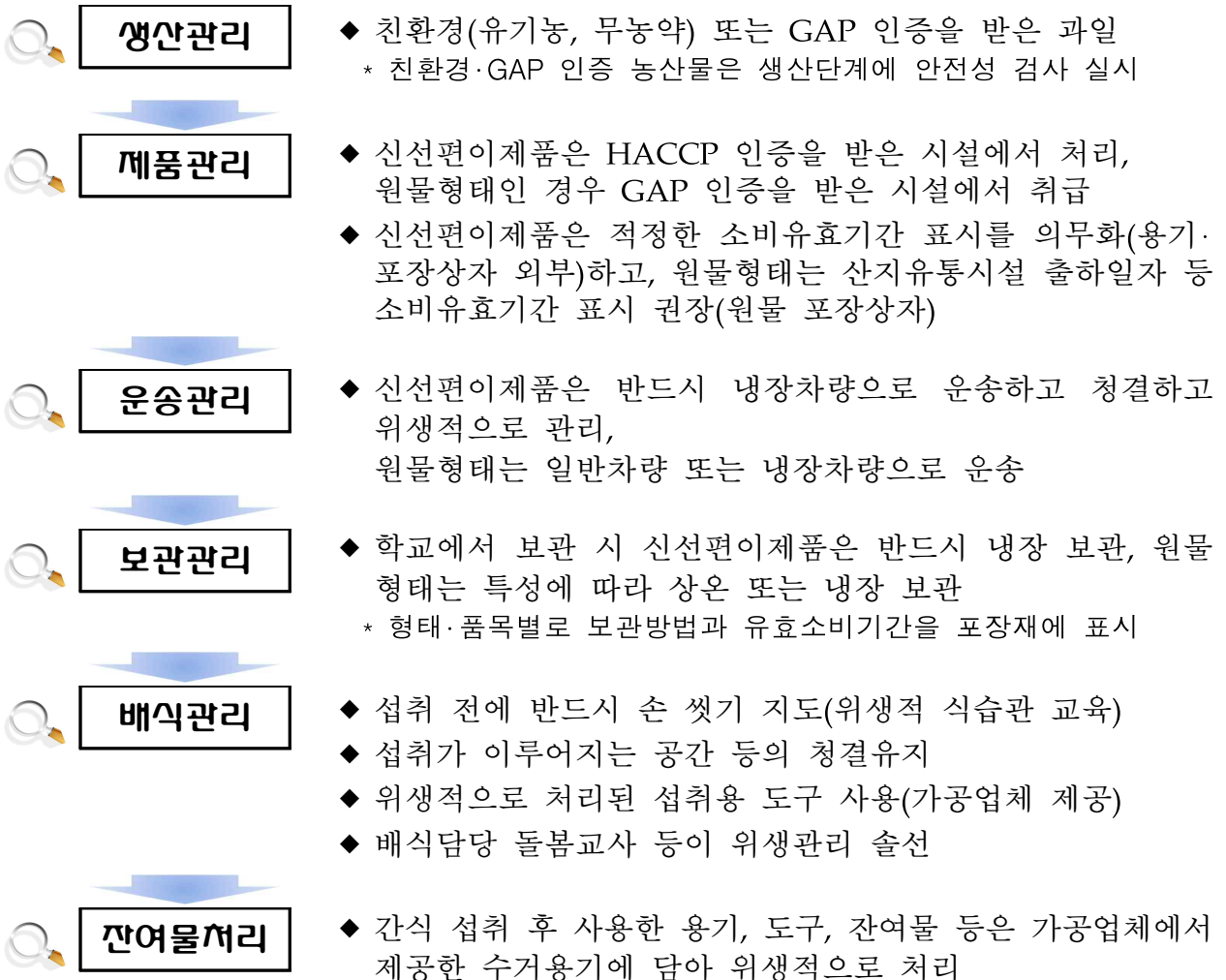
- (2유형) 과실은 거점APC를 통해, 과채는 인근에 위치한 일반APC에서 직접 가공업체에 공급 ▶ 거점APC가 없는 지역은 일반APC를 통해 과실·과채 공급



- * 과채는 NH·지역(품목)조합 등과 협의하여 지역(가공업체)별 전담 APC 지정 가능
- (3유형) 가공업체가 원물 품질(규격)기준에 부합하는 과실·과채를 사업시행 주체, 과수거점APC, 농협·조공법인 등의 일반APC를 통하여 자율 구매
- * 구매한 원물이 품질(규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시·군·구가 수시 지도·점검

5. 공급 제품의 식품위생안전 기준

-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제품화 처리, 제품의 운송, 학교에서의 보관, 학생들에 대한 배급, 섭취 후 잔여물 처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시행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기적 위생안전 점검 실시



6. 과일간식 공급 관리

○ 과일간식 가공 및 배송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전처리, 가공·포장 및 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용 냉장 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계약 당사자인 가공업체가 과일간식을 직접 가공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 해지 및 향후 과일간식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포장 시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가공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가급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송하여야 하며, 수령 책임자를 사전 파악하여 필요시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
- 시·군·구는 과일간식을 공급받는 돌봄교실을 통해 과일간식의 품질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학교 내 과일간식 수령 및 보관

- 학교장은 과일간식이 돌봄교실 시작 이전에 배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돌봄 전담사 외에 교직원(상근직) 1인 이상을 수령 책임자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섭취하기 전까지 냉장보관 등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시설물의 사용 등 최대한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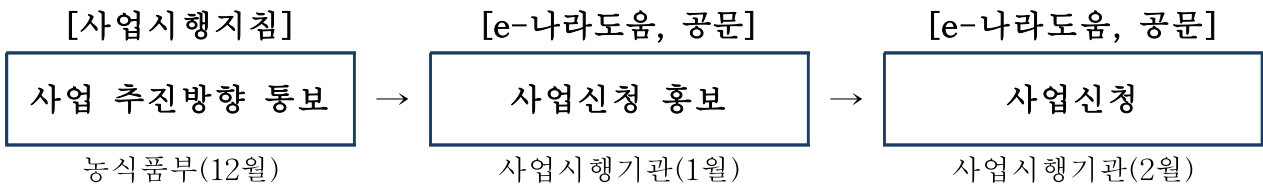
○ 과일간식 공급 수량 관리

- 시·군·구와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의 학기별 과일간식 수요량을 파악하여 관내 전체 학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 각 학교는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를 매월 파악하고, 공급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공업체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과일간식 실시 의사결정 과정 지도·감독

-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과일간식 지원에 관한 학부모의 희망의사 확인 여부 등을 지도·감독(돌봄교실 운영 평가 시 병행 확인 등)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통보(전년도 12월)

지자체(시·도/시·군·구)

- 해당 교육청 및 시·군·구와 협의한 후 다음 연도 과일간식 지원대상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8월 하순까지)
 -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일간식 수요 조사 실시
 - ▶ 사업 신청 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 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학교

- 초등돌봄교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의사를 조사하고,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2월 중순)

교육지원청

-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와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군·구에 통보(2월 하순)

지자체(시·군·구)

- 시·군·구는 교육지원청의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검토하여 관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에 보고(2월말)

지자체(시·도)

- 시·도는 시·군·구에서 보고한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관할지역의 지원규모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월 중순)

지자체(시·군·구)

- 시·군·구는 확정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통지(2월말)

3. 사업비 확보 및 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사업시행 전년도)
- 예산확정 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전년도말 또는 사업시행 연도 1월 상순) ▶ 시·도별 과일간식 공급수량(보존식 등 포함) 및 보조금 총액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국비와의 매칭비율에 맞추어 지방비 확보

4. 자금배정 및 보조금교부 단계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사업시행기관(연중)

→

[e나라도움]

자금배정·집행 및
집행정보 등록 관리

사업시행기관(연중)

→

[온·오프라인]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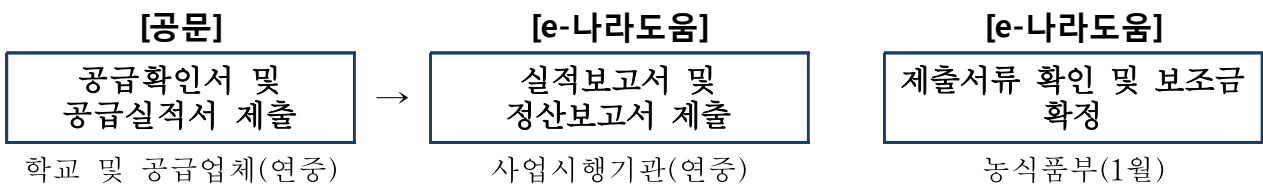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교부결정하고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구)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하거나, 시·군·구의 위임을 받아 시·도에서 집행

5.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교육지원청

- 학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월별 공급 확인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취합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에 제출 (12월은 당해 연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당겨 발급)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단, 12월의 경우 당월 25일까지 제출)
 - ▶ 공급업체는 과일간식 공급실적 보고기한 철저히 준수
 - ▶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과일간식 단가와 공급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 월에 실제 공급한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교육지원청과 공급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 보조금 지급액 = 과일간식 공급수량 × 공급단가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과일간식 지원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국고로 반납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이행점검단계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과일간식 지원대상자 전체가 연내 공급을 받도록 추진하고, 공급업체의 과일간식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납품기피·공급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 * 신규 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과일간식 지원 제도개선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 학부모 및 교사 대표, 과수관련 단체(과실전문APC, 품목조합 등)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학교 과일간식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과일간식 업무 협력체계를 확립토록 노력
 - * 관내 과일간식 공급 방안, 과일간식 확대 지원 방안, 과일간식과 병행한 교육활동 지원, 과일간식 지원 우수학교 선정 등 협의

농림축산식품부

- 과일간식 현지 실태조사(연 2회, 상·하반기)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 방안 마련
-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7. 제재 및 보고

- 시·도(시·군·구)는 과일간식 공급 기준 등을 위반한 가공업체에 대하여 공급 계약을 중단하고, 향후 사업 참여대상에서 배제
 - 공급계약을 체결한 가공업체가 직접 과일간식을 가공하지 않고 타 업체 등으로 하여금 과일간식을 가공하게 한 경우
 - [별표 4] 과일 원물 품질 및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과일을 간식으로 가공하여 공급한 경우 등

○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보고기관	비고
○ '20년 과일간식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20년 3월 중순 상반기는 7월20일까지 (하반기는 12월20일)	시·도	4호서식
○ 반기별 과일간식 지원 실적보고		시·도	8호서식

8.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과일간식 지원 학생의 국산과일 선호도를 공급 전과 후에 측정(11~12월)
- * 과일간식 지원 학생 국산과일 선호도 증가(%p) : ('18) +5%p → ('20) +7 → ('22) +9

○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공급 전·후 학생의 식습관 설문 및 비만율·과체중 변화 정도 등 조사·측정
- 조사시기 : 사업 시작 전 사전측정, 사업 완료 후 사후측정(12월중)
- 조사대상 : 과일간식이 지원된 학교의 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
- 조사방법 : 설문조사(이메일, 팩스 등 활용), 신체측정 등
- 조사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 비만율·과체중 변화 정도에 대한 조사·측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
- * 보건복지부의 돌봄놀이터 대상 비만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과일간식이 공급된 학교(돌봄교실)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족도 조사 등 성과분석 지원

9. 사업평가, 환류 및 포상단계

- (사업평가) 시·도별 과일간식 지원(학생수, 학교수, 돌봄교실수), 기대효과 및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농림축산식품부)
- (환류) 평가결과에 따라 과일간식 만족도가 높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을 확대하고, 과일간식 만족도가 낮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축소
- (포상) 유공자 표창 : 과일간식 지원 유공자(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공급업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여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2021년도 과일간식 지원 대상 학교 및 학생수 등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2020. 8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 시 시·도지사는 지방비(시·도비 및 시·군·구비) 확보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과실 및 과채 품목별 출하시기

구분	품목	주 출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장기													
과실류 (10종)	사과	연중 공급	후지						쓰가루 (아오리)	홍로	양광	후지			
		12월~익년 6월													
	배	연중 공급	신고							원황	신고				
		11월~익년 7월													
	단감	9월~익년 4월	부유								서촌 조생	차량 이두	부유		
		12월~익년 4월													
	감귤 (온주)	10월~익년 3월	온주밀감(노지)			하우스감귤					온주밀감(노지)				
		1~3월													
	포도	5~11월				델라 웨어	거봉	캠벨얼리	MBA						
		없음													
복숭아	6~10월					신선, 암킹	천홍, 백도	천중 도	장호원 황도 (엘버트)						
	없음														
자두	5~10월					대석	후무사	추희							
	없음														
참다래 (키위)	10월~익년 5월														
	12월~익년 5월														
체리	5~6월														
	없음														
블루베리	6~8월														
	없음														
과채류 (6종)	토마토	연중 공급	제철												
		없음													
	딸기	11월~익년 5월													
		없음													
	참외	3~10월													
		없음													
수박	4~9월														
	없음														
메론	4~9월														
	없음														
파프리카	연중 공급	제철													
	없음														

출하기	
*감귤(하우스)	5~10월
*감귤(만감류)	12~익년 6월

제철 과실과채류	
범례	수확기
	저장기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기준

□ 인식과 공감대

- 학교장, 특히 과일간식 섭취를 지도하는 돌봄교사가 과일간식 지원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
- 학부모가 자녀의 건강 및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

□ 참여 학급 편성

- 학급 또는 돌봄교실 단위 전체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
 - * 학급(돌봄교실) 단위의 학생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과일간식 섭취 지도를 위한 별도의 모듈공간 유무와 참여 가능성도 고려

□ 물리적 여건

- 공급된 과일간식의 인수(수량)를 위한 적정 공간의 유무
- 필요시 단기간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 * 별도 냉장시설이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냉장시설의 유무

□ 인적 여건

- 프로그램 운영팀, 공급 과일의 수령·보관·배분·식품위생안전관리, 학생들의 간식활동 모니터링 책임자 등 선정
- 과일간식의 원활한 인수와 교내 보관·운송을 위한 인적 협조체계 구축 정도 (예, 학교 관계자와 돌봄교사 간 협조)

□ 지속가능성

-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지와 공감대 확산의 가능성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자격) 기준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자격

-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을 득한 업체
 - * 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①)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②)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면서 ‘과일 간식의 원물(원재료) 품질(규격)기준’에 적합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과일 원물 및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냉장창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③)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④)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 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 차량등록증을 비치하고 종합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최근 3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의 생산·공급문제로 식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전용시설을 권장하며, 공정상의 친환경 기준 준수
 - 압축에어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살균방식 등 사용
 - 밀폐된 실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저온설비(10℃ 이하) 유지
- 비세척 전처리 품목의 분진대책 수립 및 최종 작업실 내 저온유지 가능하여야 함
- 신선편이제품의 클레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 **배송 관련 자격** ▶ 별도 법인 또는 3자물류(3PL)의 경우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참가 자격의 ①~④를 갖추고 있을 것
-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
 - 차량인정 : 자가차량으로 소유지분 50% 이상 보유
- 배송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학생건강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과일 원물 품질 및 규격 기준

□ 기본 원칙

-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국의 과실전문APC와 주요 과채류를 취급하는 APC와 연계하여 과일간식의 원물을 공급
 - * 원물의 포장은 가급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P-Box(18kg) 형태로 공급
-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받고 생산한 과실·과채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산물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무농약농산물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제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 등급 규격은 날개의 고르기, 선택, 신선도, 중결점과*와 경결점과의 비율 등으로 판정
 - * (중결점과) 이품종과, 부패·변질과, 미숙과, 병해충과, 생리장해과, 내부갈변과, 상해과, 모양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기준을 제시

□ 권장 사항

- 지역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 공급을 권장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 사용불가 농산물

- 위 농산물에 해당되더라도 이미 전처리(前處理)*된 농산물
 - * 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현황

시도	사업주체 (운영주체)	취급 품목	주소	부지면 적(m ²)	건축면 적(m ²)	연간처리 능력(톤)	준공일
전북	전북 장수 (장수군조공법인)	사과, 토마토	장수군 계남면 침곡로 11-26	10,479	3,119	10,000	'06. 9.15
경기	경기 안성 (안성과수농협)	배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148	6,050	2,432	8,700	'06. 4.25
제주	제주 남원 (제주감귤농협)	감귤	남원읍 태신로 130번길 170	8,375	2,295	10,000	'06.11.22
경북	경북 영주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693	8,756	3,464	12,000	'07.11.17
경북	경북 의성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자두, 복숭아	의성읍 경북대로 5692	8,946	2,438	10,000	'08.12.16
충북	충북 충주 (충북원예농협)	사과, 복숭아	충주시 금가면 금가중앙2길 1-22	43,973	16,120	10,000	'08.11.21
경남	경남 거창 (주)NH유통	사과	거창읍 거함대로 3372	12,196	2,452	9,800	'09.11.10
충남	충남 예산 (예산능금농협)	사과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75	7,593	2,883	10,000	'08.11. 1
충북	충북 음성 (햇사레조공법인)	복숭아, 사과,수박	음성군 음성읍 반기문로 27	15,755	3,165	9,000	'08.12.26
전남	전남나주 (나주시조공법인)	배	나주시 영산포로 22	4,520	3,243	12,600	'09. 9.10
제주	제주 회수 (제주감귤농협)	감귤	서귀포시 1100로 120	5,924	2,350	10,000	'09. 3.13
제주	제주 토평 (제주조공법인)	감귤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00-9	9,945	2,600	14,000	'09. 3.17
경북	경북 문경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문경시 마성면 외어7길 52	9,000	2,753	10,000	'09. 2.10
전남	전남 순천 (순천연합조공법인)	키위,단감, 배,복숭아	순천시 승주읍 중대길 15	5,257	2,760	10,000	'10. 4.13
제주	제주 애월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장전로 21	21,383	5,200	10,000	'11. 9.29
제주	제주 조천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중산간로 515	14,941	4,400	7,000	'11.10.21
제주	제주 중문 (제주조공법인)	감귤	서귀포시 천제연로 199	17,327	7,493	10,000	'13. 3.26
충남	충남 아산 (아산원예농협)	배,사과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358번길 11	15,034	4,808	8,000	'12.12. 5
제주	제주 위미 (제주감귤농협)	감귤	남원읍 위미대성로 24	9,074	3,900	7,000	'13. 5.10
제주	제주 남원 (제주조공업법인)	감귤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8	16,005	8,371	15,000	'13. 6.25
제주	제주 하례 (제주조공업법인)	감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 552-13	30,000	10,690	15,000	'14.11.28
제주	제주 한림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187	15,669	4,825	7,000	'16. 9. 2
제주	제주 제주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연북로 395	9,771	5,550	7,000	'17.12.27.

[별표 6]

과실전문 일반산지유통센터(APC) 현황

시도	사업주체	취급품목	주소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간처리 능력 (톤)	개장 년도
충남	충남 천안 (천안배원협)	배	성환읍 성환1로 252	29,884	12,274	27,540	1994
전북	전북 남원 (남원조공)	배,복숭아, 포도,사과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217 ◀ 메론, 방울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수박	20,175	3,828	7,000	2003
경북	경북 김천 (송원에이피씨)	사과,자두, 복숭아	김천시 능소면 농남로 360	22,245	7,267	14,000	2007
	경북 김천 (구성농협)	자두,사과, 복숭아	김천시 구성면 하강길 43	6,750	3,383	5,000	2010
	경북 경산 (자인농협)	복숭아, 포도,자두	경산시 자인면 계남길 9	16,797	6,701	3,500	2010
	경북 문경 (문경농협)	사과	문경시·읍 주홀로 83	8,000	3,976	7,004	2001
	경북 영주 (풍기농협)	사과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1212	10,650	4,283	1,500	1994
	경북 영주 (영주농협)	사과,자두	영주시 부석면 보옥로 158	10,174	2,592	4,599	2009
	경북 안동 (동안동농협)	사과	안동시 길안면 옷장터길 15-8	20,531	5,692	7,600	2011
	경북 봉화 (춘양농협)	사과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291-5	5,081	2,830	4,000	2004
	경북 봉화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38	18,619	4,559	6,000	2009
	경북 안동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99	21,573	5,418	7,500	1997
	경북 포항 (서포항농협)	사과,단감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661	6,834	2,835	3,000	1994
경남	경남 김해 (경남단감원협)	단감	김해시 진영읍 한림로 1114	8,480	5,292	9,000	2011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초등학교명							
주 소	(우편번호)						
① 신청인(학교장)	성 명				직 책		
	대표번호	- -			팩스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② 돌봄 전 담 사 (과일간식담당자)	성 명				전자우편	@	
	교실연락처	- -			휴대전화	- -	
③ 학교 내 돌봄교실 현황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수	반수	돌봄전담사수	학생수	반수	돌봄전담사수	
	명	반	명	명	반	명	
④ 과일간식 신청 초등돌봄교실 현황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수	반수	돌봄전담사수	학생수	반수	돌봄전담사수	
	명	반	명	명	반	명	
⑤ 공급 희망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총 주)						
⑥ 희망 공급방식	<input type="checkbox"/> 컵·파우치(1인분씩 포장) <input type="checkbox"/> 벌크 1~3kg(반별 포장) <input type="checkbox"/> 과일 원물						
⑦ 수령책임자	성 명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	
⑧ 돌봄간식 보존식 현황	돌봄간식 보존식 실시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냉동고 구비 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전용용기 구비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관리담당자			
	실시 / 미실시	여 / 부 (위치:)	여 / 부				
년 월 일 신청인 oo 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1부						

※ 작성요령 및 신청서 제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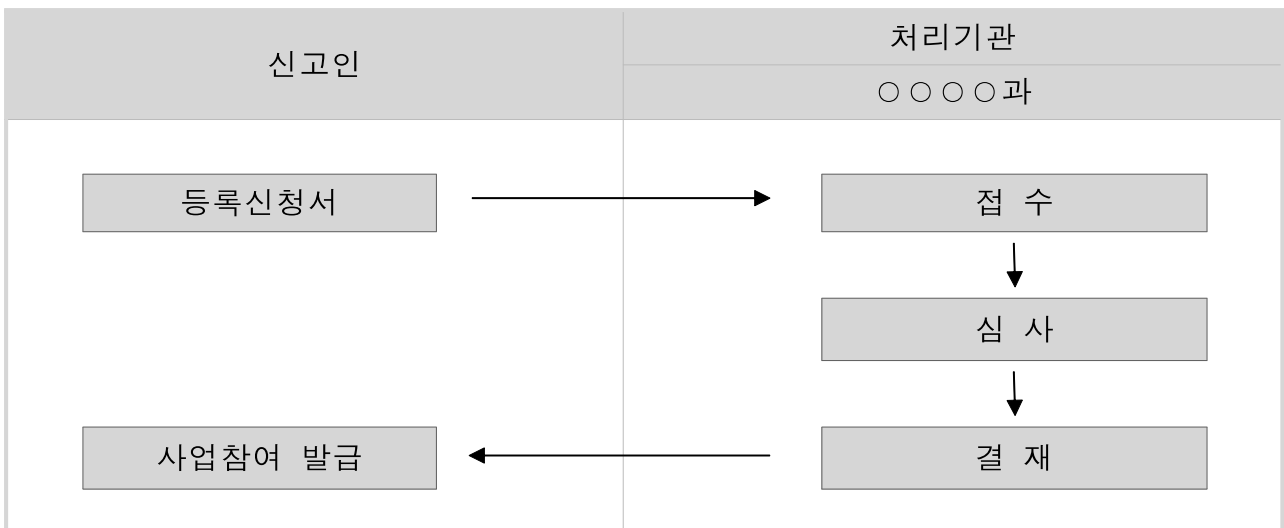
□ 작성요령

- ① 신청인 : 학교장
- ② 돌봄전담사 : 돌봄전담사 중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작성, 학교 과일간식 수령관리 담당, 과일간식 일별 수량 및 문제점 등 상시 연락대상
- ③ 전체 초등돌봄교실 현황 : 최근의 전체현황 작성
- ④ 과일간식 신청 초등돌봄교실 현황 : 전체 돌봄교실 중 과일간식 신청대상 현황만 작성
- ⑤ 과일간식 신청 희망기간 : 주당 공급횟수(1~3회)를 고려하여 공급 희망기간 기재
※ 신청 희망기간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이는 학교 측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⑥ 희망 공급방식 : 신선편이 형태의 컵·파우치, 벌크와 원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 중 선택
- ⑦ 수령책임자 : 돌봄전담사 외 과일간식 수령 책임자로 교직원(상근직) 1명 이상 지정
- ⑧ 돌봄간식 보존식 현황 : 현재 돌봄간식에 대한 보존식 실시현황 작성

□ 신청서 제출처

- 제출기한 : 2020. 2. 15.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전자문서, 전자우편 또는 팩스 발송 가능)
※신청 접수 후 참여확정을 위해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초등돌봄교실 방문예정

※ 업무진행절차 안내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체크리스트

시·군·구명 :	학교명 :
----------	-------

항목	유(여)	무(부)
과일간식 지원정책에 대한 학교장·돌봄전담사·학부모의 공감대* * 어린이의 건강 및 식습관 개선 필요성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급 또는 돌봄교실 단위 전체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급된 과일간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유무 * 냉장고, 보존식냉동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돌봄교실에 냉장시설이 없을 경우) 냉장시설의 신규 확보 계획 또는 대체 냉장시설의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과일의 수령, 보관 및 배분 등의 역할 부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과일간식 활동 모니터링 책임자 선정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과일간식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 과일간식을 지속 지원받고자 하는 의지와 공감대 확산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〇〇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교육지원청)

1. 돌봄교실 신청 현황(총괄)

(단위 : 개, 명)

시·도	시·군·구	전체 돌봄교실 현황			과일간식 신청 돌봄교실 현황			비고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〇〇								

2. 각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현황(시·군·구별 엑셀(Excel)로 별지 작성)

(단위 : 개, 명)

소재지		초등학교명	희망 공급 방식	돌봄 교실수 (a+b)	돌봄 학생수 (c+d)	초등돌봄		방과후연계		
시·군·구	읍·면·동					교실명(a)	학생수(c)	교실명(b)	학생수(d)	
	〇〇〇					소계		소계		
						돌봄1반				
						돌봄2반				
						돌봄3반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 주] 자치구의 '동'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 명칭으로 기재

20〇〇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대상 현황

1. 돌봄교실 현황(총괄)

(단위 : 개, 명)

시·도	시·군·구	전체 돌봄교실 현황			과일간식 신청 돌봄교실 현황			비고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〇〇								

2. 시·군·구별 과일간식(보존식 포함) 수요량

시·군·구	초등학교		과일간식 및 보존식 수요량				
	학교수	돌봄교실수	계	초등돌봄교실 학생	방과후연계교실 학생	돌봄교사 수	보존식

3. 각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현황(시·군·구별 엑셀(Excel)로 별지 작성)

(단위 : 개, 명)

소재지		초등학교명	희망공급방식	돌봄교실수 (a+b)	돌봄학생수 (c+d)	초등돌봄		방과후연계			
시·군·구	읍·면·동					교실명(a)	학생수(c)	교실명(b)	학생수(d)		
		〇〇〇				소계		소계			
						돌봄1만					
						돌봄2만					
						돌봄3만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별지 제5호서식]

[]년 []월 초등학교실 과일간식 공급 실적(공급업체용)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공급업체명 :

구분	학교명	공급방식 (용량)	공급단가 (원)	공급일수 (일)	공급수량 (개)
○○시		컵(150g)			
		벌크(kg)			
		원물(kg)			
		소계(개교)			
○○군					
		소계(개교)			
○○구					
		소계(개교)			
합계(개교)					

* ‘과일간식 공급량’은 학생용, 교사용 및 보존식(학교별 1일 1개 기준)의 수량을 합산

[/4)분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시(도)

2. 사업목적 및 내용

목 적

-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사업내용

- 사업주관 : 시·도(또는 시·군·구)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 지원조건 : 보조 100%(국고 50%, 지방비 50%)
 - *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내역 : 지원대상 학생에게 주 1~3회, 연간 30회 이상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천원 ◀ 국고·지방비 포함 총액 기재

4. 보조금 교부신청액(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년 예산액	기 교부 신청액	금회 교부 신청액	누 계	잔 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5. 보조사업자 부담액 : 천원 ◀ '19년 지방비 부담액 총액을 기재

6. 사업기간 : '20. . . ~ '20. . .

7. 보조금 교부 계좌번호 :

[별지 제7호서식]

[]년 []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확인서(학교용)

학교명 :

주 소 :

과일간식 공급 현황

공급업체명	공급방식	공급단가 (원)	공급일수 (일)	공급수량(합계)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 초등돌봄(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연계(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의 공급 학생수는 해당 월의 공급 학생수가 가장 많은 날짜의 학생수를 기록

일자별 공급현황

일자	일별 공급량(개)				일자	일별 공급량(개)			
	계	과일간식		보존식		계	과일간식		보존식
		학생용	교사용				학생용	교사용	
1일					17일				
2일					18일				
3일					19일				
4일					20일				
5일					21일				
6일					22일				
7일					23일				
8일					24일				
9일					25일				
10일					26일				
11일					27일				
12일					28일				
13일					29일				
14일					30일				
15일					31일				
16일					합계				

○ 공급가 : (과일간식) 개× 원= 원/ (보존식) 개× 원= 원

위와 같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20〇〇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실적보고(반기)

1. 과일간식 지원 실적(시·도 총괄)

(단위 : 개, 명)

월별	구분	초등학교			공급 방식	월별 공급량			
		학교수	돌봄 교실수	학생수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월	소계								
	시								
	군								
	구								
∴	소계								
	시								
	군								
	구								
∴	소계								
	시								
	군								
	구								
○월	소계								
	시								
	군								
	구								
합계	소계								
	시								
	군								
	구								

2. 시·군·구별 과일간식 지원 실적

(○○시/군/구)

(단위 : 개, 명)

월별	초등학교			공급 방식	월별 공급량			
	학교수	돌봄 교실수	학생수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월								
∴								
합계								

* 시·군·구별 지원 실적은 엑셀(Excel)로 작성하여 제출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 (백만원)	2,205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농·고령농 및 귀농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1개소, 500백만원 이내 지원(보조 70%) - 개설부지 5년 이상 점용권 확보, 50농가 이상·텐트 50동 이상, 연 56회 이상 개최 (정례장터) ○○개소, 장터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 개설부지 점용권 사전 확보, 연 20회 이상 의무개설 및 텐트 10동 이상 운영 (테마형장터) ○○개소, 장터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또는 도 단위)가 관리하고 대표법인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정례장터)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테마형장터) 특정시기 특정 목적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장터) 1개소 최대 500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 단, 자부담은 반드시 지방비로 충당 (정례장터)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테마형장터)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500	3,500	3,500	2,866		
	국 고	2,450	2,450	2,450	2,205		
	자부담	1,050	1,050	1,050	66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차 장 유승희		044-201-2285 061-931-1019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설추석 명절 전('19.12월, '20.7월) 수시: 사업포기 등에 따른 수요 발생 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1. 사업대상자

- (대표장터) 대표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또는 도)
 - * 단, 대표장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대표법인 필요
- (정례장터) 정례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 (테마형 장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주체로 특정기간, 특정 목적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 * 김장철 배추·고춧가루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여름 휴가철 관광지 직거래장터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표장터
 - (오프라인 검증)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대표법인과 지자체 간 운영계약
 - 선정우선순위 : 평가위원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한 사업자 우선 선정
- 정례장터, 테마형 장터
 - (오프라인 검증)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 선정우선순위 : 평가위원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지자체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장터 등은 우대

3. 지원대상

- (대표장터)
 - 대표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설치·구입·임대, 홍보비, 소비자교류(체험), 참여자 교육, 인건비 등
 - 개설 및 운영 목적으로 구매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종량제봉투, 전기요금 등 세금성 지출, 장소 임차비, 차량구입 등 인정 불가
- (정례장터)
 - 정례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비, 운영비 및 홍보비 등

- 보험료, 공공요금, 장소 임차비, 수수료 등 세금성 지출 정산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표장터) 시설·장치, 홍보, 교류·체험, 교육, 인건비 및 기타 대표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시설·장치 : 텐트, 매대, 비가림막, 조명, 전기, 카트, 정수기 등
 - 홍보 : 현수막, 전단지, 케이블광고, 사이니지, SNS 등
 - 교류, 체험 : 버스임차비, 재료비, 기념품 구매·제작비 등
 - 교육 : 강사비, 자료제작비, 간식(다과) 구입비 등
 - 인건비 : 대표장터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
 - 기타 : 대표장터 운영에 필요한 항목 중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항목
- (정례장터, 테마형장터) 시설·장치비 및 홍보비 등
 - 시설·장치 : 텐트, 매대, 비가림막, 조명, 전기, 카트, 정수기 등
 - 홍보 : 현수막, 전단지, 팜플렛, 신문광고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국고보조 70%
- 의무사항
 -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연 56회 이상 운영, 50농가 이상·50동 이상 운영
 - (정례장터) 연 12회 이상 운영, 15농가 이상·15동 이상 운영
 - (테마형장터) 최소 2일 이상 운영, 15농가 이상·15동 이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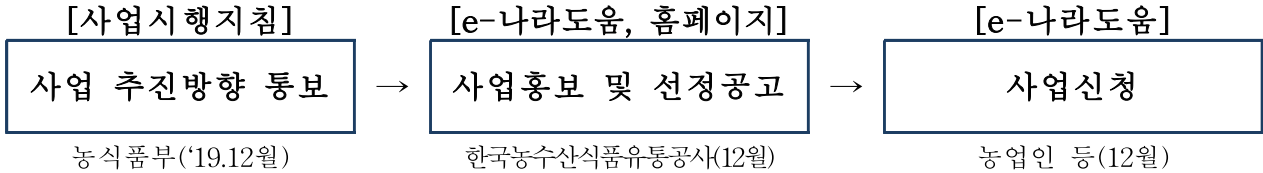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최대 500백만원
- (정례장터, 테마형 장터) 장터당 최대 50백만원
 - * 정례장터와 테마형장터는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등은 심의를 통해 조정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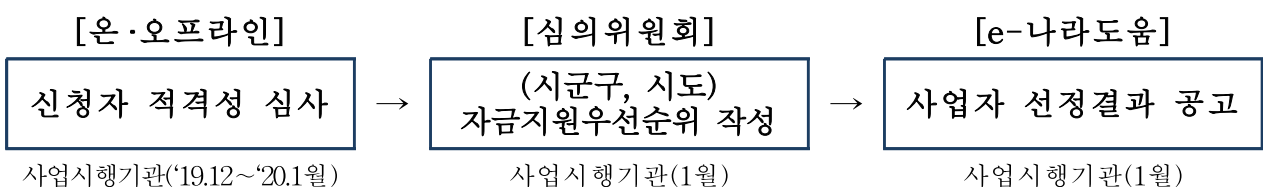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보취약계층으로 지정 및 업무대행 지정 불가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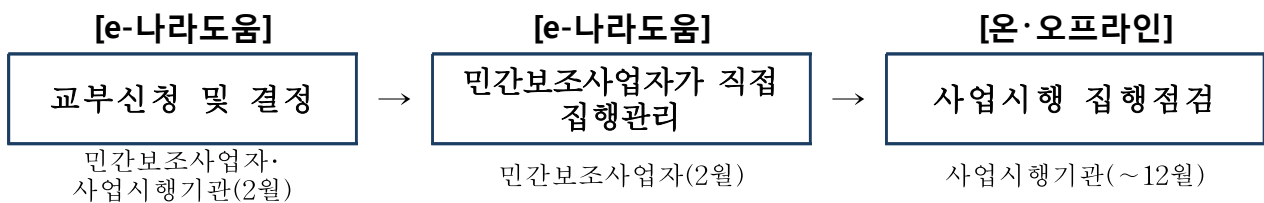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 유사자금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등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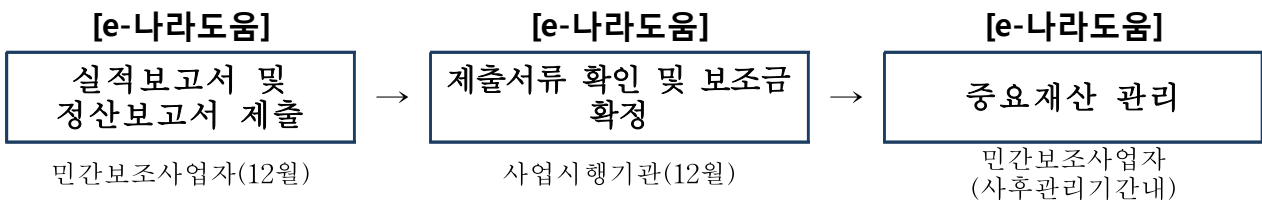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시설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청 전에도 최초 정산 시 미리 공제하도록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환급금 재투자를 승인하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자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을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실적보고서의 내용, 종류 등(서식 포함)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3.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교육,홍보 등)		예산 (백만원)	2,265				
사업목적	생산자·소비자 대상 교육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직거래 확산 기반 마련, 경영컨설팅을 통한 직거래사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활성화 교육 - 소비자 대상 홍보 - 직거래경영정보 운영 -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바로정보) 고도화 및 운영 - 사업추진용 행정경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지원자격 및 요건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등을 운영하는 법인격을 갖춘 직거래 사업자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위탁운영법인이 대상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교육) 교육·교류 지원 개소당 10백만원 내외 등 - (직거래홍보) 직거래 페스티벌, 로컬푸드 서포터즈, 팸투어 등 - (싱싱장터) 시스템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 - (경영지원시스템) 경영지원시스템 보급 등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265	2,265	2,265	2,265			
	국 고	1,265	2,265	2,265	2,2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차 장 강선영		044-201-2285 061-931-1015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1. 사업대상자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로컬푸드직매장 등 직거래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3. 지원대상

- (직거래교육)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직거래홍보)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직거래교육) 생산자교육, 소비자교육(교류), 경영컨설팅 비용 등
- (직거래홍보) 소비자체험행사, 특관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비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 직거래 교육 및 홍보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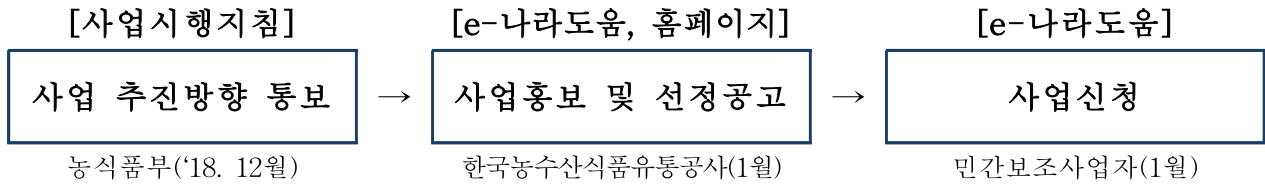
- (직거래교육) 교육·교류 지원개소당 10백만원 내외 등
- (직거래홍보) 직매장 개장 홍보 개소당 10백만원, 직거래 페스티벌 개소당 3백만원 내외 등

*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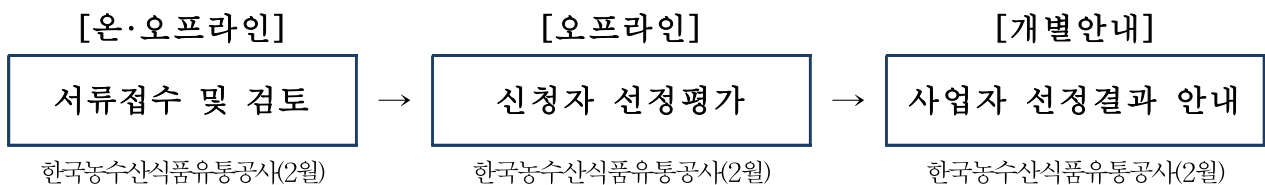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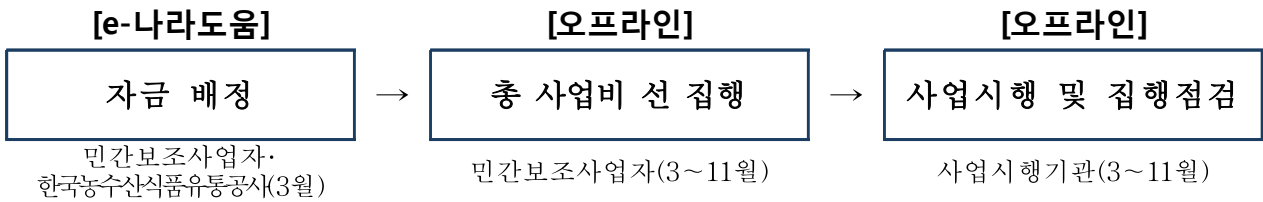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추진(1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신청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1월)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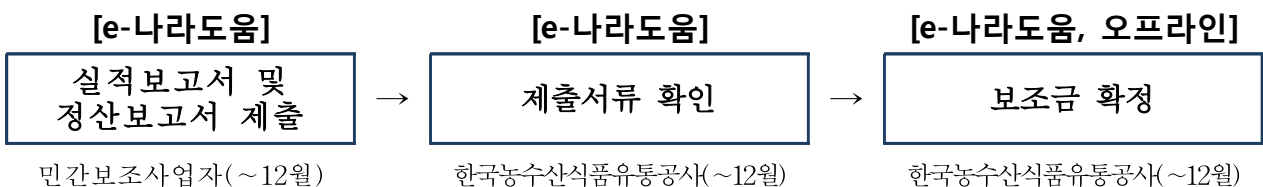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금 배정을 실시
 - 단, 직거래교육·홍보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비예탁형(실적베이스)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선정사업자는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고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예산집행 내역 등) 후 보조사업 실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직거래교육 · 홍보 지원사업 결과보고

1 사업추진개요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일자/장소 :
- 내 용 :

2 추진결과

- 상세내용

행사종류	일정		항목(교육, 체험 등)	비고
	날짜	시간		
	...			

3 추진효과

-

4 행사기간 판매실적 및 참가자 현황

- 판매실적 : 행사기간 매출액
- 참가자 현황 : (농가) 00명 / (소비자) 00명 등

5 행사추진증빙

- 사진
- 참석자 명단(서명 必)

※ 결과보고양식은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내역 변경 가능

- 해당없음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예산 (백만원)	15,260			
사업목적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조직별 배정한도: 상한 150백만원(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 공영도매시장 팻릿 출하 시 국고보조 20% 상향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6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6,450	36,450	36,450	38,150			
	국 고	14,580	14,580	14,580	15,260			
	자부담	21,870	21,870	21,870	22,8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사무관 김아림 차 장 이찬우		044-201-2219 061-931-1035		
신청시기	정기(1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서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펠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항 해당 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에 적합한 조직
 -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제110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중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나. 지원요건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펠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3. 지원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소요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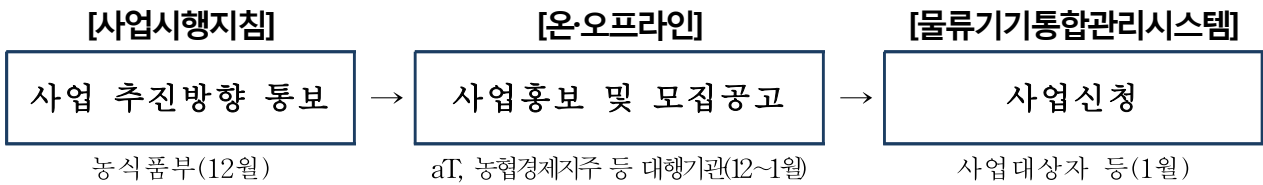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팻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별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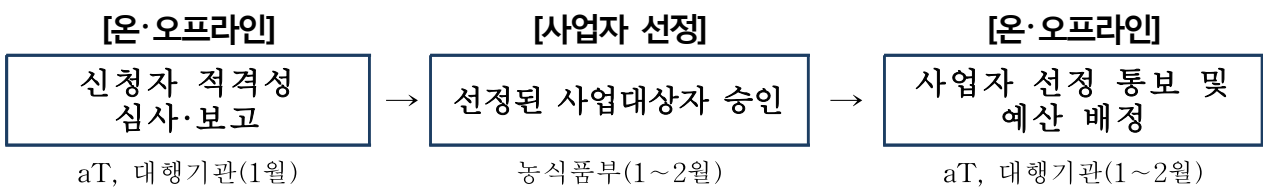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 할당된 배정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우수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
 - 법인조직 이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우수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조직별 배정한도 : 상한 150백만원
 -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20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추진방향을 aT에 통보
- aT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 중에 언론사(농업전문지 등), 물류기기 통합관리전산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대상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
 -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aT는 각 대행기관의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농협경제지주, (사)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사업안내, 사업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접수 및 취합하여 aT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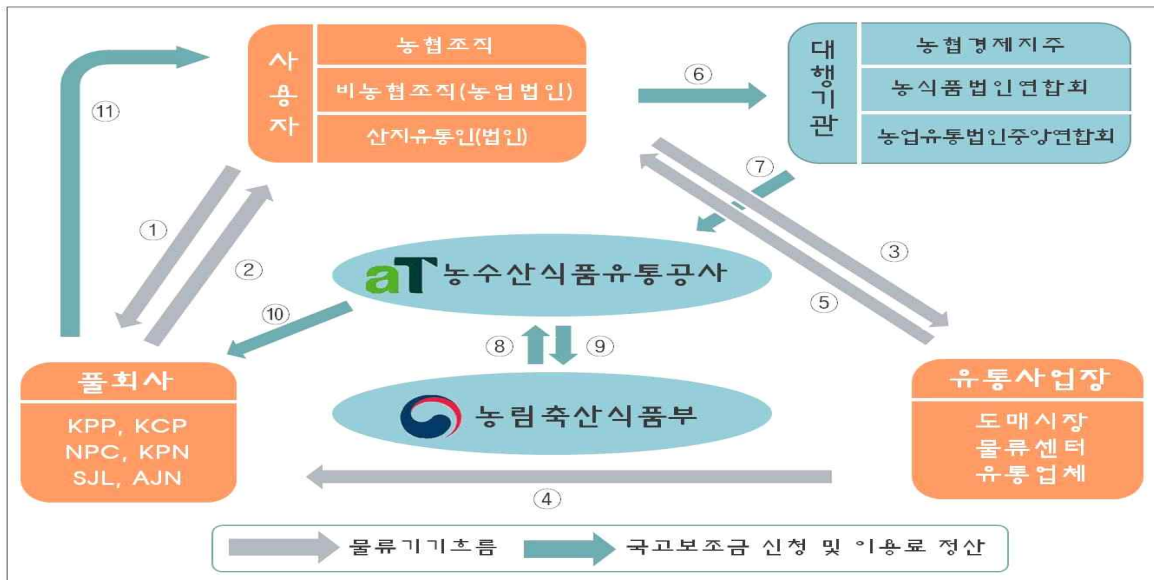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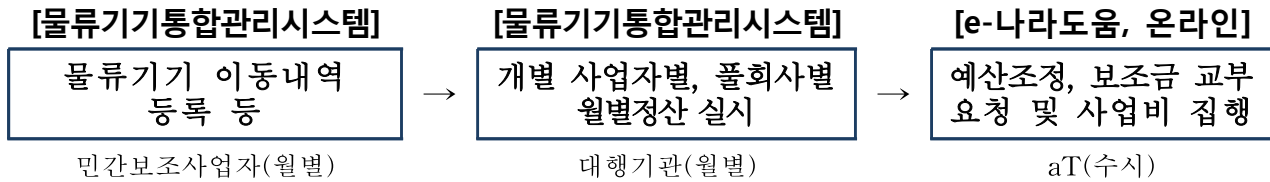
- aT는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입력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 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aT는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 계획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대행기관에 통보
- 대행기관은 선정된 사업자 대상 결과통보 및 사업관련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사업내용, 시행절차,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상세히 안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물류기기 임차를 풀 회사에 요청
- 풀 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 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 풀 회사는 산지 사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를 회수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하고, 자차운반 조직의 내역을 확인



4. 자금배정 및 이행점검



가.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aT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분기 또는 반기별 가능)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aT는 예산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하고 사업비 정산은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 사업비 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 적용 불가
- 대행기관은 수시로 사업자별 사업여건 및 집행실적과 불용예산 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aT의 승인을 받아 유통주체별 사업자간 예산조정을 시행하고 aT는 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농협 조직은 매월 해당분의 보조금을 농협경제지주에 신청하고 농업법인(산지유통인 포함)은 매월 보조금을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신청
 -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사전 납부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같음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 보관
 - * 대행기관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내역과 월별이용내역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 및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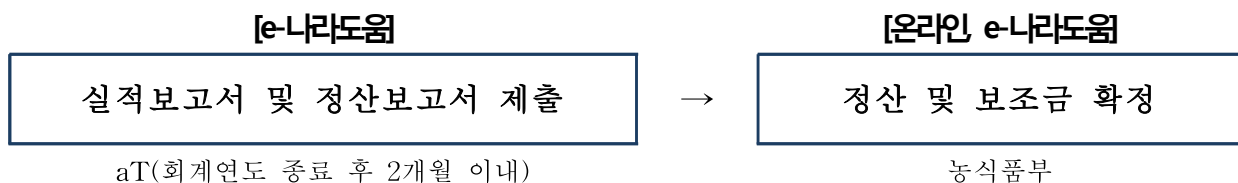
나. 이행점검

- 농식품부 및 aT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대행기관 합동) 실시
 - * 현장점검 시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여부(표준규격품 생산자 표시 등) 등 지도·점검
- 현장 점검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등 사례 발견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 aT는 필요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업대상자 관리, 업무수행 등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 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 aT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5. 정산 및 사후관리



- aT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 등록
 -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농식품부는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aT는 사업정산 결과, 이용 실적(품목, 사용주체, 출하처, 대행기관별 이용현황), 집행 실적 등을 포함하여 실적보고서 작성, 농식품부에 제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유통사업장별 하역기계화율 조사 및 결과보고

2. 환류

- 당해연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차년도 사업비 및 인센티브 배정

[별표]

사업기준단가(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펠릿	760	940	1,00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14	345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828	690
상자형펠릿	2,150	3,950	2,800	8,900	890	5,340	4,450
펠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2,616	2,180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펠릿	730	860	96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08	364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528	924
상자형펠릿	2,120	3,600	2,760	8,480	848	3,392	5,936
펠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1,600	2,8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펠릿	520	530	69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상자	130	120	170	420	42	168	294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 농산물 산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저품위 농산물의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퇴·액비화 등 자원화 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목, 건축, 기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 자원화 시설의 설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 ○ 지자체보조(국고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개소당 사업비 총액규모는 100억원 이내 - 사업기간 2년으로 1년차 20%, 2년차 80% 수준에서 연차별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	2,000			
	국 고	-	-	-	1,000			
	지방비	-	-	-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안만물		044-201-2223 061-931-1021		
신청시기	별도 공고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							

1. 사업대상자

- 저품위 농산물에 대한 자원화 시설 설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부지 확보, 관련 인·허가 검토 등이 사업 신청·접수 당시 완료되었으며 시설 운영 주체·운영비 확보 등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가능성 등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지방비 확보, 관련 인·허가 검토가 완료되었거나, 그 준비상황에 대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 운영주체, 운영비, 비상품화 농산물 원료 확보 및 생산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비,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 * 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 등 전문가 지원단 운영에 한하여 연도별 사업비 5천만원 이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반영 가능
- 토목공사 : 사업부지 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건축공사 : 농산물 반입장, 퇴비화·자원화 시설, 저온 저장시설, 창고, 사무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 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자원화설비 설치공사 및 장비

- 주요설비 : 자원화에 필요한 주요 처리 설비(전처리설비, 주처리설비, 후처리설비, 악취제거 설비 및 저장설비 등)
- 운영관련 장비류 : 화물차량,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폐수처리시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등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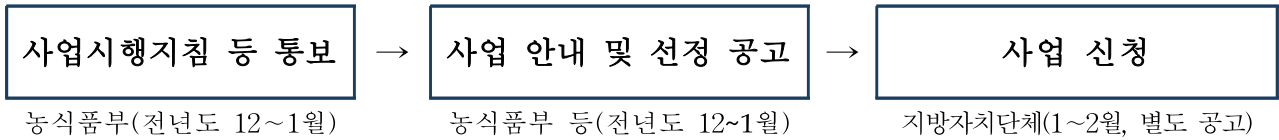
○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 부지매입비 또는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자원화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 설치, 장비 구입도 가능하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4. 사업기간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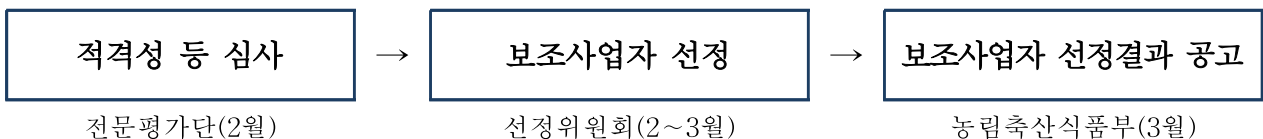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국고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기준 사업비 : 100억원 이내(국고 50억원, 지방비 50억원)
- 연차별 국고지원 : 1년차 20%(국고 10억원), 2년차 80%(국고 40억원) 수준
- * 예산 확보·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연차별 국고지원액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 등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지침 등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시·도 등에서는 신속히 사업을 안내(전년도 12~1월)
- 시·군은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토지·지방비 확보(계획) 등 사업준비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후 시·도에 제출(별도 공고)
 - * 건축·시설 설치 등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처(부서) 협의 또는 검토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시·도는 제출된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시·도별 1개소를 선정 후 농식품부에 관련 자료일체를 제출(별도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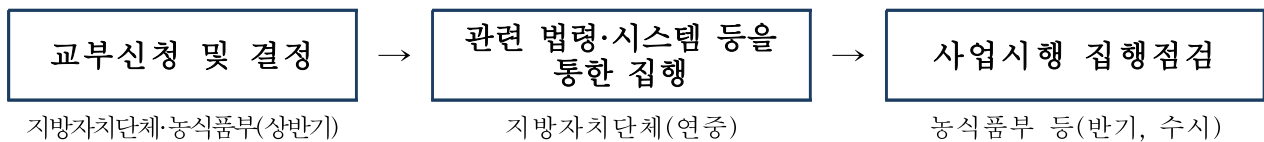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의 주관기관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로 지정하여 신청자의 적격성 등 심사,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추진(2월)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일정 등 세부적인 선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운영을 지원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출 서류 검증 등에 노력하며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확정 후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지 및 공개하며, 해당 시·도는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확인된 사업계획 보완사항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3월)
 - *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aT) 세부사업비 심의 → (지자체) 세부시행 계획,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 세부시행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 (지자체)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의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월별 공정 계획, 자금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서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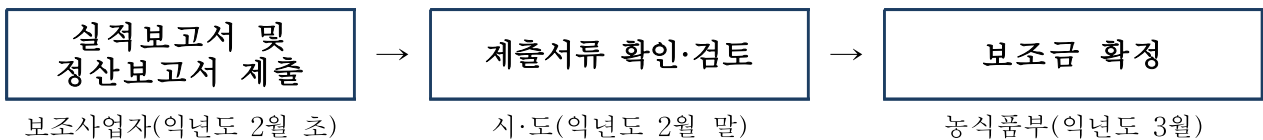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시행계획서 승인처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사항을 안내한 후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검토하여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
 - 보조사업자는 승인된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보조금 집행이 가능,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시·도, 농식품부 협의 필요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국고 보조금, 지방비 집행과 관련된 법령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식품부 보고
 - 다만, 주요 사업내용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기본방향, 사업비 변경금액의 합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농식품부는 시·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함께 사업추진 이행 및 집행 실적 등 점검을 반기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문제점이 확인 될 경우에는 추가로 수시 점검이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해당 시·도에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보완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제출(2월)
- 중요재산을 취득 및 운영하는 주체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시·군)가 원칙이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식품부와 협의하며 사업의 관리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
 - * 중요재산의 현황 관리(공시), 부기등기 시행 등 주요사안별 협의 필요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비고
	부터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건물 등 등기가능 한 대상 	준공일부터	13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으로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은 사업개별 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시·도에서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 설비 등) 	준공 또는 취득일부터	7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부터	6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구입일부터	5년간	

- 시·도는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참조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감리, 검수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를 기하며, 지원된 시설물이 보조금 지원 목적과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할 것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해당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과 병행하여 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까지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완료
- 농식품부는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등의 조치

2. 평가

- 농식품부는 1년차 사업의 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2년차 사업의 컨설팅 운영에 대한 사업비·내용 조정 등 계획을 변경 조치

< 서식 1 >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 (인)	지방자치단체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 화		Fax/e-mail		
신	사업부지 (대표)	도		시.군		읍면동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국유지, 도.시.군유지, 사유지)				
청	설립.운영주체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화		Fax/e-mail
내	주요내용									
	역	지방비 확보계획 (백만원)	구분	건설비			운영비			
연도			'20	'21	'22	'23	'24	'25	'26	
금액										
<p>관계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 ○ ○ 장 (인)</p> <p>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p>										
<p>※ 필수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토지·지방비 확보(계획) 및 인·허가 검토자료 등 증빙서류</p> <p>○ 사업계획서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계획 : 추진배경, 필요성, 관련된 농산물 생산 등 현황, 사업부지 확보 및 부지여건, 건축 등 구축 계획, 추진일정, 기존 시설 연계·활용방안, 기대효과 등 포함 - 운영계획 : 목표 및 중장기비전, 핵심사업 추진전략, 운영주체, 운영재원 확보방안(운영비 등), 자립화방안,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방안, 지역 내 협조체계 구축방안, 사후관리 체계 포함 <p>○ 토지·지방비 확보 증빙자료(계획) 1부</p> <p>○ 인·허가 검토자료 등</p>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1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 농가 조직화, 공동 선별·계산 활성화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가 조직화, 공동 선별·계산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을 위해 조직화, 홍보·마케팅 항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사용 등의 조직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조직 : 최대 200백만원 이내(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조직화 취급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화취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 국고보조 2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 국고보조 1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 국고보조 50백만원 이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국고보조 지원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등급) 100%, (C등급) 80%, (D~E등급) 60% ○ 지자체 : 최대 1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30% -	융자	-	자부담	40%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7,500	7,500	7,500	7,000			
	국 고	2,250	2,250	2,250	2,100			
	지방비	2,250	2,250	2,250	2,100			
	자부담	3,000	3,000	3,000	2,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장호광 -		044-201-2223 061-931-1031 -		
신청시기	전년도 8월 말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사업시행주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 참여조직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을 통한 지원만 가능
- 해당지역에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이 있는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 (예고) '21년 지원부터는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품목광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자체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시·도(품목광역조직)
 - *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되, 자부담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광역조직도 지자체에서 지방비 지원 시 동일비율로 지원 가능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관리 지자체는 조직 사무소 소재지나 필요시 참여조직 사무소 관리 지자체로 할 수 있음

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지조직 : 최대 200백만원 이내(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조직화
취급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 조직화취급액

지원범위	국고보조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2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국고보조 지원한도액 : (A~B등급) 100%, (C등급) 80%,
(D~E등급) 60%

* 전년도 발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은 1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탈락조직은 지원 제외)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액은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

- 지자체 : 최대 10백만원 이내

다. 자금의 용도

- 조직화(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 농가 교육·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 조직화 관련 비용

* 산지조직 담당직원 조직화 및 마케팅 전문교육비 포함

- 홍보·마케팅(통합마케팅조직) : 상품개발,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의 관련 비용

* 지자체 지원은 농가·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에
가능하고, 참여조직 지원은 조직화 항목에 한정(붙임1 참조)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 참여조직, 발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 참여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홍보·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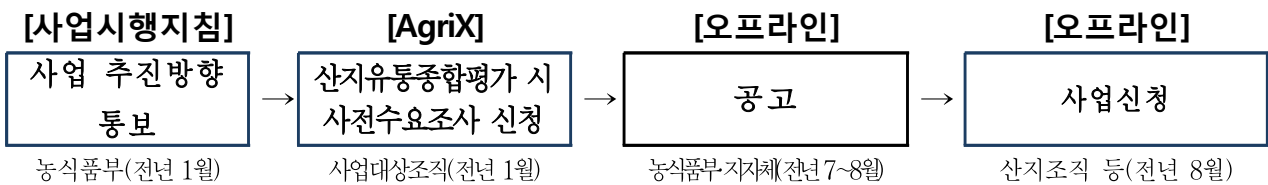
* 참여조직의 자금 사용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
조직이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재교부 받아 직접 집행하였을 경우 산지
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정산

라.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 '20. 12. 31.
 - 확정내시 시행 이후에 지방비 확보 여부, 요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기간을 교부결정일 이전으로 인정 가능(보조금 신청·정산 대상에 포함)
 - * 교부결정일은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한 날짜임
 - * 사업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부터 자금집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사업대상조직 선정·관리·집행·정산 관련 등의 사업과정을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조하여 추진
 - 사업대상조직은 정산자료를 사업기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비 정산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결과를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2월초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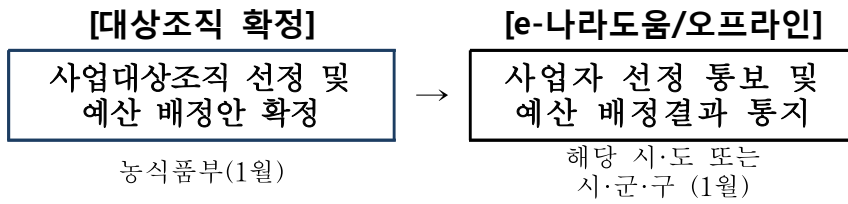
사업대상조직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aT의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前年 1월말)
 - * 사전 수요조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지자체는 제외)
- 최종 사업신청은 각 시·도 또는 시·군·구를 통해서 해야 함(前年 8월)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19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前년도 8월)
- 각 시·군·구에서는 산지조직의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前年 8월)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 신청내역을 취합·조정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前年 8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 및 예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 10월중순)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각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하고 사업계획 제출 안내(전년 12월중순)
- 각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1월)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배정(안)을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12월)
- 각 시·도는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품목광역조직에 즉시 통지(1월)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사업추진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전년 12월)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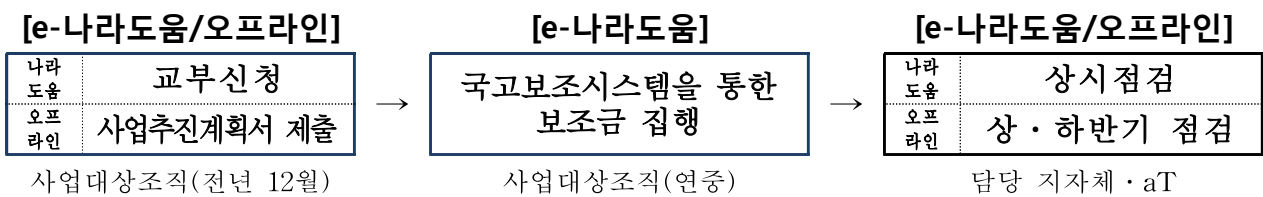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군·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계획 제출 요청과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승인 후 관할 시·도에 제출(전년 12월)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사업대상조직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의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자체 조정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 필요
- * 50% 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aT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 통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조직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조직이 신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일괄 또는 수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신청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교부·집행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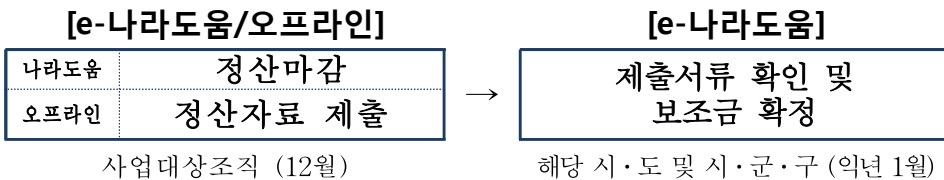
- aT는 세부항목별 집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실적 확인 등에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배정 요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자금배정(일괄 또는 수시)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정산》



사업대상조직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고보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마감(12월말까지)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차년 2월초)

《사후관리》

시·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추진실적 점검(매 분기별 실시)
 - 농산물마케팅자금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 사업점검은 시·도 및 시·군·구, aT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제재》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조직화취급액 등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조직화취급 확대
- * 산지유통종합평가 주요내용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통합사업역량 등
 - 평가일정 : 2~3월(연 1회)

《환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우수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포장제 지원 제외)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③ 교육	○ 지자체의 농가 및 산지조직에 대한 조직화, 홍보·마케팅 교육	
	○ 산지조직 담당직원의 조직화, 홍보·마케팅 전문교육 참가 - 전문교육기관의 장기교육(3개월 이상) 해당(온라인교육 제외)	
계		
<p>*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p> <p>*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p> <p>* 별첨의 세부항목별 인정기준은 참조(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가능)</p>		

<별첨>

2020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인정기준

사업지침 용도		인정범위 및 준비서류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p>※공통사항 : 사업비의 모든 집행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일(시군구에서 통지한 날짜) ~ '20.12.31일까지'의 아래 다섯가지의 기본 서류 제출이 필요함</p> <p>①지출결의서 ②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세부내역) ③계좌이체내역(통장입출금내역) ④결과보고서(접인수조서와 사진, 파일 등) ⑤방침문서(관련근거)</p>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 (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p>○ 농가 대상 교육비만 인정(내부직원이 외부 교육을 받고 농가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결 방침 필요)</p> <p>- 준비서류 : 방침문서(관련근거,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교육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교육내용 등)</p> <p>*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3장 이상</p> <p>- 식대 및 숙박비 : (식대) 1인당 20,000원 이내/1식당,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p> <p>* 식대 및 숙박비는 교육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 가능(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p> <p>-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p> <p>- 강사 : 500천원 이내(교통비 포함이며, 원고료, 식대, 숙박비는 별도)</p> <p>*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등을 준용하여 지급</p> <p>* 식대 및 숙박비는 상기 기준과 동일</p> <p>* 소득세법에 따라 강사 수당(원고료 등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하여야함 (정산 시 원천징수액 포함)</p> <p>* 강사료는 서명 영수증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p> <p>- 장소임차 :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p> <p>* 기념품비, 선물비, 간식, 차량 유류비 등 불인정, 농가조직화와 관련이 없는 각종 평가회 및 보고회 비용 등은 불인정</p>
	○ 농가조직화 컨설팅		<p>○ 농가 대상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조직화관련 컨설팅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도) 인정(내부직원이 실시한 컨설팅 불인정)</p> <p>- 준비서류 :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p> <p>*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p> <p>- 컨설팅위원 수당 : 500천원 이내/1회당(교통비 포함이며, 원고료, 식대, 숙박비는 별도)</p> <p>* 원고료, 식대 및 숙박비 지급기준과 원천징수는 농가 교육비와 동일</p> <p>-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p>
	○ 위탁교육비		<p>○ 농가 대상 외부기관 위탁 교육비만 인정(농가조직화 교육이며, 내부직원 위탁교육 불인정)</p> <p>- 준비서류 :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p> <p>* 외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수료증,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과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p> <p>*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불인정(합숙교육에 따라 식대, 숙박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p>
	○ 산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p>○ 농가원물 및 취급품목 등에 대한 외부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조사비 및 검사비 인정(잔류 농약, 도양검사, 수질검사 및 안정성 검사 포함, 시설개선 비용은 불인정)</p> <p>- 준비서류 : 조사·검사확인증 사본, 조사·검사비 지급내역(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p>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p>○ 농가 조직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도) 인정(내부직원 대상 자문은 불인정)</p> <p>- 준비서류 :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p> <p>*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p> <p>- 자문위원 수당 : "농가조직화 컨설팅"의 컨설팅위원 수당 지급기준과 동일</p> <p>-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p> <p>* 기념품비 및 선물비, 감사패 등 불인정</p>
	○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연수 비용		<p>○ 국내 선진지 연수(농가 대상 국내연수만 인정)</p> <p>- 준비서류 : 방침문서(연수계획 및 일정, 참석자, 소요예산 등) → 연수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연수내용)</p>

사업지침 용도		인증범위 및 준비서류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p>※공통사항 : 사업비의 모든 집행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일(시군구에서 통지한 날짜) ~ '20.12.31일까지의 아래 다섯가지의 기본 서류 제출이 필요함</p> <p>①지출결의서 ②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세부내역) ③계좌이체내역(통장입출금내역) ④결과보고서(검인수조서와 사진, 파일 등) ⑤방침문서(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식대 및 숙박 : “농가 교육비” 지급기준과 동일 * 연수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내부 직원 위주 연수, 직원 가족 참여 연수 및 관광성 연수는 전체 불인정, 연수관련 기념품비 및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차량 유류비 등 불인정
② 홍보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포장재 지원 제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 부분은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디자인 개발, 도안·동판 제작, 용기개발 등 상품개발 비용 및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록비용 등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 → 결과 및 검인수 보고서(예산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포장재 제작비용은 불인정(「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포장재비 별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팸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모바일, 온라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제작비용 인정(유형고정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은 불인정) - 준비서류 : “포장디자인”의 준비서류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촉행사 소요 비용 - 도우미, 식사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관촉행사 :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요(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및 관광성 행사 전체 불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행사내용, 참석자, 소요예산 등) → 결과보고서(내부 및 도우미 참석자 현황, 예산집행내역,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여행사에서 발행하는 INVOICE 첨부, 여행비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 여행사 지급비용 중 관촉행사관련 직원 및 도우미의 항공료, 숙박, 식사비만 인정하며, 일체의 부대비용(현지 교통비, 기념품,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등)은 불인정하고, 여행사에 비용 일체가 포함되었을 경우 견적서에 반드시 그 정산대상 현황 구분 표시, 기타는 정산에서 제외토록 하여야 함 - 장소임차비 및 부스설치비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현지업체의 경우, 입금요청서 등) - 도우미 : 도우미 근무확인서, 통장입금확인증 사본(파견업체 위탁시 세금계산서 포함) 및 근무현장 사진 * 도우미 확인서는 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2인 이상 확인 서명 필요 - 식지원물 : 원물구매시 원가(단가) 및 수량의 적정성 확인서, 통장입금확인증 사본(농가로부터 구입),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결제 전표(일반시장으로부터 구매), 원물 입·출고 확인서 * 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2인 이상 확인 서명 필요 - 홍보물 및 증정품(경품) : 조직명, 관촉 농산물의 로고 및 행사내용 등이 적혀 있는 경우만 인정 * 로고 등 확인 사진 2컷 이상 필요 *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된 입·출고 확인서 필요(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등 2명 이상 확인필요) ○ 국내관촉행사(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불인정) - 준비서류 : 국외관촉행사 중 여행사 지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과 동일 - 장소임차비 및 부스설치비, 도우미, 식지원물, 홍보물 및 증정품 : 국외관촉행사와 동일 - 도우미 교육비 : 교육확인증, 교육기관의 교육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입금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결제 전표 등 - 식대 및 숙박 : (식대) 1인당 20,000원 이내/1식당,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 * 행사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연중 실시하는 관촉행사는 불인정하고, 한 번의 방침문서로 매월 개최하는 형태의 행사 불인정

사업지침 용도		인정범위 및 준비서류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p>※공통사항 : 사업비의 모든 집행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일(시군구에서 통지한 날짜) ~ '20.12.31일까지'의 아래 다섯가지의 기본 서류 제출이 필요함</p> <p>①지출결의서 ②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세부내역) ③계좌이체내역(통장입출금내역) ④결과보고서(검인수조서와 사진, 파일 등) ⑤방침문서(관련근거)</p>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관측전, 시장개척단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p>○ 국외시장 개척 :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및 해외연수 등은 전체 불인정)</p> <p>-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행사내용, 참석자, 소요예산 등) → 결과보고서(내부 참석자 현황, 바이어 명함, 예산집행내역, 계약실적 등 행사결과)</p> <p>*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이고, 시장조사일 경우 면담내용 등 그 결과를 명확히 서술</p> <p>- 집행비용은 국외관측행사와 동일</p> <p>○ 국내시장 개척</p> <p>-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참석자,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행사결과)</p> <p>*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국외시장개척과 동일</p> <p>-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p> <p>- 기타 집행비용은 국내관측행사와 동일</p> <p>* 내부 직원 위주 행사, 직원 가족 참여 행사, 해외연수 및 관광성 행사는 전체 불인정하고, 기념품 및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유류비 등 불인정</p>
	○ 바이어 대상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p>○ 바이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만 인정</p> <p>-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및 일정,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현황, 집행내역, 설명회 및 협의회 내용 등)</p> <p>*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2컷 포함 3장 이상 * 마케팅협의회일 경우 그 결과를 명확히 서술</p> <p>- 장소임차 : 행사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한함(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p> <p>-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p> <p>- 식대 및 숙박 : (식대) 1인당 30,000원/1식당 이내,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p> <p>* 설명회·협의회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p> <p>* 단순 업추추진 성격의 협의회, 기념품비, 선물비 및 간식비 등 불인정</p>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p>○ 방송, 신문, 잡지, 광고판, 온라인 등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홍보비 인정</p> <p>-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사본 → 검인수 보고서(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p> <p>*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p> <p>*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p>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p>○ 농가 및 직원(참여조직 포함) 대상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가 자문비, 컨설팅비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 인정</p> <p>- 준비서류 : 방침문서(관련근거, 교육·컨설팅계획 및 일정,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결과내용 등)</p> <p>*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p> <p>- 자문·컨설팅위원 수당 : “농가조직화 컨설팅”의 컨설팅위원 수당 지급기준과 동일</p> <p>- 장소임차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p> <p>* 기념품비, 선물비 및 감사패 등 불인정</p> <p>-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p>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p>○ 신규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인정</p> <p>-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사본 → 검인수 보고서(예산 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p> <p>*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p>

사업지침 용도		인정범위 및 준비서류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p>※공통사항 : 사업비의 모든 집행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일(시군구에서 통지한 날짜) ~ '20.12.31일까지'의 아래 다섯가지의 기본 서류 제출이 필요함</p> <p>①지출결의서 ②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세부내역) ③계좌이체내역(통장입출금내역) ④결과보고서(검인수조서와 사진, 파일 등) ⑤방침문서(관련근거)</p>
		<p>*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p> <p>○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보험료</p> <p>- 준비서류 : 거래 계약서, 보험증권 사본</p>
③ 교육	○ 지자체	<p>○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농가 대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 대상 조직화, 홍보·마케팅 교육만 인정</p> <p>- 준비서류 : 위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p>
	○ 산지조직	<p>○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 담당직원의 전문교육기관(온라인 교육 제외)을 통한 조직화, 홍보·마케팅 전문교육(3개월 이상)만 인정</p> <p>- 준비서류 : 교육참석자 업무분장표, 교육 수료증,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p> <p>*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불인정(합숙교육에 따라 식대, 숙박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p>
		<p>○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지자체와 별도 협의 필요</p> <p>○ 지자체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교부결정 이후 집행할 경우 집행실적 불인정</p>

[별지 서식]

2021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 사업 신청서

법인 명칭					법인 대표					
주 소					전 화 (FAX)					
품목광역조직여부					전년도 매출액					
신청법인 담당자	직위	성명	휴대전화							
			e-메일							
자본금	출자자별 출자금액(천원)									
	계	농협	영농법인	농업인	기타					
연차별 계획(백만원)	1차년도(2021년)		2차년도(2022년)		3차년도(2023년)					
총 취급액										
계약재배매취액										
공동계산액										
기타국고보조내역(백만원)	1차년도(2017년)	2차년도(2018년)	3차년도(2019년)	4차년도(2020년)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계획 ◇										
2021년 사업신청액 및 추진계획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통합							품목
		국고보조	30%	50%						
		지방보조	30%	-						
		자 부 담	40%	50%						
	계									
사업 추진 계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p>상기와 같이 2021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을 신청하오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월 일</p> <p>첨부 : 산지통합마케팅계획사업 주요 추진계획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 ○ ○ 조합(법인) 대표이사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귀하</p>										

※ “사업추진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

세부사업명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세목	기타민간 용자금			
내역사업명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예산 (백만원)	300,000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단위 사업권역에서 광역화된 사업 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지유통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용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지원한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등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450,000	412,500	400,000	375,000			
	용 자	360,000	330,000	320,000	300,000			
	자부담	90,000	82,500	80,000	7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원예사업부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장호광 계 장 장동협		044-201-2223 061-931-1031 02-2080-6368		
신청시기	매년 1월(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공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사업신청일 기준)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인 농업법인의 경우 ①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②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③ 농업인 조합원(주주) 20명 이상(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생산자단체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여 인정, 참여조직이 전년도에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취급액의 90% 이상을 출하했을 경우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모두 인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 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 지자체의 출자지분은 인정하지 않음) 해야 함
 - * 참여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5명 이상 및 농업인 주주 지분 50% 초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해야 함
 - 임산물류·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품목(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 포함) : 통합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1개 이상의 참여조직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50억원 이상 및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 취급률 35%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년에 한하여 조직화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 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만 있는 농협의 경우에는 참여조직이 없어도 허용
 - * '22년까지 품목광역조직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단계적 확대(예고)
 - ① 총취급액 : ('20) 70억원 이상 → ('21) 85 → ('22) 100
 - ② 조직화취급액 : ('20) 50억원 이상 → ('21) 60 → ('22) 70
 - ③ 조직화취급률 : ('20) 35% 이상 → ('21) 40 → ('22) 50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률 35%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년에 한하여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 '22년까지 조직화취급률 단계적 확대(예고) : ('20) 35% 이상 → ('21) 40 → ('22) 50
 - * 조직유형 변경(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기존 실적을 연결하여 인정하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간의 통합 또는 지역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의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참여조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 등 2억원 이상
 - * (예고) '21년 평가·지원부터는 참여조직의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이 20% 이상인 조직만 선정
- 자금 배정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

- 참여조직은 1개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자금을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액(인센티브 포함) 차등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하는 참여조직의 경우 당해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17년 평가결과부터 3년 연속 기간 적용)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이 산지유통종합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 지원된 자금 전액 회수(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이며, 반납기한은 대출취급기관의 반납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4월 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목표 비율 : 50%
 -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연도별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예정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등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물확보자금 :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 출하약정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약정수탁을 위한 자금
 - 계약재배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재배하여 매취하기 위한 자금
 - * 선지급금 : 수탁 시 최종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자금
-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 구입자금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및 기간 : 1.0~3.0%(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단, 산지유통종합평가에 처음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첫해연도에 한해 금리 0.5% 추가 인하 적용)
 - 참여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참여조직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 지원된 자금 전액에 대하여 최고금리 적용(1년 : 4.1일부터 다음 연도 3.31일까지)
- 금리 차등 적용시기 :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자금 중 당해연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금은 당초 적용금리 유지 후 상환
- 사업 참여농가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금리 차등화 기준>

* 기본원칙 : 농협조직과 농업법인 등 분리평가 결과 적용

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차등금리 적용기준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평가 등급 및 적용금리		
평가순위	평가등급	적용금리
상위 10% 이내	A	1.0%
10%~30%	B	
30%~50%	C	1.5%
50%~80%	D	2.0%
80%초과	E	80~90% : 2.5%
		90%초과 : 3.0%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순위	적용기준
상위 10% 이내	지원금액의 30% 이내
10%~20%	지원금액의 25% 이내
20%~30%	지원금액의 20% 이내
30%~40%	지원금액의 15% 이내
40%~50%	지원금액의 10% 이내
50%초과	없음

* 차등 적용금리 : 농업법인 등은 90% 초과 조직도 2.5% 적용

○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지원기간 : 1년

○ 인센티브(무이자) 지원한도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에 대한 기본 및 추가 인센티브 총액은 250억원 한도

○ 페널티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사업대상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미 충족하여 탈락한 조직은 페널티 부과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이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지원된 자금 전액 회수

* 기 지원된 전체 자금(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의 회수에 따른 반납기한은 대출취급기관의 반납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4월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 적용

*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2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이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지원된 자금 전액(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에 대하여 4월1일부터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 참여조직은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이 사업대상자 요건 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였을 경우 참여조직의 기 지원된 자금 전액(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나. 추가 인센티브(무이자) 지원 및 페널티 적용기준

- 당해연도(전년도 실적)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 대상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되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인센티브 : 연차평가 결과 (A등급) 30억원, (B등급) 20억원, (C등급) 10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푸드플랜)을 체결한 지자체 소속 산지조직
 - 인센티브 : 연간 5억원 무이자(3년, 지자체 기준)
 - * 지역푸드플랜에 참여(푸드플랜지원센터 등과 협약 또는 계약체결)하고 있는 조직에게 배정
 - * 도단위 푸드플랜의 경우 도에서 추천하는 조직에게 배정
-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조직
 - 대상 : 전년도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출하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
 - 인센티브 : 정가·수의매매 출하액 전액 무이자(50억원 한도, 적용기간 1년)
- 전년도 발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3점) 처리 및 신규 자금 배정액 감액(30%)
 - *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신규 자금 배정 이후 확인될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1회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이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포기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외

다.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기준

- 기준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 자체공판, 군납,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 대상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조직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금리 차등(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차등)

구분	우수조직	보통조직	부진조직
기준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50% 이상이고 출하액 50억원 이상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20% 이상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20% 미만
인센티브 및 페널티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금리 대비 0.5% 인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금리 적용	최고금리 적용 (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 할 경우 당해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17년 평가결과부터 3년 연속 기간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기준이며, 기존 사용금액 합산(총가용액)하여 6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단,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조직화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최소한도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5억원 이상, (참여조직) 1억원 이상

7.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용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직(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12.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 전년도에 용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인정 가능
 -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이 법인의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품목광역조직 의무액평가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 자금을 대출받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재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농가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를 구성하여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 농가의 범위 : 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 세대(개별가족원 단위 지원 금지)로 함으로써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대상조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 기존 산지조직, 농업전문지, aT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신청서(1월) 및 실적(2월)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접수
 -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 및 실적을 각각의 해당기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사업신청 및 실적 입력
 - '20년 사업신청서('21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수요조사 포함) 입력(1월)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적자료 입력(2월)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인확인서 등 사업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실사 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하여 예비대상조직으로 선정(3월 중순까지)
 -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 등을 별도 평가지표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선정된 예비대상조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조직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3월하순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조직의 신청액(참여조직 포함)과 산지유통 종합평가 등급, 조직화취급액,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 등의 조직형태별 평가순위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자금 배정(금리, 인센티브 등도 구분 차등 적용)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월하순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액 및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500% 이내(종합평가 상위 1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400% 이내(종합평가 상위 3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300% 이내(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20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15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초과)
 - * 전년도 사업의무액 미달 및 미 대출한 금액(참여조직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전년도 자금집행율을 고려하여 배정
 -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초 배정 후 자금 추가 수요조사 하여 자금배정 시는 상위 70%초과 조직도 조직화취급액의 200%이내에서 배정 가능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 및 대출취급기관에 안내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3월말까지)
- 배정 이후 용자포기, 예산 증액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수요 조사 후 추가 배정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에 대한 산지관련 자금지원은 정부 지원자금과 농협자금을 연계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자금배정(안)을 검토 후 확정 공지(3월말)
- 대출취급기관의 한도배정 요청내용 검토 후 한도배정(수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요청한 대출실행기간 연장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신청내용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자금 차입 전월 하순까지) 및 자금 차입(수시)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 후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연장 요청
- 미대출금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기관에 반납
- 자금 차입 및 대출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 제출(6월말, 12월말)

대출취급기관

- 농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자금 신청 및 실행
 - * 사업대상조직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Ⅱ-1) 사업대상자 요건 등을 검토·확인 후 대출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자금 신청 후 대출 완료
 - * 추가자금 배정조직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완료
 - * 대출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금 미대출 시 미대출금액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 농식품부 한도배정 후 대여(자금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나,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7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대상조직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이율이 다른 용자건에 대하여 평균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사업대상조직

- 농협조직은 농협경제지주, 농업법인 등은 aT에 대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 (Ⅱ-1) 사업대상자 요건 확인 서류 및 대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조직별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조직	대출취급기관
지역(품목)농협조직	농협경제지주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은행
농업법인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 농업법인 대환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aT) 선택 가능

- 대출시 자금을 별도 계정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2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출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되지 않은 금액은 반납
- 추가자금 배정조직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완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aT, 농협경제지주) 합동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매 분기별로 실시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의무액 실적 점검은 농안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aT, 농협경제지주)간 합동점검 실시
 - * 농협은행이 대출취급기관일 경우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와 농협은행 대출사무소에서 사업의무액 합동점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 실적 증빙자료 등을 실사 확인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6월말)
- aT 및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 보고(7월말)
 - * 사업의무액 점검 시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병행 실시

사업대상조직

- 전년 실적에 대한 사업의무액 실적을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실적을 사전 입력(2월)
- 대출취급기관 실사(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포함)시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 실적 증빙자료 제출

《제재》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합동점검 및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aT 또는 농협경제지주는 조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1.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촉진
 -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립·공지(당해연도 1월초)
- aT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8월)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역량 등의 성과 분석

2. 환 류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2.5%) 적용

[별지 서식]

2020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단위 : 백만원)

조직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담당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청유형	지역연합조직 <input type="checkbox"/> , 품목광역조직 <input type="checkbox"/>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input type="checkbox"/> ,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 신규조직 <input type="checkbox"/>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취급액의 50%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출하액 및 개소수	출하액계() 개소수()	기존조직일 경우 자금대출금액	aT	NH	계	
'19년 총취급액		'20년 자금 신청	대출 희망기관	aT	NH	계
			*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신청액 포함(세부내역 첨부)			
'19년 조직화취급액 (원예농산물)	계약재배 매취	자금의 용도	출하약정수탁 <input type="checkbox"/> , 계약재배매취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영농자금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공동계산 수탁		담보제공 물건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신용보증 <input type="checkbox"/> 지급보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합계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금액	물건 소재지				
	지원사업명	물건 소유자				
출자금		감정가격(부동산)				
<p>첨부 : 1.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자금 신청현황 1부, 2.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1부, 3. 사업실적 및 계획서 1부 4.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1부, 5.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1부</p>						
<p>주) 1. 사업신청 조직은 아래 자료를 산지유통종합평가 현지실사 시에 확인을 반드시 받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조직 :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p>2. 또한, 사업 신청조직 중 신규 신청조직일 경우는 아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p> <p>① 사업자 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③ 정관사본 1부</p> <p>* 위 1번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법인 확인한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를 Agrix 시스템에 입력하되, 가결산 자료는 현지실사 전까지 확정완료 하고, 기타 조직자체 추정자료나 세무법인 미확인 자료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한 조직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료 미제출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p>						

통합마케팅 체계

지역연합조직

- 정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의 1개 이상 참여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조직이 출하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한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통합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1개 이상의 참여조직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년에 한하여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품목광역조직

- 정의 :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확보(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년에 한하여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참여조직

- 정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의 1개 산지통합마케팅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가에서 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하는 산지조직
- 주요형태 :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 자격요건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은 5억원 이상, 농업법인은 2억원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 (예고) '21년 평가·지원부터는 참여조직의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이 20% 이상인 조직만 선정
 - *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기초생산자조직

- 정의 :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조직에 소속되어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조합원 또는 출하농가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규모화·전문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직원들의 수익향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생산자조직
- 주요형태 : 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 계약매취회 등
- 요건 : 5인 이상 농가들로 구성하고 자발적 참여, 전략(약정) 출하의무, 판매마케팅 권한 위임, 자율적 운영, 규칙 제정·운영의 원칙 준수

산지조직 원물취급방식 및 실적인정기준

조직화취급 :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1. 조직화취급 개념 및 기본원칙

- 도입목적 : 소비지환경 및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생산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영농기술, 품질관리 및 상품화 경쟁력을 강화
 - 개별 농가단위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서는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어 가격교섭력이 취약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
 -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조직에서 공동으로 선별·출하·판매를 실시하면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 공급 등이 가능
 -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교섭력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 가능
- 개념 : 복수의 농가(5농가 이상)들이 공동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품종, 영농기술, 품질관리, 수확방식 등을 준수하여 생산·출하하고, 산지유통조직과 공동수탁, 계약재배매취 방식의 수직계열화된 유통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거래교섭력 강화, 거래비용절감,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 기본원칙 : 조직이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참여(회원)농가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등급별 판매·정산하는 사업방식
 - 산지유통시설 또는 일정한 시설에서 자동선별기 또는 수작업선별 실시
 - * 수작업선별시에는 품질관리사가 반드시 검품 실시 후 판매·정산
 - 기본원칙을 준수한 매출액(공동계산수탁) 또는 매입액(계약재배매취)에 대해서만 조직화취급액으로 인정함

2. 공동계산 수탁사업

- 개념 : 다수의 농가들이 마케팅 협력조직(공선출하회)을 결성하는 등 공동선별방식, 품질등급, 판매방식, 정산방식(정산기간, 상품화, 판매비용 등) 등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방식
 - * 수탁형 사업으로 상품의 소유권과 사업에 대한 책임·권리가 참여농가에 있음
 - 조직농가 수 : 최소 5명 이상(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복수의 농가조직 운영 가능)
 - 조직이 수립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품질등급별 공동판매, 판매기간 중 품질등급별 평균판매 가격에 기초한 공동정산 실시
 - 공동판매기간(공동정산 적용기간) : 판매처가 1개소인 경우 최소 5일 이상, 판매처가 복수인 경우 1일 이상

○ **공동계산 수탁 요건**

- 계약(약정) 시기 : 농가와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에 따라 재배방법, 기후여건 및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약정) 이행 : 약정서에 명시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상기 계약(약정)시기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수탁하는 단순수탁은 불인정

○ **유형(공동계산수탁 취급 인정유형)**

유형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비고
A	개 별		공 동		농가별 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특성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인정 예시 : 업체류, 풋고추 등
B	개 별	공 동			공동 기계선별 및 수작업선별 품목
C	공 동				공동수확단을 운영 수확 현장에서 선별 예시 : 무, 배추, 감자 등

*위의 A, B, C유형만 공동계산 수탁취급으로 인정(이외 특수사례는 별도 검토)

3. 계약재배 매취사업

- **개념** :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계약(계약물량 및 품질등급별 매입가격 반드시 명시)을 체결하고, 수확 후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농가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사업방식
- * 계약재배 농가조직(출하회 등)을 결성하여 품종, 재배기술 통일, 영농기술 혁신, 공동수확 등을 통한 조직화 역량 강화 권장

○ **계약재배 요건**

- 계약시기 :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에 따라 재배방법, 기후여건 및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이행 : 계약물량과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상기 계약시기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입하는 단순매취는 불인정(포전거래, 창고거래, 정전거래 등 포함)

4. 조직화취급 확인사항

가. 공동계산수탁

○ **[계약(약정)체결] : 출하약정서(출하권 위임 명시) 및 약정관리기록부**

① 출하약정서 : 약정농가명, 약정 농지의 위치·면적, 물량, 계약금(선급금) 명시

* 계약(약정)은 농가별로 체결하고, AgriX시스템에 입력

② 약정관리기록부 : 농가별 약정, 출하, 대금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관리기록부

○ **[조직] : 생산농가조직에 관한 사항(품목별, 농가조직별)**

① 공동계산수탁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규칙(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계산 관련 내용 포함 및 산지조직 대표와 농가조직 대표의 서명)

- ② 공동계산수탁사업을 실시하는 생산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농가명, 주소, 참여연도, 참여 이후 출하실적 등)
- **[공동선별] : 공동선별 작업에 관한 사항**
 - ① 참여농가들의 출하물량 및 공동선별 결과(품질등급별 물량)에 대한 기록부(일자별, 품목별, 농가별)
 - * 참여농가별 대금정산(공동정산) 기록부와 동일한 기록부에 작성 가능
 - ② 공동선별 작업일지(일시, 선별작업 품목, 출하농가별 및 당일 총선별 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의 기록)
 - * 개별농가에서 선별한 경우 품질관리사의 검품기록부(품목, 농가, 일시, 물량, 품질등급, 검품결과 등)
 - * 물량 입고원장(공동수확작업단 운영도 동일)의 물량이 공동선별 작업일지상의 물량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부 확인
- **[공동판매] : 공동판매에 관한 사항**
 - ① 공동선별한 상품의 품질등급별 판매내역(판매일, 품목, 판매처, 판매금액) 기록부 및 증빙서류(출하내역서, 송품장 및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 등)
 - * 출하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및 물량이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보다 크거나 같은 지 여부 확인
 - * 산지조직 자체 가공시설에 원물을 공급한 경우 : 가공시설의 원물매입 내역에 해당조직이 출하한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 기재 후 확인자료 제출
- **[공동정산] : 공동정산 관련 사항**
 - ①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판매 관련 기록사항(공동판매기간, 회원농가명, 품질등급별 출하량, 등급별 가격 등)
 - ②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정산 관련 기록사항(농가 출하내역별로 상품화 및 운송비용 등 공제 후 농가에게 지급한 최종 정산내역)
 - * 공동선별비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동계산으로 불인정(단, 농가 개별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공동계산지침에 따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품질관리사의 품질등급 기준에 따른 검품관리 기록부 제시)

나. 계약재배매취

- **[계약체결]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 및 계약재배관리기록부**
 - ① 계약서 : 계약농가명, 계약재배 농지의 위치·면적, 품질등급별 단가, 물량, 계약금 명시 및 계약금 지급내역 자료
 - * 계약은 농가별로 체결하고, AgriX시스템에 입력
 - ② 계약재배관리기록부 : 농가별 계약, 출하, 대금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관리기록부

- * 포전거래, 정전거래, 창고거래는 불인정
- * B2B거래를 통한 원물확보 시 원물공급 조직은 반드시 계약재배를 실시해야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매입] :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 확인서**

- ① 매입원장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에 명시된 품질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한 매입원장
 - * 계약기간 중 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품질등급별 조정단가 인정
- ② 원료매입확인서 : 원물을 출하한 농가 및 출하조직별 임금확인 내역
 - * 도·소매시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 및 조직으로 부터의 실적은 불인정
 - * 긴급한 원물확보 매입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은 가능하나 실적으로는 불인정

○ **[선별] 및 [판매] : 공동계산수탁과 동일 적용**

- ① 선별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산수탁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출하약정수탁

- **개념** : 농가 또는 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이 산지조직과 출하처 선정 권한 위임(출하권 위임)이 명시된 출하약정을 파종(정식, 착과 등) 전에 체결하여 판매하는 수탁사업방식(공동계산수탁 포함, 단순수탁 제외)
- **운영방식**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출하약정수탁은 개별농가 또는 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이 산지조직과 출하물량, 선별방식, 품질규격(등급), 판매처 선정, 정산방식 등에 대한 규약과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운영
 - * 출하물량의 약정, 공동의 품질규격, 출하권 위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출하처 선정 권한이 산지조직에게 있어야함)
 - * 개별농가에서 선별·포장하는 경우 산지조직은 반드시 출하 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검품(샘플 또는 전수)을 실시해야함
- **확인사항**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실적은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 산지조직이 수립한 해당 품목별 공동품질규격 및 검품방식(매뉴얼 등)
 - 출하약정서(출하물량 및 출하권 위임 명시), 출하관리장부(품목, 농가별 선별 및 검품일지 등), 공동판매장부(품목, 판매처, 판매일, 판매금액) 및 증빙자료(출하내역, 송품장, 판매처가 발행한 정산서), 농가별 정산내역 장부(운송비 등 제비용 공제, 수수료 납부, 농가별 판매대금 입금)
- **정책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의 사용용도로 인정(계약금, 선도금 등 사용가능)

단순기표

- **개념** : 참여조직이 거래처에 직접 출하한 실적에 대해 통합조직이 정산 등 단순 행정 처리를 하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마케팅 실적으로 기표하는 행위
- **페널티**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물량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 처리 및 자금 감액 배정 등 조치

2020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 농협조직 평가지표

항목	측정내용	기준	배점	비고	
규모화 (25)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가중치 : (300억원 미만) 1.10, (500억원 미만) 1.05 (800억원 미만) 1.03, (800억원 이상) 1.00	조직별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1+조직별 3개년 연 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14	최근 3개년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 - 전기취급액)/ 전기취급액×100	(300억원 미만) 12.0% (500억원 미만) 10.0% (800억원 미만) 8.0% (800억원 이상) 6.0%	4	“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전기취급물량 ×100	(300억원 미만) 10.0% (500억원 미만) 7.0% (800억원 미만) 5.0% (800억원 이상) 2.0%	3	“
	마케팅성과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실적 0.3억원<0.5점<0.5억원<1.0점<0.7억원<1.5점<1억원<2.0점<1.5 억원<3.0점<2억원<4.0점 * 도매시장 실적 제외	2억원	4	
조직화 (45)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 가중치 : (200억원 미만) 1.10, (400억원 미만) 1.07 (500억원 미만) 1.05, (500억원 이상) 1.02	(조직별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1+조 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 율)×규모별 가중치	18	최근 3개년 평균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매입액)×100	65%	15	“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 전기조직화 취급액×100	15%	3	“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전기조직화취급물량)/기조직화 취급물량×100	15%	3	“
	조직화 안정도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수/ 조직화 출하 농가수)×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 기초생산자 조직(5명 이상 구성)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	75%	3	“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공선출하회 및 공동출하회 등 개소수 증가 (1개소 1점, 2개소 2점, 3개소 이상 3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의 기초생산자 조직(5명 이상 구성)	3개소	3	
전문화 (13)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경력 1년 이상) 확보수준 * 1명(1점) ~ 5명(5점) / 참여조직 제외	5명 이상	5	
	역량 강화 교육	①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교육시간계)/(전문인력 확보수×25시간 /인)×100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5시간만 인정 * 설명회, 워크숍 등 단순교육 및 온라인교육은 1회당 최대 4시간 인정	100%	4	100% 이상 교육
		②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6시간/인)×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100%	4	100% 이상 교육

항 목	측정내용	기준	배점	비 고	
통합 사업 역량 (17) (선택)	(지역연합) 통합 마케팅 참여율 (조직화농가 참여율)	① 참여조직이 있는 지역연합조직 Σ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Σ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지역연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 (수출실적 등 제외)	50%	17	출하목표 비율
		② 참여조직이 없는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 (조직화 출하농가 수/전체 출하 농가 수)×100	50%		
	(품목광역) 전문품목 취급률	(전문품목 1개 취급액/총 취급액)×100 * 버섯류 분류 : 느타리, 표고, 양송이, 팽이 * 화훼류 분류 : 절화, 분화	50%	17	
합계	13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인증 실적	시설(GAP, HACCP) 또는 경영관리(ISO9001 또는 14001 또는 22000) (인증시설 수 / 전체 시설 수×100) 20%≤0.5점<30%≤1.0점<40%≤1.5점<50%≤2.0점 * 시설, 경영관리 각각 인정하지 않고, 시설이 1개인 조직은 최대 1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전체 시설		2	최대 5점
	수출실적	5억원≤0.5점<10억원≤1.0점<15억원≤1.5점<20억원≤2.0점 * 참여조직 제외하며, 입금액 기준 * 마케팅성과 항목에 반영 실적은 제외(중복 반영 불가)		2	
	파렛트 출하실적	공영도매시장 출하액 대비 파렛트 출하비율 5%≤0.5점<10%≤1.0점<15%≤1.5점<20%≤2.0점		2	
	온라인 판매실적	총 취급액 대비 온라인 판매비율 3%이상≤0.5점<5%≤1.0점<7%≤1.5점<10%≤2.0점 * 마케팅성과 항목에 반영 실적은 제외(중복 반영 불가)		2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단순 입력자료 오류 및 지연제출 등 * 사업관련 요구자료 제출 등 비협조 : △1.0점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최대 △2.0점 *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제출 지연 : △1.0점(1일당)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자료 입력 : △3.0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사업 대상 취소	

* '20년 평가부터 기초생산자조직은 회칙, 공급체계운영규칙 등이 갖추어야 하고, 공선·공동 출하액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농업법인 등 평가지표

항 목	측정내용	기준	배점	비 고	
규모화 (25)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기준 :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연 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 가중치 : (200억원 미만) 1.07, (300억원 미만) 1.05 (300억원 이상) 1.00	조직별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1+조직별 3개년 연 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14	최근 3개년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 - 전기취급액)/ 전기취급액×100	(200억원 미만) 10.0% (300억원 미만) 5.0% (300억원 이상) 3.0%	4	"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전기취급물량 ×100	(200억원 미만) 10.0% (300억원 미만) 8.0% (300억원 이상) 6.0%	3	"
	마케팅성과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실적 0.3억원<0.5점<0.5억원<1.0점<0.7억원<1.5점<1억원<2.0점<1.5 억원<3.0점<2억원<4.0점 * 도매시장 실적 제외	2억원	4	
조직화 (45)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기준 :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연평균 증가율× 규모별 가중치) * 가중치 : (100억원 미만) 1.07, (200억원 미만) 1.05 (200억원 이상) 1.02	(조직별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1+조 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 율×규모별 가중치	18	최근 3개년 평균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매입액)×100	65%	15	"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 전기조직화 취급액×100	10%	3	"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전기조직화취급물량)/ 전기조직화 취급물량×100	10%	3	"
	조직화 안정도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수/조직화 출하 농가수)×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 기초생산자 조직(5명 이상 구성)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	60%	3	"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공선출하회 및 계약매취회 등 개소수 증가 (1개소 1점, 2개소 2점, 3개소 이상 3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의 기초생산자 조직(5명 이상 구성)	3개소	3	신규
전문화 (13)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경력 1년 이상) 확보수준 * 1명(1점) ~ 5명(5점)/참여조직 제외	5명 이상	5	
	역량 강화 교육	①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교육시간계)/(전문인력 확보수×25시간 /인)×100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5시간만 인정 * 설명회, 워크숍 등 단순교육 및 온라인교육은 1회당 최대 4시간 인정	100%	4	100% 이상 교육
		②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100%	4	100% 이상 교육

항 목		측정내용	기준	배점	비 고
		×6시간/인)×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부가가치 건전성 (5)	총부가가치율	총부가가치/총 매출액×100	10%	3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00%	2	
통합 사업 역량 (12) (선택)	(지역연합) 통합 마케팅 참여율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 × 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지역연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 (수출실적 등 제외)	50%	12	출하목표 비율
	(품목광역) 전문품목 취급률	(전문품목 1개 취급액/총 취급액)×100 * 버섯류 분류 : 느타리, 표고, 양송이, 팽이 * 화훼류 분류 : 절화, 분화	50%	12	
합계	15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인증 실적	시설(GAP, HACCP) 또는 경영관리(ISO9001 또는 14001 또는 22000) (인증시설 수/전체 시설 수×100) 20% ≤ 0.5점 < 30% ≤ 1.0점 < 40% ≤ 1.5점 < 50% ≤ 2.0점 * 시설, 경영관리 각각 인정하지 않고, 시설이 1개인 조직은 최대 1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전체 시설		2	
	수출실적	5억원 ≤ 0.5점 < 10억원 ≤ 1.0점 < 15억원 ≤ 1.5점 < 20억원 ≤ 2.0점 * 참여조직 제외하며, 입금액 기준 * 마케팅성과 항목에 반영 실적은 제외(중복 반영 불가)		2	최대 5점
	파렛트 출하실적	공영도매시장 출하액 대비 파렛트 출하비율 5% ≤ 0.5점 < 10% ≤ 1.0점 < 15% ≤ 1.5점 < 20% ≤ 2.0점		2	
	온라인 판매실적	총 취급액 대비 온라인 판매비율 3% 이상 ≤ 0.5점 < 5% ≤ 1.0점 < 7% ≤ 1.5점 < 10% ≤ 2.0점 * 마케팅성과 항목에 반영 실적은 제외(중복 반영 불가)		2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단순 입력자료 오류 및 지연제출 등 * 사업관련 요구자료 제출 등 비협조 : △1.0점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최대 △2.0점 *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제출 지연 : △1.0점(1일당)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자료 입력 : △3.0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 (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사업 대상 취소	

* 총부가가치 : 매출액에서 판매상품에 투입된 원재료(다른기업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 서비스)의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경상 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를 종합한 금액임(=매출과표-매입과표)

* '20년 평가부터 기초생산자조직은 회칙, 공급체계운영규칙 등이 갖추어야 하고, 공선·공동 출하액 5천만원 이상만 인정

원예산업종합계획

1. 개요

- 목적 :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군, 시도단위의 체계적인 원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산지유통정책과 연계 도모
- 내용 : 지역별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종합육성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포함
 - 지역별 생산·유통 현황과 산지유통시설의 지원계획 및 농가조직화 방안
 - 지역단위 산지유통관련 유관기관·품목별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등
- 기간 : 5년 단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발계획” 수립기간과 동일('18~'22)
 - * 중도수립의 경우에도 농발계획 종료시점과 일치

2. 선정·평가 및 연차평가

농식품부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이행실적 연차평가 계획 및 결과 확정 공지
 -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지자체 등

-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지역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 방안에 대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농발계획” 수립기간과 일치하게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예농산물 현황(생산량, 재배면적, 생산시설·장비, 산지유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차적 육성 방안에 대한 계획 중심으로 수립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
 - 시도는 시군 및 품목광역조직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보고서는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0월)
 - * 필요시 시도, 시군, 품목광역조직이 각각 수립 가능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은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할 경우에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정계획 보고서는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0월)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및 품목광역조직은 매년(2월) 이행실적 연차평가를 받아야 함

- 이행실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현장실사시 증빙자료 제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KAD)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기본계획(9월) 및 이행실적 연차평가 세부계획(1월)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고 산지조직, 농협경제지주 등에 안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신규 또는 수정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11월) 및 이행실적 연차평가(2월) 실시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는 5년 단위로 하고, 수정계획은 매년 실시
 -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 이외의 신규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는 수정계획 평가 시 실시(매년)
 - 이행실적 연차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접수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결과(12월) 및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3월)를 농식품부 제출

3. 환류

-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지원 확대 및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고 부진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페널티 부여
 - 지자체 소속 통합마케팅조직 무이자 인센티브 추가 지원
-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 부진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 및 보조금 지원 보류
 - *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승인취소 시점부터 보조사업 신청 제외
-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산지관련 보조사업(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등) 지원 제외
- 원예산업종합계획 신규계획 승인 지자체(품목광역조직)는 사업계획 개시년도부터 보조사업 신청 가능

<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

점수	등급	환류
80점 이상	A	인센티브 지원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30억원 추가지원 ▶ 산지관련 사업 우선 선정 ▶ 담당자 해외연수 및 산지 조직화 등 언론홍보 기회 제공
70점 이상	B	인센티브 지원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20억원 추가지원 ▶ 담당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60점 이상	C	인센티브 지원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10억원 추가지원
50점 이상	D	
50점 미만	E	페널티 부여(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외) ▶ 2회 연속 : 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 취소 및 산지관련 보조사업 지원 제외

2020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이행노력 (20점)	이행점검	▶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점검 여부(자율평가 등) * 1회(5점), 2회(10점) / 도는 소속시군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종합하여 점검	10	
	거버넌스	▶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구성(4점) ▶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개최실적(6점) * 1회(2점), 2회(4점), 3회 이상(6점)	10	
생산 (35)	기초생산자조직 육성	▶ 원예농산물 기초생산자조직(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 등) 육성 목표 대비 실적(2점) * 기초생산자조직 : 5명이상으로 구성, 공선·공동 출하액 5천만원 이상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원예농산물 기초생산자조직 육성 전년 대비 증가 수(3점) * 1개소(1점), 2개소(2점), 3개소 이상(3점)	5	
	기초생산자조직 회원농가 확보	▶ 원예농산물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회원농가 확보 목표 대비 실적(10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원예농산물 출하농가 수 대비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출하농가 수(5점) * 실적이 70% 이상일 경우 만점	15	
	조직화 출하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공동계산수탁 매출액+ 계약재배매취 매입액) 목표 대비 실적(10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농가와 시전(피종, 정식 등 계약의정) 실적에 한하며, 포전거래, 창고거래 등은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의 원예농산물 총매입액 대비 조직화취급액 비율(5점) * 실적이 60% 이상일 경우 만점	15	
유통 (45)	통합마케팅 확대	▶ (전체) 통합마케팅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목표 대비 실적(15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지자체) 통합마케팅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전년 대비 증가율 (10점) * 실적이 20% 이상일 경우 만점 ▶ (품목광역)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전년 대비 증가율(10점) * 각 실적은 20% 이상일 경우 만점	25	
	참여조직 참여도	▶ (지자체) 참여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대비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액 비율 * 참여조직 출하율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품목광역)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대비 기초생산자조직 출하액 비율 * 기초생산자조직 출하액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20	
합계	7개 지표		100	
가점	GAP 인증	▶ 원예농산물 GAP 인증 면적(ha) 목표 대비 실적(3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2	최대 5점
	제도화	(시도, 시군) 생산유통 계열화 및 조직화를 위한 조례 제정 여부 (품목광역) 기초생산자조직 육성·지원 등에 대한 자체 계획 및 이행여부	3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단순 입력자료 오류 및 지연제출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2점 *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 제출 지연 : △3점(1일당 △1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 (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승인 취소	

* 도는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된 소속시군 등의 각 항목별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이행점검, 거버넌스, 제도화 제외)
* 농업법인은 '20년 평가부터 회칙, 공급체계운영규칙 등이 갖춰진 기초생산자조직(계약매취회 등)과 소속농가만 인정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계속)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계속)			예산 (백만원)	126			
사업목적	○ 인삼·특용작물을 제조·가공·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해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별도요건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지원한도	○ 신규시설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40~60	용자	-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100	2,100	420	2,100			
	- 국고보조	630	630	126	630			
	- 국고용자	-	-	-	-			
- 지방비	860	860	172	860				
- 자부담	610	610	122	6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특용작물 담당과		인삼·특용작물 담당자		-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19. 12. 10일까지 시·군 신청 : '19. 12. 15일까지 시·도 신청 : '19. 12. 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 단, 연간 60톤 미만 규모인 경우, 시·군에서 대상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일정 기한내에 생산규모를 사업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사업자

(1) 시설규모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물량처리 확대, 생산공정 개선 등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개선 등
 - *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 제외
 - * 가동률 산출기준 : 제조, 집하, 선별, 포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나. 별도요건(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단,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경우는 가능
 - * 출자금 및 조합원,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11월 31일 기준
 -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다. 지원제한 기준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 대상

- 인삼·특용작물 관련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SW부문

-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예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 인삼·특용작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지원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1)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시행 전년도 11월말)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사업시행 전년 12월 10일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 사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에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전자문서 형태)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특용작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 12월 15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자부담이 미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의무 제출
 - * 자부담 의무 확보율 : 사업신청단계(사업시행 전년 12월10일) 10%, 사업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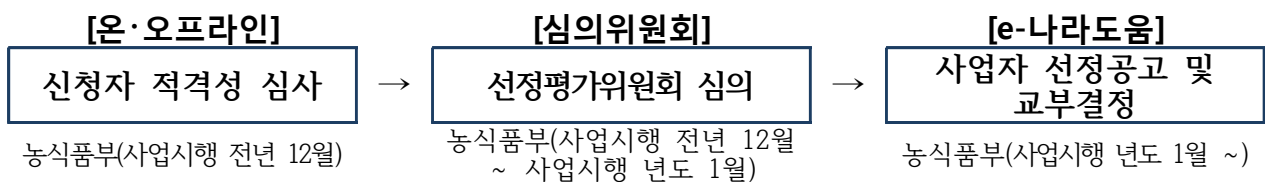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 12월 31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 각 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 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운영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및 세부 사업계획 타당성 등 검토

< 지자체의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특용작물산업 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특용작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특용작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특용작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사업 성과·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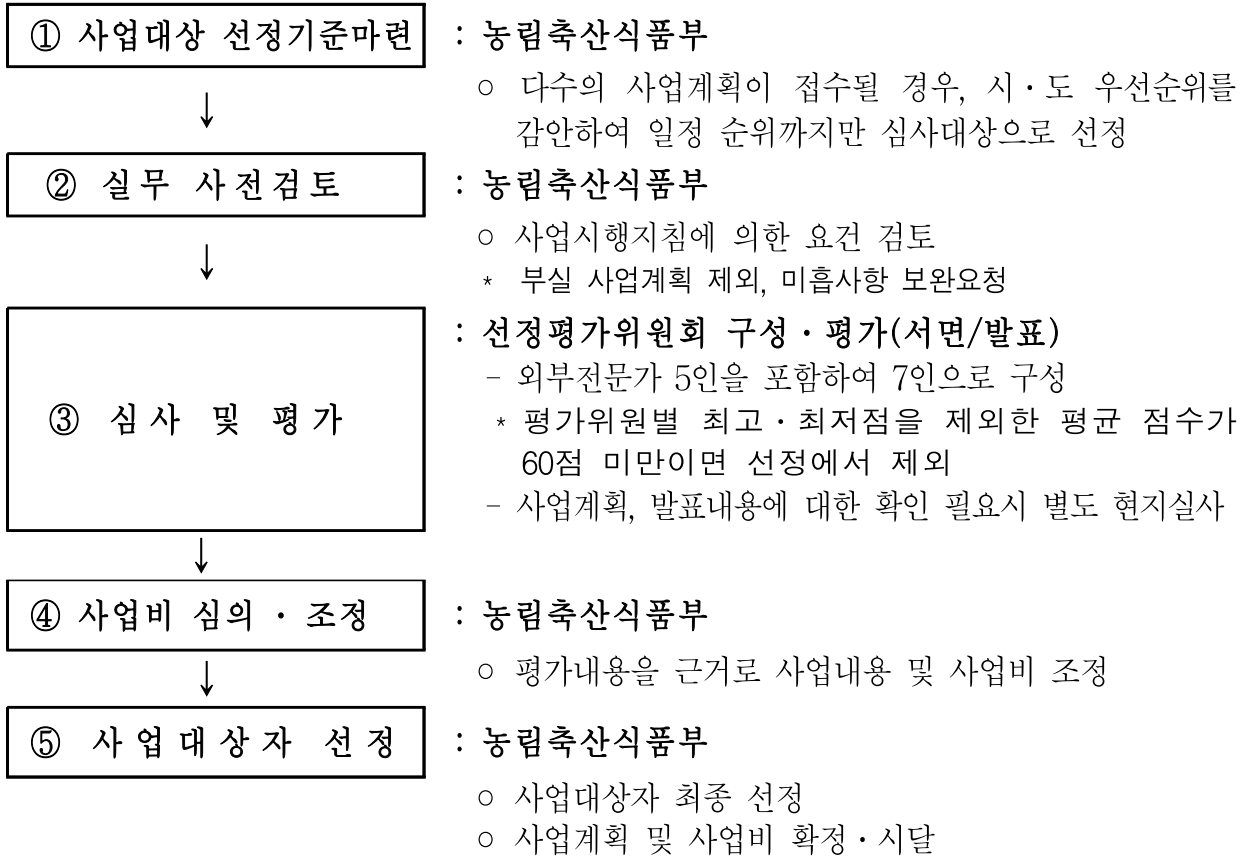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 ~ 3개 이상 시·군의 인삼·특용작물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은 가점 부여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직은 가점 부여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지역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 계획 연계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연간 처리물량, 목표, 시설 가동계획 등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사업대상자의 설치자금 조달계획, 재무구조 등 운영 자금 조달능력, 확보계획, 경영능력
3. 생산 혁신	○ 고품질(GAP 등) 원료 확보를 위한 생산계획, 기술 지원, 교육 등에 대한 방안
	○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우량 종자(묘)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인삼·품목별 의무자조금 참여 실적 및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부지 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입지조건 등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2~3개 이상 시·군의 인삼·특용작물 자원을 연계 활용한 사업계획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직

○ 심사절차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추진
 -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사업비 내역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한글 파일 송부 또는 별도 CD 제출)

○ 사업법인 운영 관련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이어야 함
 -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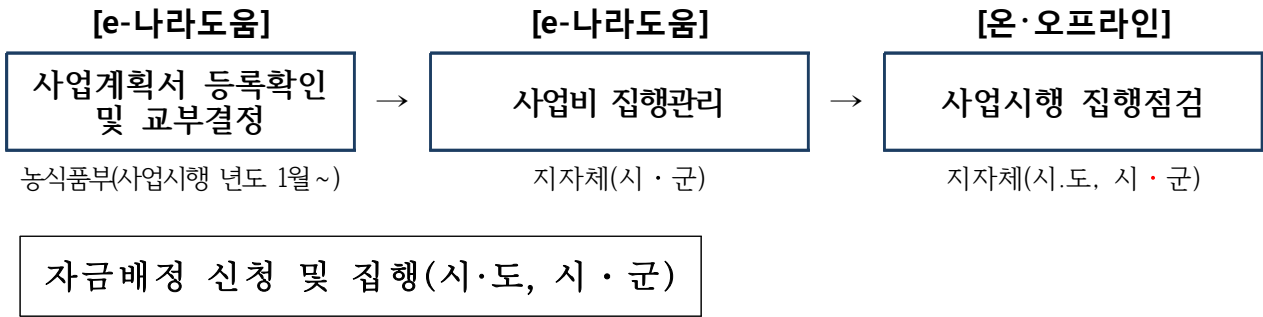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관련

- 사업법인은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 개소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지방비, 자부담분 추가 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 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승인 후 변경 가능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후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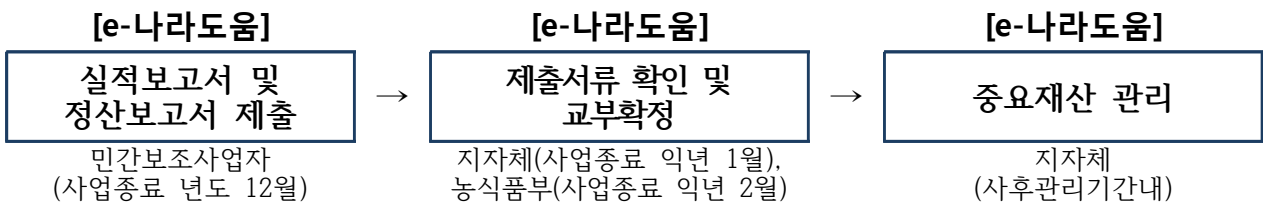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이행점검>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시·도)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 불가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관련시설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 매년 사업자로부터 제출(또는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 철저히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대통령령 제26127호, 2015.3.3.)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 후 정산
- 시장·군수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계	5년	

1. 만족도 조사 실시

- 시·도지사는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2. 사업추진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이내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 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 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 사업 발굴 등

3.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시·도지사는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중간·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평가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한글 2007 또는 그 이상)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면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하단 중앙 등에 해당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세부사업명	자조금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 자조금지원(단체)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원			예산 (백만원)	8,110 1,000		
사업목적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및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의무자조금 단체 ○ 임의자조금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통합자조금 단체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지원한도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재원구성(%)	국고	50 (센터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5,220	15,220	16,220	17,220		
	국 고	7,610	7,610	8,110	9,110		
	지방비	-	-	-	-		
	용 자	-	-	-	-		
	자부담	7,610	7,610	8,110	8,1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품목자조금 담당부서 산지경영부		사무관 김아림 차 장 이찬우		044-201-2219 061-931-1035	
신청시기	정기(당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		자조금단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 결성을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나.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다.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 이내에 의무자조금 결성을 전제로 주산지협의체 등이 모여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경우(담당과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억원 한도내에서 소비촉진,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 지원
-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이하 자조금 운영 고시) 별표 중 광고(0110목), 소비촉진(0120목), 거출홍보(0610목), 교육(0620목), 정보제공(0630목), 성과평가(0730목) 용도로만 지원 가능
 - 매칭비율은 임의자조금 매우우수 등급(매칭비율 70%) 적용
 - 사무국 등 운영비는 사업비(국고지원액+자부담)의 30% 이내로 한정
- 라. 통합자조금 : 기존 전국단위 임의자조금과 해당품목 지역자조금이 통합하여 3년 내에 전국단위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경우(담당과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3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 한도내에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 지원
- 자조금 운영 고시 별표 중 거출홍보(0610목), 교육(0620목), 정보제공(0630목), 성과평가(0730목) 용도로만 지원 가능
 - 매칭비율은 임의자조금 매우우수 등급(매칭비율 70%) 적용
 - 사무국 등 운영비는 사업비(국고지원액+자부담)의 30% 이내로 한정
- 마.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

3. 지원형태(기준)

- (기본원칙)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매칭으로 지원(운영실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차등지원 : 자조금단체의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통합지원센터 참여 등에 따라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배정(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등급별 지원비율은 변경가능)

구 분	매우우수 (80점이상)	우수 (60~80점미만)	보통 (60점미만)	비고
의무자조금	100%	90	80	
임의자조금	70	60	50	

* 의무자조금 전환 이후 첫 배정은 지원비율을 100%로 적용

- 지원제외 : 직전 3개년 평균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신규 자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자체조성계획으로 대체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분야 농수산물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농식품부 고시) 별표(계정 과목의 종류 및 배열) 항목에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하여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Ⅲ-2 사업승인 단계를 준용하여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지원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검토 후, 사업총괄부서에서 확인·조정을 거쳐 승인

6. 집행결과보고(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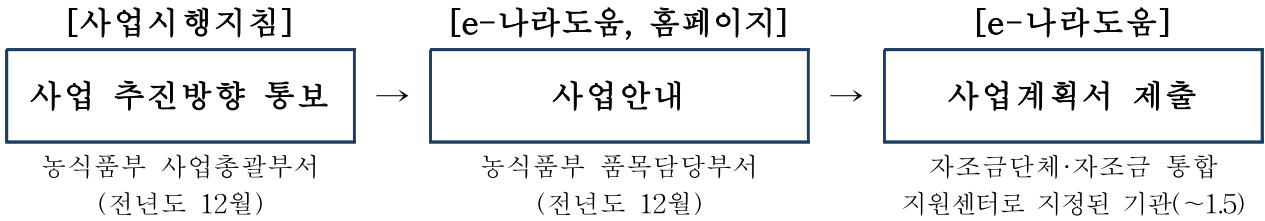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이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이월사업으로 추진 가능(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결과 보고)

※ 지원대상 자조금단체(의무, 임의, 의무자조금 추진, 통합)의 확정, 국고지원 매칭 비율 및 금액 결정 등을 위해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 정책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장) 유통정책과장, (위원) 지원대상 자조금 대상품목 담당 사무관, 외부위원 등 10인 내외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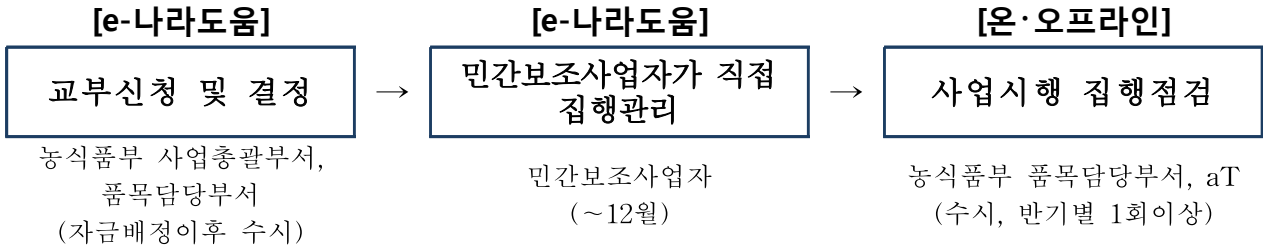


-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 계획을 시달하고,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는 사업신청자격 단체 등에 신속히 사업을 홍보·안내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승인단계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단체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검토의견 등 포함)를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 및 e나라도움에 제출(1월 말까지)
 -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의 평가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계획서를 보완하여 최종 계획서를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 * 사업계획의 승인은 자조금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을 의미하므로 자격요건,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 * 2. 지원자격 및 요건 상 '의무자조금 추진단체' 및 '통합자조금'의 경우 2월말까지 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평가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최종계획서 승인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기관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는 확인 후 승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자조금 단체의 관리규정에 따라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e나라도움을 통해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에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통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은 연간 예산집행 계획(상황)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보조금 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사업총괄부서는 자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통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의 사업추진계획 및 연간 예산집행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교부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교부결정 및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의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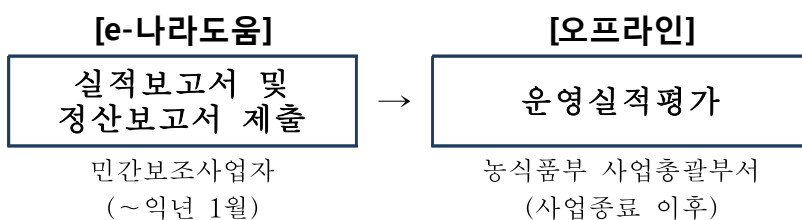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됐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에서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 계산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사업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사업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해야 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평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조금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
 - 기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단체의 경우 임의자조금 실적 승계
 - * '19년 운영실적은 '20년 초에 평가하여 '20년 사업에 적용
 - * 평가 세부요령 등은 별도 계획 수립·통보 예정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는 운영실적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2. 환류

- 사업 평가결과는 자조금단체 보조금 지원시 활용되며, 단체별 평가등급에 따라 보조금 비율 차등 배정(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등급별 지원비율은 변경가능)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용자)			세목	기타민간 용자금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22,500		
사업목적	○ 친환경농축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판매장 개설을 위한 용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운영)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비용 ○ (시설)친환경농축산물 전문매장 신규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한도	○ (운영) 1년,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고정금리(생산자단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운영) 업체당 3,000백만원, (시설) 매장당 500백만원 ○ 시설자금 : 고정금리(생산자단체 연 2.0%,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재원구성 (%)	국고		지방비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9,440	25,000	22,500	22,500		
	국 고	29,440	25,000	22,500	22,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원예사업부 정책금융부		이윤식 사무관 홍금융 주무관 진유진 계장 어영광 대리		044-201-2439 044-201-2440 02-2080-6378 061-931-1147	
신청시기	정기(1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유기가공식품업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업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 : 친환경농식품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개인사업자 : 친환경농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농식품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식품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등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식품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판매하는 업체
- 신청제한
 - 당해 연도에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 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 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부실신용 관련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자
 - 제재조치로 대출정지 중인 법인

3. 지원품목 및 용도

- 지원품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축산물,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

※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2020.8.28.)을 위해 법령 개정 중이므로 2021년 8월 29일 이후에 구매 한 무항생제축산물은 지원품목에서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자금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시설자금 : 친환경농식품 전문매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단만 소모성 비품은 제외)

*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물량은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22,500백만원(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100 / 농협경제지주 17,400)

- 사업추진기관별 자금수요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운영자금) 1년 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3,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사업의무량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시설자금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이 대출액의 125% 이상

* 시설자금은 계속 사용여부를 점검 예정이며, 매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이 대출액의 30% 이상(단, 신규 판매장 개설은 대출액의 15% 이상)이어야 함(미달 시 자금회수)

* 대출금 회수 산출방법 : 친환경농식품 의무판매액 - 연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

· (산출예시) 판매장 확장으로 1억원 대출받고 연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이 1천만원인 경우, 대출금 회수액은 2천만원 [3천만원(1억원×30%) - 1천만원]

II

사업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기관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기본계획(사업지침) 수립·시달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사업신청
사업자선정 자금배정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배정 요청 및 대출실행	
이행점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 집행 점검	사업추진 현황, 자금 집행 적정여부 등 확인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환류	평가결과 정책 반영	지원업체 성과측정	사업이행실적 제출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지원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추진기관에 시달('19. 12월)

사업추진기관

- 사업추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 등에 사업자 신청 공고 실시('20. 1월)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사업대상자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사업추진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각 지역본부(11개소) 또는 농협중앙회의 각 시군지부(158개소)에 제출('20. 1월)
 - 사업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운영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 자금(구매) 신청서(붙임1 서식)',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 자금(판매장 개설) 신청서(붙임2 서식)' 제출

2.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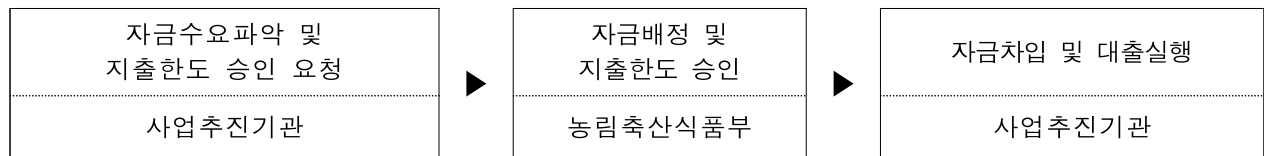
- 자금 배정신청을 근거로 사업추진기관의 지출한도 승인(‘20. 1~12월)

사업추진기관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및 자금 배정(‘20. 1~12월)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지출한도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기관은 담보 확보(시설자금은 시설 설치비용 확인) 대출 실행(‘20. 1~12월)



3.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조치 등(반기 1회)

사업추진기관

- 사업추진기관은「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실적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친환경농식품의 직거래 구매실적 등을 기록 관리하는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추진기관

- 사업추진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대출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대출금의 회수조치 등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Ⅲ

평가 및 환류

《성과측정》

- 매년 전년도 운영자금의 사업추진 성과를 통해 성과지표 측정
 - 측정기관 : 사업추진기관
 - 측정항목 : 친환경농식품 직거래 구매실적
 - 성과목표 : 지원액의 125% 이상 구매
 - 측정방법 : (업체별 친환경농식품 직거래구매금액/지원금액)×100

《만족도 조사》

-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지침의 미비점,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지침 개정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20년 중
 - 조사대상 : 지원 대상업체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 조사기관 : 사업추진기관

5.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사업추진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의무 미달성 업체에 대하여는「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대출 제한 등 조치
- 사업추진기관별 자금집행 실적,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사업예산의 지원규모 배정

6. 보고 및 기타

- 사업추진기관은 동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 사업추진기관별 한도액 배분계획에 따라 예산규모 이내로 자금배정 요청
 - 사업비 지원신청 시 사업 수행능력, 담보능력 및 대출실행 가능성, 최근 3개년 간 직거래 사업자금 대출 및 사용실적(의무액 이행여부) 등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실소요액을 신청
- 수시로 자금사용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친환경농식품 구매여부, 사업의무부담액 이행여부, 장부기록여부 등

《 자금관리 철저 》

- ①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경우 즉시 자금을 반납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② 지원자금이 직거래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관리 철저
- ③ 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자금은 반납 조치
- ④ 단, 대출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대출기한 5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기한 연장 요청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8조(대출실행기한의 연장)

<별지 서식 1>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주 관 기 관 (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농협조직 <input type="checkbox"/> ,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 농업인단체 <input type="checkbox"/>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input type="checkbox"/>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input type="checkbox"/> ,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 신규조직 <input type="checkbox"/>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등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약재배 농가수					
	계약재배 품목 수 (과실·과채류 품목 수)	()		()	()	
	취급액	천원		천원	천원	
	공동선별·출하액	천원		천원	천원	
	가공수출 물량 공급액	천원		천원	천원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설립일자				출자금 (자본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 농협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출자금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 확인) 각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출자금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 확인) 각1부, ④출자지분확인(출자자 중 농업인의 지분이 51% 이상 확인), ⑤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 광역도단위 친환경농업인단체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3억 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 확인) 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공통사항 :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납부확인서('19년분) , 참여조직의 조직구조도, 조합원(소속농가) 및 출자 현황, 계약재배 실적(농가·품목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사업계획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1>

세부항목별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천원)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①교육 및 조직화	◦ 유통·마케팅 교육비		
	◦ 농가조직화 컨설팅		
	◦ 농가조직화 자문비		
	◦ 위탁교육비		
	소 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 친환경생산 관리비		
	◦ 안전성 검사비		
	소 계		
③마케팅·홍보 및 시장개척	◦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관측활동 등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소 계		
④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 SCM(공급망 관리) 구축		
	소 계		
합 계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항목은 조정 가능

<별지 서식 1-2>

2021년 세부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사업비	산출근거
①교육 및 조직화	◦ 유통·마케팅 교육비		
	◦ 농가조직화 컨설팅		
	◦ 농가조직화 자문비		
	◦ 위탁교육비		
	소 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 친환경생산 관리비		
	◦ 안전성 검사비		
	소 계		
③마케팅·홍보 및 시장개척	◦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관측활동 등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소 계		
④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 SCM(공급망 관리) 구축		
	소 계		
합 계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항목은 조정 가능

<별표1>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세부항목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비 고
①교육 및 조직화	◦ 유통·마케팅 교육비	
	◦ 농가조직화 컨설팅	
	◦ 농가조직화 자문비	
	◦ 위탁교육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 친환경생산 관리비	
	◦ 안전성 검사비	
③마케팅·홍보 및 시장개척	◦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물 구축	
	◦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④유통·물류시스템 구축	◦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 SCM(공급망 관리) 구축	

* 상기 항목 이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

<별표2>

사업계획 평가표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 (30)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가? ◦ 참여농가 및 유통시설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의 특성과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일정이 적절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절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적절한가? ◦ 참여농가, 관련기관 및 조직과 연계 및 협조체계의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운영계획 (40)	2-1.조직화 및 규모화(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 추진계획은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 ◦ 농가교육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제시되었는가? 	
	2-2.계약재배 및 작부 체계 구축(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품목 및 물량 확보를 위해 참여농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 작부체계 구축계획은 적절한가? 	
	2-3.안전성 관리(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관리 위한 친환경농가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 안전성 검사 계획은 적절한가? 	
	2-4.시장개발(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선별·공동계산 추진계획이 적절한가? ◦ 공동브랜드가 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안정적인 판매처는 확보 가능한가? ◦ 오프라인 매장, 무점포 시장 개척 계획은 이행·달성이 가능한 수준인가? 	
	2-5.기반구축(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등 업무시스템,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친환경 APC·RPC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는가? 	
3. 사업실적 (30)	3-1.자조금 납부율(5)	◦ '18년 기준 소속농가의 자조금 납부율	
	3-2.품목 다양성(5)	◦ 과실류(사과, 배, 포도 등), 과채류(딸기, 수박, 오이 등) 공급 능력	
	3-3.공동사업 수준(5)	◦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등 생산농가의 공동사업 수준	
	3-4.관련 산업 연계 (5)	◦ 가공·수출 등 관련기업과의 연계(MOU 등)를 통한 안정적 소비처 확보 정도	
	3-5.친환경 매출실적(5)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매출실적('18~'19년)	
	3-6.계약농가 확보 현황(5)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실적('18~'19년)	
합 계	100점		
가 점 (10)	사업 참여법인 수(3)	◦ 사업 참여법인 3~5개소(1점), 6~10개소(2), 11개소 이상(3)	
	학교·공공급식 참여법인 수(4)	◦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법인 중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공급법인 1~3개소(1점), 4~6개소(2), 6~10개소(3), 11개소 이상(4)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수(3)	◦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법인 중 도 또는 시·군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1~5개소(1점), 6~10개소(2), 11개소 이상(3)	

※ 사업신청자는 평가항목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별표2-1>

사업계획 평가표의 실적항목 부여 기준

3-1.자조금 납부율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2.계약재배 품목 중 과실류·과채류 공급능력	13개 품목 미만	13~15개 품목	16~19개 품목	20~22개 품목	23개 품목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3.공동사업 수준 (전체 취급액 중 공동선별· 출하액 비중, 곡류 제외)	5% 미만	5~10%	11~15%	16~20%	21%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4.산업 연계성 (전체 취급액 중 가공용· 수출용 물량 공급액)	5% 미만	5~10%	11~15%	16~20%	21%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5.친환경농산물 매출규모 (사업신청 법인별 순위)	상위 8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30% 이내	상위 20% 이내
	1점	2점	3점	4점	5점
3-6.계약재배 농가 확보 현황 (사업신청 법인별 순위)	상위 8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30% 이내	상위 20% 이내
	1점	2점	3점	4점	5점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직매장 지원			예산 (백만원)	4,200백만원			
사업목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하는 직거래 공간인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지원자격 및 요건	<p>☞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p> <p>○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경우 선정 우대</p> <p>* 지자체는 선정된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p> <p>≫ 농협(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p> <p>≫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포함) 및 사회적기업</p> <p>≫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및 '연합회'</p> <p>≫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지자체 출연 공익법인</p> <p>◆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p> <p>◆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51% 이상</p> <p>◆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1년 미만인 경우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제외)이어야 함</p> <p>◆ 공익법인은 지자체 출자(출연)에 한함</p> <p>*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요건에 따름</p>							
지원한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도시형직매장, 일반직매장 등 * 1년차 사업: 복합문화센터 최대 6억, 대도시형직매장 최대 6억, 일반직매장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2년차 사업: 인허가 절차 이전에 필요한 설계비와 건축비 일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00	17,500	14,000	14,000			
	국 고	6,300	5,250	4,200	4,200			
	지방비	-	-	4,200	4,200			
	자부담	14,700	12,250	5,600	5,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차 장 강선영		041-201-2285 061-931-1015		
신청시기	전년도 9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직매장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직거래활성화: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선정된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사업비의 30% 지방비 매칭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푸드플랜 연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 또는 예정 지방자치단체(우선 선정)
 -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도 직매장 설치 희망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응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 매장 직영이 가능한 운영인력을 갖추거나 위탁운영할 운영 주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예정인 지자체
- 민간사업자: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의 지방비를 확보한 법인격의 조직

-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미만의 법인은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야 함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및 '연합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 공익법인은 지자체 출연기관에 한함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요건

- 설치유형
 - 일반직매장: 단독매장, 층분리형 매장, 벽체분리형 매장 등
 - 대도시형 직매장: 도단위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광역단위 직매장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일반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공유부엌 등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직매장

- 면적기준 : 부대시설을 제외한 직매장 순수 판매면적 100㎡ 이상(단, 복합문화센터와 대도시형직매장은 200㎡ 적용*)

*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부대시설 면적 제외, 판매장 면적만 200㎡ 이상이어야 함

4.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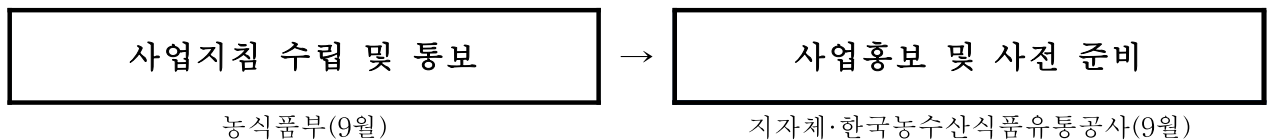
- 총사업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지원용도
 - 직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 * 단, 기자재의 경우 테이블, 의자, 싱크대 등 필수기자재 등에 대해 인정하며, 소규모·소모성 기자재 등은 지양
- 지원한도(사업규모에 맞도록 필요한 액수만 신청 요망하며, 과다신청에 따른 불용액 발생시에는 차후 사업평가에 반영 예정)
 -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대도시형직매장은 개소당 최대 6억원, 일반직매장은 개소당 최대 3억원
 - 2년차 사업의 경우 2020년에는 설계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통해 사업진척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건축 착공비까지 지원 가능

< 각 사업별 운영형태 비교 >

구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도시형 직매장	일반직매장
설치입지	산지·소비지 혼합	소비지(인구30만명 이상)	산지 중심
사업유형	판매·교육·외식 등 복합	판매장 중심	
농가참여	순회수집 << 직접출하 등	거점출하(순회수집) + 집배송 >> 직접출하	순회수집 << 직접출하
조달지역	해당 시·군, 인접시군	인근 시·군 및 광역시·도 가능	해당 시·군
사업규모	직매장 외 농가레스토랑 등 복합시설 2개 이상	직매장 단독 또는 직매장 외 교육장 등 시설 1개	

II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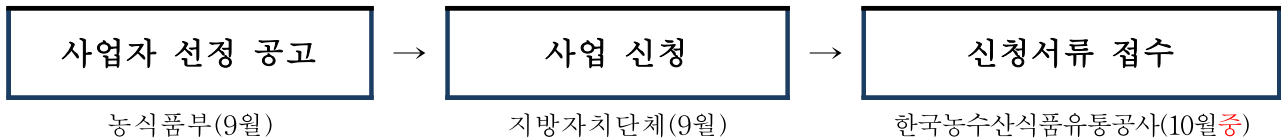
1. 사업지침 수립 및 준비단계



-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세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지(9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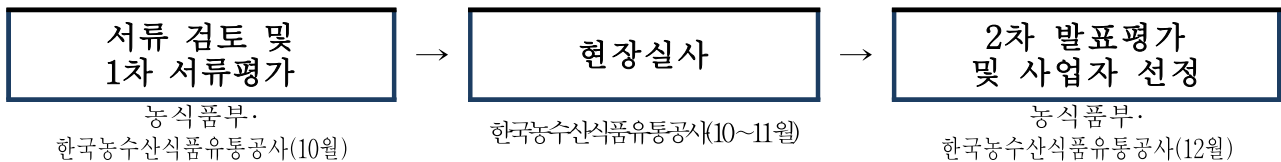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준비(9월중)
 - 직매장 운영 및 인력배치 계획 수립 또는 위탁 운영기관 선정, 출하농가 조직화 교육 등 사전 준비(공통)

2. 사업자 공고 및 접수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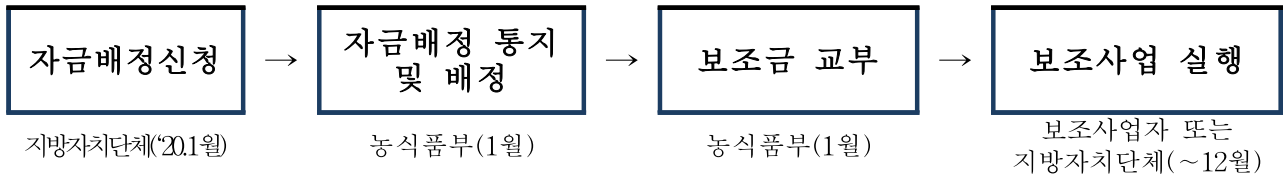
- 농식품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9월)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등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공문 제출(10월중)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3.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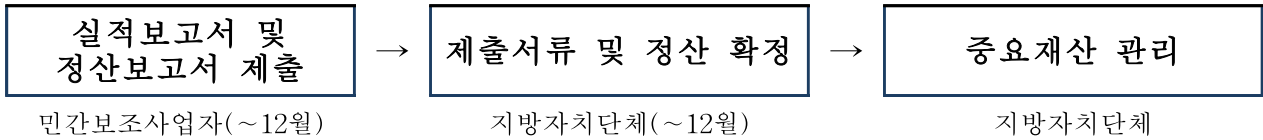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접수된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출
-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의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1차 선발(30개소 내외)
 - * 단, 사업신청 개소수가 30개소 미만인 경우 1차 서류평가는 생략 가능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1차 서류심사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지의 적격성, 입지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실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예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사업자 선정

4.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사업 세부계획 보고 시 사업비 배정 신청
- 농식품부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자금배정 통지('20.1월)
 - 보조금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부기등기: 본 사업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은 보조금을 통해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수
 - 1월 보조금 배정 즉시 성립 전 예산사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자부담을 확보한 가점사업자는 선정 즉시 자부담을 활용해 설계 추진
 - * 농식품부로 보고되는 별다른 사유없이 자부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짓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통지하고 사업 추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예산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
 - * 부지변경 사항은 '20년내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2년차 사업자의 경우 '20년 내 설계까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혹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지자체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식품부에 이월 신청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미흡할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있음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은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체이월 불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고 현재액과 증감액을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및 부동산의 종물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5년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경우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농식품부에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지원가능내역

1. 설계비, 감리비 등: 매장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비, 감리비, 매장 개설을 위한 컨설팅비 등
 - 컨설팅은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20백만원 이하로 제한
 - 1년차 사업자의 경우 설계비 지원 없이 선정 전 또는 선정 직후에 자부담으로 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가점 부여
 - 2년차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과정까지 필요한 설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차에 착공이 가능할 경우 착공에 필요한 선급금까지 추가지원 가능
2. 토목공사: 부지 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파일공사, 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원 불가)
3. 건축공사: 세척·포장시설,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 및 시설(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교육장, 파머스 카페 등) 등
4. 전기·통신·소방공사: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기타: 직매장 및 부대시설 내부공사, 부대공사, 내부인테리어, 기자재 구입비 등(기존 지원항목)
 - 기본공사: 인테리어를 위한 가설·철거·바닥·설비공사 등
 - 부대공사: 전기·통신·소방·냉난방, 옥외간판, CCTV 등
 - 기자재구입비: 진열대, POS, 정육기계류, 라벨출력기, 당도측정기, 포장기, 작업대, 잔류농약검사기 등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사업부지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계약체결 증명서, 토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첨부
 -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지가 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향후 사업관련 허가를 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의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예산규모, 사업내용 등) 변경 시 사전에 농식품부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영세상공인 등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향후 매장 운영 시에도 국고지원 직매장으로서의 입지를 저하시키는 방식의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주의, 경고, 보조금 회수 등 조치 예정
 - * 출하농업인에 대한 부정당 대우, 서비스 불편으로 인한 민원 과다발생 등
- 사업자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식품부 시책에 적극 협조 필요
 - 주기적인 집행점검회의 참석, 설계·건축 선급금 최대한도 지급, 지자체 추경확보 전 국고의 성립전 예산 사용, 단년도 사업의 2년차 사업 전환 및 불필요한 신청예산 절감 등(선정심사 시 권고)
 - *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업자(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선정 시 감점 등 패널티 적용 검토
- 사업을 중도에 포기(취소)하는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차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문 제출

사 업 개 요					
사업자명			매장유형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일반직매장, 대도시형직매장	
매장명			개장일		
매장전화			주소		
형태		면적	총면적 : m ² 직매장 면적 : m ²		
부속시설	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등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판매품목	합계	농산물	축산	가공식품	기타
수수료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	
참여 농업인 현황	계	연령별 분포		경지규모별 분포	
		65세 이상	65세 미만	0.5ha 미만	0.5ha 이상
	명				
직매장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매장 운영지침(별첨자료로 첨부) ○ 직매장 운영조직(조직도, 인원, 업무분담 등) ○ 농가조직화 추진실적 및 교육현황 ○ 품질 및 안전성관리 현황 ○ 소비자홍보 및 교류실적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구분		금액		비고	
- 설계·감리비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설비공사					
- 내부마감공사					
- 전기·통신·소방공사					
- 간판 및 사인물					
- 냉·난방공사					
- 레스토랑 등 기타 설비					
- 진열대 등 비품류					
계					

※ 운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 포함

2. 사업평가 및 정책환류

○ 조사체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정수급 현황, 직매장 시설 운영 현황 등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진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직매장 매출 관리, 농가조직화 현황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평가환류

- 인센티브: 평가 결과,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포상 및 언론홍보 기회 제공 검토
- 페널티: 점검사항에 대해서 취득점수가 총점기준 70%미만 시 위반. 3회 위반 시 보조금 회수(주의→경고→회수)
- * 매장 운영기준 및 점검기준은 추후 송부 예정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지자체명	○○시·○○도		사업주체	○○도 ○○과, ○○시 ○○○○과					
담당자 (광역)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담당자 (기초)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input type="checkbox"/> 일반직매장 <input type="checkbox"/> 대도시형직매장		푸드플랜 관련 협약 체결 및 신청여부 (농림축산식품부)		<input type="checkbox"/> 체결 <input type="checkbox"/> 미체결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매장운영방식	<input type="checkbox"/> 지자체(직영)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민간위탁) <input type="checkbox"/> 민간공모		인력 계획	○명(공무원 ○명, 정규직 ○명, 신규고용 ○명 등)					
법인(조합)명	이하 출자금까지는 위탁·공모인 경우에만 작성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출자금(원)						
매장명			매장주소						
총사업비	0,000백만원		국고신청액	0,000백만원					
지방비 확보액	0,000백만원		자부담액	0,000백만원 *총사업비부터 자부담액까지는 2년차사업자의 경우 2년차까지의 총액 기재					
사업연차	<input type="checkbox"/> 단년도 <input type="checkbox"/> 2년차		설계 자체추진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국고신청액 (백만원)	* 2년차인 경우 설계비 등 기재(단년도 사업자는 공란 처리)								
지방비 성립전 국고사용 가능전망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어려움 * 연내 추경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그간 시·군과 의회와의 관계, 최근 시·군의 성립전 사업추진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작성								
부지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가계약(매입일정: ○○○○년 ○월) <input type="checkbox"/> 매입(확보)								
참여농가 조직현황	참여 농업인 현황	계	연령별 분포		경작면적별 분포		성별별 분포		
			00농가	65세 이상	65세 미만	0.5ha 이상	0.5ha 미만	남성농	여성농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품목 조직화 현황								
	양곡류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류	축산류	기타			
00%	00%	00%	00%	00%	00%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직매장 개요

구 분	내 용		
직매장명			
개장일			
주 소			
시설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매장() ○ 공동작업장() ○ 농가레스토랑() ○ 교육체험장() ○ 기타() <p style="text-align: right;">※ V 표시. 기타는 괄호 안에 시설명 기재</p>		
직매장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매장 () ○ 층분리형 독립매장() ○ 벽체분리형 매장() 		
시설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면적 : m² ○ 직매장 면적 : m²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 주변 생산여건 등 ○ 소비 : 주된 소비층, 주변 소비여건 등 ○ 경쟁 : 인근 직매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민원발생소지 등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대상지 사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50px;">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middle;">위성사진</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middle;">대상지 사진</td> </tr> </table>	위성사진	대상지 사진
	위성사진	대상지 사진	
지 번(면적)			
* 사진은 가급적 주변환경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많이 첨부			

5. 직매장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직매장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매장운영규정, 출하규정 제정 여부 ○ 상품기획 및 조달 방법 ○ 가격결정, 정산방법 등 <li style="text-align: center;">⋮
품질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관리규정 보유, 출하농가 교육 등 ○ 자체 안전관리계획 또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획 등 <li style="text-align: center;">⋮
홍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고객층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 계획 작성
유관기관 협력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농약 안전성 교육 및 계약재배 컨설팅 지원 등 직매장 운영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계획 작성

6. 보조금 사용계획(국비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총액으로 작성)

(단위: 백만원)

지출항목	세부내용 및 산출단가	집행금액
	○	
	○	
	○	
	○	
	⋮	
	합 계	

* 단, 2년차 사업자의 경우 필히 2년차 지출액까지 작성(1년차만 작성 시 심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향후계획	○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월별계획 작성 ex) 추경확보(3월) → 설계완료(4월) → 건축허가 승인(6월) → 직매장 착공(7월) → 직매장 완공(10월)

8.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7항 관련)

※ 신청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직매장 지원)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⑥ 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 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세부사업명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채소가격안정지원			예산 (백만원)	24,161			
사업목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 체계 구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 이내)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 품목별 약정금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및 출하장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6조(계약생산),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의 보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농안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통인 중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 ○ (지원조건)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 한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대상품목)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시범)							
지원한도	신청 물량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3,333	56,063	50,456	80,536			
	국 고	10,000	16,819	15,137	24,161			
	지방비	10,000	16,819	15,137	24,161			
	농 협	6,666	11,212	10,091	16,107			
	자부담	6,666	11,212	10,091	16,10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원예산업과 원예사업부 채소사업부		김상돈 김정호 김성진		044-201-2232 02-2080-6355 061-931-1071		
신청시기	'20년 1월 ~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의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지역·품목 농협(이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법인’)
- *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산지유통인(농안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통인 중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
 -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매취사업)이 사업대상자일 경우에는 농가로부터 보전기준가격(도매 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수매(매입)를 하여야 함
 - *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필지는 본 사업 지원 불가(일부 필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필지는 본 사업 지원 가능)
 - * 참여 농업인·법인은 직접 경작 및 생산을 해야만 하고, 그 증빙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또는 경작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를 계약시 농협에 제출하여야함
 - * 산지유통인 대상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시범) 시행지침 별도 시행('20.1월)
- (지원요건) 약정 체결 후 품목별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사전면적 조절, 출하정지 및 출하장려 등 지급요건 발생 시 약정된 금액 지원
 - *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 등의 지급금액 세부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산지협의체(또는 농협경제지주)가 사업계획 수립 시 마련
- (선정우선순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자, 자조금 사업자는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통합마케팅조직 및 계열화된 조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대상 품목) 배추·무(全작형), 고추, 마늘, 양파, 대파(시범)
- (지원 내용)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 등의 약정 금액*
 -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지원 내용별로 세부 지원 금액을 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급과잉) 가격하락 시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과의 차액 보전 또는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등의 약정 비용으로 사용
- (공급부족) 출하장려금(운송비, 작업비 등) 등 수급안정 지원 비용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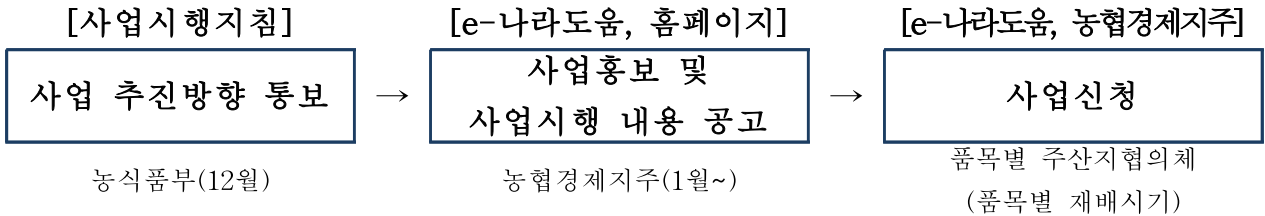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 * 단,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농협 부담분 지원 가능
 -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 대상자일 경우에는 농업인 부담비율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 범위)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 등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으로 한정
- (사업 의무) 농업인, 농협, 법인은 약정물량(또는 매월 출하계획량)의 50%에 대해 수급상황 발생 시 정부 또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수급대책 의무 이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해당 품목 출하전에 농협경제지주에 월별 출하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
 -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의 수급대책 지시를 위반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계약재배 자금(융자)도 회수), 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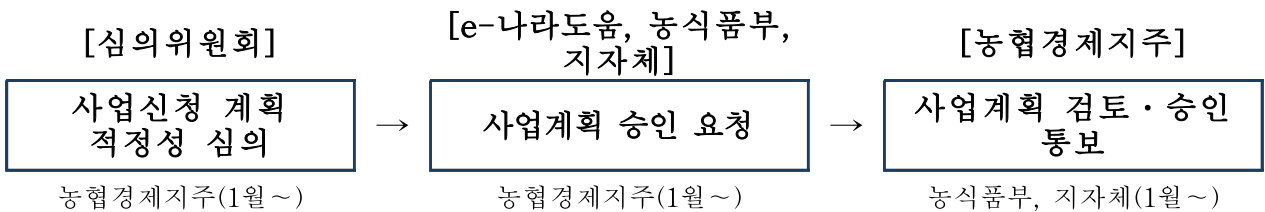
- (지급 방법)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에서 지급 요건 발생 확인 후 지원기준비율(국고 30%, 지방비 30, 농업인 20, 농업인 20)에 따라 지급
- (지급 기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준가격의 80% 이내에서 가격하락 보전기준가격을 설정
 -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등의 세부 지급기준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기준가격 및 보전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운송비, 작업비 등 출하장려금 지원 단가는 민간 실경비 수준으로 설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홍보 및 사업 시행내용 등을 신속히 공고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는 당해연도 품목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사업 신청('19. 1월 ~)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는 당해연도 사업비 조성 및 집행 계획, 수급상황에 따른 수급대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신청
- * 주산지협의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주산지 수급조절 계획 심의·추진 등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이 참여한 광역(도단위) 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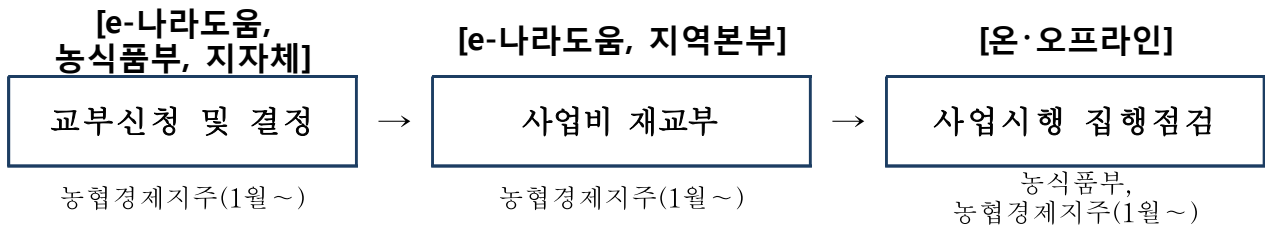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협경제지주는 신청된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주산지협의체 시·도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19. 1월~)
-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한 후 승인 여부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 사업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사업물량 등 계획 변경 시 즉시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에 변경 계획을 신청
 - 농협경제지주는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지급요건 발생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면 품목별 사업비·사업량 등을 변경하여 농식품부(e-나라도움),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후 사업 추진
 -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 해당 시·도에 보고
 - 작황 등으로 농업인, 농협 등의 출하 계획물량이 변경될 경우, 사업농협에서는 주산지협의체와 농협경제지주에 변경된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주산지협의체와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량 및 출하계획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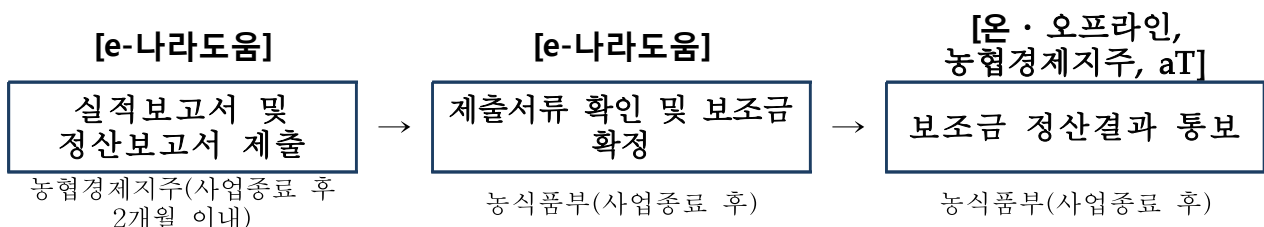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품목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에 교부 신청
 -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 * 농협경제지주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 집행관리를 해야 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 받은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하고,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을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재교부하고,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등록한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품목 주산지협의체는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와 협의하여 처리 가능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지역본부에 보완 요구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협경제지주 및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기획재정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부실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 신청
 -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농식품부는 확정된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농협경제지주, aT)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해당 보조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

<제재 및 처벌 내용>

-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수급대책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 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하고, 다음연도 수급안정사업(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참여에 불이익
 - (농업인·농협(매취))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농협(수탁)) (1차 위반) 계약재배 사업비 30% 또는 운용자금 50% 감액, (2차 위반)계약재배 사업비 50% 또는 운용자금 100% 감액 가능, (3차 위반)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고, 매년 점검 실적을 농식품부, 시·도에 보고

Ⅲ 평가 및 환류

1. 평가 및 환류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종료 후 품목별 평년생산량 대비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물량 비중과 수급안정 성과 등을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부진 주산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불이익 조치, 사업실적 우수 주산지협의회는 예산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2. 기타

-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익년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7-1 생산기반확충

임업분야

세부사업명	조림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조림(지자체)	예산 (백만원)	119,642					
사업목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 주요내용	○ 수확 및 수종갱신 벌채지, 미립목지 등에 나무심기(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 50~60% ○ 수혜대상 : 산주, 일반국민							
지원한도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재원구성(%)	국고	50~60	지방비	30~50	용자	-	자부담	0~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44,479	159,479	190,648	214,265			
	국 고	79,859	90,359	104,779	119,642			
	지방비	57,438	61,938	80,257	86,191			
	자부담	7,182	7,182	5,612	8,4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김종근 사무관		042-481-418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기타 조림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림조성(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유휴토지조림) ○ 큰나무조림(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 지역특화조림(섬지역 산림가꾸기, 금강·안면 소나무가꾸기, 지역특화림 조성) ○ 미세먼지 저감조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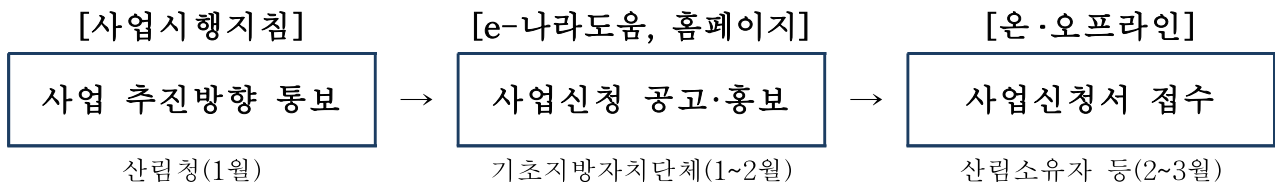
- 경제림 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립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립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미세먼지 저감조립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립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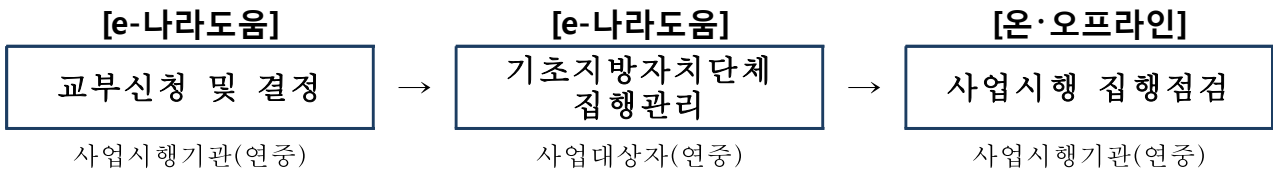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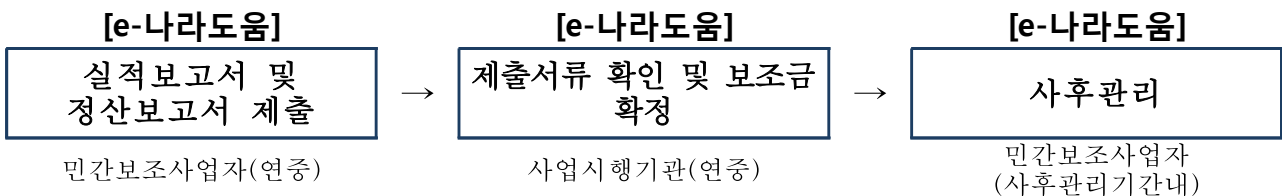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립사업 신청서 접수(전년도 2월말)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조립사업신청서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조립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 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조립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사업실행 후 '사유립경영정보시스템' 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사후관리>

-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9월,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조림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조림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조림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조림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세부사업명	숲가꾸기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정책숲가꾸기				예산 (백만원)	113,374		
사업목적	○ 산림의 연령에 따라 어린나무, 숙아베기 등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숙아베기 등 산림의 연령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소유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24,548	260,240	198,802	226,748			
	국 고	162,274	130,120	99,401	113,374			
	지방비	162,274	130,120	99,401	113,37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이성호 사무관		042-481-421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및 지자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지원대상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숙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공익림가꾸기),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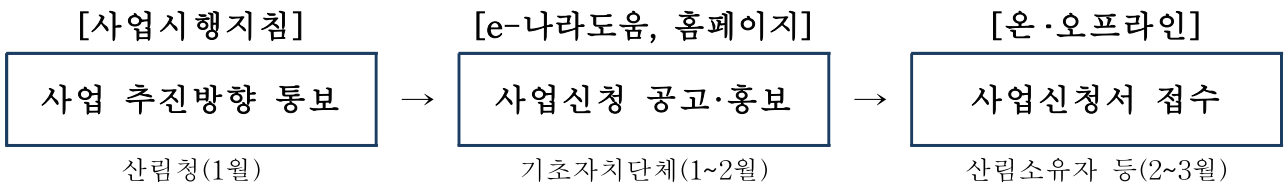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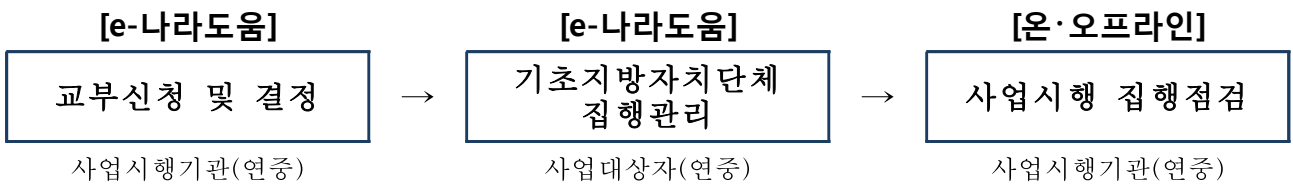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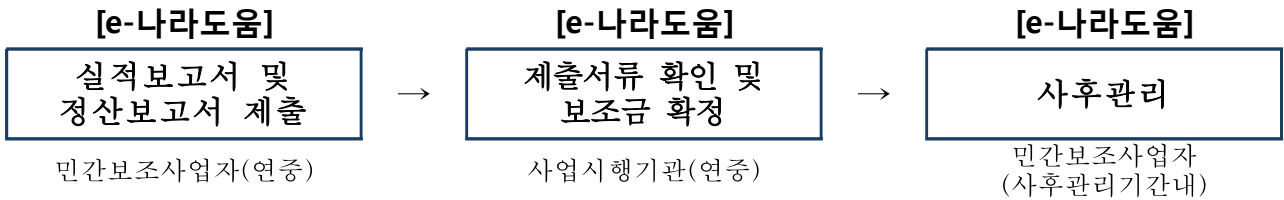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숲가꾸기 사업신청서 접수(전년도 2월말)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숲가꾸기 사업신청서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 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토론회 개최
 - 사업실행 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사후관리>

- 숲가꾸기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세부사업명	숲가꾸기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공공산림가꾸기				예산 (백만원)	24,688	
사업목적	○ 도시·농산촌의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주요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안전장구구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3,512	26,866	26,757	48,625		
	국 고	11,946	13,623	13,554	24,688		
	지방비	11,566	13,243	13,203	23,93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이성호 사무관		042-481-421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						

1. 사업대상자

- 농·산촌지역의 청·장년층 실업자로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제한) 산림 기계 장비 및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또는 고교·대학 재학생
- (반복참여 제한)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만 55세 이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지원대상

구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고용규모	1,043명	200명	935명
고용대상	농·산촌 지역 만 55세 이상 실업자	농·산촌 지역 청·장년 실업자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보유자
사업내용	생활권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수집	산림자원조사, 산림사업 DB 구축	생활권 덩굴제거 주택 피해목 제거
1일 임금	68,720원/8시간	68,720원/8시간	76,720/8시간
고용기간	10개월	11개월	10개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건비, 보험료,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및 여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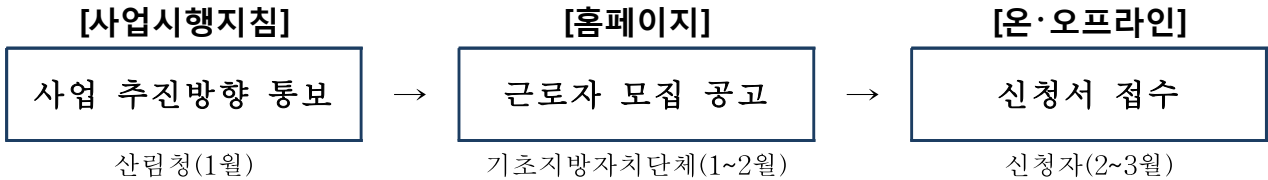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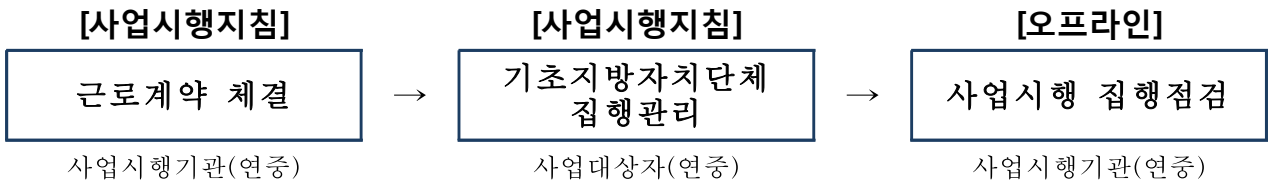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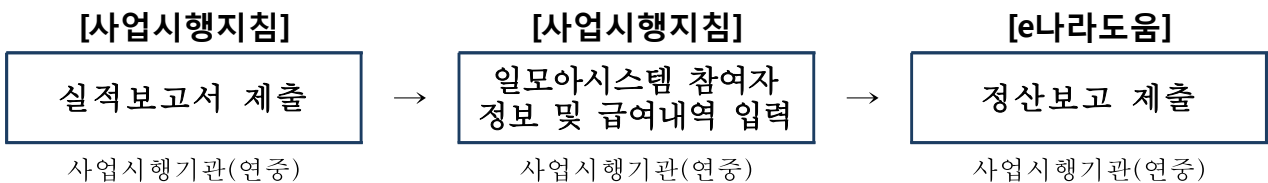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공고 후 근로자 선발(매년 초 또는 수시)

2. 사업시행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운영 및 인건비 집행

3. 사후관리단계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고용인원 통계자료 작성
-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정보, 급여내역 입력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세부사업명	묘목생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양묘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자동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							
사업 주요내용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지원자격 및 요건	○ 묘목대행생산자 소유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이하 또는 2억 이상 10억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000	2,000	2,000	2,000			
	국 고	600	600	600	600			
	지방비	600	600	600	600			
	용 자	400	400	400	400			
	자부담	400	400	4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종근 사무관		042-481-4185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9월 선정)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사업시행지침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 민유양묘장에서 직접 신청은 불가, 시·도지사 직접 공모는 가능
 - * 용자 20%는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 지방비가 부족한 경우 자부담률 증가 가능
 - * 민유양묘장 소유토지이거나 그 토지를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신청가능
- 개소당 총사업비 1억이하 또는 2억이상 10억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3. 지원대상

- 세부사업명 :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묘목대행생산자 소유 민유양묘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자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비용(설계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중 국비 지원
- 주요시설 내용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구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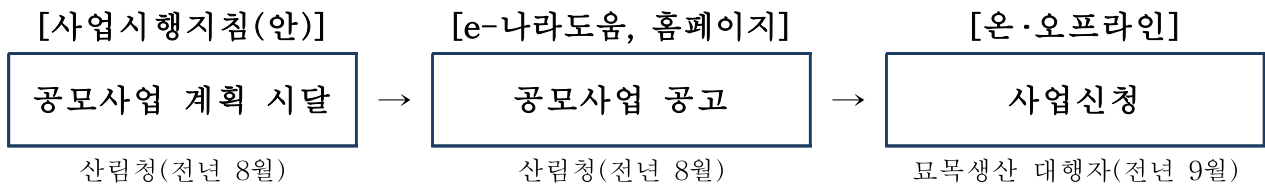
- 총 사업비의 60% 지원 (국비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1억이하 또는 2억이상 10억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 * 개소당 1억원 이하 또는 2억원이상 신청가능하며, 10억 이상이라도 자부담 또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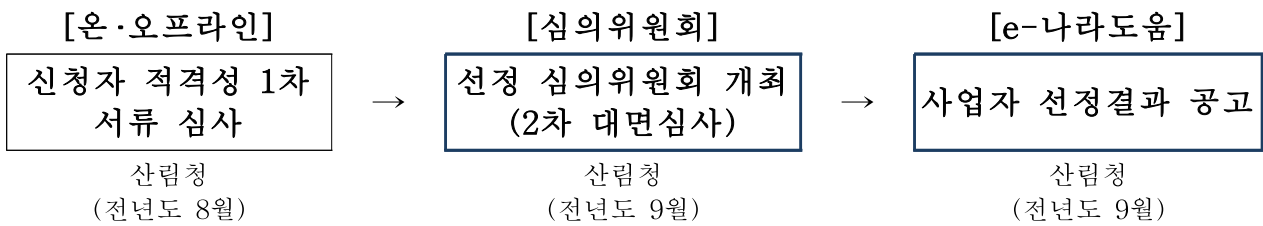


- 산림청은 전년도 8월까지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고지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파악된 사업신청 규모 및 내역을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세부사항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참고 한다.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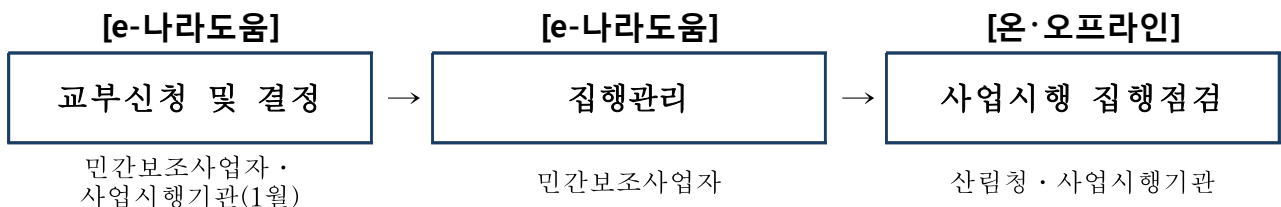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선정(산림청 산림자원과)
 - * 지원금액, 양묘시설 운영실적으로 적·부만 판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 *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 *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민간보조사업자가 공동사업 참가가구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 (AgriX, e나라도움)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해야 한다.
 -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 시군구 담당자 또는 사업실행자가 사업계획 발표
 - 심사위원회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심사표에 따라 심사
 - *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 평가표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확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제42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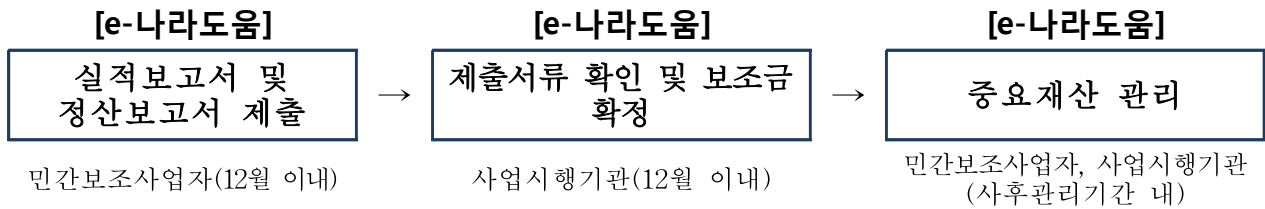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 경쟁입찰 계약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1사업 1계좌) 계좌 설정 및 보조사업전용 카드발급요청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법령에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기관의 교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집행건별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금 동시 집행
 - * 보조율(국고+지방비)이 90%인 사업에서 100원을 집행할 경우 계좌에 자부담금 10원이 있어야 집행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
 -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upload하고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담당자 확인 후 집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후 처리
-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산림청에서 사업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이내 합동점검을 실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 정산지연으로 인한 보조사업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 보조금 확정 시 안내문 부착 여부, 경영장부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준비사항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 「기본규정」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8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기본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규정」 제6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관리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한 여부를 확인

- *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 공동(공모 외 사업)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은 공동보조사업자 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Ⅲ 평가 및 환류

1. 평가

- 사업 완료 후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결과보고
- 연 1회(5~6월) 보조사업 실태점검 실시

2. 환류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묘목생산대행자 선정 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 대행생산량 배정 및 예산 지원 등에 우선권 부여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예산 (백만원)	17,420					
사업목적	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 현대화 추진							
사업 주요내용	(산림작물생산단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 임목에 대한 숲가꾸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공모 : 국고 40%, 지방비 20~40%, 용자 0%, 자부담 20~40% 소액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지원한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공모) 노지 1~5억원 이내, 시설재배 2~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공모) 1~5억원 이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소액) 1억원 미만							
재원구성(%)	국고	20~40	지방비	20~40	용자	0~30	자부담	2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8,550	48,550	43,550	43,550			
	국 고	19,420	19,420	17,420	17,420			
	지방비	9,710	9,710	8,710	8,710			
	용 자	-	-	-	-			
	자부담	19,420	19,420	17,420	17,4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황상훈 주무관		042-481-4209		
신청시기	(공모) 전년도 4~6월 (소액)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립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립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①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 자격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지원 자격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및 소액)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자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굵기, 가지치기, 슈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정·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자 등

- ☞ 관리자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자(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 냉·난방시설 지원대상 아님
- ☞ 산양삼 종자·종묘의 구입 조건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20만원/kg 이내 가능)임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구 분	세 부 내 용
목재생산을 위해 대상지 전체면적의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사업 실시 +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종근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

- ☞ 관리사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 냉·난방시설 지원대상 아님
- ☞ 산양삼 종자·종묘의 구입 조건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20만원/kg 이내 가능)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20%~40%, 지방비 20%~40%, 용자 0%~30%, 자부담 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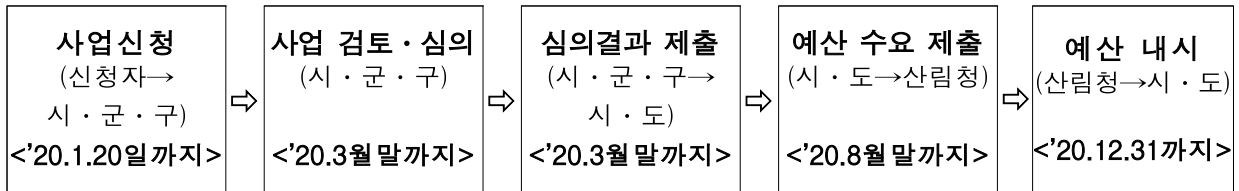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총사업비 기준)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 (노지) 1~5억원 이내, (시설) 2~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 1~5억원 이내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1억원 미만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1억원 미만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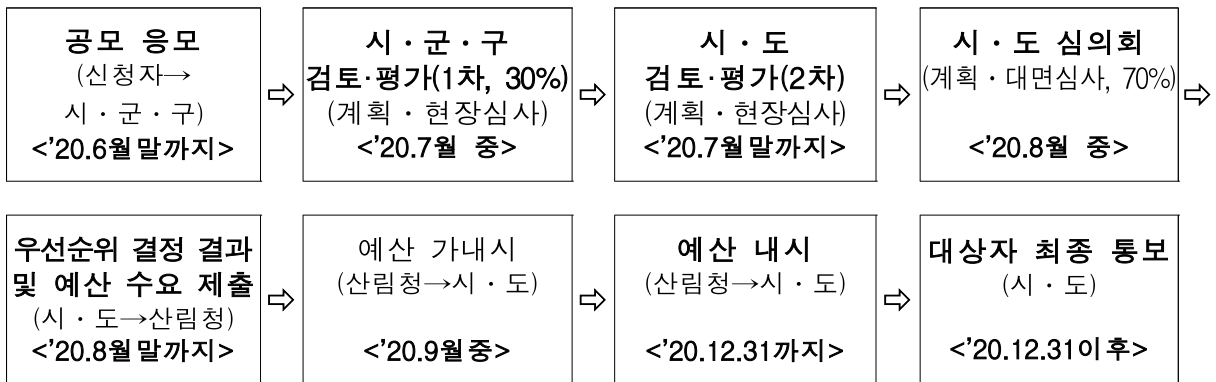
① 소액사업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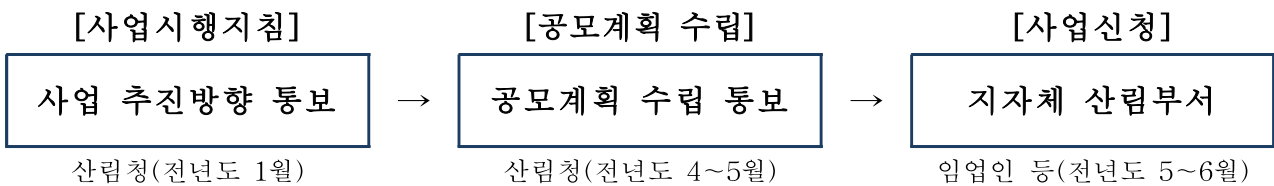


②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시작 : '20년 4~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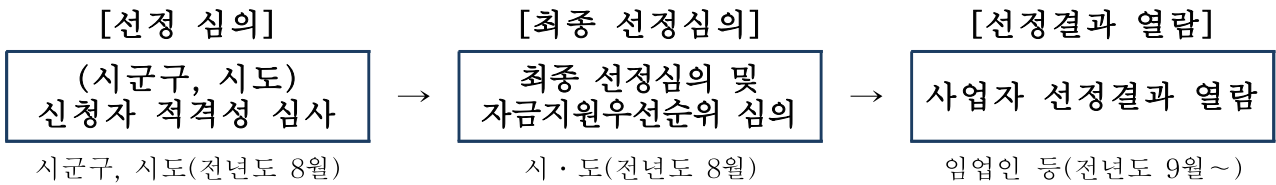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공모사업인 경우)



○ 산림청은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 전년도 4~5월 말까지 공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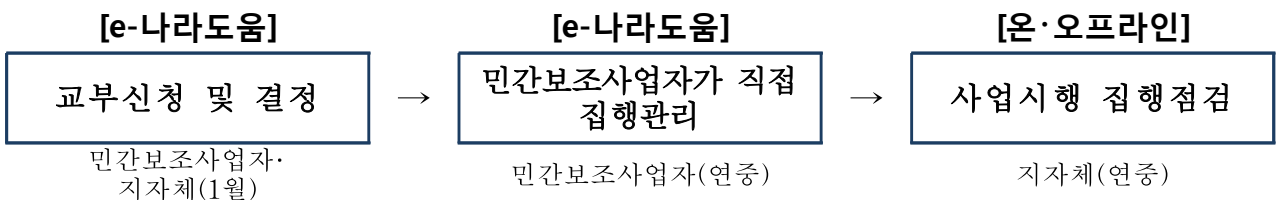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단계(※공모사업인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 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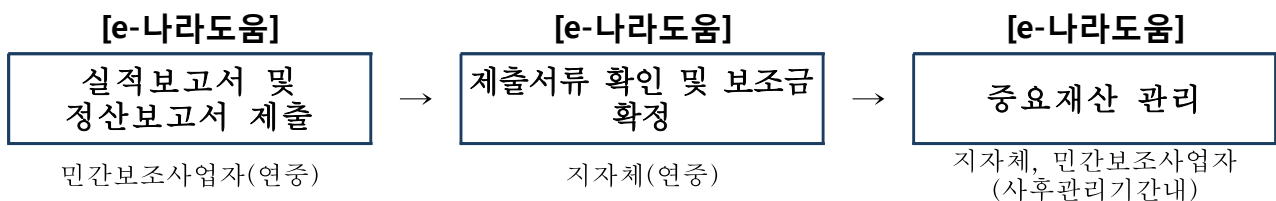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

- 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보조사업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익년도 시행지침 개정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예산 (백만원)	4,800					
사업목적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 제초제 및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							
사업 주요내용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국고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정액 지원							
지원한도	(토양개량제) 품종별 차등 지원 - 수실류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 밤: ha당 504천원) -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잔디 :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기타임산물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량 적용 (유기질비료)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적용							
재원구성(%)	국고	70 또는 정액	지방비	30 또는 정액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6,856	6,856	6,856	6,856			
	국 고	4,800	4,800	4,800	4,800			
	지방비	1,371	2,056	2,056	2,056			
	용 자	-	-	-	-			
	자부담	685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백명재 주무관		042-481-4196			
신청시기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립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립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①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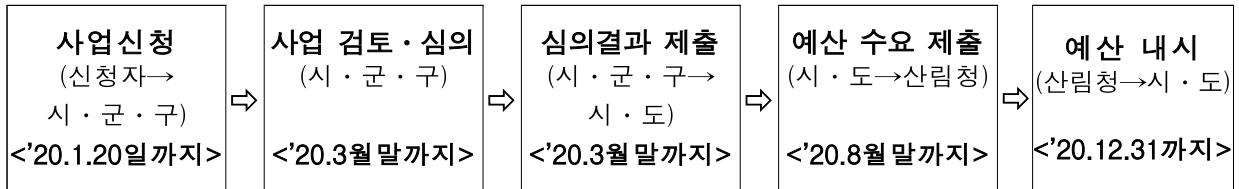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구입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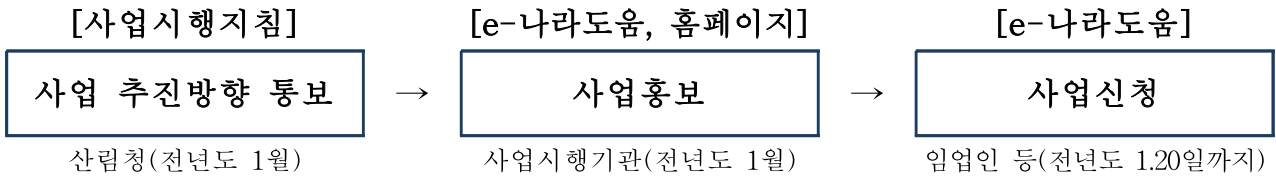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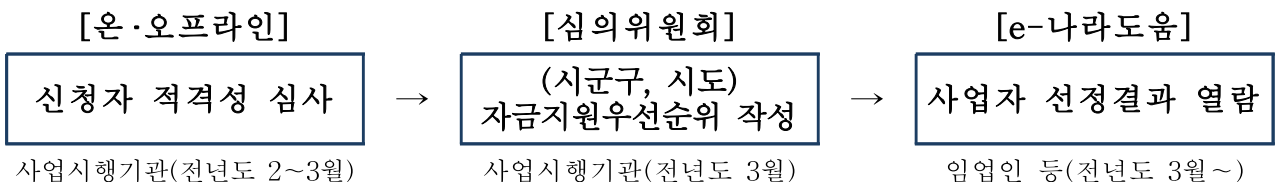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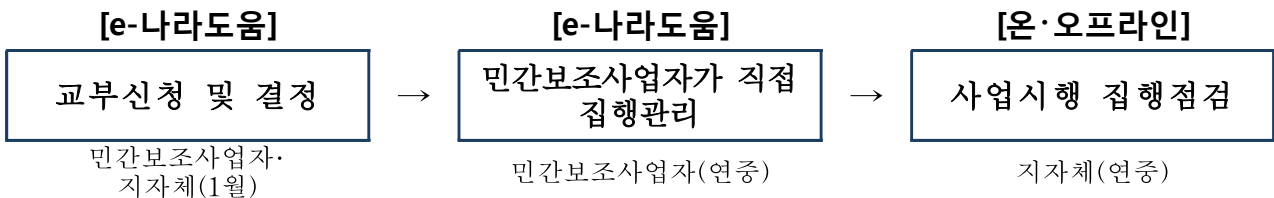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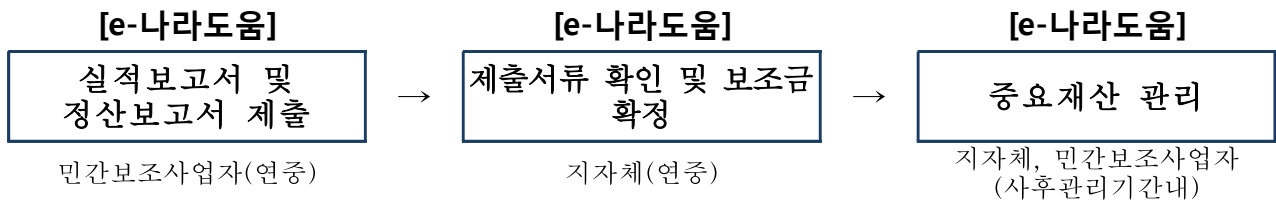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예산 (백만원)	1,600				
사업목적	국산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을 늘려 국고 세입을 증대하고,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한-중 FTA 대응하고자 함							
사업 주요내용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 시설의 교체 및 보강							
국고보조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함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억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46,600	16,200	10,200	10,200	5,000	4,000	
	국비(A)	23,300	8,100	5,100	5,100	2,500	1,600	
	지방비+자부담(B)	23,300	8,100	5,100	5,100	2,500	2,400	
	사업내용	233개소	81개소	51개소	51개소	25개소	20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명규사무관		042-481-4204		
신청시기	전년도 6월 이전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원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장비 구입, 시설 보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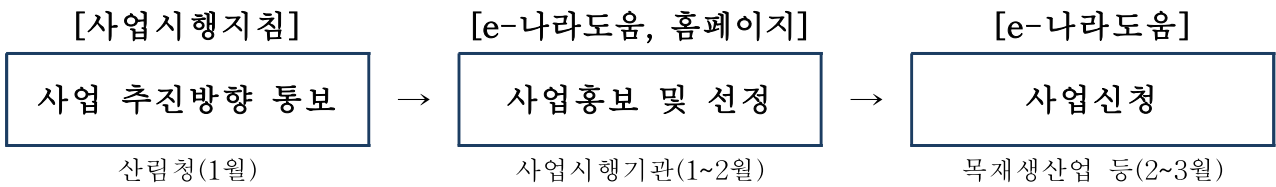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 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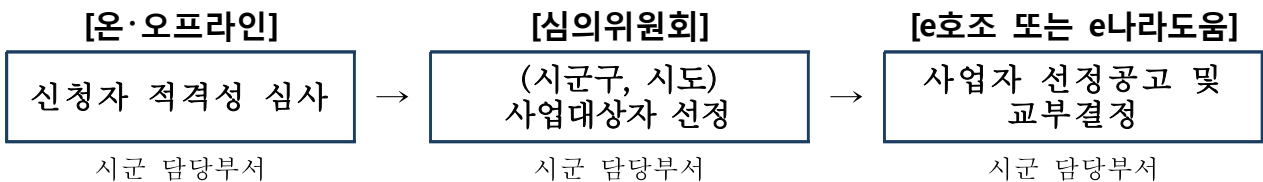
- 개소당 2억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또는 기 사전공모사업 실시 결과 반영)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제출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
-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¹⁾, 지원 제외대상여부²⁾ 등을 면밀하게 검토

-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 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444호, 2019.6.1.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업가계산방식에 따름
 - ** 사례) 원가계산용역비는 용역기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총사업비의 0.2~1.0% 해당)으로 용역기간은 14일에서 30일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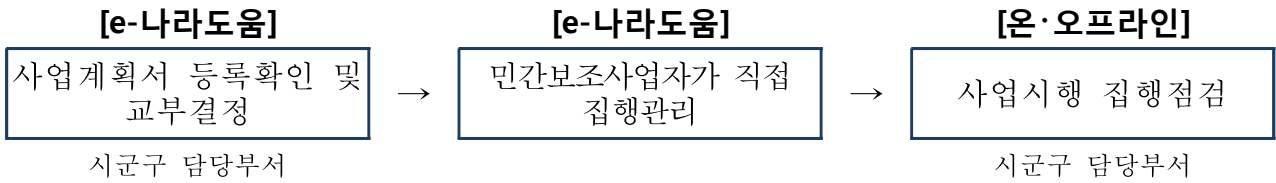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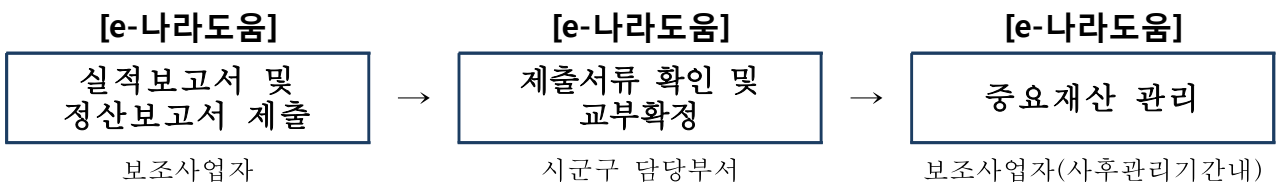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 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세부사업명	임산물수출촉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수출기반구축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수출품 규격·품질 관리를 위한 임산물 수출 시설·장비를 조성하여 임산물 수출 일관 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 수출 공동시설 및 장비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을 신청한 임산물 생산자 단체 중 평가를 거쳐 선정지원							
지원한도	1개소 당 1,0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000	2,000	2,000	2,000			
	국 고	2,000	1,000	1,000	1,000			
	지방비	800	400	400	400			
	용 자	-	-	-	-			
자부담	1,200	600	600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통상팀		손성애 주무관		042-481-408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5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별표6」을 적용
 -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3월 30일 기준
- 공모신청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를 준용
 - 최근 3년('18년 이후)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등이 적정하고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이 타당할 것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5점 한도)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 글로벌 GAP, ISO 등 국제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 수출유망품목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 감점 부여(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 유사사업과 중복(5점)

3. 지원대상

- 공모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으로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 지원내용 : 수출용 공동수출장비(급속예냉설비, 자동선별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20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 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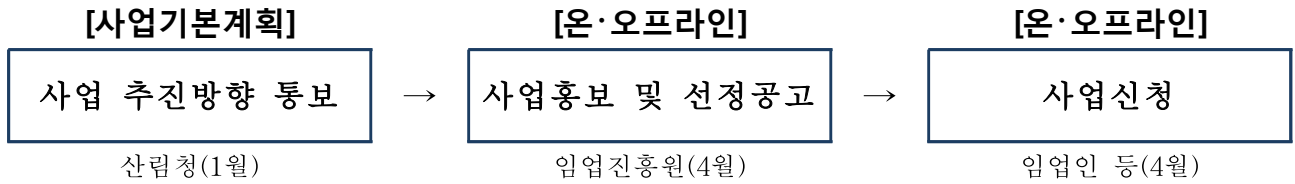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확정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내지 제79조를 준용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 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름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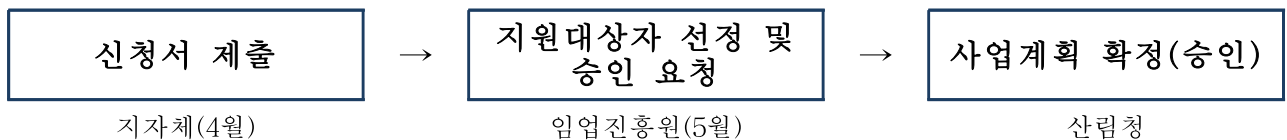
- 1개소 당 국고보조 10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6억원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1월 초까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시달한다.
- 임업진흥원은 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임업진흥원은 공고 실시 전, 사업설명회 등 사전홍보 및 사업 수요조사 실시
 - * 지자체·수출협업체 등 관련기관 공문 발송 및 SNS를 통한 홍보 실시
 - 임업진흥원은 4월 중 공모기간을 정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신청자는 공모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사업신청서 및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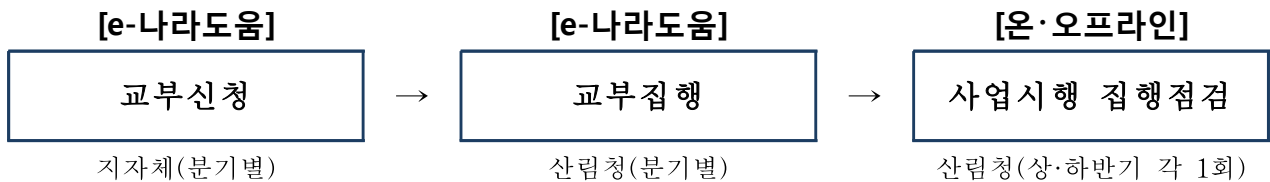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 지자체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하여 사업 공모 검토서와 함께 임업진흥원에 제출한다.
 - 지자체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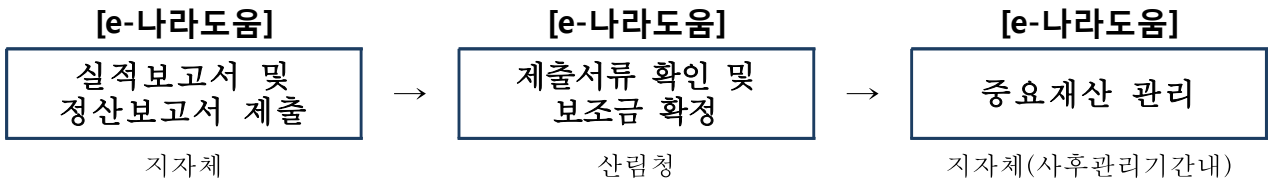
-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인지 확인
 - 지원 대상 제외 여부 확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업체는 제외
 - 시설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가능 여부
- 임업진흥원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심사와 공개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 5인 내외(외부위원 50%이상 포함)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대상자 타당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현장을 방문 평가
 - 공개 발표 평가 : 현장 평가결과 득점이 60점 이상 업체만 공개발표기회 부여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지자체는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당해 연도에 분기별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 산림청은 지자체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한다.
- 지자체는 선정된 사업자가 수립·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여 산림청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산림청은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연 2회 이상)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수출특화사업지는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용도변경,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사업공모 자격 제한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벌 또는 지원의 제한을 받음
-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한다.
 - 지자체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산림청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지자체는 사업자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 및 지자체는 산림청의 사업별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운영 점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수출실적, 수출계획, 보조금 집행 상황, 보조금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현황 등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컨설팅, 보조금 부정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및 지원 배제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12,832					
사업목적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유통의 경쟁력 제고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64,160	64,160	64,160	64,160			
	국 고	12,832	12,832	12,832	12,832			
	지방비	12,832	12,832	19,248	19,248			
	용 자	12,832	12,832	19,248	19,248			
	자부담	25,664	25,664	12,832	12,8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항상훈 주무관 오성완 주무관		042-481-4209 042-481-4207		
신청시기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립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립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①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사업별 지원자격

- 생산기반조성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및 생산자단체
- 유통기반조성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구 분	세 부 내 용
생산장비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 (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산림버섯 재해 예방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배시설 지원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삼제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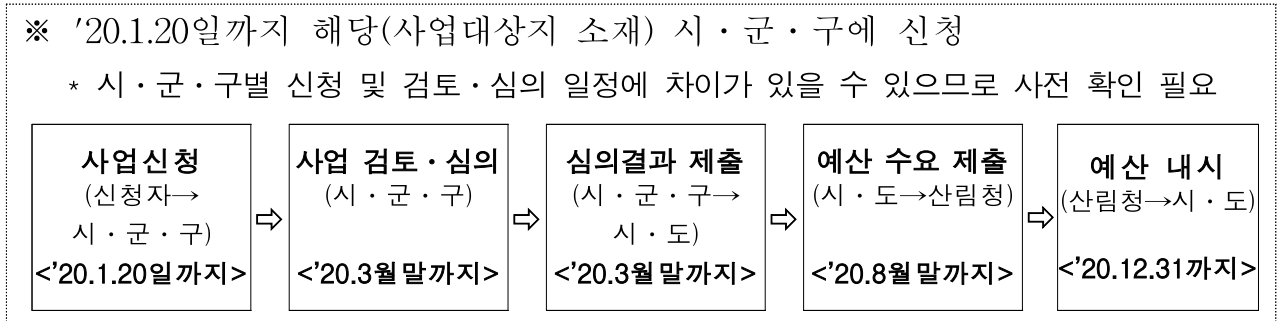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생산장비	(일반)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작업로 시설 (보수)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숙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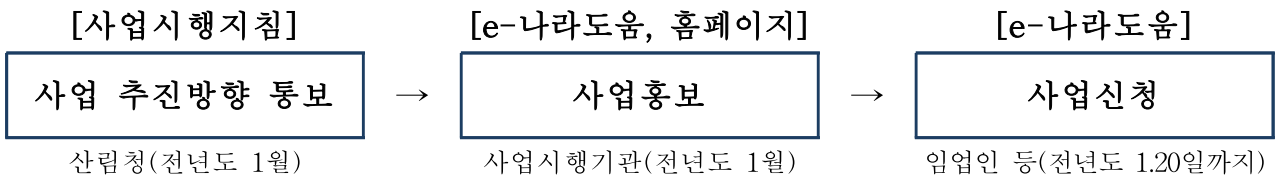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화물차량	국비 3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내
냉동·장탑차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유통기자재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저장·건조시설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가공장비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삼제 : 국비 4백만원/kl 이내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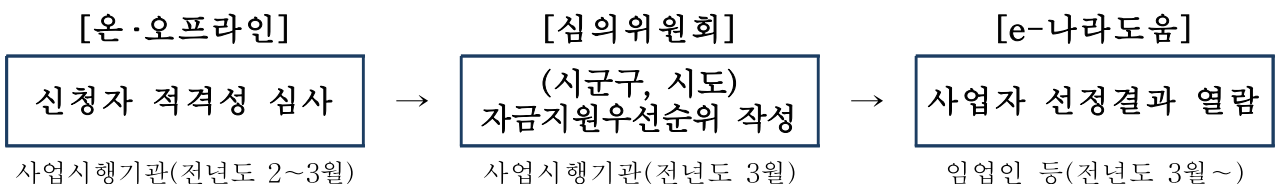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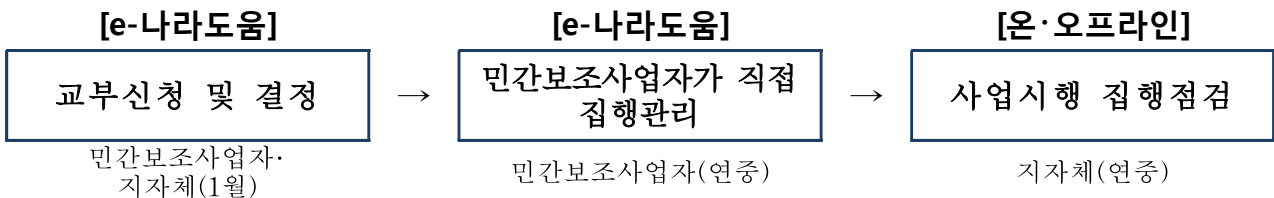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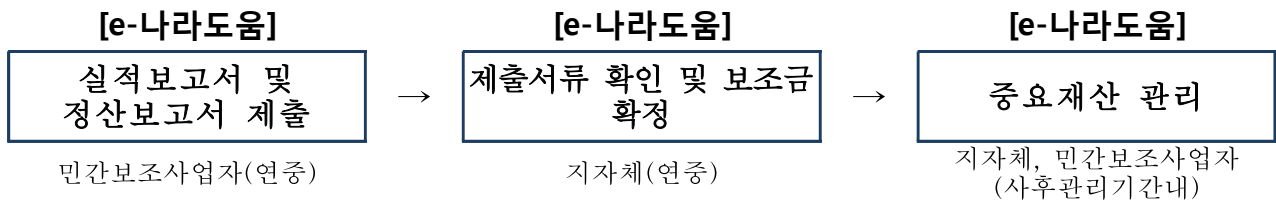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예산 (백만원)	415					
사업목적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참여·추진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의 소비심리위축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산물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홍보사업 등 소비활성화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단체, 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한도	해당없음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15	415	415	415			
	국 고	215	415	415	415			
	지방비	-	-	-	-			
	용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승우 주무관		042-481-180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민간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개최
- 소비자 맞춤형 생산·직거래 등 유통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단기소득임산물 소비촉진 기획홍보물 제작 지원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보조(국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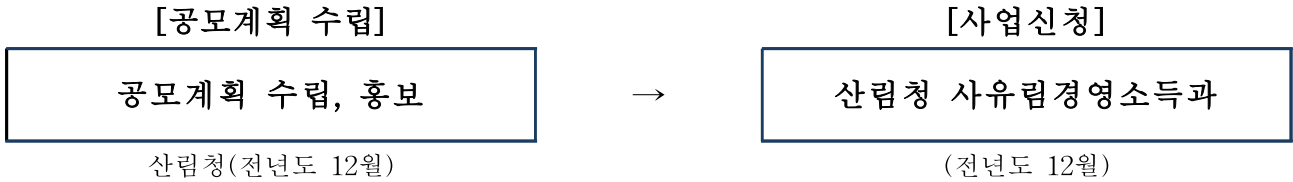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세부사업명	'20 예산 규모	비고
계	415	
임산물 소비촉진사업	400	○ 소규모로 운영하던 직거래장터를 규모있게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 협회·단체 당 최대 2개 사업 신청 (동일한 세부사업 항목 내 중복지원 불가)
① 임산물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② 우수임산물 소비활성화		
③ 소비촉진 교육 지원		
청정임산물 홍보	15	

II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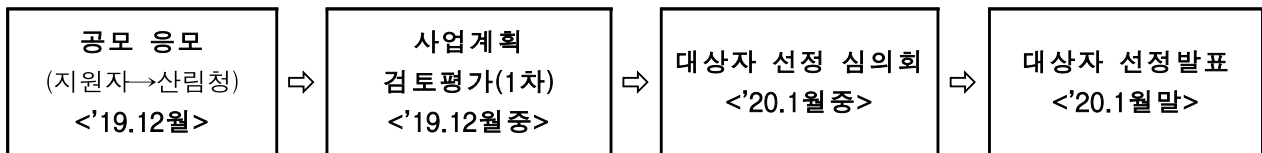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전년도 12월까지 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사업 공모계획을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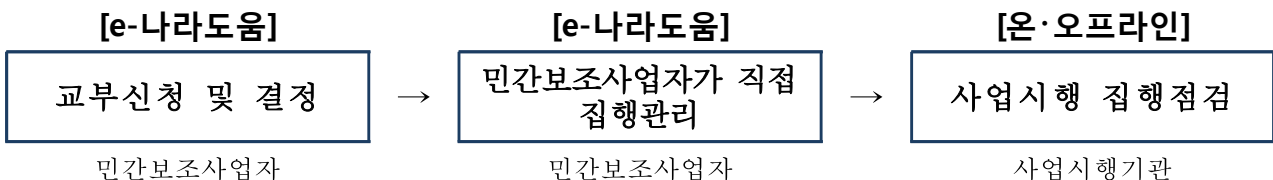
- 추진 절차



- 선정 방법

- 선정심의회 구성 : 7명 이내(외부전부가 50% 이상 포함)
- 신청 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비촉진 기여 가능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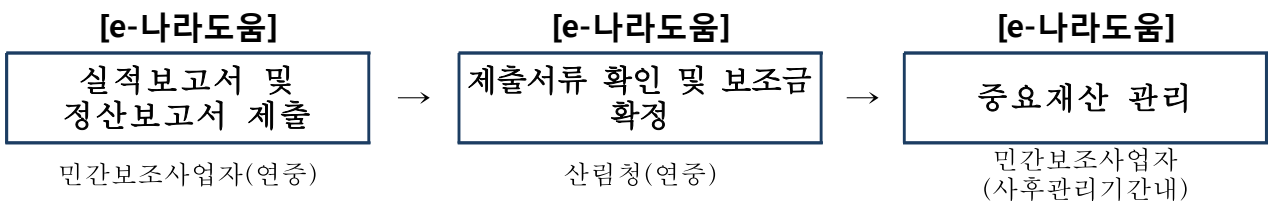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 (백만원)	1,820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한도	1대당 400만원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40 (50)	용자	- (-)	자부담	3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58,400	20,800	12,400	12,400	6,400	5,800	
	국비(A)	18,000	6,400	3,800	3,800	2,000	1,820	
	지방비+자부담(B)	40,400	14,400	8,600	8,600	4,400	3,980	
	사업내용	14,600대	5,200대	3,100대	3,100대	1,600대	1,450대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종열 주무관		042-481-8879		
신청시기	당해 연도 6월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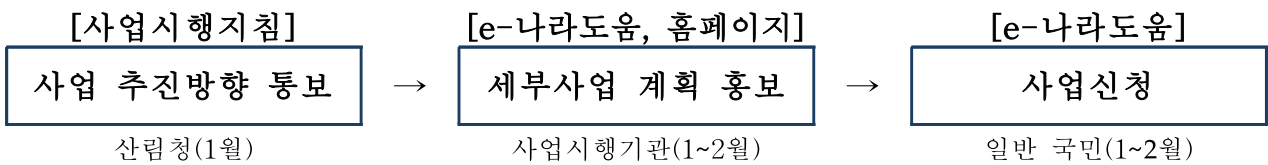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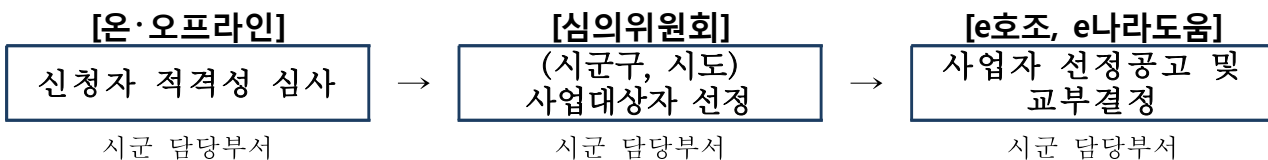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건축물 대장, 거주확인 서류,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서 등
-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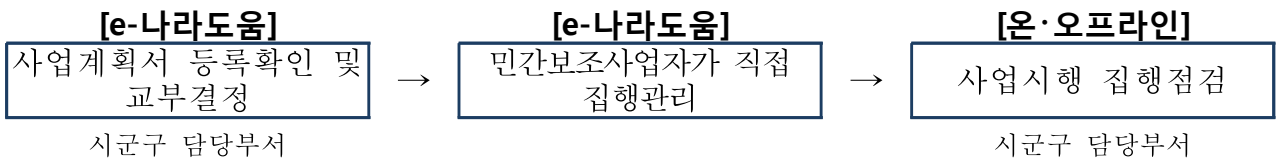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른다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호, '17.9.25.제정)을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¹⁾, 지원 제외대상여부²⁾ 등을 면밀하게 검토

-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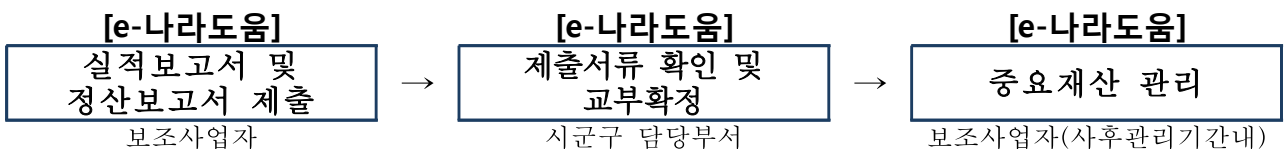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 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 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폐업업체 보일러의 경우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세부사업명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예산 (백만원)	422			
사업목적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10년 단위의 종합 산림경영계획 작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수혜대상 : 사유림 소유자							
지원한도	○ ha당 20,457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46	740	820	844			
	국 고	573	370	410	422			
	지방비	573	370	410	42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준수 정경득		042-481-4191 042-481-419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려는 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가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도 및 시·군은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하고 작성경비 지원
 - 자치단체에서 산주의 동의 등을 받아 산림조합 또는 산림기술자 등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한 경우에는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 위탁자에게 작성경비 대가 지급 / 산주에게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 통보

3.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산림을 결정
 - ① 독립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 ②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 ④ 일단의 면적 10ha 이상인 산림
 - ⑤ 기타 산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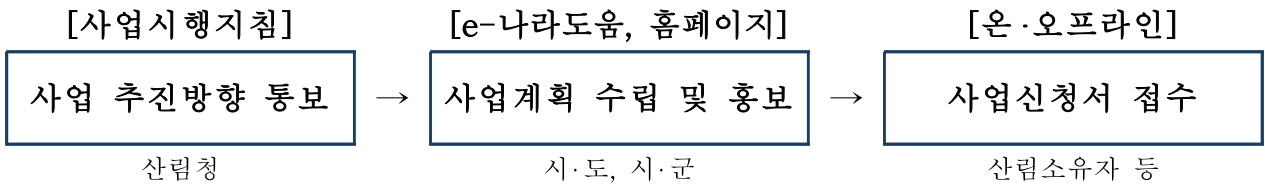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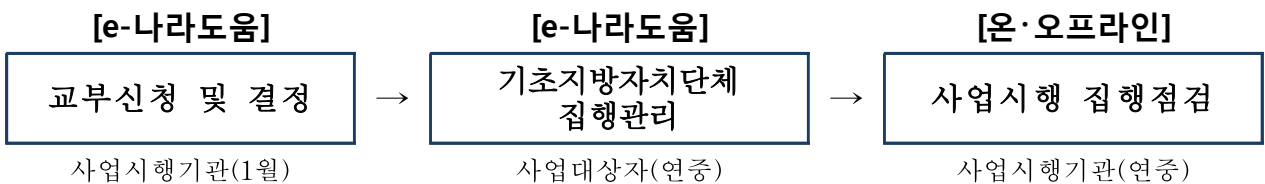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해 지원
- 지원(예산)단가 : 20,457원/ha(국비+지방비)

1. 사업신청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신청서 또는 산주 동의서 징구(전년도 2월까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산림경영계획 예정 사업량과 예산소요액을 파악하여 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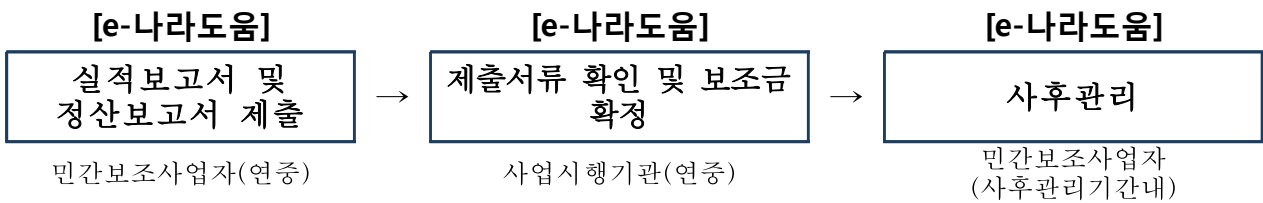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대상지 선정 및 동의서 등 징구(전년 11월부터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자 결정 및 사업 추진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산림경영계획 작성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 (백만원)	2,842					
사업목적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비용							
사업 주요내용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등 임산물 명품화 및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총사업비 35백만원/건(국비 7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4,210	14,210	14,210	14,210			
	국 고	2,842	2,842	2,842	2,842			
	지방비	2,842	2,842	2,842	2,842			
	용 자	2,842	2,842	2,842	2,842			
	자부담	5,684	5,684	5,684	5,6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오성완 주무관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19-62호(2019.10.2.)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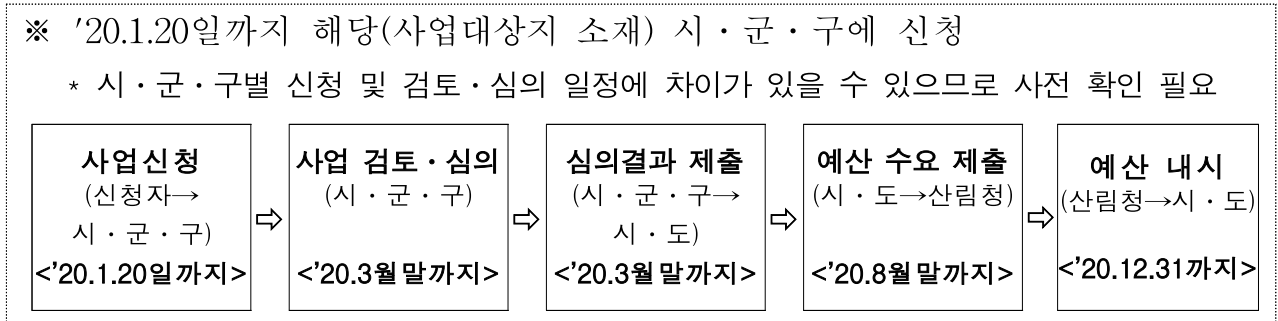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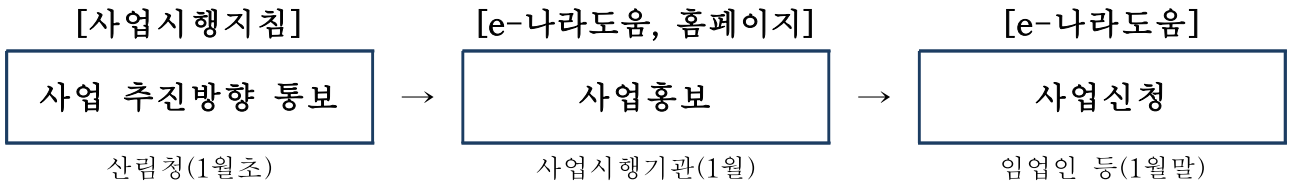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 총사업비 50백만원/건(국비 10백만원/건)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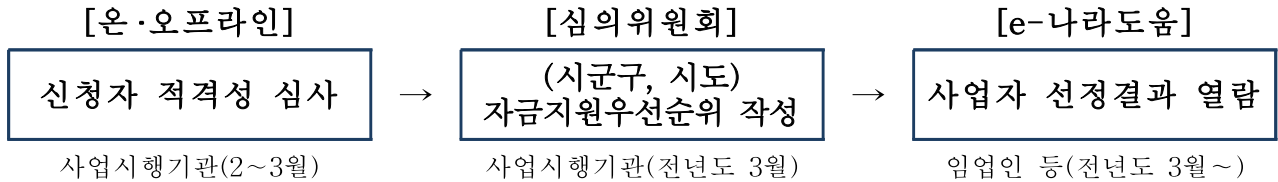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공고한 내용을 e나라도움 기관자체 공모로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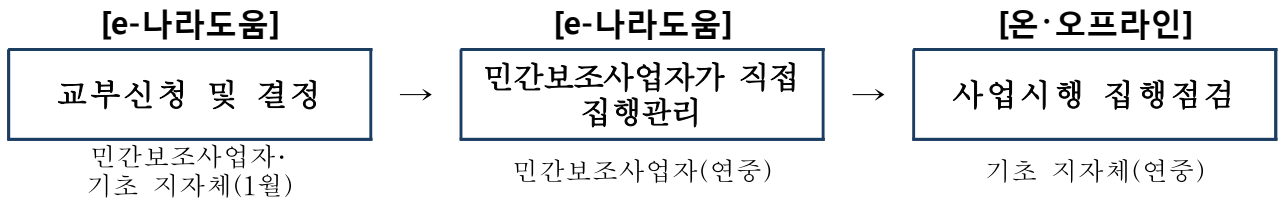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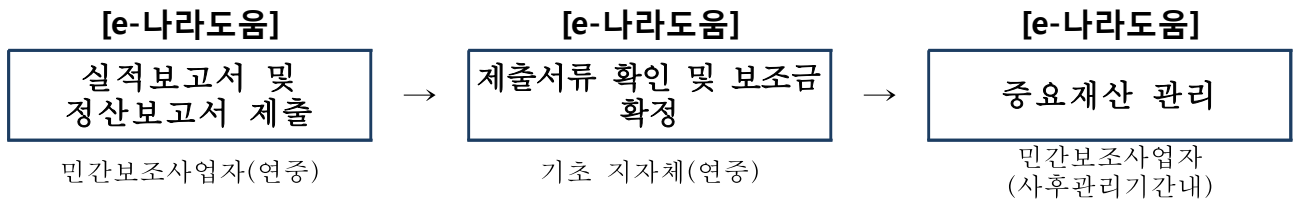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 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 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 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산림청장,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목재산업 주체인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체의 생산기반을 집약화·규모화하고, 산업단지 내 전문화된 목재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경영 효율성 높임 - 구조용 집성재, 방부목재, CLT 등 생산설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으로, 자부담금 확보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50억원(1년차 10억원, 2년차 20억원, 3년차 20억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합 계	1,000	2,000	3,000	2,000	2,000	1,000	2,000	2,000	30,000
	소 계	500	2,000	3,000	2,000	2,000	500	2,000	1,000	15,000
	국고	500	1,000	1,500	1,000	1,000	500	1,000	1,000	15,000
	지방비	200	400	600	400	400	200	400	400	6,000
	자부담	300	600	900	600	600	300	600	600	9,000
사업량	1	1	1(종료) 1(신규)	1	1	1			3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이명규		042-481-4204			
신청시기	전년도 11~12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산업 관련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금 확보 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3. 지원대상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원목을 공급받아 목재제품을 생산·가공하는 목재산업체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목재가공·유통·시설장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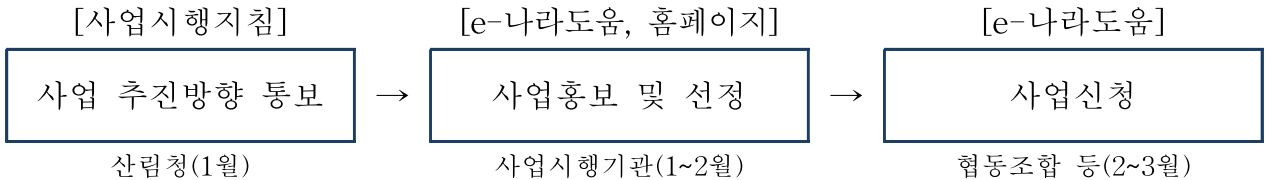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역별 차별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집성재, CLT 제조시설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원주가공기, 프리컷장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 (집성시설) 등급구분기, 고주파집성기, 프리컷장비, 프레스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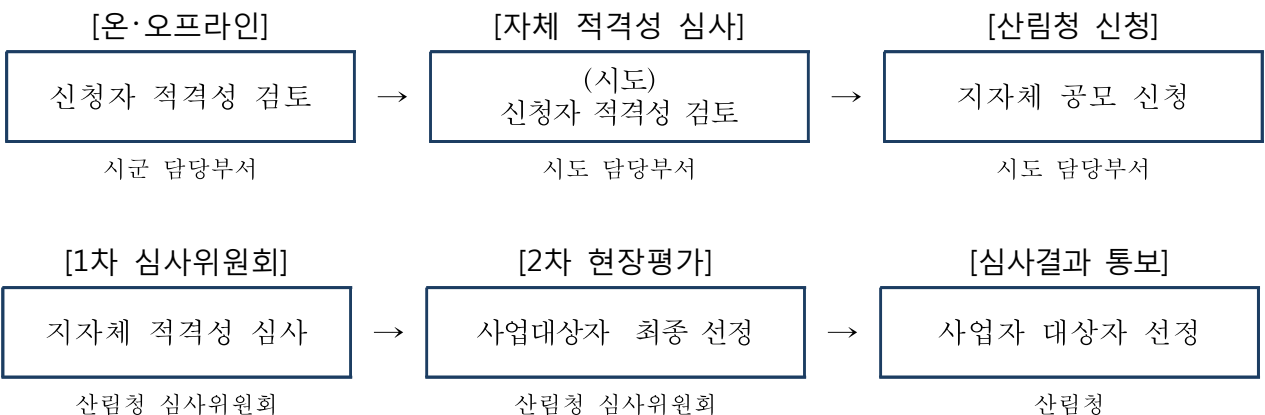
- 개소당 50억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목재산업관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증,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사업계획서, * 전자문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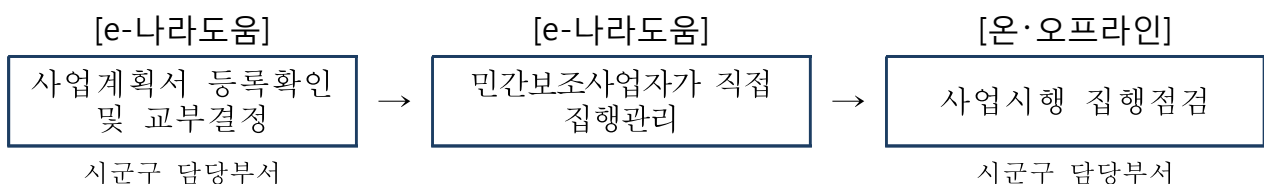


-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심사를 통하여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시·군·구 해당 부서는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¹⁾, 지원 제외대상여부²⁾ 등을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에 보고

-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적격성 검토를 마친 신청서류에 대한 자체 적격성 검토를 거친후 산림청에 신청서 제출
- 산림청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시·도에 통보
- 지자체 공모심사 결과 통보받으면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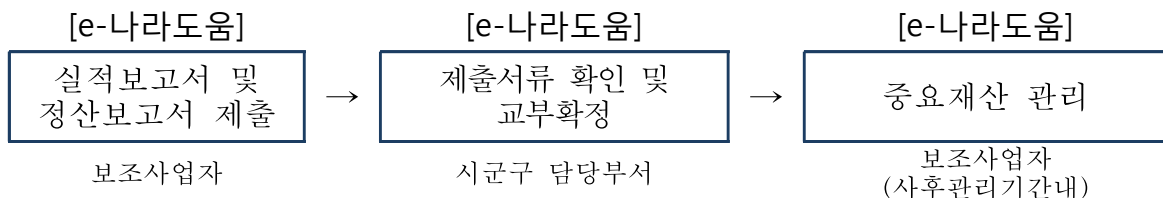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 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요사업계획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 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평가를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도

○ 사업명(품목) : ○ 신청자 : ○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구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0. . . .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지자체명 : ○○시·도

신청자 :

항목	내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목재산업 제조업을 등록하였는 지 여부		
법인요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자본금이 5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이 5명 이상 여부		
사업부지	자부담금 확보 여부		
	부지확보 여부(사업자 또는 지자체 소유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계획서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2020. . .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4】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자 평가점수표

□ 지자체명 :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예산 요구(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1	○○법인 (대표 ○○○)						
	2	○○협동조합 (대표 ○○○)						
	3	○○법인 (대표 ○○○)						
	4	○○법인 (대표 ○○○)						

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2.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붙임 5】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요약

대상품목 :

신청자

○ 법인명 : (대표자명 :)

○ 주소 :

○ 연락처 :

○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 m³,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 건축면적 m², 부지면적 m²

운영 계획

○ 운영계획 :

○ 생산제품(계획) :

*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세부 계획(사업비율)

○ 설계·감리(%) :

○ 전기·건축(%) :

○ 가공시설 및 장비(%) :

○ 유통시설(%) :

○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 작성, 총 100%로 작성

목재사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예시)

-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청자 :

o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m³,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m²,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법인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조합원수	

나.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출자자수(명)	총출자액	평균금액	최고금액	최저금액

다. 연도별 사업 실적(최근 3년)

○ 생산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 가공·유통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판매량			상표명	주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 생산분야

품목별	연간생산량	위 치	비고
계	천m ³		

○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기타 시설	기타 장비
동 m ²	동 m ²	동 m ²	동 m ²	

마. 기존 브랜드 및 기타 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기타 시설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연구개발분야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목재산업단지 주변 생산 및 유통여건 등

* 목재제품 생산현황, 목재산업체 현황, 국산원목 생산량, 유통시설 현황 등 객관적 수치 기재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 생산·가공·유통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 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부지 확보

위 치(주소)	
부지면적(m ²)	
사업지 소유	신청법인 또는 지자체 명의의 토지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 신청당시 현재(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주요 사업계획

○ 설계·감리 계획

○ 토목 및 전기공사 계획

○ 시설물 건축 계획

○ 목재산업 클러스터 총괄 계획

○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 계획

○ 체험·관광프로그램 연계·개발 계획

○ 産·學·研·官 연계 및 운영계획

- 준공 및 정산 계획
- 시설 운영 계획(운영주체, 방식, 운영비 확보 등)
* “주요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 작성

다. 건축 및 기계·장비 설치 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	국고보조	지방비	
계		100			
설계·감리					
전기·건축					
저장·건조시설					
:					

* 설계·감리비, 토목사업비 : 총사업비의 각 5%이내

- 세부 사업별 계획

사업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산출내역
합 계				
○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식		
	공사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 전기·통신				
	전기·통신·소방 등	식		
○ 건축				
	건물건축	m ²		
	집하장	m ²		
	가공시설	m ²		
	건조시설	m ²		
○ 가공장비 구입				
	집성장비	식		
	CLT장비	식		
○ 기타사업				
: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5. 운영 계획

가. 국산원목 확보계획

(단위: ha, 명, 천m³)

품목	지역(시·도)생산기반		원목생산업 생산기반			
	면적	물량	업체명	인원	면적	물량
계						

* 목재산업단지내 주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목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제시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계획

구분	'20	'21	'22	'23	'24
품목명					
상품명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유통방법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 상품화 및 브랜드화 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제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 계획 등
-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산·학·연 연계 운영 계획

- 가공·유통 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산업화 계획
- 가공제품, 기능성 개발 등 연구 계획

마. 경영활성화 계획

- 경영기술 습득 계획
- 후자경영을 위한 운영 방안 등

바. 향후 지자체 지원 및 지도방향

- 사업완료 후 지자체 경영지원 계획 등

6.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 객관적 수치로 사업 전후 비교

* 생산·유통·판매량 등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전망

나. 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와 연계방안

다. 연차별 매출액 추정 등

7.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 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nput type="checkbox"/> 설계발주계획												
o 사업자선정	←→											
<input type="checkbox"/> 시설지 정리계획												
o 기반공사		←	—	→								
o 상하수도설비		←	—	→								
<input type="checkbox"/> 건축계획												
o 건물건축				←	—	→						
o 집하장				←	—	→						
o				←	—	→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8. 기 타

* 간이설계도(안) 관련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세부사업명	산림경영지도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산림조합특화사업			예산 (백만원)	2,500			
사업목적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지원 지역여건 및 산림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을 통해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조합법」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및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지원한도	1개소당 5억원 한도 이내 ※ '20년도 사업량 및 개소당 지원예산 규모(사업량 5개소, 개소 당 5억원 기준)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000	6,000	5,000	계속			
	국 고	1,000	3,000	2,500	계속			
	지방비	400	1,200	1,000	계속			
	자부담	600	1,800	1,5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지자체		산림정책과		임창옥		042-481-403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및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선정우선순위
 - 지역산림계획과 연계, 산리자원의 조성·육성·이용의 균형을 이룬 선순환 경제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순위 부여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전망,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결정

3. 지원대상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및 기계·기구 구입 등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 단, 부지매입비 및 운영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범위
 - 산촌거점권역(산촌특구) 육성사업 등과 연계된 사업

-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다양한 산림가치를 활용하는 사업
 - 임업인 소득안정망 구축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정책 수행사업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 기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 * 특히 지역산림계획과 연계, 산림자원의 조성·육성·이용의 균형을 이룬 선순환 경제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순위 부여
- 단, 보조사업 기간(1년)을 감안하여 수목장림 등 민원발생 소지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지자체 협의, 지역주민 동의완료(동의서 징구), 사업대상지 확보 등 사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응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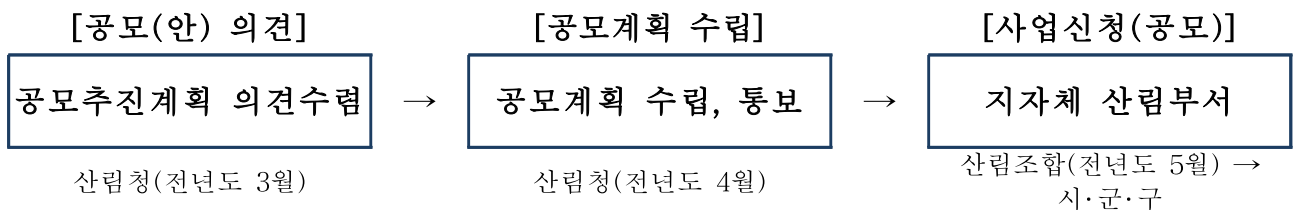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합 1개소 당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2억, 자부담 3억원)

* 지원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총당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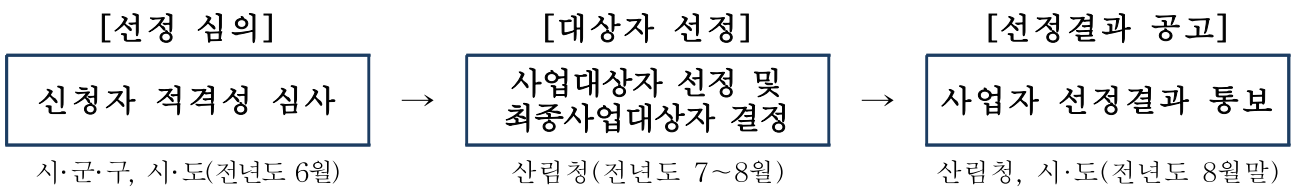
- 산림청은 전년도 3월말까지 공모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전년도 4월초에 공모계획을 통보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 제출(산림조합 → 시·군·구)

- 사업계획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서 등 작성 제출(시·군·구 → 시·도)

○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하는 산림조합 명의의 소유 토지
- 임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작업로 가능)하고, 종자·묘목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주된 목적사업 용도와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장 등은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 심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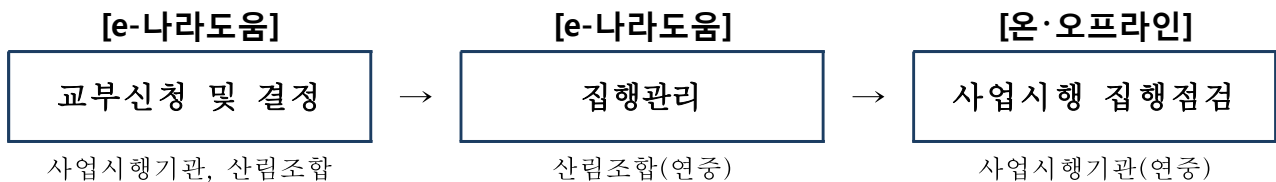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전망, 중복편중 지원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설명,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거쳐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 다면평가 실시
 - * 관련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 * 시·도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 통보

(1차, 시·군·구) 서류검토 → (2차, 시·도)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위원회 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3차, 산림청)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및 알림(사업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배분 규모 결정)

○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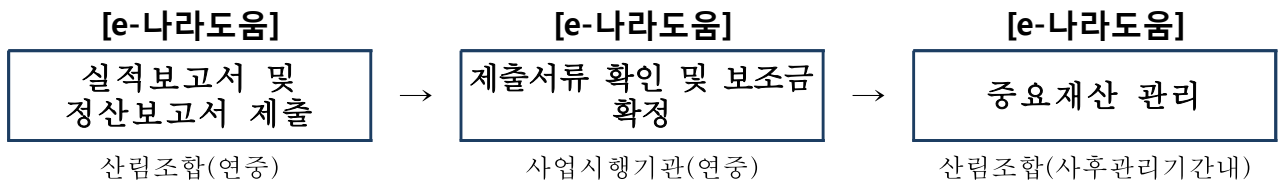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예산확보계획, 사업운영계획(생산·유통·판매 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역 및 조합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여부,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향상에 기여 정도, 사업의 독창성, 조합이미지에 기여 정도 등 사업내용의 적합성
-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정도, 성공가능성 등 향후 사업전망
- 신청조합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인근 지역조합에서 동일사업 추진 여부, 부지확보 등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 가상계좌로 보조금을 교부
- 산림조합은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을 하고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산림조합은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산림조합은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산림조합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산림조합은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이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에 반드시 통보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산림조합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2. 평가

- 시·도, 시·군·구가 상호 협력하여 특화사업이 단년도에 완료 및 사업 성과가 우수한 시·도는 예산배분 시 우선 고려

세부사업명	산림복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4,154				
사업목적	○ 지역주민을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관련 생산, 저장·건조·가공 시설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한도	○ [공동사업] 참여 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 (1가구 참여 사업)]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100백만 원 이상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5,934	5,934	5,934	29,670			
	국 고	4,154	4,154	4,154	20,770			
	지방비	1,187	1,187	1,187	5,935			
	자부담	593	593	593	2,9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팀 장 김명중 서기관 김성만		042-481-8811 042-481-8814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0.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재원구성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9조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 토지와 사업부지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적용
 -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단, 이 조건은 2021년 사업(2020년 신청분)부터 적용

○ 선정우선순위

-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두·뽕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 *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와 같은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함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부지 매입
-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신규 및 보완시설 : 산림버섯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정·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산림식물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작업로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뽕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림버섯(송이 외)·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산과일(산머루 등)·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 목적의 사업으로 모노레일은 지원 제외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및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임산물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 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 (지게차, 팔레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및 운반장비의 경우 임산물의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라.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5. 지원 비율 및 조건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3천만 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공모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시장·군수)는 최종 자금을 집행하기 전까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식 1)’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공모사업자) : ①분기별 1회(건) 이상 백두대간 보호활동 실시 ②지자체에 활동실적 보고(서식 2), ③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시 소득관련 자료 제출
 - (지자체) : ①협약체결 현황 및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 (사업실적 보고 시, 서식 3) ②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이행여부 지도·점검
- ※ 공모사업자가 보호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실적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6. 지원 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공모사업일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개인, 공동)		
산림버섯 생산시설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재배 시설(표고목·꽃송이버섯 자목·복령버섯 자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재배하우스 시설: m ² 당 55,000원 기준(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 구입가격 기준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 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 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제한	-종균배양시설: 설계내역 기준 -톱밥배지시설: 설계내역 기준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표고자목	<p>-지원대상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자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p> <p>*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p>	<p>-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p> <p>*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p> <p>-면적당 본수 : 1,000본/330㎡</p> <p>*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p> <p>*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6-79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p>
꽃송이버섯자목	<p>-지원대상: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p> <p>* 꽃송이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p>	<p>-본당 금액: 1,000원(W 30cm × L 20cm)</p> <p>-면적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p> <p>-지원 한도: (개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p> <p>*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p>
복령버섯자목	<p>-지원대상: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p> <p>* 복령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p>	<p>-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p> <p>-면적당 본수 : 577본/330㎡</p> <p>-지원 한도 : (개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p> <p>*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p> <p>*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p>
밤나무 노령목 관리	<p>-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숙아베기 등</p> <p>* 숙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을 고려·조정 실행</p>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방제장비	<p>-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p> <p>* 차량제외</p>	<p>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p> <p>*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단가를 적용</p>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 (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장비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단가를 적용
생산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내역 기준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 예) 경사도 10°미만 4백만 원, 10~20° 5백만 원, 20°이상 6백만 원
토양개량재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 원 -밤 이외: ha당 총사업비 756천 원 (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 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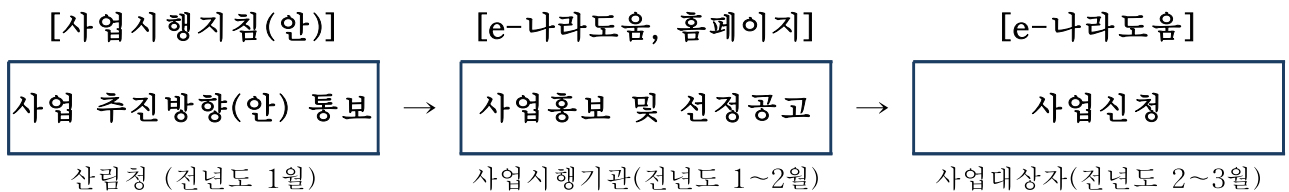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유기질비료	<p>-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p> <p>-부속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단위: 원/20kg)</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국고</th> <th rowspan="2">지방비</th> </tr> <tr> <th>특등급</th> <th>1등급</th> <th>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유기질비료</td> <td colspan="3">(혼합유박) 5,000</td> <td>1,500</td> </tr> <tr> <td colspan="3">(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00</td> <td rowspan="2">600</td> </tr> <tr> <td>부속유기질비료</td> <td>1,700</td> <td>1,600</td> <td>1,400</td> </tr> </tbody> </table>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5,0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00			600	부속유기질비료	1,700	1,600	1,400	<p>-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좌측 표 참고). 잔액 자부담</p> <p>*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p> <p>-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p>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5,0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00			600																			
부속유기질비료	1,700	1,600	1,400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개인, 공동)																							
송이산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 실행기준단가 적용																					
관상수산림식물류 생산시설	<p>- 재배시설: 하우스 시설</p> <p>*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수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p>	<p>-하우스 시설: 250천원/3.3㎡</p> <p>-유리 온실: 800천원/3.3㎡</p> <p>-아크릴 시설: 1,000천원/3.3㎡</p> <p>*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p>																					
	<p>-관정시설</p> <p>*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수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p> <p>*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수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p>	<p>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관수시설 포함)</p> <p>*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p>																					
	<p>-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p> <p>*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p>	총사업비 기준 50백만원/개소																					
관수시설		<p>-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p> <p>-점적: 4,500천원/0.5ha</p> <p>*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p>																					
보호울타리		<p>-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p> <p>-철조망: 1,000천원/0.5ha</p> <p>-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p> <p>*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p>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관리사	<p>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인건비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 시설, 활엽관목 제거, 숙아베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p>20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대한건설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여건에 따라 별목 또는 보통 인부임 적용
종자·묘목대		<p>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종묘 구입 단일사업은 불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개인, 공모)		
저장·건조시설	<p>-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판매장 등</p> <p>-건축 외: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 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 장비·시설 등</p>	<p>-(건축)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p>-(건축 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가공시설	<p>-가공: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p> <p>-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합기, 자동소포장기 등</p>	<p>-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p>-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운반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반장비: 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제외 -공모사업자,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백두대간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공모사업 선정은 전년도 5월 경 별도 실시

가. 산림청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1월초까지)

나. 지 자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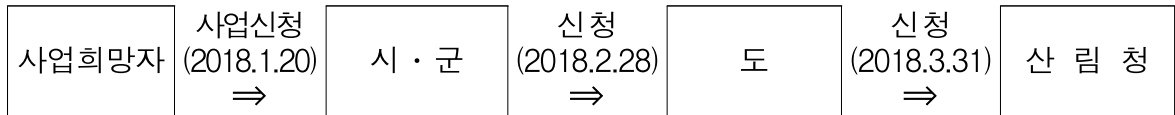
- 도는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다. 사업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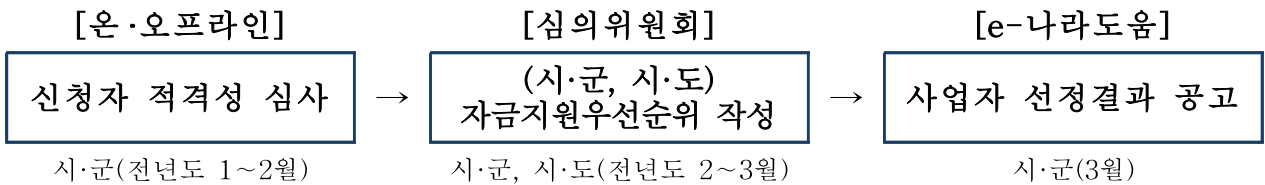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림청

- 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도에 통지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등

나.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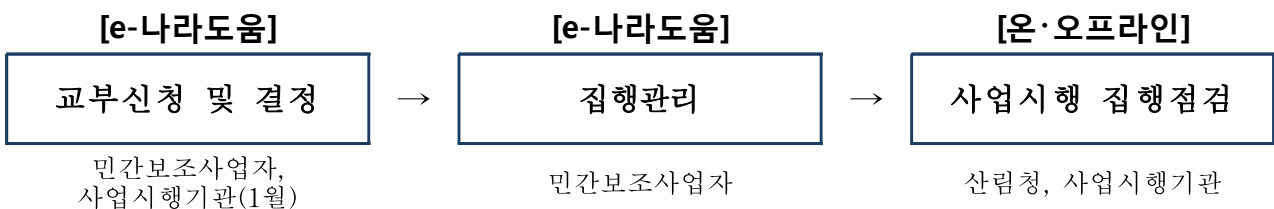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동 또는 공모사업으로 참여자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 받은 경우 2회 받은 것으로 간주
-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기본규정」 제52조)
- 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2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가. 산 립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 (제재부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다. 사업자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립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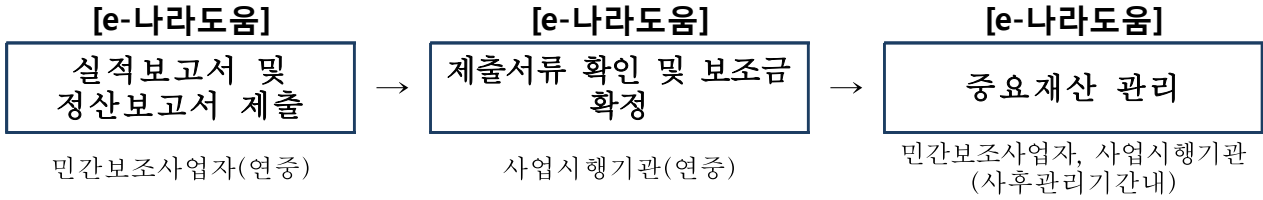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립청으로 제출
 -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가. 산 립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년 1회 이상
 - 점검반 : 산림청(주관), 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 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

    graph LR
      A[사유발생  
(지자체등)] --> B[현장조사]
      B --> C[평가단  
심의]
      C --> D[사전통지]
      D --> E[이의신청]
      E --> F[제재조치  
통지]
      F --> G[처분요령  
발생]
    
```

Ⅲ 평가 및 환류

《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도 평가(협조기관 : 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도에 제출(3.15까지)
-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도(시·군)는 2021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지자체
로고

사업장명 :

대 표 자 :

○○○○기업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관할행정기관의 장(인)

대 표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 협약 기간 :

◆ 협약 내용

연 도	활동분야	세부활동내용	비 고
○○○○년			
○○○○년			
○○○○년			
○○○○년			
.....			

1. 협약 기간 : 최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으로 설정

2. 활동 분야

① 보전 : 백두대간 사랑운동(지자체 주관 행사 참여 포함), 산림정화, 캠페인,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

②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공용시설(등산로) 정비 등

3. 활동 분야 및 세부활동내용은 지자체(시·군) 지역의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4. 공모사업자는 분기별 1회(건) 이상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시·군에 제출한다.

백두대간 보전 · 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④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⑤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기간 (일 자)			
활동장소			
참여자 (명)			
세부활동내용			
비 고			
당사의 백두대간 보전 · 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첨부서류 : 백두대간 보전 · 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증거서류 (사진, 세부계획 또는 결과문서, 참여자 명단 등)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 기관명 : >

1. 협약체결현황

협약체결일	업체명	협약체결기간	협약분야	비고

2. 협약이행실적

연번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고